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68-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윤경·윤재석·구균철·권미경·김동훈·김근진·박진아·조혜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68-01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윤 재 석** (인천테크노파크 안전윤리실장)
구 균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2-1071800-000068-01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8층, 10층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홈페이지 https://www.moe.go.kr
인쇄처 ㈜승림디엔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 1

Ⅰ. 서론 23
1. 연구목적 ····· 25
2. 연구내용 ····· 27
3. 연구방법 ····· 27
4. 연구범위 ····· 28

Ⅱ. 지역 특구 정책 및 돌봄-교육 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35
1. 각종 특구 및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고찰 ····· 37
2. 교육 분야 특구 설치·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고찰 ····· 47
3.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 70

Ⅲ.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103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목적 ····· 105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 111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지자체 적용 ····· 135

Ⅳ.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61
1. 융합돌봄특구의 조성 ····· 163
2. 융복합시설과 관련법령 개요 ····· 167
3.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단계적 개선 방안 ····· 175
4. 융복합시설「특별법」제정 방안 ····· 235

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 245
1. 현행 다부처 돌봄시설 재정운영 현황 ····· 247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 따른 재정 소요 ····· 258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방안 ····· 264

Ⅵ.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273
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고려사항 및 전략 ····· 275
2.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거버넌스 ····· 282

참고문헌 287

부록 293
1.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보육 관련 ····· 293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표 ····· 298

표 목차

〈표 Ⅰ-4- 1〉 생애주기별 아동 돌봄서비스 일반현황 (2024년 4월, 2023년말 기준) ····· 29
〈표 Ⅰ-4-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개요 ····· 30
〈표 Ⅱ-1- 1〉 기존 SOC 방식과 생활 SOC 방식의 비교 ····· 45
〈표 Ⅱ-1- 2〉 마을거점/지역거점 생활SOC와 학교 ····· 46
〈표 Ⅱ-2-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단위 ····· 49
〈표 Ⅱ-2- 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지정 결과 ····· 51
〈표 Ⅱ-2-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53
〈표 Ⅱ-2- 4〉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안) ····· 59
〈표 Ⅱ-2- 5〉 복합화 가능시설 ····· 59
〈표 Ⅱ-2- 6〉 학교 복합화 공공시설의 세부유형별 분류 ····· 59
〈표 Ⅱ-2- 7〉 초등학교 복합화 계획원칙 ····· 60
〈표 Ⅱ-2- 8〉 국내 특구 및 유사사업 ····· 65
〈표 Ⅲ-2-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범위 및 구분 ····· 114
〈표 Ⅲ-2- 2〉 아동통합돌봄 시설 운영모델 유형 ····· 115
〈표 Ⅲ-2-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규모(안) ····· 122
〈표 Ⅲ-2- 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규모(안) ····· 125
〈표 Ⅲ-2- 5〉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소규모(안) ····· 130
〈표 Ⅲ-2- 6〉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구성(안) ····· 133
〈표 Ⅲ-2- 7〉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3개 정리 ····· 134
〈표 Ⅲ-3- 1〉 서울 중구 주요 돌봄 시설 개수 ····· 135
〈표 Ⅲ-3- 2〉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 ····· 136
〈표 Ⅲ-3- 3〉 서울 중구 주요 돌봄 시설(직장어린이집 제외) ····· 137
〈표 Ⅲ-3- 4〉 서울 중구 돌봄시설 이용대상 연령 ····· 140
〈표 Ⅲ-3- 5〉 서울 중구 돌봄시설 주된 운영시간 ····· 141
〈표 Ⅲ-3- 6〉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정현원(직장어린이집 포함) ····· 142
〈표 Ⅲ-3- 7〉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정원(직장어린이집 제외) ····· 142
〈표 Ⅲ-3- 8〉 서울 중구 돌봄시설 교직원 수(직장어린이집 포함) ····· 143
〈표 Ⅲ-3- 9〉 서울 중구 돌봄시설 교직원 수(직장어린이집 제외) ····· 143
〈표 Ⅲ-3-10〉 서울 중구 행정동(4개) 돌봄시설 주요 현황 ····· 144

〈표 Ⅲ-3-11〉 서울 중구 행정동(4개) 돌봄시설 세부 현황 ····· 144
〈표 Ⅲ-3-12〉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 147
〈표 Ⅲ-3-13〉 충북 단양군 인구변화 추이 ····· 148
〈표 Ⅲ-3-14〉 충북 단양군 인구 현황(2024년 4월 기준) ····· 150
〈표 Ⅲ-3-15〉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 150
〈표 Ⅲ-3-16〉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정현원 현황 ····· 153
〈표 Ⅲ-3-17〉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교직원 수 ····· 153
〈표 Ⅲ-3-18〉 융복합시설 설치 입지 고려사항 ····· 156
〈표 Ⅲ-3-19〉 아동돌봄시설 현행 입지 기준 ····· 157
〈표 Ⅳ-2- 1〉 연구대상 융복합시설 ····· 171
〈표 Ⅳ-2- 2〉 융복합시설 기능과 규모에 따른 적용 법규 ····· 172
〈표 Ⅳ-2- 3〉 융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법령위계에 따른 적용법규 ····· 173
〈표 Ⅳ-2- 4〉 용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설치관련 주요 적용법규 ····· 174
〈표 Ⅳ-3- 1〉 영아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 177
〈표 Ⅳ-3- 2〉 유아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 179
〈표 Ⅳ-3- 3〉 아동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 181
〈표 Ⅳ-3- 4〉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 185
〈표 Ⅳ-3- 5〉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 187
〈표 Ⅳ-3- 6〉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 188
〈표 Ⅳ-3- 7〉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 189
〈표 Ⅳ-3- 8〉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 190
〈표 Ⅳ-3- 9〉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 192
〈표 Ⅳ-3-10〉 아동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 194
〈표 Ⅳ-3-11〉 아동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 197
〈표 Ⅳ-3-12〉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 199
〈표 Ⅳ-3-13〉 융복합시설 설치·운영 근거 조문안 ····· 203
〈표 Ⅳ-3-14〉 현행 개별시설 설치기준 비교표 ····· 205
〈표 Ⅳ-3-15〉 융복합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 사항 ····· 207
〈표 Ⅳ-3-16〉 건축물의 공간·설비 공동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 209
〈표 Ⅳ-3-17〉 융복합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 212
〈표 Ⅳ-3-18〉 건축물의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 213
〈표 Ⅳ-3-19〉 현행 개별시설 운영기준 비교표 ····· 219
〈표 Ⅳ-3-20〉 융복합시설 겸임·겸직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 220
〈표 Ⅳ-3-21〉 융복합시설 회계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 224
〈표 Ⅳ-3-22〉 융복합시설 집단급식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 226
〈표 Ⅳ-3-23〉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 228
〈표 Ⅳ-3-24〉 융복합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 230
〈표 Ⅳ-3-25〉 발전단계 설치 및 운영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할 사항 ····· 232
〈표 Ⅳ-4- 1〉 융합돌봄특구 관련 본칙 규정 ····· 239
〈표 Ⅳ-4-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관련 본칙 규정 ····· 241
〈표 Ⅳ-4-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관련 본칙 규정 ····· 243
〈표 Ⅳ-4- 4〉 보칙 규정 ····· 244
〈표 Ⅴ-1- 1〉 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세출예산 ····· 247
〈표 Ⅴ-1- 2〉 보육사업 예산(2020-2024) ····· 248
〈표 Ⅴ-1- 3〉 보육사업 재정분야 예산 ····· 250
〈표 Ⅴ-1- 4〉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 251
〈표 Ⅴ-1- 5〉 유아교육 현황 및 예신 ····· 252
〈표 Ⅴ-1- 6〉 유아교육재정 ····· 252
〈표 Ⅴ-1- 7〉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현황(2015~2023) ····· 253
〈표 Ⅴ-1- 8〉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 ····· 254
〈표 Ⅴ-1- 9〉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예산 ····· 254
〈표 Ⅴ-1-10〉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및 예산 ····· 255
〈표 Ⅴ-1-11〉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 255
〈표 Ⅴ-1-12〉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계속) ····· 256
〈표 Ⅴ-1-1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세부내역(2023년) ····· 256
〈표 Ⅴ-1-14〉 산후조리원 시설운영 현황 및 예산 ····· 257
〈표 Ⅴ-1-1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예산 ····· 257
〈표 Ⅴ-1-16〉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5~2023) ····· 258
〈표 Ⅴ-1-17〉 가정양육수당 예산(2015~2024) ····· 258
〈표 Ⅴ-2-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비용 재원 ····· 259
〈표 Ⅴ-2-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규모(안) 인건비 ····· 261
〈표 Ⅴ-2-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규모(안) 인건비 ····· 262

〈표 Ⅴ-2- 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소규모(안) 인건비 ····· 264
〈표 Ⅴ-3-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268
〈표 Ⅴ-3- 2〉 예산과 기금의 비교 ····· 269

그림 목차

[그림 Ⅰ-4- 1] 아동 연령대별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 33
[그림 Ⅱ-1- 1] 일본 국가전략특구 운영체계 ····· 42
[그림 Ⅱ-1- 2]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 44
[그림 Ⅱ-1- 3] 종래의 SOC와 생활 SOC ····· 45
[그림 Ⅱ-2-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 ····· 50
[그림 Ⅱ-2- 2] 복합시설의 분류 ····· 61
[그림 Ⅱ-2- 3]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 62
[그림 Ⅱ-2- 4] 준공용구역-S ····· 62
[그림 Ⅱ-2- 5] 준공용구역-W ····· 63
[그림 Ⅱ-2- 6] 학교시설 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63
[그림 Ⅱ-2- 7] 동탄2학교복합화 시설 추진단계 및 주체 ····· 64
[그림 Ⅱ-3- 1]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운영 계획 ····· 73
[그림 Ⅱ-3- 2] 증평군 '행복돌봄터', '증평군 가족센터' ····· 75
[그림 Ⅱ-3- 3] 포천시 돌봄 관련 사업 ····· 77
[그림 Ⅱ-3- 4] 울산광역시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 79
[그림 Ⅱ-3- 5] 홍성군 '홍성가족어울림센터' ····· 81
[그림 Ⅱ-3- 6] 계양구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 83
[그림 Ⅱ-3- 7] 인천광역시 동구 '꿈드림센터' ····· 85
[그림 Ⅱ-3- 8] 서울시 노원구 '노원아이돌봄센터' ····· 88
[그림 Ⅱ-3- 9] 의정부시 고산지구 내 '아이돌봄통합거점' ····· 90
[그림 Ⅱ-3-10] 일본 나키초 마을 육아지원 정책 및 고모도엔 ····· 92
[그림 Ⅱ-3-11] 일본 미드타운 '야에스' ····· 94
[그림 Ⅱ-3-12] 독일 패밀리 센터(Familienzentrum) 운영모델 ····· 96
[그림 Ⅱ-3-13] 독일 다세대 센터(Multigenerationenhaus) ····· 98
[그림 Ⅲ-1-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필요성 ····· 106
[그림 Ⅲ-1-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개념 ····· 106
[그림 Ⅲ-1-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 110
[그림 Ⅲ-2-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기본안) ····· 116
[그림 Ⅲ-2-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융복합운영 시간 ····· 118

[그림 Ⅲ-2-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간 구성 - 중규모 모델 ····· 126
[그림 Ⅲ-2- 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간 구성 - 소규모 모델 ····· 131
[그림 Ⅲ-3- 1]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분포1 ····· 138
[그림 Ⅲ-3- 2]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분포2 ····· 139
[그림 Ⅲ-3- 3] 서울 중구 융합돌봄시설 적용 예시 지역 ····· 146
[그림 Ⅲ-3- 4] 충북 단양군 인구변화 추이 ····· 149
[그림 Ⅲ-3- 5]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분포1 ····· 151
[그림 Ⅲ-3- 6]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분포2 ····· 152
[그림 Ⅲ-3- 7]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거리 비교(단양군청 기준) ····· 155
[그림 Ⅲ-3- 8] 지자체 아이돌봄융복합시설 설치·운영 진행과정 ····· 158
[그림 Ⅳ-1- 1] 아이돌봄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 166
[그림 Ⅳ-3- 1] 관련법령 제·개정 등 단계적 추진 ····· 201
[그림 Ⅴ-3- 1]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 266
[그림 Ⅴ-3- 2]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지원체계(2023년) ····· 267
[그림 Ⅵ-1- 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법제도 기반 마련 ····· 280
[그림 Ⅵ-2- 1] 중앙-지방 정부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지자체 중심 ····· 282
[그림 Ⅵ-2- 2] 중앙-지방 정부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교육-돌봄(교육자치-일반자치) 협업 ····· 282
[그림 Ⅵ-2- 3]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미래 융합돌봄특구 ····· 285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저출산 글로벌 추세 하에서도 유례가 없는 위기 상황으로, 돌봄의 필수 인프라 유지와 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아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돌봄 생태계를 유지하던 인프라 전반의 동력이 떨어지고 기관의 폐원 및 소규모화, 이로 인한 통합 운영의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음.

 * 유치원 - 신축 대비 폐원 규모 4배 이상. 공립병설유치원 1학급 규모 다수(2021년 기준) 유치원 재원 유아 20인미만 소규모 유치원 34%, 10명미만 22.3%로 (초)소규모 유치원 증가세 뚜렷(김은영 외, 2023: 116)
 * 어린이집 - 2013년 43,770개소 → 2023년 28,954개소 10년간 약 34% 폐원. 기관 정원충족률의 하락
 * 교직원 수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 아동 수 감소 하에서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의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는 복합화시설(복합커뮤니티), 생활 SOC, 아이돌봄클러스터, 통합돌봄센터, 융복합센터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아동 돌봄은 대표적인 다부처 정책 사업으로, 유사한 돌봄서비스의 운영이 상이한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운영, 전달체계 및 운영기준이 분절되어 있음.

- 현 시점 복합화시설의 형태로 한 공간에서 모여 있어도 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으로 인해 돌봄 시설의 운영과 이용을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집적된 공간의 결합에 머물러 있음. 복합화시설을 통해 기대하는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관의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통합적 운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함.

- 또한 수요자 부모와 아동이 갖는 건강·안전 및 발달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와 변화된 요구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서비스 역량이 부족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함.

-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체계를 통해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실행과제들을 제시함. 기관별로 산재된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의 개편과 운영의 효율성 및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돌봄·교육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집적 하는 all day one stop service의 특구 설치를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돌봄특구에 대한 제안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즉 다부처 아동돌봄시설 간 물리적 연계와 일정수준 화학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 방안의 마련을 모색함.

-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노력(예: 아이돌봄 클러스터, 복합화시설, 복합커뮤니티, 생활 SOC, 통합학교, 특구, 지역특례 등)이, 지역의 규모와 특성(구도심, 신규택지 등)을 고려하여 변화된 수요에 맞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융복합운영의 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임.

- 아동 감소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 돌봄 인프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전략으로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약칭 '융복시설')의 설치·운영[1]에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융복합운영의 법·제도 개선사항 및 재정 방안을 융합돌봄특구 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제안함.

나.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돌봄특구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와 융복합운영의 개념 및 운영모델,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과 지원방안을 포함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 연구의 내용은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입지 및 설치 단계 이후 '운영'에 초점을 둠.
- 가독성을 위해 본문에 아이돌봄 융복합시설과 융복시설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특구의 개념 및 교육·돌봄 분야 유관 사업 고찰
- 국내외 지자체 아동통합돌봄시설 설치·운영 사례 조사
-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 운영모델 제안
 - 돌봄특구로서의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개념 및 모델 (대-중-소규모)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파악
 - (설치 관련) 현행 법상 공간배치의 제한, 복합설치 허용 및 공간설비 공유에 대한 관련 규정 여부, 건축 제한사항 등 시설 통합 설치 관련 법 조항 검토
 - (운영 관련) 융복합시설의 조성과 운영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애요인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선 사항 제언
 - 융복합시설 기본시설의 연계협력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도출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
- 돌봄특구 융복합시설의 추진 고려사항과 운영 거버넌스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관련 선행연구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 통합-복합화 운영 사례 고찰

□ 지자체 통합돌봄시설 방문 면담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개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유관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2024. 11. 18. 전문가포럼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연구범위(아이돌봄시설)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상으로 고려하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기능/공간으로 다음을 제안함.

- '기본시설'로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2]), 약칭 영유아학교), 다함께돌봄센터(또

는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또는 가족센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어린이식당의 6개를 구성함.

〈요약표 1-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범위 및 구성

기본시설(6개)	선택시설(예)	지역희망시설/ 유관서비스 연계협력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영유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어린이식당	실내(외)놀이터 아동발달센터/아픈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도서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체육센터) (DRT 등) 교통서비스	보건소/소아청소년과 카페/식당 직업훈련/평생학습센터 다세대교류센터(노인돌봄) 일자리지원센터 (강의실 등) 다목적공간

출처: 권미경 외(2024). p. 35 표 내용을 참조, 재구성

- 6개 기본 시설·공간 외에, 실내(외)놀이터와 (가칭) 아동발달센터와 아픈아이돌봄센터 등의 주요 돌봄 공간과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여 융복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안함(3장 운영모델).

□ 4장 융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법제도 방안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한 융복시설의 운영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규 개선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기본-선택시설] 중 11개 기관의 법/지침 조항을 분석함.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의 법제상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고찰하기 위해 11개 시설/서비스(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식당, 어린이도서관, 아동발달센터)의 현행 법령과 지침을 상세 비교 분석

□ 5장 재정 방안에서는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대-중-소규모 융복시설 운영모델에 대해 현행 예산 구조를 고려한 재원의 조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함.

□ 6장 종합 및 정책제언에서는 융합돌봄특구 도입의 추진 시 고려사항과 전략 및 운영체계에 대해 제언함.

2) 유치원-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 등 시설 간 대상 아동과 서비스 기능의 유사 또는 중복에 따라 기관 간 통합적 운영이 정책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논의됨.
- 이 연구에서는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의 경우 둘 중 1개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함.

2. 국내 지역 특구 및 돌봄-교육 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특구 제도 고찰

□ 특구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시설 및 기능의 집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특구 제도는 「효율적인 시설 및 기능 등의 집적을 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 규제완화, 행·재정 지원방안 등의 법제도적 사항」으로 구성됨(박정은 외, 2022: 23).

- (융합돌봄특구의 정의) 여러 개의 아이돌봄시설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설로서 통합적으로 접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정한 구역을 말함.

□ (특구 현황) 정부가 지정하는 특구 또는 혁신지구, 선도지구 등 특구와 유사한 특별사업지역의 종류는 총 24종으로 보고됨(박정은, 2023).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의 4대 특구를 도입하였음.
-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역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목적을 가짐. 추진방식은 다르나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 하고 있음.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각각의 법적 근거를 가짐. 교육발전특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

〈요약표 1-2〉 국내 특구 및 유사특구 사업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교육발전특구	생활 SOC	도심융합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근거법률	없음[3] (2023. 12월 시행)	없음[4] (2018. 11월 시행)	도심융합특구법 (2024. 4. 25. 시행)	지역특구법 (2019. 4. 17.시행)
소관부처	교육부	국무조종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방식	선정 (시범지역)	선정 (사업대상)	지정고시 (위치, 면적 등)	지정고시 (위치, 면적 등)
신청자	기초·광역단체장 (공동)	국민 누구나	시·도지사 등	시·군·구청장
지정자	장관	총리	장관	장관
담당책무	지역주도, 중앙·지방지원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사업시행자 부담)	지역 주도, 중앙 지원

구 분	교육발전특구	생활 SOC	도심융합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효과	• 지역자율 교육정책 시행 • 규제완화 및 특례 제공	• 지역 우수사례 파급 • 지역균형발전 지원	•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 • 문화·교육·복지 복합화	• 특구 내 맞춤형 규제완화 • 지역성장 지원
설치지역	49 (기초단체)	전국 단위	5 (광역시)	181개

□ (시사점) 특구제도의 도입 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기존 특구제도 종합 비교 및 검토 과정 필요), 유사 제도 간 중복 최소화(도입 목적, 대상 등의 차별화), 부처별 특구제도보다 단일 특구제도 내 다부처 협업 추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박정은 외, 2022: 92-93).

- 기존 법령 정비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융합돌봄특구 도입 시 도입목적의 명확화와 적용대상의 차별화, 기존 제도와 구분되는 특구제도의 의의와 지원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나.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현황

□ (국내) 다양한 형태의 통합육아지원센터, 아동통합돌봄센터 복합시설이 운영 중임.

- (운영) 한 곳의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여 다부처사업으로서 병렬적 운영이 다수임. 일부 시설 간 소통과 협력의 자체 노력이 이루어짐(예: 식당 공동사용, 아픈아이 연계). 지역 수요에 따른 기관 구성의 조합과 특화된 서비스 운영(예: 아픈아이돌봄센터)이 이루어짐.
- (거버넌스) 지자체 자체 예산을 편성함. 다부처 개별 과별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행정조직/팀에서 다부문 기관 운영을 총괄하도록 담당 조직을 구성함. 지자체 공무원 파견을 통한 통합돌봄시설 운영으로 지자체와 돌봄시설(들) 간 운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탁체 운영을 통한 인력관리 등이 이루어짐.
 * (예) 경상북도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증평군 행복돌봄터/증평군 가족센터,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충남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인천 계양구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인천 동구 꿈드림센터, 서울시 노원구 아이휴센터,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통합시설 등
- (제한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집적되어 있으나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유관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교육부 지침, 2023. 12)이 근거가 됨.
4)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령, 2018. 11)이 근거가 됨.

기관 간 협업과 소통 및 연계협력의 화학적 결합 노력이 구현되지 않거나, 현행 법 체계 내 실행기반이 없는 운영요소가 적용됨.

- 행재정 기반의 취약성으로 복합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복합시설에 적용 가능한 운영기준이 부재함. 지역별 복합시설 간 운영관리에 편차를 보임.

□ (국외) 돌봄기관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의 개방과 활용, 다양한 세대와 센터가 결합된 확장된 형태로 연계협력하는 운영 사례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가족센터의 기능을 어린이집에 부여하여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장을 꾀함.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이전의 1천여개 구조개혁특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개선하여 규제특례와 지원체계를 함께 반영하여 중앙정부 총괄로 진행함.

 * 일본 나기초 마을, 덴마크 코펜하겐 유치원·어린이집 개방, 독일 패밀리센터, 도쿄 보육스테이션, 도쿄 역사 미드타운 등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가. 개념 및 목적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란?

- (정의) 개별적·분절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여러 개의 아이돌봄시설을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연계를 위해 하나의 시설로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함. 돌봄시설 간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을 통해 양질의 확장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물리적으로 한 곳에 집적된 형태로 운영
- 다부처 개별 사업으로 구분된 현행 법제도 기반의 기관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 시점 실행가능한 시설 간 연계협력 요소를 도출 적용
 -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돌봄 시설의 구성(조합)과 규모/운영방식을 결정
- 융복합 운영을 통한 아동돌봄서비스 고도화 창출

□ 특구 제도를 통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방안 모색

- 아동돌봄의 특구 지정과 운영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물리적으로 집적된 형태로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의 분절성과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의 당면과제를 우선 고려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지역의 인구와 인프라 특성 및 돌봄 수요에 기초하여 양질의 확장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융복합운영의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와 지원체계의 특구 개념과 제도 도입을 제안함.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기본 방향 및 목적

- 지역의 아동 돌봄서비스 접근성과 이용(권)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 수요자 부모와 아동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 보장
- 집적된 형태의 융복합 운영을 통한 기관중심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고도화
 - 비등하는 건강-안전 및 아동발달 지원에 대한 돌봄에의 확장된 요구를 반영, 유관시설 간 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 기존 개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돌봄서비스로서의 부가 효과(예: 식당/놀이터 공동사용, 긴급돌봄 및 아픈아이돌봄 대응) 창출
 - 인구감소 추세 하에 아동의 관점에서 융복합시설의 집적된 공간 설비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또래 및 성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경험 제공
 - 다부처 개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 하의 돌봄시설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 시점 적용가능한 연계협력과 통합적 접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양질의 서비스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 다양한 돌봄 주체의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과 권리를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육아생태계 조성

 * 아이돌봄시설의 융복합운영이란?

- 융복합시설 전체 규모(정원)를 대상으로
 - 아침-저녁 돌봄을 포함한 종일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 공통 공간의 구성과 운영, 추가인력의 배치 및 기존인력의 순환근무를 통해

 - 기존의 분절된 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다양한 놀이와 쉼, 확장된 양질의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 융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예: 특성화활동, 긴급돌봄 대응) 운영의 연계협력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 시설 간 융복합운영은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외한 아침-방과후/저녁, 휴일/방학 기간의 돌봄과 시간제/틈새 및 긴급 돌봄, 특성화활동 운영에 해당함.

□ 추진 시 고려사항

- (지자체 입지 선정)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고 이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돌봄 환경에 해당되는 지역(site)을 지자체 자체 선정
- 해당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의 융복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 파악
 - 인구특성(연령별 아동수, 세대구성)과 아이돌봄시설 인프라 현황(시설 수/유형, 정원-현원 규모 등) 파악. 기존 시설의 수급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되, 이와는 구분되는 지역의 특정 위치에 설치가 필요한 수요와 지역 여건을 확인. 신규 설치가 가능한 입지/부지 확보
 - 구도심 내 기존시설 간 연계협력을 통한 융복합운영 가능
- 지역 모델 구성
 - 어떤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어떤 시설들의 조합을 특정 규모로 설치·운영 할지, 집적된 돌봄시설 간 연계협력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자체 계획 마련

나. 운영모델 적용: 돌봄시설 조합에 의한 대-중-소규모

□ 기관 조합에 따라, 개별 시설의 정·현원 규모를 하나의 융복합시설로서 전체 정·현원 규모에 따른 공간 구성과 인력 및 프로그램, 재정 운영을 추진

- 인력의 순환배치와 추가 전문인력의 배치, 긴급돌봄 대응 및 틈새돌봄 운영의 긴밀한 연계협력, 일부 특성화 프로그램 공동운영, 확대된 공간 시설·설비의 활용을 통해 양질의 포괄적 돌봄을 제공함.
-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시설(들)을 구성하고 서비스 기능의 조

합을 반영한 대-중-소 규모(안)을 운영모델 구체안으로 살펴봄(요약표 3-1 참조).

□ 대규모 융복합운영(안) - 정원 200~300명 규모

- 대규모시설은 100인 규모의 어린이집, 80인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양육지원과 장난감도서관/발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와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어린이식당을 기본시설로 구성을 가정
- (인력) 융복시설의 포괄적·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융복시설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어린이식당 조리사/영양사, 발달지원사, 간호사, 놀이터 직원(2인)에 해당하는 추가인력 필요
 - 융복시설 센터장과 발달지원사, 조리사, 영양사의 경우 기존 인력 일부 겸임. 대규모의 경우 융복시설 전체 36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인력의 순환배치 및 융복시설 업무 확대와 겸임을 통해 33명 담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 각 기관의 인력이 개별기관과 융복시설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연계협력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인력의 교차-순환 업무 및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원이 필요함.
 - 실제 인력의 배치와 순환업무의 부여는 지역별 융복시설 내 돌봄기관 협의체와 육아코디네이터를 통해 공통업무 범위와 분장, 추가인력 배치를 판단함.
- (공간) 인력의 구성과 배치, 이들 간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공통 공간 구성과 시설설비가 일정수준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간 운영의 측면에서 상호 개방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변형의 오픈된 공간 설계를 반영함.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실의 인접 및 공통 공간 구성·연결
- 공통공간 식당/조리실, 실내놀이터, 교사 사무실/휴게실, 아픈아이돌봄센터 구성
- (프로그램) 아침/저녁돌봄, 휴일돌봄 등 틈새 보육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육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통해 기관 간에 협의, 연계협력을 도모함.

□ 중규모 융복합운영(안) - 정원 100~150명 규모

- 기본-선택 시설 구성은 대규모안과 동일. 정원 규모에 따른 인력 배치와 운영에 차이를 보임.

 • 2인의 기관장이 융복시설내 7개 센터를 구분 총괄함.

- (인력) 융복시설의 포괄적·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융복시설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발달지원사, 조리사와 영양사, 실내놀이터 직원(1인). 아픈아이돌봄 간호사 배치 필요

 • 융복시설 센터장과 발달지원사의 경우 기존 인력 일부 겸임. 중규모의 경우 융복시설 전체 22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순환배치 및 겸임을 통해 20명이 담당

□ 소규모 융복합운영(안)- 정원 50인이하 규모

- (1안) 기본시설로 국공립유치원(20인규모), 지역아동센터(20인규모),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10인규모), 실내놀이터로 구성

- (2안) 50인이하 소규모의 경우, 과거 중규모이상에 해당하던 지역의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여기에 융복합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을 배치·파견하는 소규모 통합시설로 운영 가능

 • 특구 특례조항을 통해 가령 50인이하 소규모의 경우, 융복합시설의 다부문 역할과 서비스 기능을 중점 기관 한 곳이 맡을 수 있도록 함.

〈요약표 3-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

운영 모델	대규모 (8개시설, 200~300인 이상)	중규모 (7개시설, 100~150인)	소규모 (4개시설, 50인 이하)
인력 (개별; 현재)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원장1인, 담임교사9인, 보조교사 3인, 연장반 교사 2인, 사무직원 1인, 조리사 2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인, 교사 4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발달지원실):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직원 1인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원장1인, 담임교사4인, 보조교사 2인, 연장반 교사 2인, 조리사 1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인, 교사1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발달지원실):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직원 1인	-유치원(가칭 영유아학교): 원장 1인, 담임교사 2인, 방과후전담교사 1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융복 시설 인력/ 공간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현행인력+조리사1인) -실내놀이터(2곳): 직원 2인 -아픈아이돌봄센터 (+간호사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현행인력+조리사1인+영양사1인) -실내놀이터: 직원 1인 -아픈아이돌봄센터 (+간호사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조리사1인) -실내놀이터(1곳)
	융복시설 인력 구성(안)	겸임-순환근무를 통한 서비스 연계	
	• 융복시설 센터장 • 융복시설 육아코디네이터 • 융복시설 식당(조리실) 조리사/영양사 • 융복시설 발달지원사 • 융복시설 실내놀이터 직원 • 융복시설 아픈아이돌봄센터 • 융복시설 순환돌봄교사(틈새/긴급돌봄 등)	← 개별시설 원장/센터장 겸임 ← 신규배치(또는 겸임) ← 어린이집 조리사/영양사 겸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요원 겸임 ← 직원 신규배치 ← 어린이집 간호사 겸임 +신규간호사 배치 ← 개별시설 교직원 순환근무(겸임)	
	융복시설 총 36명 → 33명	융복시설 총 22명 → 20명	융복시설 총 10명 → 8명
공간 (공통)	식당/조리실, 실내놀이터, 교사 사무실/휴게실, 공용화장실(4개공간) 아픈아이돌봄센터(소규모 제외), 아이돌봄실, 발달지원실(3개공간)		
프로 그램	• 아침-연장/야간돌봄 • 휴일/주말 • 방학 • 긴급돌봄/아픈아이돌봄 • 연령별 특성화프로그램 및 부모교육/부모참여 공동 운영		
운영 체계	지자체 전담부서, 융복합시설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중간지원조직, 직영 및 위탁 운영-		
비용 지원 체계	[인건비 지원] • 기존인력 순환배치-수당지급 • 긴급돌봄대응-수당지급 •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인력-인건비지원		
	[운영비 지원] 시설면적·규모(정현원/교직원수), 돌봄시설 수 및 서비스실-공통/추가 시설·설비, 유관기관 인력파견/순회협력을 통한 효율화		

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법제도 개선 방안

□ 총 11개 돌봄 시설 및 서비스기능에 대해 융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행 법제도 간 상충되는 지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식당,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발달센터/재활센터, 어린이도서관의 11개 시설/서비스기능에 대해 주 이용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융복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법조항/지침을 살펴봄.

가.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현황[5)]

□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로써 적용되는 법규를 개별시설의 근거법을 중심으로 법령 위계 상 개별법과 기본법,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구분, 살펴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사업안내)의 관련규정을 포함함.

〈요약표 4-1〉 융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법령위계에 따른 적용법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개별법</th><th colspan="2">관련법령·조례</th><th rowspan="2">지침,
훈령 등</th></tr>
<tr><th>기본법(모법)</th><th>일반법</th></tr>
<tr><td rowspan="3">1</td><td>시간제보육기관</td><td>영유아보육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d rowspan="1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유재산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법
고등학교이하설립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어린이놀이시설법
행정위임위탁규정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개별)</td><td rowspan="15">지구단위계획지침
민간위탁지침
교육부고시

11개 개별시설
사업안내(매년)</td></tr>
<tr><td>아이돌봄실</td><td>--</td><td>--</td></tr>
<tr><td>공동육아나눔터</td><td>아이돌봄지원법</td><td>건강가정기본법</td></tr>
<tr><td rowspan="3">2</td><td>육아종합지원센터</td><td>영유아보육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r>
<tr><td>어린이집</td><td>영유아보육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r>
<tr><td>유치원</td><td>유아교육법</td><td>교육기본법</td></tr>
<tr><td rowspan="5">3</td><td>어린이식당</td><td>--</td><td>--</td></tr>
<tr><td>지역아동센터</td><td>아동복지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r>
<tr><td>다함께돌봄센터</td><td>아동복지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r>
<tr><td>아동발달센터</td><td>장애아동복지법</td><td>사회복지사업법</td></tr>
<tr><td>어린이도서관</td><td>작은도서관법</td><td>도서관법</td></tr>
</table>

주: 개별시설에 대한 현행 법령/지침 검토와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 이용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3개 그룹로 구분함.

5) 특별법 제정에 의한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아닌, 개별시설의 복합건물로 상정하여 논의함.

나. 융복합시설 설치 관련 법규 분석

□ 융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현행 개별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함.

- (그룹1) 주 이용아동이 영아인 3개 시설의 경우, 현행 법규 상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복합설치가 가능함. 아이돌봄실의 공간은 개별법상 설치근거가 없으나, 설치상 장애나 규제가 되는 제도적 문제점 또한 없음.
- (그룹2) 주 이용아동을 유아로 하여 3개 시설을 살펴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생애주기가 다른 시설들이 함께 설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충으로 입지 또는 건축물의 층수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 시설 모두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 일부 제한적이지만 융복시설 내 복합설치가 가능함.
 - 개별시설 인허가 규정상 사무실, 자료실, 화장실 등은 개별시설의 필수설비로 각각 설치되어야 하나, 융복시설로 설치 시 공유를 전제로 크기 또는 양, 방식 등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안이 각 법령/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비상재해대비시설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융복시설로 설치·운영 시 건축물의 규모와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검토와 반영이 필요함.
- (그룹3) 주 이용아동이 학령기 아동인 5개 시설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 공간설비에 대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음.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지역아동센터는 시행규칙[6]에서 집단지도실과 식당을 갖추도록 규정함.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역아동센터는 시행규칙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로, 융복시설 내 설치 시 일반음식점 인허가 절차로 설치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시설의 부속용도(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아동발달센터[7]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

6)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관련 '별표 2'
7) 아동발달센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설명칭이며 법령상 공식명칭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임.

는 기관으로, 시·군·구청장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공립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융복시설 내 해당 시·군·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도서관은 관련법령에 시설의 입지, 층수, 복합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중화장실법」의 화장실 설비와 「소방시설법」의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융복시설 내 설치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시설 복합건축물의 기능/규모에 따른 새로운 법 조항 필요

- 그룹 1,2 영유아시설(6개)의 복합설치가 불가능한 법적요건 없음. 다만 복합시설로 설치 시 개별시설 인허가 규정(사무실, 자료실, 화장실 등)과 안전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에 대한 복합시설 설치 사항이 관련 법령/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시설 용도기능 확장) 어린이식당/아동발달센터/도서관 등의 복합건축 시 이에 따른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관리' 적용 법규의 추가 마련이 요구됨.

다. 융복합시설 운영 관련 법규 분석

□ 융복시설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개별시설 또는 서비스의 운영 관련 규정과 세부기준을, 인력관리, 회계관리, 안전관리, 일반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봄.

□ 다부처 법제와 사업이 융합 운영되는 융복시설의 회계관리를 위해 자체 회계규정의 마련과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융복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준용이 가능함.
 - (세입) 예산 교부 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시설별 지원액을 산출하여 하나의 비목(전입금 등)으로 교부하는 방안 가능
 - (세출) 융복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및 결산하도록 규정 마련.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융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나뉨. 위탁운영 시 비용지원 및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일반법과 관계법령에 마련되어 있으나[8] 개별시설 관련법령에는 위탁수수료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함.

- (그룹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회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이하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체규정으로 시행 중임. 개별시설별 집행의 자율성은 현행 법령상 관련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에 대해 현재 중요성에 비해 관련규정이 미비함.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실은 급식, 평가, 위탁관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룹2)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법령상 겸임·겸직이 불가함. 유치원은 공무원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르고 법령상 겸임·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융복시설 내 유아시설(3개)의 인력관리 부문에서 현행 개별시설의 장에 대한 겸직·겸임 규정과 소속 직원에 대한 배치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함.
 - 급식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련 규정이 없고,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주요 서비스로 마련되어 있음. 유치원은 설립인가 조건에 급식시설이 포함되어 현재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유치원의 법적·의무 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그룹3) 어린이식당과 아동발달센터, 어린이도서관은 이용시설로써 필요시 외부 아동에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함.
 - 어린이식당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 규정이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관련규정에 융복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인력배치와 자격기준은 관련규정에 따르되, 겸임·겸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용함.
 - 현행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별시설이 이를 설치(신고)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의 설비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 조항[9]에서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실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내용 외 비교적 구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융복시설 조례로 반영함.

8)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사, 영양사 등은 어린이식당이 운영될 경우 융복합운영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 회계 관련하여 집행의 자율성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동시설(5개) 모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탁운영) 현행 개별법령에 융복시설 위탁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에 융복시설 위탁운영 가능 조항을 마련함.

라. 융복합시설 특별법 제정 방안

□ 아이돌봄 융합특구 및 시설의 효율적 지정과 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중장기적으로 특별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
- (특별입법의 목적) 아이돌봄시설의 융합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현행 부처 간, 법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 (본칙) 목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지원, 비용지원, 운영방법 등 주된 내용으로 함. 개별법상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으로 구성함. 또한 부칙을 통해 동 특별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면밀히 정함. 부칙에 대해서는 법령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5.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운영 방안

가. 현행 다부처 돌봄시설 재정운영 현황[10)]

□ (보육재정) 2024년 보육사업 예산은 7조 6,581억원 규모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매칭 구조임.

10) 부처 2024년 예산 내부자료를 참조함.
- 보육 관련 2024년 연내 변경은 반영되지 않음(예: 2024.6.27.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외에 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이 있음.

□ (유아교육재정) 유치원 수는 2022년 8,562개소에서 2024년 8294개소로 감소, 국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감소세가 뚜렷함. 사립유치원 수는 다소 많이 감소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라 유치원 교원수는 2022년 53,697명에서 2024년 55,404명으로 증가함.

- 유아수는 2022년 552,812명에서 2024년 498,604명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짐.
- 최근 유아교육 재정에 투자된 교육부 재원은 2020년 결산 기준 7.1~7.5조 원 규모로 추정됨(엄문영, 2022).

□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은 2015년 216개에서 2023년 827개소로 증가함. 시간제보육반은 2015년 237개에서 2023년 1,000개로 증가함.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은 2024년 48,929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24505백만원, 시도비 14312백만원, 시군구비 10,112억원 수준임.

□ (지역아동센터) 2024년 4월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4,259개소, 시설 종사자 9,770명, 연간 이용자수 110,599명임.

- 운영비는 국비-지방비 매칭구조로, 전체 규모는 2024년 4,538억 68백만원으로 증가 추세임. 원장과 생활복지사의 종사자 수 규모 차는 크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영양사는 없음.

□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4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1,130개소, 시설 종사자 4,011명, 연간 이용자수는 29,714명으로 증가 추세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비-지방비 매칭구조로,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2024년 1,210억 2천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2022년 376개소, 2023년 395개소, 2024년 4월 435개소로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수는 개소당 1~1.3명, 연간 이용자수는 2022년 2,124명, 2023년 2,620명 수준임. 운영비는 2024년

493억 40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인력은 2023년 28,071명, 2023년 서비스 이용 86,100가구, 이용아동 202,024명으로 나타남.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도비 규모는 2022년 8,625억 58백만원, 2023년 1조 971억 88백만원, 2024년 1조 4,459억 92백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023년 2,615개소, 서비스 제공인력 2023년 13,458명로 약간 증가함. 연간 이용자수 2023년 97,469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 2022년 1,487억 78백만원, 2023년 1,893억 73백만원, 2024년 2,052억 78백만원으로 증가세임.

나.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 (융복합시설 운영 예산) 기본 돌봄시설의 예산은 국비+지방비 매칭구조 또는 지방비로 구성할 수 있음. 선택시설은 전액 지방비 또는 지방비+일부 수익자 부담을 재원으로 고려 가능함.

- 운영모델을 통해 살펴본 육아코디네이터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관리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추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전액 지방비 부담이 가능함. 이와 함께 특수목적비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특정 기금을 재원 확보에 사용할 수 있음.

□ 기본-선택-지역특화 돌봄시설(들)로 구성된 융복합시설의 구성과 조합을 대-중-소 규모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용 소요를 살펴봄.

- 시설의 융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기존인력의 순환배치 및 겸임/겸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수당 지원, 추가 공통인력에 대해 풀타임/파트타임 인건비 지원을 살펴봄. 관련 재원에 대해 지방비 전액 또는 국고와 기금, 수익자부담의 매칭을 제안함.

〈요약표 5-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비용 재원

구분	운영모델 설치 시설	운영 재원(안)
기본 돌봄시설	어린이집(유치원*)	• 국비+지방비 지원 • 지방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구분	운영모델 설치 시설	운영 재원(안)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식당	
선택 돌봄시설	실내놀이터(영유아/초등 키즈카페)	• 전액 지방비 지원 • 지방비 + 수익자 부담
	아픈아이돌봄센터	
	다목적공간(부모교육/참여 강의실)	
융복합시설 운영·관리	융복합시설 통합관리체	• 전액 지방비 지원 • 특수목적비용(복권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 중으로 향후 통합기관 설치(가칭 영유아학교)를 가정함.
융복합시설의 설치비는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 중심으로 기본 개별시설을 융복합화 경우 비용을 고려함.

다.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방안

□ (재정 운영의 방향성) 공간-인력의 공통 배치와 서비스 기능의 연계협력을 통해 기존 대비 공백없는 확장된 건강·안전·놀이의 종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설 간 인력운영의 효율 및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이는 시설 간 융복합운영을 통해 창출된 광의의 돌봄 제공과 양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임.

- 다양한 돌봄시설들이 연계협력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그로 인한 돌봄의 질 향상은 선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사후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하겠음.

□ (관리체계)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 주관부처의 예산을 지자체 단위에서 돌봄사업 재정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필요함.

-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중복·분산된 돌봄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적 운영주체가 필요함. 중앙 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와 이를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가 요구됨.
- 돌봄인력에 대한 안정적 수급 체계 확보. 대체인력 풀의 확보와 지역활동가 또는 인력풀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유관(민간)단체 위탁 운영 또는 운영 협력 체계 검토가 필요함.

□ (재원) 돌봄 사업은 행안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교육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짐.

- 현행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의 형식으로 조성됨. 융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 비율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음. 재원 부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임.

 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의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

 ②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융합돌봄특구에 특화된 새로운 부담 비율로 마련(현행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

 ③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특구내 단위 시설에 지원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중앙-지방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정함.

□ (재원운용 방식) 보육-교육 사업의 재원 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루어짐. 지자체에서 융합돌봄특구를 위한 통합재정을 조성할 경우 세 가지 방식(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① 일반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내 사업으로 편성

 ②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부처가 기금을 출연

 ③ 융합돌봄특구 특별회계 제정을 통해 재정을 통합운용하는 방안

□ (특구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현행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융합돌봄특구에 도입하면서 지출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균특회계와 유사함.

- 지출한도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사업을 자율적으로 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함. 동시에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융합돌봄특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칭 융합돌봄특구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현재의 다양한 재정원천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돌봄 사업의 운영과 성과를 위해 설치된 일종의 공동사업비 시스템임.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용 방안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재원 분담 등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 융복합특구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 4대 특구 사업 등 특구정책이 다수 추진 중으로 긍부정의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시점 돌봄특구의 도입과 추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

- 첫째, 융합돌봄특구의 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로, 융합돌봄특구의 운영모델이 융복합시설로 접근한다면, 특구 명칭을 고수하지 않고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개념과 이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
- 둘째, 신규 융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합화된 시설 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함. 돌봄특구의 지정과 특례의 적용은 신규택지 또는 구도심의 지역 특성에 국한되지 않음.

□ 상기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의 추진전략이 필요함.

- 유관 특구정책과 연계 필요
- 관련 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 기반 실행
- 돌봄서비스 융복합화의 단계적 추진
- 융복합돌봄특구 추진단 운영
- 특별법의 제정

□ 지역주도의 상향식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구전담기구에서 특구 공모와 지정 및 심의,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지역에서 발굴한 특례에 대한 심의 및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지원체계의 적용이 요구됨.

- 중앙-지자체 및 돌봄-교육 간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광의의 돌봄 및 육아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 융합돌봄특구로 발전되도록 함.

I

서 론

01 연구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범위

Ⅰ.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저출산의 글로벌 추세 하에서도 유례가 없는 위기 상황으로, 돌봄의 필수 인프라 유지와 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간 출생아 수 20만명 내외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인구특성과 수요, 인프라 현황을 고려한 아동 돌봄시설의 구성과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전환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권미경 외, 2024).

아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돌봄 생태계를 유지하던 인프라 전반의 동력이 떨어지고 기관의 폐원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신축 대비 폐원 규모가 4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공립병설유치원은 1학급의 규모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유치원 중 재원 유아 20인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이 전체 34%, 재원 유아 수 10명 미만이 22.3%로 (초)소규모 유치원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김은영 외, 2023: 116). 어린이집의 경우도 2013년 43,770개소에서 2023년 현재 28,954개소로 10년간 약 34% 기관이 폐원하였으며, 기관 내 연령별 반 구성의 어려움과 정원충족률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체계를 통해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의 조성을 발표, 기관별로 산재된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단위 돌봄·교육 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집적 하는 all day one stop service의 특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신규택지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과정에 아이돌봄시설의 융복합 운영이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의 유

입과 일가정생활이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 수 감소 하에서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의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는 복합화시설(복합케뮤니티), 생활 SOC, 아이돌봄클러스터, 융복합센터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보고서 2장 참조).

그러나 아동 돌봄은 대표적인 다부처 정책 사업으로, 유사한 돌봄서비스의 운영이 상이한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운영, 전달체계 및 운영기준이 분절되어 있다. 이로써 현 시점 복합화시설로 한 공간에서 모여있어도 여전히 다부처 사업으로서의 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으로 인해 돌봄 시설의 운영과 이용을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집적된 공간의 결합에 머물러 있다. 복합화시설을 통해 기대하는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려움에 따라, 믿고 맡길 데를 찾는 양육의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복합화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시설의 운영기준과 행·재정 기반이 다른 데에서 오는 설치-운영 과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돌봄시설 간 연계협력의 실행과 통합적 운영은 그 실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분절된 운영 체계와 통합적 접근의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시설 간 분절된 운영 요건을 점검하고 융복합운영 전략으로서 필요한 부분과 연계협력에 저해가 되는 제한점을 해소하는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예: 아이돌봄 클러스터, 돌봄거점, 시설복합화, 복합커뮤니티, 생활 SOC, 통합학교, 특구, 지역특례 등) 노력이, 실제 지역의 규모와 특성(구도심, 신규택지 등)을 고려하여 변화된 수요에 맞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융복합 운영의 요건을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동 감소와 돌봄 인프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전략으로서,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약칭 '융복시설')의 설치·운영[11]에 필요하고 이를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융복합 운영의 기준 점검과 이

1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입지 및 설치 단계 이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연구내용을 구성, 진행함.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명칭을 본문 내 약칭 '융복시설'로 혼합 사용함.

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재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구의 개념 및 유관 사업 고찰. 교육돌봄 분야 정책사업 고찰

○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 현황

○ 현행 다부처 아이돌봄시설 현황 파악

○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목적 및 운영 모델 제안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 현행 법상 공간배치 제한, 복합설치 허용 및 공간설비 공유 허용에 대한 관련 규정 여부, 건축 제한사항 등 시설통합 관련 법 조항 검토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개별 법령 법규 개정(안)

- 융복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애요인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 융복시설 운영(인력-재정-안전-품질 기준) 개선 사항
 - 초기안-현행 법체계 내 개정사항, 중장기안-특별법 제정 방안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방안

- 돌봄시설 재정현황 분석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 제시

○ 돌봄특구 융복합시설의 추진 고려사항과 전략 및 운영 거버넌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관련 선행연구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 통합-복합화 운영

사례 고찰
- 운영모델 및 행·재정 요건 파악

나. 전문가회의 및 포럼 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유관분야 전문가회의 지속 및 전문가포럼 개최(2024. 11. 18)를 통한 각 계 의견 수렴
- 돌봄시설 기관장, 지역/인프라 및 관련 법/재정 전문가, 선행연구자

다. 지자체 시설 방문 면담조사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면담조사를 실시함.

라. 자문회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 아동돌봄시설 운영 현장 실무자/지자체 공무원 등 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4. 연구범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아이돌봄시설의 범위와 대상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돌봄의 다부처 시설을 주 이용아동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고, 공적지원시설로서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점을 살펴보았다.

〈표 Ⅰ-4-1〉 생애주기별 아동 돌봄서비스 일반현황(2024년 4월, 2023년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근거법	주무부처	전달체계	지원대상·인구수(명)	개소수(개소)	종사자수	이용자(명/가구)	사업비(백만원)
신생아·영아기	산후조리원 (2023년)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보건소/공공산후조리원 (20개소)	-	456	10,281 (656)	-	14,027
	공동육아나눔터 (2024, 2023년)	아이돌봄지원법	여성가족부	건가/다가센터 등	18세 이하 (7,976,210)	350 435	개소별 1~1.3인	2,620	24,670
	아이돌봄지원사업 (2024, 2023년)	아이돌봄지원법	여성가족부	건가/다가센터	만 12세 이하 (5,159,364)	227 228	활동도우미 28,071	86,100(가구)	722,996
영유아기	보육서비스(어린이집) (2024, 2023년)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만 6세 이하 (2,387,763)	28,954	302,800	1,011,813	3,853,093
	유아교육(유치원) (2023년)	유아교육법	교육부	지방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만 3-6세 (1,660,756)	8,441	55,637	521,794	3,210,631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6-36개월 미만 (707,726)	857		10,434	21,570
학령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2024.4 기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초·중고생 (4,012,706)	4,264 4,259	9,770 (4,247)	110,599	453,868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2024.4 기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시·군·구 아동권리보장원	초교생 (2,664,278)	694 1,130	4,011 (1,130)	29,174	121,023
	발달재활서비스 (2023년)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615	13,458	97,469	205,278

주: 1) 종사자수의 괄호 안() 수치는 시설장/원장 수임.
2) 보육사업 예산은 누리과정비 제외임. 보육사업비는 설치비와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어린이집/부모/교사 등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육사업 비용.
출처: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구축 연구. p.159 〈표 Ⅲ-2-1〉를 2024년 자료로 업데이트 재구성. 일부 자료는 2021년 수치임.

〈표 Ⅰ-4-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개요

구분	설치 시설	관련부처	관련법	전달체계	이용 대상				지원서비스 및 운용프로그램	운영시간	운영인력
					영아	유아	초등	부모			
공적 지원 시설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	○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서비스 - 연장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서비스 (6~36개월 미만)	- 연장보육: 월~금 16:~19:30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야간12시간보육: 19:30~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원장 - 보육교사 - 기타보육 교직원
	유치원 (공립단설)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유아교육법	지역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른 유아교육	- (교육과정) 1일 4~5시간 - (방과후 과정) 1일 8시간 이상	- 원장 - 교사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권리보장원 · 다함께돌봄사업 지원단			○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 초등학생 대상 돌봄 14~19시	- 센터장 -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	아동복지법 제52조의1	아동권리보장원	○	○	○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학기 중 : 14:00~20:00 (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아동30명이상 - 아동복지시설 의장 1명, 영양사 1명 (아동 50명 이상), 생활복지사 2명 (아동 50명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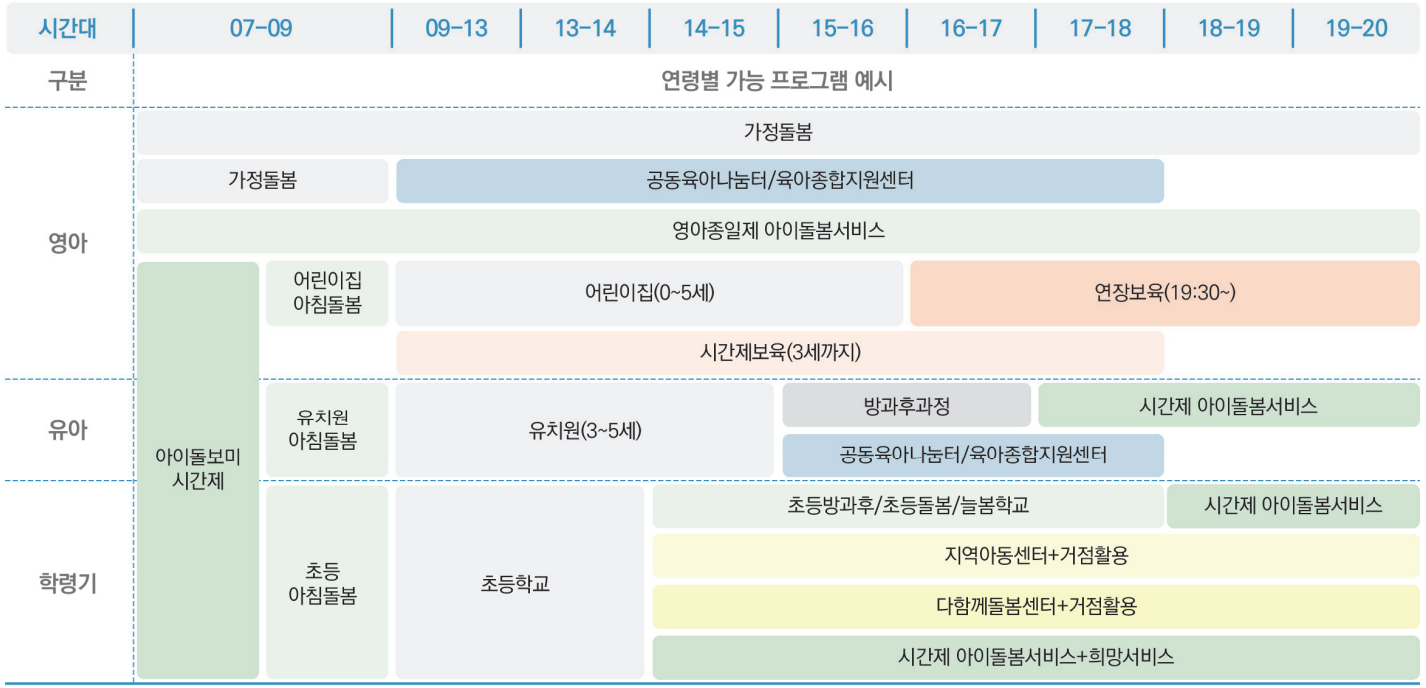
구분	설치 시설	관련부처	관련법	전달체계	이용 대상				지원서비스 및 운용프로그램	운영시간	운영인력
					영아	유아	초등	부모			
									- 기본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시 1명 추가) *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 생활복지사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	○	○		○	- 취학전 영유아 및 부모지원 - 부모교육, 장난감 도서관, 양육상담, 발달검사 등	- 운영은 각 센터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 센터장 - 보육전문 요원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기획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 시간제보육서비스 (6~36개월 미만)	- 시간제보육: 월~금 09:00~18:00(시간 단위 이용)	- 보육교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	- 가족교육/가족상담 - 아버지토요프로그램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원칙 월~금 09:00~18:00 -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주중 1일 이상 야간(09:00~21:00) 및 월 2회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4시간 이상) 운영 :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센터장 - 센터종사자 (건강가정사)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	- 부모 양육공동체 활동 공간 - 프로그램 운영/놀이 활동 지원 - 공동육아 지원	-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맞벌이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운영 권장	- 전담교사

구분	설치 시설	관련부처	관련법	전달체계	이용 대상				지원서비스 및 운용프로그램	운영시간	운영인력
					영아	유아	초등	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지원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시간 : 원칙은 월~금, 9:00~18:00이나,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없음	- 아이돌보미

출처: 권미경 외(2024).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pp. 91-93 [표 III-3-2]

기관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분절성과 칸막이로 인해, 수요자 관점에서 돌봄의 횡적·종적 연속성의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다부처 시설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 접적하여도 돌봄서비스 간의 연결과 협력은 수요자 부모의 정보 탐색과 이동수단을 통해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미경 외, 2024).

[그림 Ⅰ-4-1] 아동 연령대별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출처: 권미경 외(2024).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p. 35

Ⅱ

지역 특구 정책 및 돌봄-교육 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01 각종 특구 및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고찰

02 교육 분야 특구 설치·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고찰

03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Ⅱ. 지역 특구 정책 및 돌봄-교육 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1. 각종 특구 및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고찰

융합돌봄특구의 조성에 관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현행 특구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돌봄특구의 조성과 설치·운영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특구의 개념

특구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시설 및 기능의 집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할 수 있다. 특구 제도는 「효율적인 시설 및 기능 등의 집적을 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 규제완화,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법제도적 사항」으로 구성된다(박정은, 2022: 23).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융합돌봄특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위해 관련 돌봄 시설과 서비스 기능의 효율적인 집적과 연계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도시와 원도심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융합돌봄특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영유아와 아동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 기능이 효율적으로 집적되고 그 안에서 원활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법제도적 사항이 적용되게 된다. 이 연구는 지역의 돌봄 인프라가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돌봄에 관한 특구/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융합돌봄특구'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아동돌봄의 집적화 된 다부처 시설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한 융복합운영의 지속가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특구 제도, 그중에서도 규제자유특구 등 4대 특구와 생활SOC 등 유사특구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융합돌

봄특구의 도입과 실행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나. 4대 특구[12)]

정부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역 주도 특화발전 등의 지방시대 구현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수립과 심의·의결을 통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의 4대 특구를 도입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5).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7).

’문화특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1항). 문화특구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8).

1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 2023: 131-145) 내용을 참조함.

'교육발전특구'는 중앙과 지방 정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부터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특구이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20).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6).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기존 특구에 대한 고도화·재편 사업의 예로서 연구개발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있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9).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연구개발특구의 전신)를 시작으로 지역 내 연구소기업 설립 1천건 돌파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해 왔는데, 향후 지역의 기업과 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였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9).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 2027년까지 권역별 10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39).

상기한 특구 제도의 도입과 재편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지방 정부간의 실질적인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45). 추진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의 권한을 확대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의 수립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145). 아동돌봄에 대한 특구의 도입은 이러한 자치분권의 확대 하에서 지역주도의 특구-특례 제도 도입과 운영 추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규제자유특구[13]

1) 규제자유특구 개념 및 도입취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14].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 특구를 지정하였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5].

규제자유특구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개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연결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면, 지역특구법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정우성·송정현, 2020: 309).

규제자유특구와 비교할 수 있는 해외사례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들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특정 구역에서 신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통해 2015년에 미래기술실증 특구가, 2017년에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최해옥, 2017: 16; 정우성·송정현, 2020: 314에서 재인용).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가 국가전략특별구역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국가전략특별

13)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65 (2024.5.22. 인출)
14) 지역특구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지역특구법 제1조-목적).
15) 프레스뉴스통신(2024.7.10.) https://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065611716645264 (2024. 10. 31 인출)

구역에는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지원의 혜택을 부여하였다(정우성·송정현, 2020: 314).

국가전략특구 이전에 일본은 2002년 「구조개혁특별구조법」을 제정하여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하였다(최종권, 2014: 6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규제완화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및 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배제하였다(장철순, 2009: 45). 구조개혁특구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최종권, 2014: 61). 구조개혁특구 유형은 교육, 국제물류, 농촌활성화, 국제교류, 지역활성화, 신에너지·리사이클, 복지, 지방행정혁신, 의료, 산학연계 관련 특구가 있으며, 2008년 9월 기준 일본 전역에 1,041개의 구조개혁특구가 지정되었다(장철순, 200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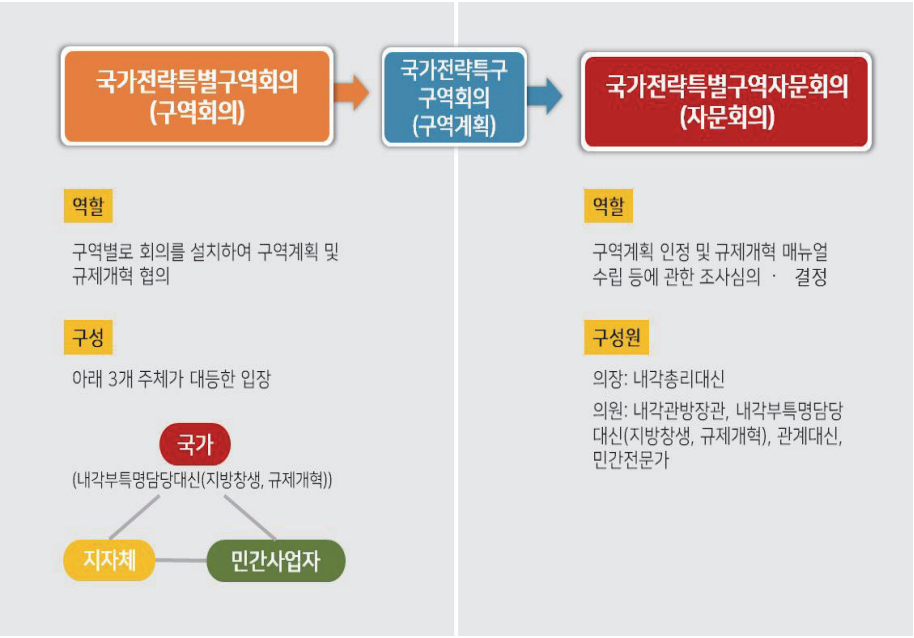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특례 조치와 연계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조치의 효과가 떨어졌으며, 구조개혁특구가 전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규제특례조치임에 따라 규제관청에서 구제특례조치의 인정에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최종권, 2014: 61-62). 국가전략특구는 구조개혁특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도로법, 여관업법, 의료법, 농지법 등의 특례조치와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개방 등의 특례가 마련되었다(최종권, 2014: 64-68). 국가전략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와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의 두 개 조직을 두었는데, 전자의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는 국가전략특구의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는 국가전략특구마다 설치되는 조직으로 운영하였다(정우성·송정현, 2020: 314). 구역회의는 국가전략특별구역 담당대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정된 특구에서 특정사업을 실시할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을 종합적으

로 실시하는 수행자로서 참여한다(정우성·송정현, 2020: 314).

'국가전략구역 자문회의'와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는 신성장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정우성·송정현, 2020: 314). 한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 주도적 요소가 강화된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지자체가 아닌 총리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체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우성·송정현, 2020: 325).

[그림 Ⅱ-1-1] 일본 국가전략특구 운영체계



출처: 1) 일본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 (2018.10.5. 접속)
2) 정우성·송정현(2020). 한일 지역특구제도 비교 – 한국 규제특구제도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p.315 재인용

2) 주요특징

우리나라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지

역혁신을 위해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사의 적용이 강화되고 대상 분야를 확대하였다(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2024.5.22. 인출).

첫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4개 지자체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특례가 발굴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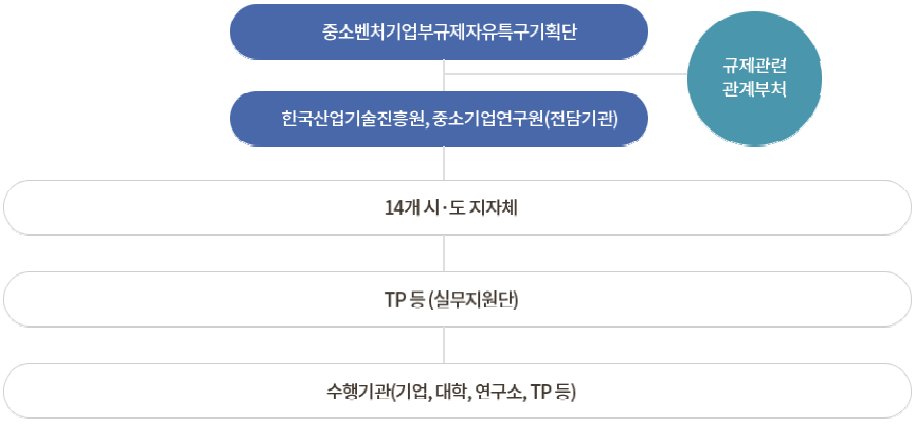
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은 특구의 지정 및 혁신사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특구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완화 조치가 획기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령의 203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3종 세트는 특구 내 기업들이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①규제 신속 확인과, 신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 시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②실증특례의 적용, 그리고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③임시허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특화특구와 비교하여 특례 적용이 대폭 확대되고(128→201개), 미적용되던 규제 샌드박스 3종이 마련되었다.

3) 추진체계

규제자유특구의 신청과 제안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가능하며, 추진 운영체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하에 특구 지원 전

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특구별 전문기관과 함께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16].

[그림 Ⅱ-1-2]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65 (2024.5.22. 인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2개 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무총리 주재)는 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과 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의 변경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라. 생활SOC

생활SOC는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특구 설치 및 운영의 유사 사례로 검토하였다. 2018년 8월 정부는 SOC 부족으로 인한 삶의 저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생활SOC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가 출범하였다. 2019년 4월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 3개년 계획(2020~2022년)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응모하는 기존의 다른 계획들과는 다르게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조진우, 2020: 182). 기존SOC 방식과 생활SOC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1〉 기존 SOC 방식과 생활 SOC 방식의 비교

	기존SOC 방식	생활SOC 방식
계획주체	중앙이 계획/지방이 응모	지역이 계획/중앙이 지원
고려요소	효율성·이용 수요	삶의 질·지역균형
공급지역	중심지역	서비스 소외지역
추진방식	부처별·시설별·단절적 추진	범정부 통합적 추진

출처: 조진우(2020).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p.183

생활SOC의 개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유웅상, 2020: 7). 이에 근거하여 종래의 SOC와 생활SOC를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유웅상, 2020:7).

[그림 Ⅱ-1-3] 종래의 SOC와 생활 SOC



출처: 유웅상(2020). 생활SOC와 학교시설 복합화-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시설환경학회지, p.7

유웅상(2020)은 학교시설 복합화와 생활SOC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도보 및 차량에 의한 접근성, 생활SOC와 학교시설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한 복합시

설의 배치 등에 관해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유웅상, 2020: 8).

〈표 Ⅱ-1-2〉 마을거점/지역거점 생활SOC와 학교

영역	마을거점/도보 15분 이내	학교	지역거점/차량 30분 이내
평생학습	(도서관) 작은 도서관/5-10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10분
사회복지	(어린이) 어린이집/5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20-30분
	(노인) 경로당·노인교실/5-10분		(공공의료) 보건소/20분
의료	(지역의료) 건강증진센터/10분		(공공체육) 경기장·체육관/15-30분
체육	(생활체육) 수영장·간이운동장/10분		(공공문화) 문화예술회관·전시관/20분
문화	(생활문화) 공방, 학습동아리/10분		(지역거점공원) 10만 제곱미터 이상/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10-15분		
교통	(공영주차장) 최소 주차장 확보율 70%		

출처: 유웅상(2020). 생활SOC와 학교시설 복합화-현황과 과제. p.8

현행 법률상 생활SOC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없고 이와 유사한 개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진우, 2020: 79).

생활SOC 정책은 2020-2022년 3개년 집행기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조진우(2020)는 생활SOC 기본법의 미비, 생활SOC 개념의 혼란, 생활SOC 관련 계획의 미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 부담 문제, 생활SOC 사업 유지운영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생활SOC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로 지적하였다.

마. 소결: 지역 특구 운영 및 시설 설치·운영의 쟁점

기존의 각종 특구제도를 비교·분석한 박정은(2022)은 특구제도의 신규도입 및 활용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으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기존 특구제도 종합 비

교·검토 과정 필요), 유사 제도 간 중복 최소화(도입 목적, 대상 등의 차별화), 부처별 특구제도의 도입보다는 단일 특구제도 내에서 다부처 협업 추진 방안의 우선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박정은, 2022: 92-93). 모성은 외(2023)은 현행 특구제도의 문제점으로 특구 관련 상위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자유롭게 특구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 특구의 유사성과 중복성, 특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역 지정을 하지 않거나 운영 성과가 없는 경우, 지원 정책 수단의 미흡, 지원정책의 차별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모성은 외, 2023: 62-66).

앞서 살펴본 4대 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생활SOC 등과 비교할 때 융합돌봄특구의 경우 영유아 및 아동 돌봄은 대표적인 대부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돌봄특구라는 단일한 제도 내에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 유사 제도 간 중복 최소화, 다부처 협업 추진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령 중 상충되는 부분의 정비와 다부처 돌봄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법 및 특별법의 제·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다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는 모두 각각의 구분된 도입목적 및 적용대상을 가지고 있다. 융합돌봄특구 역시 기존의 특구와 차별화된 도입목적 및 적용대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구의 도입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박정은, 2022: 93). 이를 통해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특구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분야 특구 설치·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고찰

가. 교육발전특구

1) 교육발전특구 개념[16)]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16)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4.2.6.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p.1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주요 정책방향 및 교육단계별 중점추진내용[17)]

교육발전특구의 정책 방향과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지역 인재 생태계의 조성이 있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개선을 지원한다. 둘째,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셋째, 지자체 지원의 확대로,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의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규제 합리화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의 마련을 지향한다.

상기한 정책 방향의 추진을 위해 다음의 3개 주요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① (유아·돌봄 분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② (초·중·고 분야)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③ 고등교육 분야 : 지역인재 유출 방지의 3개 분야이다.

첫째, 유아·돌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는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으로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의 발굴·확산을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를 통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둘째, 초·중·고 분야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지원과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으로, 우선 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17) 자료: 교육부 2023.12.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pp. 3-4.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 다음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학업, 진학, 과학기술교육,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고등교육 분야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인재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확대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한다. 지역교육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과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및 지정[18)]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운영기간 3년간 시범지역을 유형별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참여, 즉 시범지역의 신청은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Ⅱ-2-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단위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지정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준용)

○ (지정규모)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

○ (운영기간) 3년

18)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4.2.6.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pp. 4-5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여부 결정
 ※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

□ 시범지역 신청

○ (신청방법)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

※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

○ (신청내용)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 제안

※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 실시 예정

[그림 Ⅱ-2-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여 공고	교육부
지정 신청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지역협력체 구성·운영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작성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으로 지정신청	지자체와 교육청
지정 심사	□ 서면심사가 원칙, 필요 시 대면 및 현장심사 가능	교육발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시범지역 지정	□ 교육부 장관의 시범지역 지정	교육부
시범지역 운영 (3년)	□ 시범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 수립·추진 ▸교육부와 시범지역 간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 구체화	시범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발굴 및 규제 개선 제안	교육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2.6.).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개 유형 총 31건으로, 기초지자체 21곳(1유형), 광역지자체 6곳(2유형), 5개 광역-22개 기초 지자체(3유형)가 선정되어 지자체 자체 계획의 수립과 사업 발굴을 제안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Ⅱ-2-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지정 결과

유형	신청단위	신청현황	지정(안)	지자체명
1유형	기초 지자체	29건 (30개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원주, 화천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
2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	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2.6.).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4)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계획[19)]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 교육국제화특구

1) 교육국제화특구의 개념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

19)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3. 교육발전특구 질의응답. p.7

으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여 국제화 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교육특구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이해영 외, 2023: 12).

2) 교육국제화특구의 내용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9개 시도에 총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3기: 2023~2027년). 사업내용은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모성은 외, 2023: 56).

교육특구법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교육특구법 제15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교육특구법 제16조),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설치(교육특구법 제17조), 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한 출연·출자(교육특구법 제18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교육특구법 제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해영 외, 2023: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투자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은 국고와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김병주 외, 2014: 264).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근거법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교육특구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교육특구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과의 관계에 이어, 특구 지정의 절차와 지정해제, 특구종합육성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연간 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표 Ⅱ-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4.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6. 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7.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구분	내용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의 의견조정 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시계획 심의위원회)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략)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구 시·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내용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4. 6. 30 인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은 교육부장관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특구법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교육특구법 제4조1항).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교육특구법 제6조제1항).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의 의견조정, 옴부즈만의 위촉,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둔다(교육특구법 제7조제1항).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교육특구법 제8조제1항),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교육특구법 제9조제1항). 교육특구법은 초중등교육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10조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특구 안의 초중등, 고등학교는 특구 지정 지역의 교육감의 지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구 지역에서는 국제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초등중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도서)의 적용을 받지않는 학교의 지정·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어서 교육국제화 기반의 조성과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재정, 교육부 장관 권한의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차이를 보인다.

다. 학교복합시설

1) 학교복합시설의 개념[20)]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근거법령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들 수 있었다(문종덕·오형석·최병관, 2013: 24).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주도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

20)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19. 2024년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p.1

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하였다. 39개 공모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7,500억 원으로 교육부에서 3,0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하여[21]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2024년에는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 학교복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22]를 구축하였다.

2) 사업 우선 선정 대상[23]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개혁과 돌봄지원 및 사교육경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갖는다.

○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 관계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 사업
○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사업비[23]

학교복합시설 사업 예산의 구성은 〈표 Ⅱ-2-4〉와 같다.

○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30%를 지원하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

21) 427억 원(11개 사업): 국무조정실(생활SOC), 행정안전부(지방소멸기금),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등
22)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지역활력마을(타운)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023.10.16.)"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23)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19. 2024년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p.5

〈표 Ⅱ-2-4〉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안)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율	비 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 ·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사업비 10%p 가산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일괄 지원
20% ~ 40%	25%	
40% 이상	20%	

4) 학교복합시설 관련 선행연구

학교복합시설은 분류 기준에 따라 교육관련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 포함되고, 주민편의시설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용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이 포함된다(김승제·손석의, 2006: 26).

〈표 Ⅱ-2-5〉 복합화 가능시설

시설분류		복합화 가능시설
교육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구민회관 등
	운동시설	다목적체육센터, 수영장,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주민편의시설	의료시설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모·부자복지지설,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공공용시설	동사무소, 우체국, 등기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출처: 김승제·손석의(2006).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p.2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복지·생활체육·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형에 속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시설 유형별로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문종덕 외, 2013: 24).

〈표 Ⅱ-2-6〉 학교 복합화 공공시설의 세부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행정시설	행정서비스시설	주민자치센터
		치안센터
복지시설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관련시설	여성회관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문화시설	문화회관시설	문화원
		문화센터
		구민회관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도서시설	도서관
	전시관람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공공연장
	도시문화시설	공공 공원
		광장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보건시설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기타시설	평생교육시설	도서/정보센터
		문화센터

출처: 문종덕·오형석·최병관(2013).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p.25

신종봉·박준수·박창선(2014)은 이와 같은 학교복합시설 중 초등학교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복합화 계획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복합화 대상 기능을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계획을 배치계획, 조닝계획, 동선계획, 다목적성으로 구분하였다(신종봉 외, 2014: 251). 복합화 된 시설의 공간 구성에 필요한 기능과 복합화 공간 계획 요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Ⅱ-2-7〉 초등학교 복합화 계획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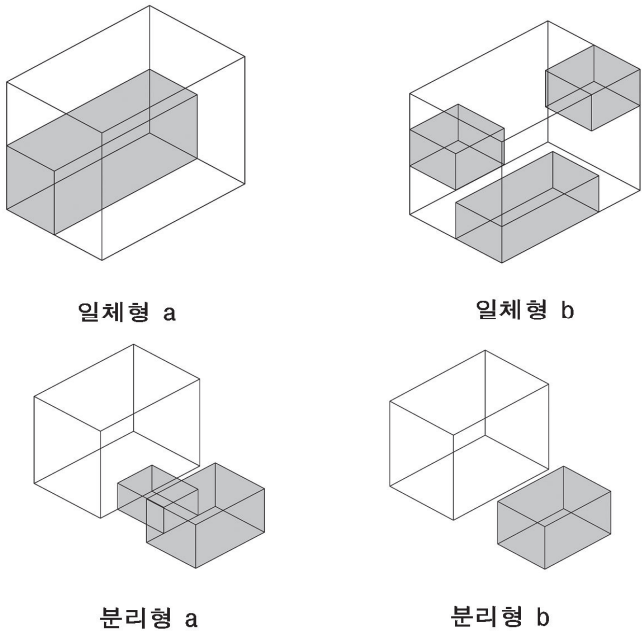
구분	항목	복합화 조건
복합화 대상 기능	교육적 측면	-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 - 교육환경 저해하는 시설 금지
	사회적 측면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경제적 측면	-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과 민간부분의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구분	항목	복합화 조건
물리적 계획	배치 계획	- 복합시설의 배치는 인지성이 뛰어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조닝 계획	-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복합 시설의 관리가 원활하도록 공간 구성
	동선 계획	- 주민들의 시설이용이 편리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 혼잡 방지
	다목적성	- 시설의 모듈화 - 다목적 다기능 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

출처: 신종봉·박준수·박창선(2014). 교육시설 복합화 실태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p.251

또한 학교복합시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학교복합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김진모(2007)는 학교복합시설의 공간배치 유형을 고령자 복지지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일체형은 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이고, 분리형은 같은 부지 내에 병설되는 경우를 말한다. 연결통로가 있고 없음에 따라 분리형 a와 b로 구분하였다(김진모, 200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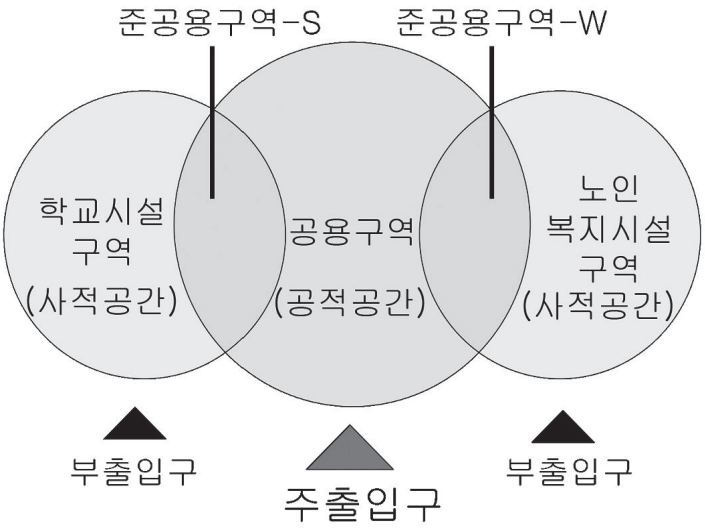
[그림 Ⅱ-2-2] 복합시설의 분류



출처: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p.29

가운데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구역과 노인복지시설 구역을 분리하는 공간구성의 다이어그램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김진모, 200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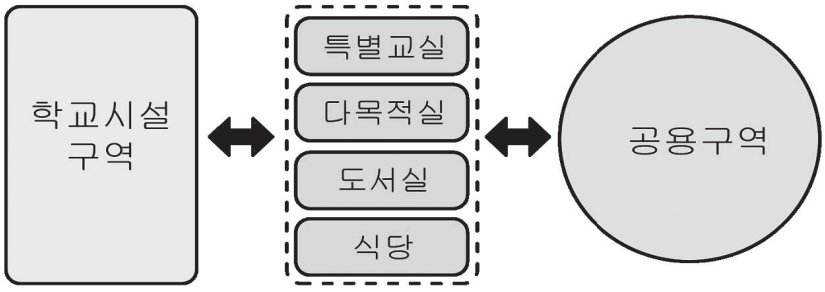
[그림 Ⅱ-2-3]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출처: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복지시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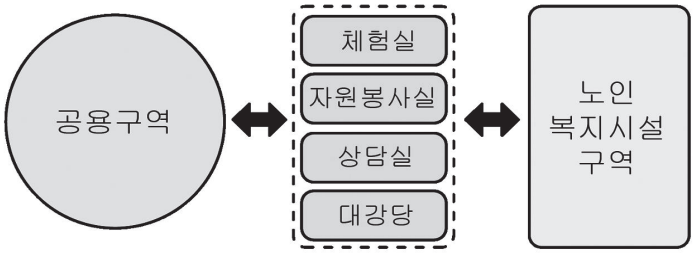
여기서 준공용구역 S는 학교시설과 공용시설의 교집합 공간이고, 준공용구역 W는 노인복지시설과 공용구역의 교집합 공간을 가리킨다(김진모, 2007: 32).

[그림 Ⅱ-2-4] 준공용구역-S



출처: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복지시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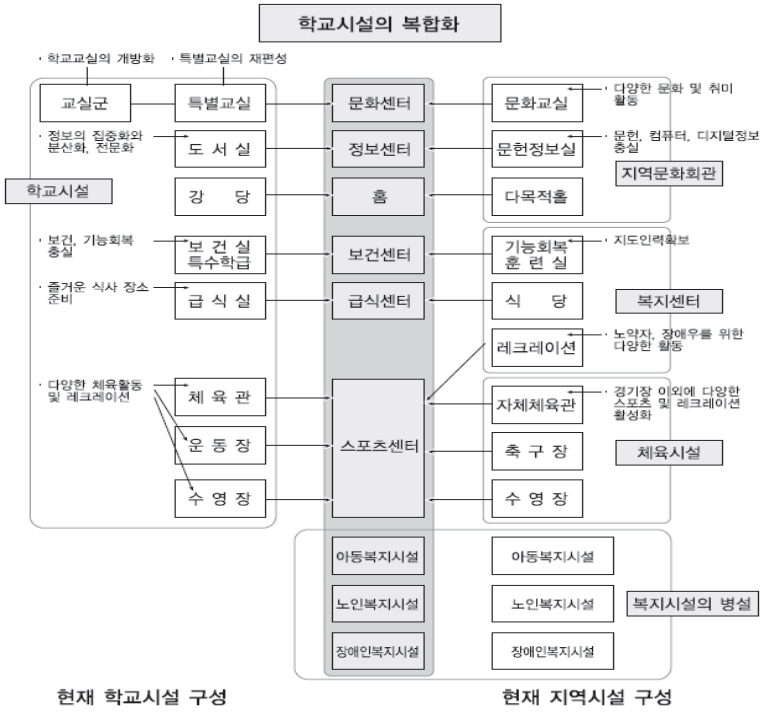
[그림 Ⅱ-2-5] 준공용구역-W



출처: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복지지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3), 27-35. p.34

오형석(2015)은 학교시설 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학교시설, 지역문화회관, 복지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병설로 구성되는 다음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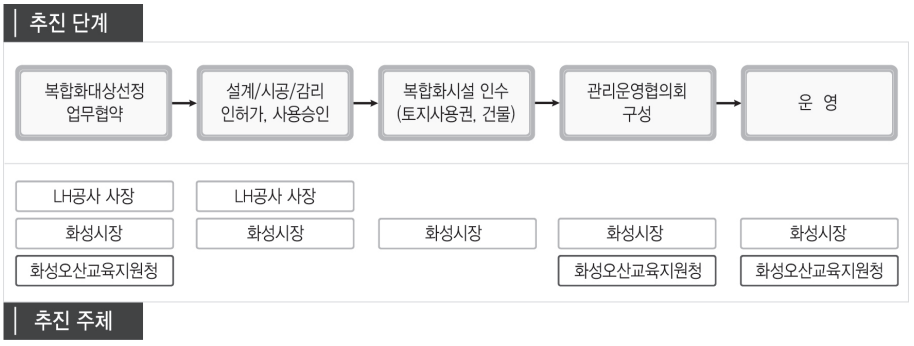
[그림 Ⅱ-2-6] 학교시설 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출처: 1) 최병관, 2006, 학교시설 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시설학회
2) 오형석(2015).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소고 p.26에서 재인용

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례로 이용일(2015)은 화성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업시행과 관련한 업무역할에서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전제하고 LH의 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닌 화성시의 재정으로 자체 발주하며, LH는 근린공원내 지역주민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이용일, 2015: 23). 황성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사업시행조건에 명시하였고, 복합화 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함과 동시에 화성시 평생교육과 내 학습시설복합화팀을 신설하였다(이용일, 2015: 23).

[그림 Ⅱ-2-7] 동탄2학교복합화 시설 추진단계 및 주체



출처: 이용일(2015). 경기도 광교, 동탄2신도시의 학교복합화시설 비교. p.23

라. 소결: 융합돌봄특구 관련 현행 특구 제도 고찰의 시사점

1) 특구 제도 고찰

〈표 Ⅱ-2-8〉은 주요 특구와 유사사업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모두 특별한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역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 추진방식은 다르지만 국가와 지방의 담당책무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책은 시행 중이나 근거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특구는 교육부 정책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 및 광역단체장이 공동으로 대상지역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49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정책사업이 시행 중이다. 수도권 지역은 신청 및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 특구의 운영특징은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이후에 해당 지자체의 맞춤형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지역을 운영 후 정식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계획과는 별개로 그 이전 단계에 수행되는 일들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핵심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과 자율적 결정에 있다. 그러나 협업의 근거가 되고 재원마련의 토대가 될 근거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점이 정책 확장성의 한계로 판단된다.

생활 SOC 정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다만 당시 선정되어 시행되었던 사업은 지금도 운영 중이다. 생활 SOC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관련시설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안서 및 우수사례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전국에 파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했다.

〈표 Ⅱ-2-8〉 국내 특구 및 유사사업

[2023. 12월 말 기준]

구 분	교육발전특구	생활 SOC	도심융합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근거법률	없음[24)] (2023. 12월 시행)	없음[25)] (2018. 11월 시행)	도심융합특구법 (2024. 4. 25. 시행)	지역특구법 (2019. 4. 17.시행)
소관부처	교육부	국무조종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방식	선정 (시범지역)	선정 (사업대상)	지정고시 (위치, 면적 등)	지정고시 (위치, 면적 등)
신청자	기초·광역단체장(공동)	국민 누구나	시·도지사 등	시·군·구청장
지정자	장관	총리	장관	장관
담당책무	지역주도, 중앙·지방지원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사업시행자 부담)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설치효과	• 지역자율 교육정책 시행 • 규제완화 및 특례 제공	• 지역 우수사례 파급 • 지역균형발전 지원	•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 • 문화·교육·복지 복합화	• 특구 내 맞춤형 규제완화 • 지역성장 지원
설치지역	49 (기초단체)	전국 단위	5 (광역시)	181개

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2013). 보도자료; 2023 지역특화특구 성과 공유회 및 혁신토론회개최. p. 1-2.
2. 국무조정실(2021). 보도자료: 생활 SOC 주요성과. p. 1-5.
3. 국토교통부(2021). 보도자료: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p. 1-5.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타법개정] 각 조.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6호, 2024. 2. 6., 일부개정] 각 조.

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교육부 지침, 2023. 12)이 근거가 됨.
25)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령, 2018. 11)이 근거가 됨.

생활 SOC 정책도 교육발전특구와 마찬가지로 근거 법률은 없다. 다만 총리령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이다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동 정책은 근거 법률의 미비, 생활 SOC 개념의 혼란 등으로 정책의 한계를 겪고 한시적으로 운영 후 마무리되었다.

도심융합특구는 2024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동 정책은 지방의 도심에도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해당 공간에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5대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거법은 「‘도심융합특구법」이며 특구는 시도지사 등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은 명확하나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점이 여타 특구와 다른 점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규제특구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특구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여타 특구와 정책운영상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특화사업에 따라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법제도적 기반의 필요성

교육 및 돌봄 분야 특구 및 관련사업 중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돌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다른 특구인 교육발전특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방발전에 관한 기존의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새로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

였으나, 교육발전특구는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11.3. 교육발전특구 질의응답. p.7).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교육부 2023.12.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p.8),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교육부 보도자료 2023.11.3. 교육발전특구 질의응답. p.4)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의 협업을 지원할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언급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수행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융합돌봄특구 사업의 진행에도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모델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이와 달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박정은(2022)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는 특구제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거법 마련 없이 추진되는 특구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른 한시적 사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박정은, 2022: 23).

이와 관련하여 이해영 외(2023)은 교육특구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 주체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교육사업 목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된다고 제시하였다(이해영 외, 2023: 60).

앞에서 살펴본 생활SOC 사업도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는 유사 특구제도로 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종료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기존 법령의 정비 및 특별법 제정이 특구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해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교육특구 사례인 영국의 교육활성화특구(Education Action Zone, EAZs)와 프랑스의 교육투자우선특구(Zones d'education priorities, ZEPs)는 취약계층 및 교육소외지역의 학교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원공유, 공동계획 수립, 교사 교육훈련,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지방정부-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이해영 외, 2023: 98-99). 국내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일본의 구조개혁특구가 성과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분담하는 구조)과 지원체계의 마련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3) 현행 특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의 필요성

정부는 지방분권의 자치 실현을 목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 주도 특화발전을 위한 4대 특구 사업의 추진을 명시하였다. 다양한 특구정책의 추진 과정에 지역의 특구 지정과 설치·운영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담보되도록 하는 설계와 기반의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4대특구를 중심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고령화 관련하여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지역 산업기반의 조성, 교육기반과 정주여건의 마련, 문화적 토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 저출생의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필수인프라 아동돌봄에 대한 특구 및 특례 추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학교복합화시설의 추진에 방과후돌봄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다부처사업으로서의 실제 운영상의 분절적 어려움을 안고있는 아동돌봄 전반에 대한 정주여건으로서의 중요성을 담은 정책 설계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2장 3절의 고찰을 통해 살펴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복합화 된 형태로 아동통합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특구사업으로서의 추진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의 정주여건과 교육,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청년세대의 유입과 가구의 구

성,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녀 양육과 아동의 성장발달로 이루어지는 돌봄환경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지역 특구의 추진에 아동돌봄 환경의 구축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특구 정책의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대로 개별 특구의 고유한 설계와 차별성을 필요로 한다. 아동돌봄의 특구는 아동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의 분절성과 다부처사업으로서의 법제도상의 칸막이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과 유관 돌봄시설간 연계협력이 구현되지 않는 비효율의 쟁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구제도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점진적인 적용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행 방안으로서 아동돌봄시설에 맞는 특구 제도의 신규 도입 또는 현행 특구사업의 추진에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의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선택으로 추진 가능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부처 돌봄시설간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제한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구 제도의 특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돌봄특구의 운영모델과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3장에서 이루어진다.

3.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26)]

□ 국내·외 사례 요약

사례지역	개요 및 특징	시사점
경상북도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조성 - K보듬 6000 프로젝트	- 경북도청에 저출생과전쟁본부 전담조직 설치 및 행정돌봄센터의 돌봄전담인력 배치 - 신도심형, 구도심형, 인구감소지역형 등 3개 시범지구 유형을 추진 - 도비 자체예산 50억으로 통합돌봄센터 건립 우선 추진 및 테스트베드 규제완화와 특례적용, 중앙정부 사업 공모와 연계, 예산 지원을 요청	- 지역 주도의 자체 운영모델의 발굴과 적용 - 지역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하의 시범지구 우선 실행을 통한 상향식 추진. 규제완화와 특례발굴의 적극적 노력 이행
증평군 '행복돌봄터', '증평군 가족센터'	- '행복돌봄과'(돌봄정책,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아동친화) 설치 여가부, 복지부 등 부처간 칸막이가 있는 지원 사업을 하나의 과에서 지원 가능 - 증평군청 1층에 돌봄 공간 '행복돌봄터' 조성 - 복합건물인 '증평군 가족센터'에 돌봄 및 건강지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 서로 다른 부처의 사업을 병렬 통합 운영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기존 지역에서의 돌봄 및 양육 지원 개선 - 소규모 지자체의 행정지원 통합으로 부처 및 업무 지원에의 효율성 증진
포천시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	- 인구 정책 중심 행정조직 개편. 인구 성장국 신설 돌봄과 양육지원을 위한 명칭 '애지중지팀'(양육과 유아교육 업무 동시지원) - 정기적 사회조사 통한 주민의견 수렴 - 폐원어린이집 활용 24시간 365일 거점형 돌봄공간 마련 -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2026년 개원 예정)	- 기존 지역의 돌봄 및 양육여건 개선 - 인구정책 중심 지자체 행정조직 통합 - 거점형 돌봄 공간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 울산형 책임돌봄 정책 추진 - 폐원 직장어린이집 매입,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거점 돌봄기관 설립 2024년 7월부터 운영(0~12세 365일, 24시간 돌봄 제공)	- 지역특화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통합 돌봄지원 - 민관 협업의 가능성

26) 국내 돌봄시설은 연구진의 현장방문과 면담 및 지자체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함.

사례지역	개요 및 특징	시사점
충남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 내포신도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곳에 설치 - 안내데스크, 꿈나무 놀이터, 카페, 어울림전시실, 도란도란 꿈동산, 오감체험실, 홍성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창의센터, 어울림식당, 어울림책방, 상상누리, 청소년카페 파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활동실, 가상현실(VR) 체험실	- 신규 택지 조성 시 돌봄 융합 - 가족단위 돌봄 정책 - 홍성군 직영으로 운영 -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층 구별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주민생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종합센터 내에 양육지원을 추가한 형태 - 도시재생 지원센터, 아이사랑꿈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헬스장, 어린이 도서관, 공유주방, 공유공방 등 운영	- 시설장들 협업을 통한 시너지 - 돌봄대상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적용 가능
인천광역시 '동구 꿈드림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 영유아와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돌봄과 양육지원 시설의 복합건물화 - 층별 독립적으로 동구청 내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병렬운영 - 어린이 영어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지원센터, 카페 등 설치	- 구도심 재생을 돌봄기능 지원으로 대응한 사례 - 복합건물 내 병렬 설차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아이돌봄센터'	- 4개 서비스: 아픈아이돌봄센터, 아이휴센터(초등돌봄), 공동육아방, 아동식당 - '아이휴센터' 노원구 특화 초등돌봄 지원 사업 - 아픈아이돌봄센터(48개월~초등) 운영-임기제공무원 간호사 센터장으로 근무	- 예산 구에서 직접 받아서 운영(3개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위탁운영 - 병원과 연계: 아픈아이에 대한 돌봄공백 지원 - 구청 공무원의 콘트롤타워 역할
의정부시 고산 '아이돌봄통합시설'	- 신규택지 조성 시 돌봄 중심 통합지원 - LH의 기부채납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	- 3기 신도시 등 향후 조성되는 신규택지에 적용가능한 모형
일본 나기초 마을	-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면적 정책 실행과 효과 -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 건축 및 운영	-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서 지자체 수준의 대응
일본 미드타운 '야에스'	- 도심에 설치 가능한 돌봄 공간 - 거주, 직장,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융합 공간	- 복합화 건물을 통합 융합돌봄제공 - 특구 형식의 규제개선/특례적용으로 가능
독일 패밀리센터/마더센터	- 지역공동체가 꾸려가는 공동육아 공간, 세대결합 공간 - 시와 자선단체 후원으로 운영 - 돌봄 공간, 보호자 공간, 공용거실, 식당, 게스트룸, 체육시설, 복합공간	- 돌봄 공간 중심의 가족지원 확장 - 거점 어린이집의 가족센터 기능/역할 수행
독일 다세대센터	-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 지역사회로 확장된 가족 -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쉽게 만나서 함께 쉴 수 있는 집	- 향후 돌봄 개념의 확장

돌봄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융합화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돌봄 서비스의 통합화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나 인구 유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막론하고 최근의 일관된 추세로 보인다.

가. 경상북도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조성

1) 사업개요

경상북도의 인구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아동 돌봄과 교육,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출생 대책 사업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시범지구를 특정 지역과 장소에 적용, 3개 특구모델(신도시형, 구도심형, 인구감소지역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도심형: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우선 신도심형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 지방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돌봄시설이 집적된 형태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병원, 학원 등의 민간시설과 학교복합시설 등의 유관시설과의 집적을 고려한 규제 일괄 해소와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정책실험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추진 성과를 확인 후 확산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신도시 특구 사업에는 K보듬 6000(6000: 7시-24시까지 365일, 6000시간 돌봄제공 육아천국), 아이사랑 돌봄버스, 영유아 창의문화센터, 돌봄도서관, 아이동반근무 사무실(정기-일시돌봄), 육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주거단지 돌봄시설 설치 시 인허가기간 단축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구도심형: 돌봄스테이션, 돌봄 특화 행정·돌봄⁺센터

구도심형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 SOC를 활용하여 산재해 있는 기존 돌봄·교육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사업이다. 돌봄의 앵커 기지로서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돌봄⁺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돌봄 스테이션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센터 내 돌봄 팀의 신설과 인력을 배치하는 조직 보강을 하였으며, 구도심형의 특화기능으로 지역 돌봄공동체의 활성화, 원스톱 돌봄서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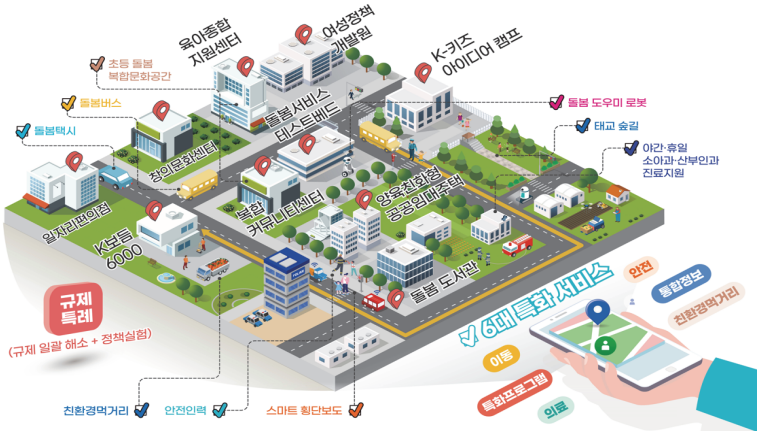
다) 인구감소지역형: 어린이 통합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첫째, 인구감소지역에 협력 '거점형 어린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동일권역의 시·군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센터의 구축으로 산재해 있는 수요를 해결하고, 건립 후 운영비 부담을 저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 지방 산업단지에 근로친화형 돌봄 중점시설로 산업단지 돌봄 중점형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계획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상생형 어린이집, 근로자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편의시설, 긴급 돌봄 중점 센터, 교육지원센터 등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2) 특징 및 시사점

경상북도의 인구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도청 조직에 저출생과전쟁본부의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며, 행정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추진과 함께 지역의 인구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도비 자체 예산을 통해 아동통합돌봄시설의 집적된 공간과 관련 유관사업을 우선 실행하고, 향후 중앙부처 사업 공모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지역주도의 운영모델의 추진을 보여준다. 경북도의 시범지구 운영을 위하여 돌봄시설의 규제개선과 특례의 적용,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돌봄수요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Ⅱ-3-1]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운영 계획



출처: 경북도청 저출생과전쟁본부 자료

나. 증평군 '행복돌봄터', '증평군 가족센터'

1) 사업개요

증평군에서의 돌봄 강화 사업은 군청 1층에 돌봄공간을 마련한 것과 증평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돌봄, 상담까지를 포함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행복돌봄터

증평군은 증평형 돌봄나눔터사업으로 조성한 행복돌봄터 1호를 청사 내 1층에 설치하였다. 기존에 홍보관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영유아, 아동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였다.

나) 증평군 가족센터

증평군 가족센터는 하나의 건물 안에 가족센터,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 공용 회의실과 취미실 등이 설치되어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가족센터 안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함께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 특징

가) 인구 및 지역특성

증평군은 인구 37,000명 규모의 군이지만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영유아 부모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도 특징이다.

나) 행정 지원

증평군은 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돌봄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로 통합하였다. 증평군 '행복돌봄과'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돌봄정책 전체

를 주관한다. 과 내에 노인복지팀, 여성청소년팀, 아동친화팀을 조직하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부서의 통합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있을 수 있는 돌봄사업을 운영함에 상생적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3) 시사점

증평군의 사례는 신규 택지 조성이 아닌 기존 지역에서 돌봄의 융합을 통해 어떻게 돌봄 및 양육 지원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증평군은 행정조직 통합을 통해 업무 지원에의 효율성 증진하고 돌봄의 융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군청 1층에 돌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아동 돌봄의 기능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군의 정책이 돌봄에 주력함을 알리고 관심을 모으는 간접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림 Ⅱ-3-2] 증평군 '행복돌봄터', '증평군 가족센터'



구성: 군청 1층 행복돌봄터 1호/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장난감도서관
출처: 연합뉴스(2023. 10. 25).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추진 '행복돌봄터 1호' 조성(https://www.yna.co.kr/view/RPR20231025010800353. 2024. 9. 18 인출)

다. 포천시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

1) 사업개요

포천시는 최근 10년간 1만 명 넘게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인구정책에 초점을 둔 정책추진을 위해 2024년 7월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대규모 신규택지들이 공급되는 인근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양육 지원사업의 추진이 활발하다.

가) 인구정책 중심 조직개편

포천시는 감소하는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성장국'을 신설하였다. 인구성장국 하위 조직으로는 '기획예산과'와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를 배치하였고, 돌봄 양육지원 위한 '애지중지팀'을 두어 양육과 유아교육업무를 동시 지원한다. 이는 유보통합이라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 양육 및 돌봄지원

시내 도서관 1층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놀이공간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양육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포천시 내 7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품앗이 및 가족 활동을 지원하는 온마을 육아일지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센터와 협업해 육아 품앗이 소모임을 구성하면 활동을 지원한다.

다) 거점형 돌봄-교육-여가 공간조성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거점형 돌봄 공간을 조성하였다. 포천 애봄 365사업은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공간, 평생학습관, 북 스테이션, 어린이식당, 다목적홀 등 돌봄-교육-여가 복합 교육 문화공간을 조성한다(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

2) 특징

가) 인구 및 지역특성

포천시 인구는 142,000명 정도이며 이중 영유아 인구수는 3,200명이다. 포천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양육인프라가 인근 도시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은 교육을 이유로 포천시를 떠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보육, 양육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다면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포천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나) 행정 지원

포천시는 영유아와 아동 교육복지를 아우르는 보육, 교육, 초등학교 내 늘봄 전담팀으로 인구성장국 교육정책과 내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귀하게 키우자는 뜻을 담아 애지중지(愛之重之)팀으로 명명하였다.

3) 시사점

포천시의 사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융합 사업의 역할을 기대하게한다. 양육과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에서 행정조직의 개편, 자생적인 돌봄인프라의 구축과 지원, 거점형 돌봄공간의 조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사례이다. 특히 돌봄융합 공간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Ⅱ-3-3] 포천시 돌봄 관련 사업



구성: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형 초등돌봄시설/ 포천시 에듀케어 플랫폼·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2025년 준공예정)/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2026년 준공예정)
출처: 포천시 제공자료

라. 울산광역시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또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의 수가 줄고 있다. 울산시는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돌봄공백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형 책임돌봄' 정책을 표명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가)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

울산광역시는 돌봄의 유형과 선택권을 확대하며, 누구나 희망하면 24시간 돌봄 제공을 담은 '울산형 책임돌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시립 아이돌봄센터의 설립과 초등학생의 지역돌봄 강화를 주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거점시설의 설치, 토요일 운영시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긴급돌봄 기능강화, 돌봄품앗이 지원, 농번기 및 주말 돌봄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나) 양육 및 돌봄지원

울산광역시는 양육과 돌봄지원에 관심을 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초지자체마다 설치하였다. 중앙에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5개 군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양육기 부모 지원을 하고 있다.

다)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거점형 돌봄공간 조성

울산광역시는 울산형 책임돌봄의 일환으로 폐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아동(0세~12세)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거점형 돌봄 공간인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호 센터를 2024년 7월 개원하였다.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는 정원이 50명 규모이며, 12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시간제 돌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비용은 주야간 구분없이 시간당 2,000원이며, 한번 이용 시 4시간까지, 1개월에 4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는 발달이 다른 영유아와 초등학생까지의 돌봄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층별 구분을 두어 공간을 분리하였다. 센터에서는 돌

봄서비스 뿐 아니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안내 및 연결하는 기능도 한다.

2) 특징

가) 운영지원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으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법인위탁으로 운영한다. 돌봄 융합 시 운영체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는 지자체 관할 위탁 운영체를 두는 방안을 보여준다.

나) 민관 협업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 1호점은 삼성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시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경우이다. 소재지가 중심부로 매입이 어려웠으나 시의 필요에 기업이 동의하고 용지 및 건물에 대한 비용을 적정선으로 매도하였다.

3) 시사점

울산광역시의 사례는 시간제 돌봄으로 긴급하거나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연령별 돌봄 융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돌봄지원 중요성에 동의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돌봄 융합 사업화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3-4] 울산광역시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구성: 센터 입구 전경/ 유아용 돌봄 공간/ 초등학생용 돌봄공간/ 여학생용 야간돌봄공간
출처: 연구진 출장 촬영

마. 홍성군 '홍성가족어울림센터'

1) 사업개요

홍성군은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등이 위치하여 있다. 인구는 98,500명(2024년 7월 기준) 정도이며, 내포신도시 인근으로 최근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이 유입이 증가하여 돌봄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신규 택지조성단지 내에 영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융합 공간인 '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 2022년 11월 개원하였다.

가) 설치 과정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2018년부터 준비를 진행하여 여성가족부 지원(50억), 도비(25억), 군비(124억) 등을 종합하여, 홍성군 소유 부지에 설치하였으며, 주민이름 공모전에서 당선된 '가족어울림센터'로 명명하였다.

나) 설치 시설

가족어울림센터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과 놀이공간, 창의성센터, 아동식당(위탁업체), 가족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VR 활동 공간, 아동청소년카페, 부모를 위한 카페 등 전형적인 돌봄 융합 공간의 특징을 지닌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되어 있다. 센터 내 대형강의장은 옆 건물인 노인센터와 협력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특징

가) 운영지원

돌봄 융합공간인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이다. 지자체인 홍성군청에 '가족행복과' 내에 '가족어울림팀', 운영전담팀을 두어 운영 조율하되, 창의센터(아동친화팀)와 청소년 관련시설(교육체육과)은 별도로 운영하며, 년간 운영예산은 8억 정도이며 전액 군비로 운영한다.

나) 돌봄수요 밀집 지역에 위치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1,200명 규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접하여 돌봄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초등 돌봄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센터 내 초등돌봄인 다함께돌봄센터는 100명 정원으로 이용희망 아동이 많아 추첨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하교 후 가족센터로 와서 놀이공간이나 도서관, 카페에서 무료 음료도 받고, 식당도 이용 가능하며, 쉬다가 학원으로 가기도 한다.

다) 가족단위 수요자 맞춤형 운영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자녀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요구ㄹ르 반영하여 키즈카페, 도서관, 식당 등을 가족이 함께 이용하도록 주말에도 운영한다. 부모와 자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의 구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운영시간 등은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다.

3) 시사점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설치운영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자체 직영으로 전담팀을 두어 돌봄융합 공간을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센터는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층별로 분리함으로써 안전과 이용효율성을 높인 사례이다. 특히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층마다 배치하였다.

[그림 Ⅱ-3-5] 홍성군 ‘홍성가족어울림센터’



구성: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생용 놀이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공용식당
출처: 연구진 출장 촬영

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1) 사업개요

계양구 효성동은 남동공단의 근로자들이 살던 지역으로 소규모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지역이다. 남동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의 이전이 잇따르면서 효성동이 퇴락하여 가고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가 2023년 11월 개관되었다.

가) 설치 과정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공동체성 회복, 주거복지시설 제공,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이다. 구성은 국토교통부 국비 예산 50%, 시비 25%, 구비 25%이다.

나) 설치 시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헬스장, 공용부엌, 작업 공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소, 강의실, 카페, 다목적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돌봄을 중심으로 융합된 시설이라기 보다는 마을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센터 안에 양육지원의 기능을 넣은 형태이나 품앗이 형태의 돌봄 일자리의 창출은 가능하다.

2) 특징

가) 운영지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운영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센터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양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아이사랑꿈터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교육 등을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도시재생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헬스장, 공용부엌, 작업 공방, 카페 등의 대관과 운영을 담당한다.

나) 양육 지원 인프라 부족지역

효성동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고, 원도심의 공통적인 문제인 양육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영유아 양육 가구도 있어 돌봄과 양육 지원에의 요구가 있다. 이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과 놀이형 체험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두었고,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한다.

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운영 주체들이 병렬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지만 홈페이지를 공유하고, 4개월에 한번 전체 기관 대표들의 정례회의를 하며, 협력도 활발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달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하면, 센터 내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한다.

3) 시사점

융합이 아닌 병렬 운영이지만 설치시설장들의 정례회의를 통해 실무진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돌봄 융합화 시설의 운영이 초기에는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마을 사회협동조합이 운영에 기능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 마을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며 돌봄의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마을 품앗이 돌봄 가능성도 지닌다.

[그림 Ⅱ-3-6] 계양구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구성: 센터 전경/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공용 부엌
출처: 연구진 출장 촬영

사. 인천광역시 동구 '꿈드림센터'

1) 사업개요

동구는 오랜 구도심 지역으로 여전히 고령인구도 많지만 최근 신규 주거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돌봄지원 요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이에 영유아의 돌봄, 양육지원, 초등돌봄과 영어도서관 등 돌봄융합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구는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뉴딜정책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거쳐 '꿈드림센터'를 건립하고 2024년 8월 개관하였다.

가) 설치 과정

동구 '꿈드림센터'의 건립에는 국토교통부 국비 도시재생사업 예산 86억, 생활SOC 복합화 사업 56억, 구비 38억이 소요되었다. 초기에는 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하려하였으나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인구 증가라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돌봄 융합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나) 설치 시설

동구 '꿈드림센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카페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이 변화에 대응하여 영유아 양육지원, 초등돌봄관련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통합 설치한 사례이다.

2) 특징

가) 운영 지원

동구 '꿈드림센터'의 운영은 완전한 독립형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다. 물리적으로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대체로 동구청 담당과를 중심으로 하되 홍보문화실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1층 카페는 도시정비과,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는 여성보육과, 다함께돌봄시설은 아

동청소년과, 건강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규모 체육관은 관광체육과에서 각각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나) 양육 지원 수요 증가지역

동구는 대규모 택지들이 조성되면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동구 '꿈드림센터' 내 설치 기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센터 한 곳에서 필요한 돌봄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는다는 강점이 있고, 알지 못하던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알게 되기도 한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에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꿈드림센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편리하다.

3) 시사점

인천 동구는 주민들이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과 양육 지원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예상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서비스의 통합과 융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쉽게 첫 삽을 뜨며 돌봄 융합을 접근하는 방안은 독립적인 병렬설치 일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림 Ⅱ-3-7] 인천광역시 동구 '꿈드림센터'



구성: 기관 전경/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꿈터/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출처: 연구진 출장 촬영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아이돌봄센터'

1) 사업개요

노원구는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키운센터)를 중심으로 '아이휴센터'로 브랜드화 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 돌봄 사각지대인 초등 방과후돌봄을 위해 4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 2024년말 기준 29개를 개소하였다. 2020년 10월 노원형 돌봄을 표방하면서 한 지붕 네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원 아이돌봄센터'가 개원하였으며, 유사 돌봄시설이나 각기 고유한 공간 구성과 운영 특성을 가진 '하계융합형어울림센터'와 '중계온마을센터' 등이 있다.

가) 설치 시설[27]

노원 아이돌봄센터에는 아동식당(지하), 공동육아방(1층), 아이휴센터(2층), 아픈아이돌봄센터(3층)이 구성되어 있다. 아동식당은 센터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이용 가능하며, 결식아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학 중에도 이용 가능하다. 공동육아방은 유모차와 영유아의 이동을 고려하여 1층에 배치하고, 신체놀이실과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다. 건물 외부에는 공연 가능한 야외무대와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시설 공간을 조성하였다. 2층에는 초등 방과후돌봄 모델을 표방하는 아이휴센터 23호점이 있어, 독서와 예체능 활동, 소규모 교육이 가능한 2개 활동실과 놀이공간 거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 40명에 6명의 운영인력 배치를 통해 학기 중 방과 후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노원구 직영 시설로, 맞벌이 등으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 병상을 갖춘 간병실과 보호자 대기 및 아동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사무실, 화장실(남·녀)로 이루어져 있다. 전담인력인 간호사 1명과 환아 돌봄사 4명이 상주하면서 아이 상태에 맞는 간병 돌봄을 제공한다. 노원구는 2019년부터 시작한 아픈아이 병원 동행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

27) 연구진 현장방문 면담 및 산동일보 기사(2020.10.26.)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80 (2024. 11. 31 인출)

로, 보호자 신청 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전담인력이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병원진료부터 간병까지 제공하는 노원형 원스톱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아이돌봄센터에는 돌봄인력과 간호사 외에,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있다.

2) 특징

가) 운영 기반 및 지원

노원구 아이돌봄 정책은 온종일돌봄지원 조례에 근거한다. 노원아이돌봄센터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며, 담당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와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3개과로 구분되어 있다.

도담도담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월령 48개월부터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48개월 이전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다. 아픈아이돌봄센터의 경우 누적이용 현황으로 병원동행 5천건이상, 병상돌봄 100건이상이 보고된다. 인력 배치는 2023년부터 구청 공무원의 센터장 역임과 간호사 임기제공무원 역임으로 구청과의 소통 및 운영이 원활해졌다. 아이돌봄센터는 인근의 청소년센터와 MOU를 맺어 이용아동이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한편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노원구에 있는 29개 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의 방학기간 이용 아동의 수요 및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노원구 아이돌봄시설은 구 직영 및 위탁체 운영을 통해 복합화 된 형태로 진행되는 다수의 사례를 갖고 있다. 구청 공무원이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월/주 단위 회의를 통해 복합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원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센터와도 이용 아동 간 상호 교류가 가능하며 아픈아이돌봄의 경우 가정과 센터, 병원 간 연계가 이루어진다. 중계온마을센터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아동돌봄을 넘어선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따라 구청의 담당부서가 3개과 등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아이돌봄시설 내 공유공간의 활용과 연계는 과제로 남아있다.

[그림 Ⅱ-3-8] 서울시 노원구 '노원아이돌봄센터'



구성: 지하 아동식당/ 1층 공동육아방/ 2층 아이휴센터(초등돌봄)/ 3층 아픈아이돌봄센터
출처: 산경일보 기사(2020.10.26.)

자. 의정부시 고산지구 내 '아이돌봄통합거점'

1) 사업개요

정부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통합화 융합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아동 부모의 돌봄-교육에 대한 요구 다양화, 비정형적 일자리 증가와 긴급/일시돌봄의 증가 등 맞춤형 지원을 희망한다.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정책 집행과 제도설계 및 행 재정 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서비스 통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변화된 돌봄환경과 시대상황 및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서비스 통합화에의 요구가 높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통합화 요구를 신규 주거환경을 조성 시점부터 반영하고자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이돌봄통합거점'이 계획되었다.

가) 설치 과정

의정부 고산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및 산곡동

일원에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이다. 공사가 택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돌봄지원의 통합화 모형인 '아이돌봄통합거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조성 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용지를 구분하고 건물을 지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설치된다. 2024년 10월 설계가 확정되었고 시공하여 2026년 개관할 예정이다.

나) 설치 시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 연구(권미경 외, 2024)를 통해 제안한 '아이돌봄통합거점' 도입시설은 기본시설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시설을 제시하였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유치원, 실내놀이터, 야외놀이터, 작은/어린이도서관, 식당카페 등 다목적 공간을 제안하였다. 의정부시 고산지구 내 '아이돌봄통합거점'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시설, 실내놀이터, 야외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식당, 카페가 설치될 것이다.

2) 특징

한국토지공사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통합거점'의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설치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구용역 발주, 주민의견 수렴, 수요조사, 설계공모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물을 신축하여 의정부시에 기부 채납을 하고. 의정부시는 '아이돌봄통합거점'의 운영을 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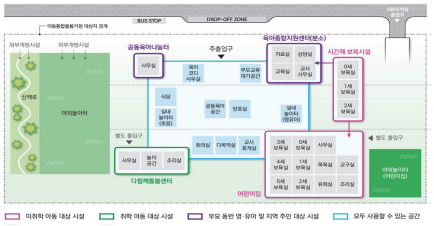
3) 시사점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통합거점'은 3기 신도시 구축처럼 향후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곳에 적용 가능한 돌봄의 융합화에 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규단지의 조성 시점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이나 점차적으로 연령별 인구 구성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를 고려하여 조성시점부터 필요시 지역사회 주민과 노령층을위한 시설로 변화 가능한 융통성을 살린 설치가 요구된다.

[그림 Ⅱ-3-9] 의정부시 고산지구 내 '아이돌봄통합거점'









구성: 주민의견수렴 워크숍/ 아이돌봄통합거점 개념도/ 설계 개념도/ 설계안
출처: 권미경 외(2024).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차. 일본 나기초 마을 육아지원 정책[28)]

1) 사업개요

인구 6,000명 남짓의 작은 나기초 마을이 출산율 2.95명을 유지하여 일본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나기초 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출산율도 1.4명대에 머물렀던 곳이다. 그러던 중 2002년에는 주변 지자체와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까지 실시되면서 지자체 소멸 위기감 증폭되었고, 오랜 토의 끝에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새롭게 유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하고 정책을 집중하였다.

가) 나기초 마을의 육아지원 정책

나기초 마을에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화 하여 2005년부터 강력한 육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산부터 육아,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20여개 육아지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유치원 미이용 가구에 재택육아수당 지급, 불임치료지원, 남성불임치료지원, 18세까지의 무상의료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육아용품대

28) 조선일보 2024.2.29. 기사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여, 육아서포터 사업등도 진행하였다.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세대는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나)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친 '고모도엔'

나기초에는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원 1곳, 4~5세를 위한 유치원 2곳이 있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이 고도모엔이다. 나기초의 고도모엔에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 200여명이 재원 중이다.

다)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29]

2007년 개설한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은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나기초의 공동 육아를 상징한다.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은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육아 시설로 육아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이다. 아이를 키우는 나기초 마을의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일종의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품앗이이다.

2) 특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첫째의 보육료는 55%, 둘째는 75%를 차감해주고 셋째 이후는 전액 마을에서 지원한다. 재택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5000엔의 지원금을 준다. 마을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약 45억엔 중 육아지원을 위한 단독 사업비가 2억엔 규모로 4~5%를 차지한다. 나기초는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일거리도 연결해 준다.

3) 시사점

일본이 나기초 마을은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다양한 사업을 강화하면서 육아가구들이 유입이 늘면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극복한 사례이다.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모도엔'은 현재 우리가

29) 뉴스핌 2024.06.24. 기사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도 지자체 중심의 통합 모형을 제공한다.

[그림 Ⅱ-3-10] 일본 나키초 마을 육아지원 정책 및 고모도엔







구성: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주요 육아지원정책/ 나기초 마을 고도모엔 모습
출처: 아시아경제 2023.02.24. 기사내용 / 뉴스핌 2024.06.24 기사내용

카. 일본 미드타운 '야에스'(Tokyo Midtown Yaesu)[30]

1) 사업개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초등학교 및 유아 돌봄시설이 상업시설 및 교통시설과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고층 복합 시설의 사례로는 일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Tokyo Midtown Yaesu)의 사례가 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역 뒤편 야에스 지역을 재개발해 건립한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는 JR도쿄역과 연결되는 지하 4층, 지상 45층, 240m 높이의 고층 복합 건물로, 40-45층에는 5성급 호텔인 불가리 호텔이 들어섰고, 지하 2층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

30) 미쓰비시 부동산(MITSUI FUDOSAN) 홈페이지 내용 참조
https://www.mitsuifudosan.co.jp/english/corporate/news/2022/0315_03/ (2024.8.19. 인출)

1-4층에는 재개발 구역에 있었던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는 건물 뒤편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2-3층은 병설유치원이 입주하였다. 7-38층은 오피스 시설로 사용한다(뉴시스, 2024.1.10).

2) 특징

가) 광주 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LPW(Living, Playing, Working 직주락) 계획의 모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사례는 광주광역시의 도심 복합개발 LPW(Living, Playing, Working 職, 住, 樂) 계획의 참조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방·일산방직 부지와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동시 추진되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단순 쇼핑을 넘어 주거, 놀이, 일 등 LPW(Living, Playing, Working 職, 住, 樂) 기능을 15분 거리에 집약하는 도심 속 도시(콤팩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2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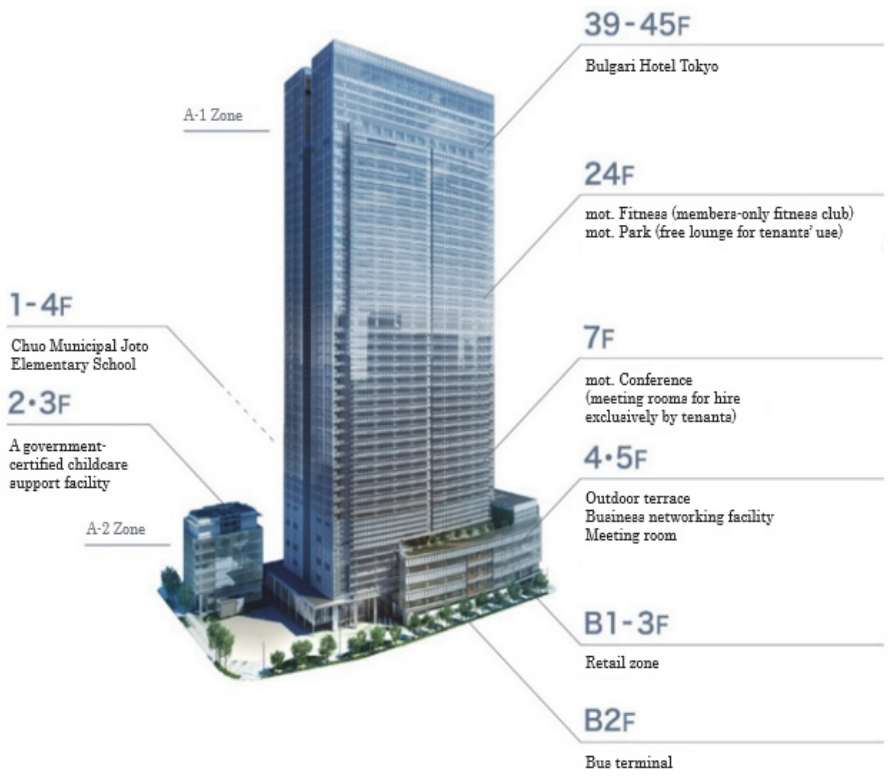
나) 특구 지정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건립은 기존의 도심 개발 관련 규제와 충동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도쿄역 일대를 비롯한 여러 곳을 특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했다. 이 법은 지역 사회와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건축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현대적인 복합 상업시설로 탄생했으며,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3) 시사점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의 건립은 일본의 도시 재생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도심 개발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법을 통해 도쿄역 주변 지역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음은 융합돌봄거점 구축 시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Ⅱ-3-11] 일본 미드타운 '야에스'



출처: https://www.mitsuifudosan.co.jp/english/corporate/news/2022/0315_03/ (2024.8.19. 인출)

타. 독일 패밀리 센터(Familienzentrum)[31)]

1) 사업개요

독일의 패밀리 센터(Familienzentrum)는 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부모와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패밀리 센터(Familienzentrum)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종합 서비스 제공: 패밀리 센터는 육아 상담, 가정 교육,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31) 권미경 외(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p. 114-118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센터는 가족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한다. 부모 모임이나 가족 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열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워크숍과 강좌가 제공되어 부모들이 양육 기술을 배우고,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주제는 건강한 식습관, 교육 방법,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하다.
- 다문화 지원: 많은 패밀리 센터는 이민자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패밀리 센터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운영모델

가) 한지붕 모델

한지붕 모델은 어린이집 내에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모델이다. 일반적인 제공 서비스는 돌봄, 산후 도우미, 상담, 자조 그룹, 가족 교육, 지역 카페(Stadtteilcafé) 등이 운영된다. 이 모형은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특징을 지닌다.

나) 파일럿 모델

파일럿 모델은 어린이집이 거점센터로 기능하며,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연계 기관은 학교, 청소년 센터, 상담 기관, 지역 소아과 등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합니다. 파일럿 모델은 여러 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가족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내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 갤러리 모델

갤러리 모델은 한지붕 모델과 파일럿 모델의 혼합 형태로, 가족센터 내에서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운영방식은 서비스의 제안, 기획,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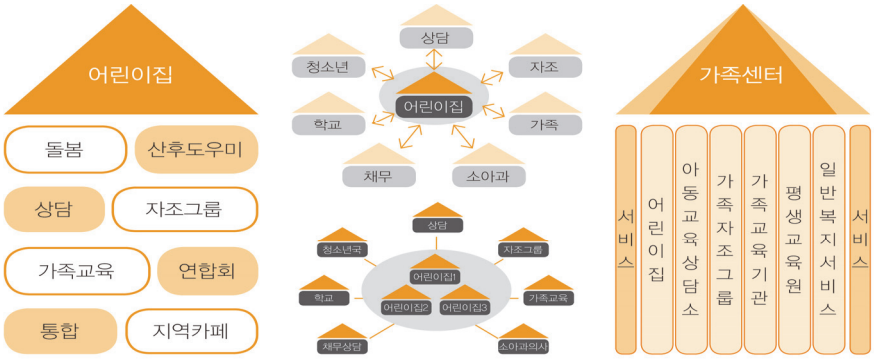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어린이집 내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운영 모델은 각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가족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시사점

독일의 패밀리 센터의 3가지 운영모형은 양육가구 지원을 위한 돌봄의 융합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서 융합화의 모형을 제시할 때 하나의 유형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 설치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여 제시하여야함을 시사한다.

[그림 Ⅱ-3-12] 독일 패밀리 센터(Familienzentrum) 운영모델



〈한지붕 모델〉 〈파일럿 모델〉 〈갤러리 모델〉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 116. [그림 Ⅳ-2-1]임.
주: 서수경(2015). 2015년 12월호, p.5. 그림 재구성.

파. 독일 다세대 교류센터(Multigenerationenhaus)[32]

1) 사업개요

저출생 문제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와 세대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06년 독일은 '모두 한 지붕 아래'라는 취지하에 '다세대교류센터(Mehrgenerationenhaus)' 를 설립하였다(박혜선·남윤옥, 2016:157). 다세

32) 권미경·김지현·김영민·박혜준(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p. 88-89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대교류센터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내 유대감 형성, 다세대교류센터 안팎의 종사자, 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현재 독일 전역에 세대교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연간 정부로부터 4만 유로, 지역사회로부터 1만 유로를 지원받아 운영된다(권미경 외, 2021:88).

2) 특징

다세대교류센터는 독일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민들에게 돌봄 문제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개방된 놀이실 등을 아동과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다세대 교류'라는 이름에 맞게 노인과 어린이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사회 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요리, 미술 등을 하며 돌봄을 받는다. 다세대교류센터 외에도 독일 내에는 양로원과 어린이집이 교류하는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가족센터'의 운영으로 아동이 지역사회 내 여러 이웃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세대교류센터는 독일 내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모델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3) 시사점

융합돌봄 거점의 구성을 계획하면서 자녀 양육 가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의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세대교류센터는 다양한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설계되어,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후 지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융합돌봄, 통합적인 지역돌봄의 개념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Ⅱ-3-13] 독일 다세대 센터(Multigenerationenhaus)







구성: 다세대센터 개념사진/ 베를린 인근 다세대센터 분포도/ 키타 '마르코리노' 북서부 어린이집, 베를린 자치 운영
출처: https://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familienfoerderung/mehrgenerationenhaeuser/(2024년 10월 14일 인출)

하. 소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돌봄융합시설을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따라 돌봄 인프라의 감소에 따른 아동의 돌봄시설 접근성(access)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이재희 외(2023)는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 적용 시 어린이집·유치원 기관당 재원 영유아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에는 2022년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31.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재희 외, 2023: 51). 이는 2028년에는 2023년 기준 약 39,000개의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약 12,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재희 외, 2023: 54). 이러한 어린이집·유치원 수의 감소는 돌봄시설에 대한 영유아의 접근권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융합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집적화된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돌봄 인프라 유지 방안이 요구된다. 융합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은 지자체 자체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융합돌봄시설을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융합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융합돌봄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융합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융합돌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각종 특구 및 유사특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 없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융합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융합돌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융합돌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돌봄에 관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일반법의 법적 규제를 우회하여 융합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복합시설의 융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 체계 내 적용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돌봄 중심의 융합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융합돌봄특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들을 얻는다.

첫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미 부분적인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천군의 사례와 같이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아동돌봄의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인천 계양구나 증평군과 같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의 건물 안에서 다양한 지원 시설 간의 운영 협력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서비스의 통합과 융합이 돌봄서비스 운영의 주된 변화 추세임일 알 수 있었다.

둘째, 돌봄 중심의 융합과 통합 운영지원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홍성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등)은 그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융합돌봄특구 계획을 구체화하고 법적 충돌 부분에 대한 수정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이미 지자체에서는 서비스의 융합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사례가 있다. 융합적인 돌봄 지원을 고려하면서 개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별법들 간에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셋째,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융합적인 돌봄 지원 설치 및 운영 형태는 통합 운영지원부터 개별 병렬지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홍성군의 '가족어울림센터'의 경우는 지자체 내에 어울림 직영전담팀을 두어 총괄 운영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 '꿈드림센터'의 경우는 센터 내 서비스 시설들의 설치만 한 건물에 하였을 뿐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완전 병렬 운영 지원의 형식이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융합적인 돌봄 지원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설치 및 운영 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부처 간 업무지원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의 통합적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돌봄 중심의 융합, 통합 운영지원을 목표로 행정조직을 개편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천시의 경우 인구성장국을 두고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한 팀을 '애지중지팀'으로 명명하였다. 증평군의 경우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 '행복돌봄과' 내로 영유아부터 초등, 청소년, 여성, 노인 돌봄까지 돌봄 지원 사무를 한 팀에서 맡도록 하였다.

다섯째, 융합적인 돌봄 지원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부담을 다양한 주체들과, 민간 기업과의 협업 및 참여로 완화하는 방안을 볼 수 있었다. 울산시의 사례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공간을 시에서 저렴하게 인수하여 교통이 좋은 곳에 돌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였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개발 이익을 투여하여 '아이돌봄통합거점'의 설치를 지원하였다(예: 학교부지→공원부지). 이처럼 돌봄 융합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토대로 민관 협력의 방안들을 다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융합돌봄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될 필요가 있다(보고서 4,5장 참조).

여섯째,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합적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의 방안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설치되는 융합적인 돌봄시설에는 안내부터 시설관리와 돌봄교사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이후 양질의 돌봄인프라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융복합시설의 필수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풀, 지자체 발달지원사 배치 등)의 업무 수행과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의 인구 구조가 거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단지의 조성 초기에는 영유아 인구가 많지만, 점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도 변화한다. 또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공간에서의 서비스 종류를 중심으로 세대 간 갈등과 세대별 수요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융합적인 돌봄 지원의 설계와 설치 초기부터 이러한 요구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융통성 있는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는 광의의 다세대 서비스-시설 융복합운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융합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의 설치·운영은 다양한 세대와 가족의 요구를 담아서 수요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는 인근에 휴일에 자녀를 데리고 갈만한 놀이공간, 키즈까페, 도서관 등이 부족하다. 이에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는 토요일 아침부터 센터와 식당을 운영한다. 포천시의 통합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을 도모한다. 독일의 다세대 센터에서는 세대가 함께하는 이용가능한 서비스 공간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며, 이러한 가족센터의 확장된 기능을 거점 어린이집에 부여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집적되어 있으나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실제 기관 간 협업과 소통 및 연계협력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융복합화를 위한 실행 노력 중에는 현행법 체계 내 실행기반이 없는 운영요소가 적용되는 무리한 지점들도 볼 수 있었다.·행·재정 기반의 취약성으로 복합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복합시설에 적용 가능한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써 지역별 복합시설 간 운영과 관리에 적지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Ⅲ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0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목적

0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0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지자체 적용

Ⅲ.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목적

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 필요성

현재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를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내 돌봄인 늘봄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함께돌봄, 온종일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이 지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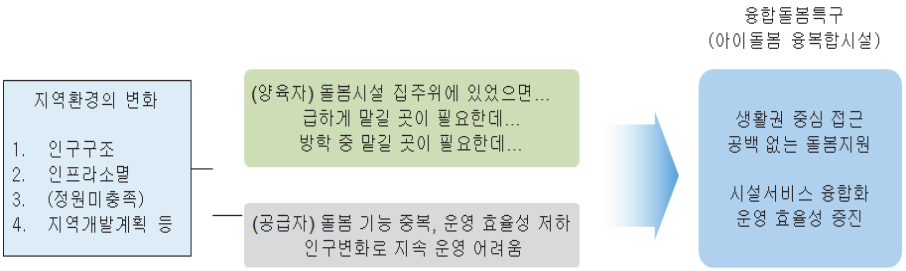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수요자들은 생활권 안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급한 상황이나 방학 중 같은 기간에 틈새 보육을 위한 요구를 여전히 지니고 있어 정책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나 돌봄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시설 간 서비스 중복, 아동인구의 감소와 지역 내 인구변화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공공·민간 돌봄 시설 또는 서비스의 연계와 집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계와 집적화를 통해 양육자에게는 아동 및 부모의 돌봄·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과 제도설계 및 행·재정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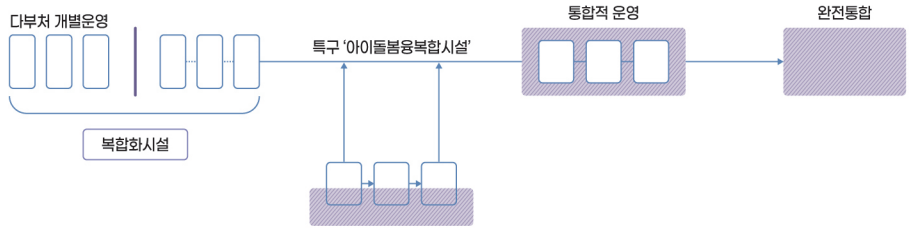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하 융복시설)’이라 함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여러개의 아이돌봄시설을 설치자는 물론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연계를 위해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융복시설은 모든 아이돌봄시설의 화학적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

으며 그럼에도 물리적 통합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층위적 개념을 내포한다.

[그림 Ⅲ-1-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필요성



[그림 Ⅲ-1-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개념



주: 저자 작성

나.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 목적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구 및 아동을 위한 지역 필수 인프라로서 아동의 생애주기(연령)별로 구분 및 운영되는 다양한 돌봄시설의 및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자녀양육가구(아동, 부모)가 정주할 수 있는 돌봄환경으로서 접근성과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연계 및 집적된 시설 환경의 구축과 유지를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 보장과 돌봄공백의 방지, 양적·물리적 환경 요소와 질적·내용적 요소를 포괄하며, 서비스 이용의 연계·협력과 통합적 운영을 도모한다.

All day one stop Service 제공을 위해 지역의 인구 구성(자녀양육가구, 아동수)과 아이돌봄시설 인프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최적의 집적된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융합돌봄특구로 설치하는 이유는 다기능 복합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 인력, 예산을 융복합으로 사용 가

능하도록 부딪히는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기준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지역의 돌봄 필수인프라 유지 - 서비스 접근성 확보, 지역기반 선순환 육아생태계
- 다원화 된 요구에 대응하는 아동중심의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 고도화
- 설치·운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지속성
- 포괄적·종합적 돌봄의 제공

1) 지역의 돌봄 필수인프라 유지 – 서비스 접근성, 선순환 육아생태계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정주여건을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치와 지속가능 운영이 요구된다.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돌봄 필요 연령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들을 생활권 안에 설치하고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과 격차 없이 서비스 기능을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토대로 인구 구성 및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 서비스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한다.

2) 다원화 된 요구에 대응하는 양질의 확장된 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동에 대한 돌봄은 과거의 care 또는 educare의 범주를 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된 서비스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강화된 건강·안전 및 급식, 놀이/쉼의 공간과 양질의 대면 상호작용, 아픈아이 돌봄과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돌봄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본 요건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국가수준의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교육·보육 과정 등 포스트 코로나 돌봄은 아동의 관점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융합돌봄특구의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돌봄시설에 제공하는 기능과 프로그램의 요소를 넘어서는 융복합의 운영과 확장된 미래지향적 돌봄의 요소를 포괄하는 형태일 필요가 있다.

3)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 고도화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와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과거 부모의 선택권 강화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융복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선택권과 고도화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이 단절과 공백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해당 공간의 시설과 서비스를 불필요한 이동과 제약 없이 안심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간, 공간 간에, 그리고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 간에 연계협력(cooperation, alignment, continuity)이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속성 있는 광의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기관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돌봄과 공간의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융복시설별로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확장과 고도화 된 서비스 운영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모델을 통해 돌봄 대상 연령대별로 또는 연령의 제한 없이 협업과 연계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유목화하고 연계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제안하였다.

4) 설치 운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지속성 증진

융복시설은 돌봄기관의 설치와 운영 시 융합화와 연계를 추진함으로 써 독립운영 시에 비해 인력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앞서 국내외사례에서 살펴본대로 어린이식당과 실내외놀이터 및 기타 특화공간의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이 돌봄시설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 및 인근 타 시설 이용자에게 개방됨으로써 그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증진되는 경우를 보았다. 융복합운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발전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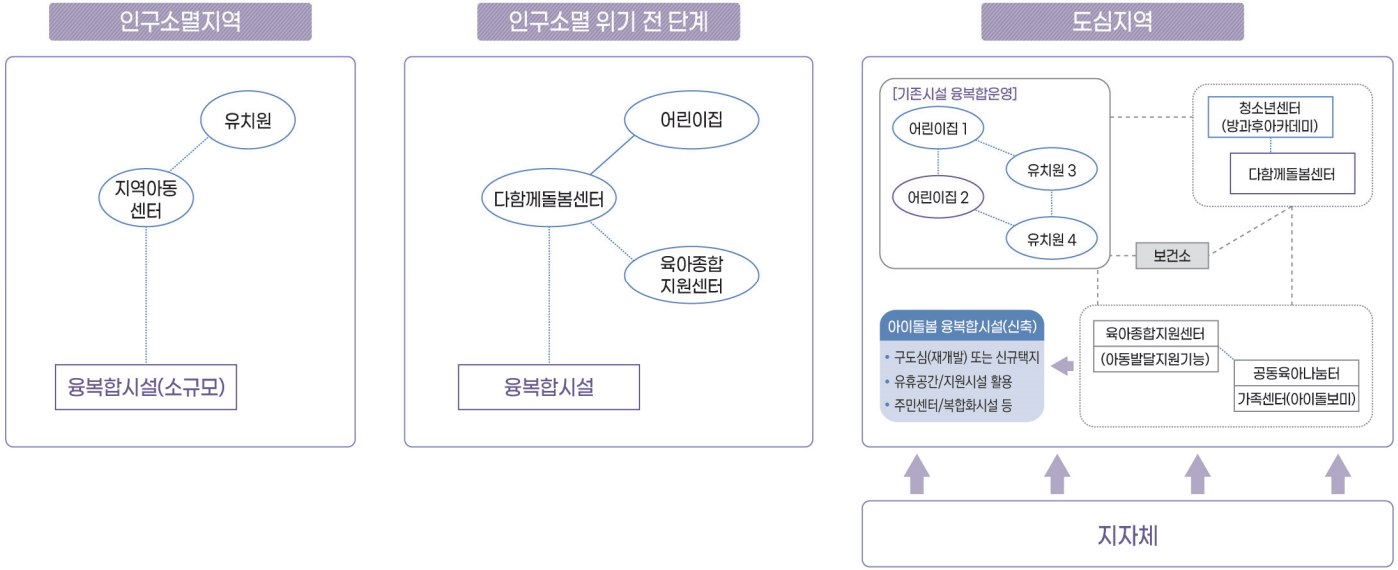
또한 융복시설은 지역의 아동인구 변화 뿐 아니라 장기 운영 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응함으로써 운영의 지속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다면적 특성과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융복합시설의 모형을 다양화 하고 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5) 포괄적·종합적 돌봄의 제공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는 다양한 가족특성과 특별한 요구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재활 서비스, 아픈아이돌봄 및 긴급돌봄에의 대응과 같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당과 놀이터 운영, 공간 활용 등에서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과 가족도 이용가능한 오픈된 형태를 띨 필요가 있으며, 취약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예: 어린이식당 결식아동 지원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픈아이돌봄서비스 보건소/병원 동행서비스와 연계 등).

상기한 융복합시설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그림 III-1-2〉에서와 같이 지역규모와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화, 즉 융복합운영이 가능하다. 구도심과 신규택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복시설의 신규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시설 간에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융복합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시설의 연계협력과 시설설비 등의 공유는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재량, 시간의 운영을 공유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융복합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역기반 혁신사업과 지구 지정, 특화 사업의 형태로 기존 시설 간 연계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복시설 운영모델은 기존시설 간에도 적용가능하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사항이다.

[그림 Ⅲ-1-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주: 저자 작성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가. 융복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적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모델은 지역의 인구 및 인프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구성 요건와 절차,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운영모델이 지향하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의 접근성과 이용(이용권, 이용가능성)에 대한 법적 권리(legal entitlement)의 보장이다. 취학전 영유아 및 취학 아동 대상의 보편적 지원 체계 하에 다수의 아이돌봄시설이 확충되고 돌봄 서비스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공급단위의 수급으로 아동과 부모에게 필수 서비스에 해딩하는 교육과 돌봄, (놀이)의 이용과 수혜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한 보장 수준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OECD Starting Strong IV, 2015). 융합돌봄특구의 융복합시설 운영을 통해 아동과 부모의 돌봄서비스 이용권의 보장을 제도화 하고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수요자 부모와 아동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과 부모의 하루 일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적 연속성(horizontal continuity)과 아동 및 부모의 생애주기 이행, 즉 연령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종적 연속성(vertical continuity)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양질의 서비스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 다양한 돌봄주체의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을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육아생태계 조성이다. 이는 곧 지역의 돌봄 필수 인프라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의 주체가 돌봄 과정에 참여하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 및 이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과정(dynamic)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주체의 돌봄 참여와 이용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돌봄권의 실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감소 추세 하에 아동의 관점에서 융복합시설의 집적된 공간 설비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또래 및 성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넷째, 다부처 개별 사업으로 구분 및 분절되어 있는 현행 법적 제도적 기반의 아이돌봄시설 운영을 유지하되, 현 시점 적용가능한 연계협력과 통합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사람 간, 시설 간, 시스템 간 네트워킹과 연계성이 중요한 동력이 됨은 다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예: collective impact). 이를 돌봄 인프라에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 상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기준들의 일정부분을 유예하고(규제완화) 분절된 시설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일정수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적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지역 특구 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이름으로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융복시설 운영의 고려사항

상기한 융복시설 운영의 원칙과 방향성을 위해 융복시설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우선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고 이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돌봄 환경에 해당되는 지이다. 지역의 특성과 인프라 환경에 비추어 집적된 아동 통합돌봄거점(융복시설)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내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적용 가능하고, 지속 운영 되는 모델이다(지자체 site 선정).

둘째, 해당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의 융복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역의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구특성(연령별 아동수, 세대구성)과 아이돌봄시설 인프라 현황(시설 수/유형, 정원-현원 규모 등)을 파악한다. 기존 시설의 수급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되, 이와는 구분되는 지역의 특정한 위치에 설치가 필요한 수요와 지역 여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변화된 인구-인프라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공간의 융복합 돌봄시설을 적정 규모의 집적된 형태로 조성, 운영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한다. 즉 어떤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어떤 시설들의 조합을 어느정도 규모로 설치운영 할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영유아 중심의 소규모 융복시설을 설치·운영 할 지, 0~12세 아동 대상의 중규모 이상의 융복시설을 설치·운영 할 지를 지역 모델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취학전 영유아 대상의 교육·돌봄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에 해당하

는 융복합시설의 공간과 운영시간, 교직원의 인적기준 등이 포함된다(표 III-1-2 참조). 초등 취학 이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과의 연계 및 통합적 운영도 고려된다.

또한 기존 교육-돌봄의 카테고리 외에 비등하는 건강-안전 및 아동발달 지원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유관 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등) 및 서비스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점도 앞으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 갖추어 할 주요 요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이돌봄융복합시설은 기본시설(필수인프라, 필수서비스)와 선택시설(+α), 기타 배후시설(+β)로 논의 가능하다(권미경 외, 2024).

다. 융복합운영 시설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이루는 대상 시설은 현재 개별 부처 법으로 운영되는 돌봄시설 전체를 포괄한다. 다음에 제시된 6개 시설 서비스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선택 및 지역희망시설 조합으로 설치·운영 되도록 한다.

융복합시설 운영에 포함되는 대상 시설 pool은 크게 기본-선택 시설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특화 또는 지역희망 시설의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부가적인 서비스 운영을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기본시설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33],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실내외놀이터를 제안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나, 본 융복시설 운영모형에서는 시설 유형보다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에 초점을 두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분소의 개념으로 장난감도서관 또는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33) 강한 수준의 연계협력과 통합 운영에 대해 논의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간의 구분 또는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상세 논의하지 않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Ⅲ-2-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범위 및 구분

기본시설(6개)	선택시설(예)	지역희망시설/ 유관서비스 연계협력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영유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어린이식당	실내(외)놀이터 아동발달센터/아픈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도서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체육센터) (DRT 등) 교통서비스	보건소/소아청소년과 카페/식당 직업훈련/평생학습센터 다세대교류센터(노인돌봄) 일자리지원센터 (강의실 등) 다목적공간

출처: 권미경 외(2024). p. 35 표 내용을 참조, 재구성

융복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다. 학교돌봄의 늘봄학교가 전국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자체 마을돌봄이 늘봄센터의 거버넌스로 포괄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학교돌봄(늘봄학교) 운영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돌봄의 거버넌스와 인프라는 별도의 운영체계로 필요하다.

선행연구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아동 통합돌봄의 다양한 유형 및 운영모델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통합돌봄시설의 입지가 공원부지 또는 학교부지였는지,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했는지, 신규택지 조성 지역이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례로 의정부고산지구의 경우 학교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한 이후에 문화공간의 기능을 포함하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로 구성한 입지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본대로 집적된 돌봄시설 및 유관기관이 어떠한 통합적 운영 및 연계협력의 과정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설 간에 물리적인 단순 병렬의 조합에서부터 시작하여, 느슨한~강한 연계협력, 거점형/융합형의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 운영모델의 제안과 설명은 부족하다. 이는 다부처 개별법 하에 운영되는 현실적인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규제와 제한이 법제도적으로 해소되는 특구 융복합시설의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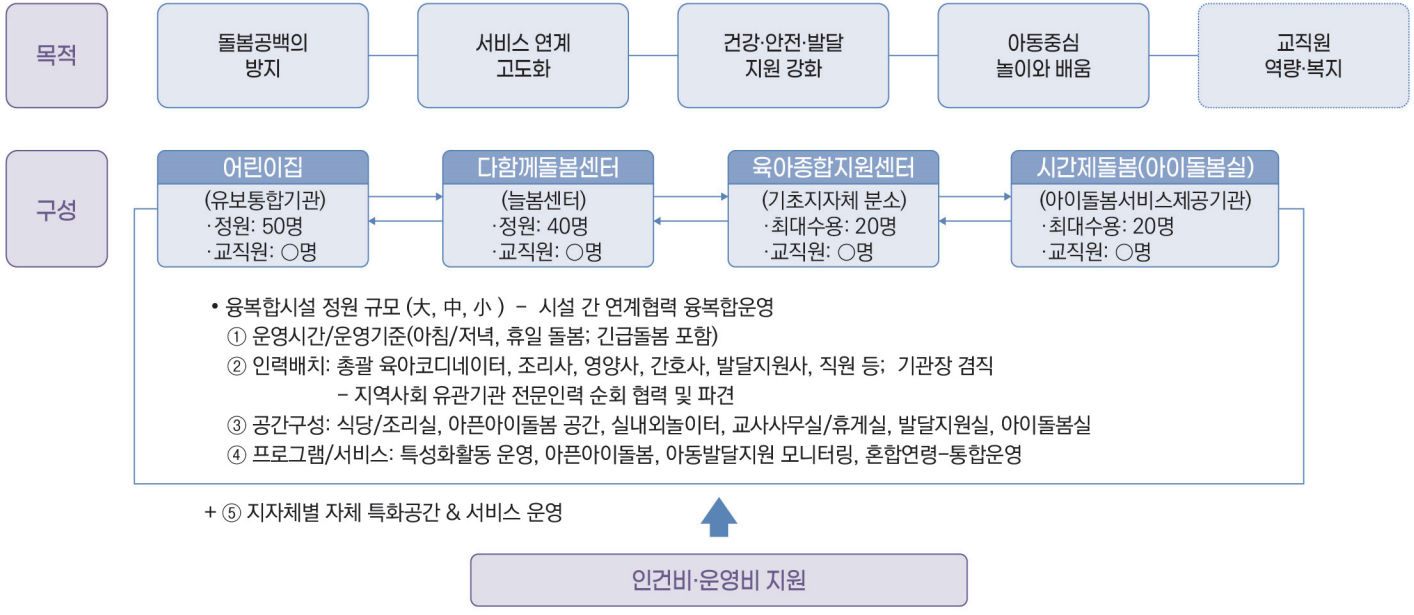
〈표 Ⅲ-2-2〉 아동통합돌봄 시설 운영모델 유형

기 준	운영모델 유형
- 입지/공간	• 공원형, 학교형, 주민센터(중심)형, 유휴공간 활용, 산단연계 • 구도심, 신규택지
- 운영방식	• 한지붕모델, 파일럿모델, 갤러리모델 • 연계·협력-거점형, 융복합(집적)시설
- modeling	• 늘봄학교-늘봄센터 연계형 (정부주도모델, 학교연계모델) •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 중심형 • 돌봄클러스터-생활SOC-대학·기업 연계형(기업대학연계모델) • 커뮤니티 중심 모델
-「융복합시설」 구성요소	• 융복시설 정원/규모 및 아동연령, 반 구성의 연속성 •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통 운영기준 • 공간-시설·설비 •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사/인력 배치

주: 저자 작성

상기한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개념과 목적을 반영한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관 규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II-2-1).

[그림 Ⅲ-2-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기본안)



주: 저자 작성

라.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합화시설 등의 운영모델은 입지, 공간구성, 운영방식 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구 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운영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는 특구 돌봄시설로서 반영되는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 이에 따른 지원 체계 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가) 융복시설 통합적 운영기준-운영일수/시간/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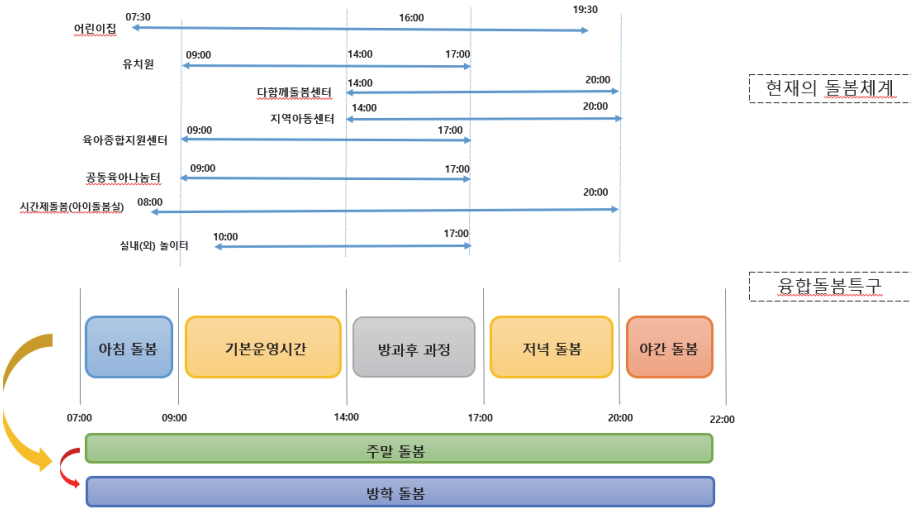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또는 10시까지의 종일제로 하며, 연장보육/야간돌봄이 가능한 확대된 운영시간을 적용한다. all day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서, 돌봄의 공백과 틈새가 없도록 휴일/방학 및 긴급/일시 돌봄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재원과 이동에 불편함과 제약이 없도록 이동서비스의 제공(등하교차량)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화된 방문형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인력 수급 매칭과 파견)의 제공과도 원활히 연계되도록 한다. 필요시 기존 기관(들)을 소규모 개별 기관으로 운영을 지속,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융복합시설의 운영일수와 시간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한 추가인력과 대체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른아침과 연장보육-야간돌봄의 운영이 돌봄공백의 발생 없이 이루어지도록 통합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긴급/재난 상황의 일시보육과 긴급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아동관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양질의 포괄적 돌봄의 제공을 위해 일시보육과 긴급돌봄 지원 외에 아픈아이돌봄(일시돌봄)과 아동발달모니터링과 지원의 반영된 경계선행동지원체계의 연계를 고려한다.

돌봄대상이 되는 아동은 취학 전-후 연령대를 포괄하며, 지역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중증질환이 아닌) 아픈아이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Ⅲ-2-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융복합운영 시간



나) 융복시설 구성과 규모(정원) 설정

개별 시설의 정원을 고려하되 융복합시설의 정원 및 규모의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융복합시설 정원이 되도록 한다. 융복시설내 개별 기관 돌봄의 정원과 반 재원아동 기준은 유지될 수 있다. 융복시설의 협의체 장은 1인으로 하여 융복시설 전체의 운영을 관장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융복시설 내 개별 기관의 교직원/인력 배치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교사대아동비율과 대체교사 및 순환배치의 운영,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인력(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운전기사, 청소부, 행정전담사, 보조인력; 발달지원사 등)의 구성과 배치를 지역 특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아동수 정원을 기준으로 융복합시설을 대규모(200~300인이상), 중규모(100~150인), 소규모(50인이하)로 하여 적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

대규모(200~300인 이상) 융복합시설은 100인 규모의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80인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운영, 아동발달지원과 부모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양육자가 직접 찾아와 자녀돌봄을 함께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1회 최대 20명 이용이 가능한 영유아-초등 실내놀이터 각 1곳씩 2곳, 그리고 어린이식당을 기본시설로 하여 대규모

융복시설로 가정하였다. 100인 규모의 어린이집은 현행 배치 기준에 따라 0세반 2반 6명, 1세 2반 10명, 2세 2반 14명, 3세 1반 15명, 4-5세 2반 40명 정원으로 하였을 때, 원장 1인, 담임교사 9인, 보조교사 3인, 연장반 교사 2인, 사무직원 1인, 조리사 2인, 영양사 1인, 간호사 1인, 총 20인의 교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80인 규모의 경우 40명 단위로 총괄하는 교사를 겸직하는 센터장 1인과 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어 80인 규모일 때 센터장 1인과 교사 4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에는 보육요원 2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에는 별도의 직원 배치 없이 아이돌봄통합플랫폼을 통해 아이돌봄인력을 매칭 파견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시간제돌봄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인력을 파견 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의 하나인) 기관연계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이는 시간제돌봄과 틈새 및 긴급 돌봄에의 대응을 강화한 운영모델이다. 또한 실내놀이터 2곳에 각 영유아 담당 직원 1인, 초등담당 직원 1인을, 공동육아나눔터에 직원 1인을 배치하였다.

대규모 융복합시설(안)은 8개 돌봄 시설과 공간에 어린이식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대규모 시설의 인력의 배치와 업무 관련하여, 우선 융복시설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융복합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과 방과후돌봄의 인력 순환배치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융복시설 총괄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영유아)의 4개 시설과 어린이식당에 대한 운영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며, 다함께돌봄센터장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실내놀이터(초등 키즈카페) 및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총괄하도록 한다. 전체 융복시설의 대표 역할은 돌봄시설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 중에 1인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육아코디네이터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기존 교직원의 겸임에 의한 수행이 아닌, 신규 추가배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대규모 시설의 인력 배치와 업무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4개 시설은 현행 법체계 기준에 따라 28인의 교직원이 배치된다. 여기에 융복시설로서의 포괄적·종합적 돌봄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발달지원사', 전체 융복시설의 어린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와 '영양사', 영유아 및 초등아동 대상의 실내놀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픈아이를 돌보는 '간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융복시설의 경우 돌봄시설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공통공간의 구성을 통해, 적지않은 교직원이 개별 시설에 배치된 인력의 겸임과 순환근무를 통해 융복합운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례로 어린이집 영양사 1인이 융복시설의 어린이식당 식단 구성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대된 업무에 대해 겸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한다. 그러나 증가된 융복시설 정·현원 규모를 고려할 때 아침-저녁 급식까지 포함한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조리사 2인 외에 풀타임 조리사 1인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아픈아이돌봄센터에 어린이집에 배치된 간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겠으나 융복시설 전체 규모의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일제 간호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로써 융복시설 센터장 역할과 코디네이터, 어린이식당 조리사/영양사, 발달지원사, 간호사, 놀이터 직원(2인)에 해당하는 총 8인의 추가 인력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융복시설 센터장과 발달지원사, 조리사와 영양사의 경우 기존 인력의 겸임(3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의 융복합운영을 고려할 때 융복시설 전체 36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기존 인력의 순환배치 및 융복시설 업무 겸임을 통해 33명이 담당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인력의 배치와 순환업무의 부여는 지역별로 융복시설 내 돌봄기관 협의체와 육아코디네이터를 통해 공통업무의 범위와 분장, 추가인력의 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초등 방과후돌봄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와 실내놀이터(초등) 공간을 하나의 기능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여 실내놀이터(초등) 담당 직원의 자격을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여 인력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 배치된 연장-보조 교사의 4-6시간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확대하여 융복합시설의 아침-저녁-야간 돌봄의 틈새 보육과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지원실 업무는 아동 발달검사의 수행과 관련 상담의 전문성를 필요로 하며(보육요원 1인→발달지원사), 다른 보육요원 1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시간제돌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융복시설의 보육요원/직원 자격을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으로 하여 전체 시설 간 융복합운영의 연계

협력과 순환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틈새돌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10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의 경우 세부화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놀이터에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보육요원이 배치되므로 대규모 융복시설의 경우 확장된 전일제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및 긴급/일시돌봄에의 대응이 공백과 단절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기관의 인력이 융복시설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겸임-겸직 및 순환근무의 법적 기반과 확장된 업무 수행과 추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수당)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융복합시설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체 시설의 인력을 방과후돌봄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순환 배치함으로써 틈새 시간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개별기관 외의 공동공간을 활용하여 발달을 고려한 연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융복합시설의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정규 프로그램 외에 시간 즉, 아침돌봄, 저녁돌봄, 휴일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연령에 따른 세밀한 프로그램 구성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연계하여 긴 시간 융복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정 누리과정이 표방한대로 놀이와 쉼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초등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는 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방과후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령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에는 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외 시간에 사용 가능한 시설별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한다(육아코디네이터 설계 및 운영협의체 협의 필요). 특히 방학 중 돌봄에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연계가 확장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은 Ⅱ장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에서 다양한 돌봄 시설의 집적된 공간적 결합에 더해 돌봄클러스터를 구축한 경상북도 사례, 내포신도시 신규 택지조성 단지 내 가족어울림센터를 개원한 홍성군 사례와 같이 신도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포천시의 '포천시통합육아지원센터', 경상북도의 '거점형 어린이 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의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사례와 같이 최근 인구 감소지역이나 도심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폐원이 가속화 되는 지역에 거점형 융복합시설을 운영할 때 대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 **대규모** 융복시설 기관 구성과 규모(정원) 설정: 전체 이용아동 200~300인 이상 가정

〈표 Ⅲ-2-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규모(안)

구분	시설 현황		융복합시설 규모			융복합운영	
	돌봄시설 구성/조합	(수)	정원	대상 연령	현행 개별법 교직원 배치	융복시설 공통인력 배치 (인건비지원)	공통/추가 공간 (운영비 지원)
기본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영유아학교)	1	100	0~5세	원장 1인, 담임교사 9인, 보조교사 3인, 연장반 교사 2인, 사무직원 1인, 조리사 2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직원의 업무 영역을 융복시설로 확대: 현행 4~6시간 근무시간→ 전일제(8시간) 시 인건비+겸무수당	식당/조리실 교사 사무실/휴게실 발달지원실 아이돌봄실 실내놀이터 공용화장실
	다함께돌봄센터	1	80	(초등1-4)6세~6학년	센터장 1인, 교사 4인	융복시설 센터장(겸임) 육아코디네이터 +1인 발달지원사 1인(겸임)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원실,장난감도서관	1	20	영유아~초등1-2학년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1	20	영아	직원 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1	10	영유아~초등6년	-	아이돌보미 매칭(사전등록)	
	어린이식당	1	(100)	전연령 아동	-	기존 (어린이집) 조리사 2인 +1인 영양사(어린이집 영양사 겸임)	
선택	실내놀이터(영유아)	1	20/1회	영유아	-	직원 +1인 (부모동행)	
	실내놀이터(초등키즈카페)	1	20/1회	초등 1~6학년	-	직원 +1인 (부모동행)	
	아픈아이돌봄센터	1	8/1회	영유아~초등6년		간호사 +1인 (센터장겸임,긴급돌봄대응)	아픈아이 휴게실 (침실)
	소 계	8	238			융복시설 총 36명→33명	
	다목적공간 (부모교육/참여 강의실)	1	20	모든 주민	-	-	
+지역특화	평생학습센터	1	20	모든 주민	직원	-	

주: 1) 음영 Box는 현행 개별 법 하의 시설-인력 배치를 의미함.
2)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 중으로 향후 통합기관 설치(가칭 영유아학교)를 가정함.

(2) 중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

융복합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적된 공간의 열린 구성과 인력의 운영 및 배치를 일정수준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대로 인력 운영에서는 개별기관의 대표(센터장, 원장)를 시설별로 두지 않고, 2~4개 유관기관 서비스의 운영을 총괄하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특구 특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규모(안)에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겸임을 하여 3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관장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아이돌보미 배치 운영), 실내놀이터(영유아+초등),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 겸임을 통해 4개 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공통 인력의 경우, 영양사/조리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와 발달지원사는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 운영관리를 맡도록 한다. 공통 공간의 경우, 식당과 조리실, 교사 사무실과 휴게실, 영유아 놀이터, 발달지원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돌봄실과 초등 실내놀이터, 화장실, 아픈아이돌봄공간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도록 한다. 공통의 공간-인력에 대한 융복합운영을 위해 육아코디네이터(연계협력 조정자)가 융복시설의 온-오프라인 운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긴급돌봄 대응 포함), 이는 융복시설 교직원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전체 융복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육아코디네이터 중에서 맡도록 돌봄시설 협의체에서 지자체 협의 하에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추가된 선택시설(예: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인력과 공간 운영의 책임자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장/센터장이 동시에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통의 시설/인력 운영을 일정부문 관장하는 것은 융복시설의 행재정 상 효율뿐만 아니라, 융복시설의 융복합 운영이 갖는 원활한 연계협력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운영체계(거버넌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부가된 융복합 업무를 명확히 하고, 1일 12시간 이상의 종일제 운영을 위한 겸임/겸직과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규모 시설의 인력 배치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4개 시설은 현행 법체계 기준에 따라 22인의 교직원이 배치되며, 여기에 융복시설로서의 포괄적·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융복시

설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발달지원사, 조리사와 영양사, 실내놀이터 직원(1인).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간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총 7인의 추가인력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융복시설 센터장 역할과 발달지원사의 경우 기존 인력의 겸임(2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중규모 시설의 경우 융복시설 전체 22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기존 인력의 순환배치 및 융복시설 업무 확대와 겸임을 통해 20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② **중규모** 융복시설 기관 구성과 규모(정원) 설정: 이용아동 100~150인 가정

〈표 Ⅲ-2-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규모(안)

구분	시설 현황		개별 시설 운영			융복합운영	
	돌봄시설 구성/조합	(수)	정원	대상 연령	현행 개별법 교직원 배치	융복시설 공통인력 배치 (인건비지원)	공통/추가 공간 (운영비 지원)
기본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영유아학교)	1	35	0~5세	원장, 담임교사 4인, 보조교사 2인, 연장반 교사 2인, 조리사 1인	융복시설 센터장(겸임) 육아코디네이터 +1인 발달지원사(겸임)	식당/조리실 교사 사무실/휴게실 발달지원실 아이돌봄실 실내놀이터 공용화장실
	다함께돌봄센터	1	20	(초등1-4학년) 6세~6학년	센터장 1인, 교사 1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발달지원실,장난감도서관	1	20	영유아~초등1~2학년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1	10	영아	직원 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1	10	영유아~초등1~2학년	-	아이돌보미 매칭(사전등록)	
	어린이식당	1	(50)	전연령 아동	-	조리사 +1인/파트타임 영양사 +1인	
선택	실내놀이터(영유아+초등)	1	20/1회	영유아~초등6학년	-	직원 +1인 (부모동행)	
	아픈아이돌봄센터	1	8/1회	영유아~초등6학년	-	간호사 +1인 (센터장겸임,긴급돌봄대응)	아픈아이휴게실 (침실)
	소 계	7	98			융복시설 총 22명→20명	
	다목적공간 (부모교육/참여 강의실)	1	20	모든 주민	-		
+지역특화	평생학습센터	1	20	모든 연령	직원		

주: 1) Bold 음영 Box는 현행 개별 법 하의 시설-인력 배치를 의미함.
2)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 중으로 향후 통합기관 설치(가칭 영유아학교)를 가정함.

○ 개별 기관의 정원규모로 배치 불가능한 간호사/영양사/조리사 등 필수인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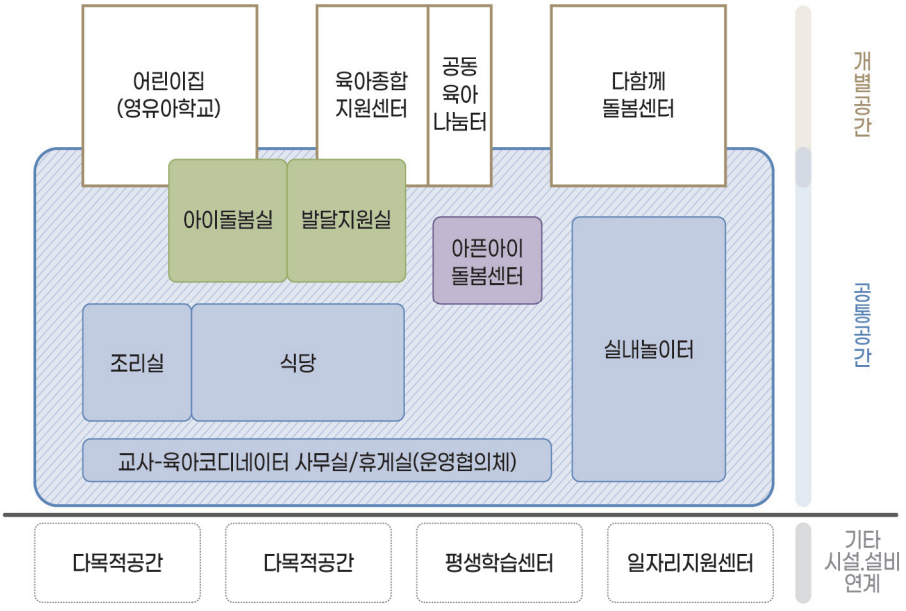
- 융복합운영을 위한 공통 추가인력 – 융복시설 총괄 대표(겸임), 융복시설 육아코디네이터(1), 어린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파트타임)와 영양사(1) 추가, 아픈아이돌봄 간호사(1), 발달지원사(겸임), 실내놀이시설 직원(1). 그 외 순환돌봄교사(파견) 및 순환 운영 가능

○ 비용 절감 부분: 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의 총괄 대표 및 개별 시설 운영관리 총괄 겸임제로 인력운영의 연계협력 및 효율성

- 융복시설 순환 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파견을 받아 추가 배치 가능. 개별 시설의 보조교사와 인력의 배치를 육아코디네이터를 통해 전체 융복시설로 순환배치 및 업무 연계협력 도모

○ 각 시설별 반-교직원 구성은 현행 부처별 법/지침에 의함. 여기에 융복시설 공통의 공간 및 인력의 구성을 활용하여 융복합운영을 도모

[그림 Ⅲ-2-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간 구성 – 중규모 모델



주. 저자 작성

일례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행 기준을 살펴보면, 다돌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의해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휴게공간, 상담실, 놀이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개별 시설별로 요구되는 공간과 설비의 일부를 융복시설내 공통된 공간 설비로 구성함으로써, 그리고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 공간을 공통의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효율과 아동-교직원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하는데, 표준서비스 제공을 현행 1일 8시간 운영으로 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2시~저녁 8시,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운영시간 기준은 융복시설 전체로 할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또는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도록 하며, 기본서비스 운영 시간 외 연장보육 또는 방과후과정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운영은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돌봄의 연계는 다함께돌봄서비스 운영 지침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융복시설 운영을 통해 활성화 체계화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도 기본서비스, 공통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이를 융복시설의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에 반영하여 공통 운영과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설계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24: 56).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동 시간대 아동 20인 기준)을 센터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겸임제한[34]*), 이용 아동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선생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8시간 교사 1인 또는 4시간 교사 2인 배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68). 겸임제한이 되어 있는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을 특구 융복시설 특례 적용을 통해 융복시설 내 타 기관 돌봄서비스의 연계 운영을 위한 겸임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4) 겸임제한(2024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69p)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다함께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
※ (예시) "A" 다함께돌봄센터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근무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다만 시간제 돌봄선생님의 경우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의 업무 겸임 가능

이와 같은 중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은 지방 산업단지에 근로 친화형 돌봄 중점시설로 제시한 경상북도 사례, 도시재생정비 사업으로 인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돌봄지원 요구 증가로 꿈드림센터를 설치한 인천시 동구 사례와 같이 산업단지와 구도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증평군의 '증평군 가족센터' 사례와 같이 군청 내 돌봄 강화 정책 등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위해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소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안)

50인 이하 소규모의 경우 2개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가칭 영유아학교)과 지역아동센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의 3개 시설로 구성하였을 때, 국공립유치원을 혼합반으로 2개반을 구성하여 원장 1인, 담임교사 2인, 방과후전담교사 1인을 배치하고, 지역아동센터 20인 규모에 센터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을 배치하게 된다. 소규모 융복시설의 경우에도 융복시설의 핵심 기능인 시간제돌봄과 급간식 및 놀이/쉼의 운영을 위해 아이돌봄실과 식당/조리실, 실내놀이터를 배치하였다. 소규모 시설 1안의 경우,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실내놀이터의 4개 시설·공간 중 국공립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2개 시설은 현행 법 기준에 따라 6인의 교직원이 배치된다. 융복시설로서 포괄적·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융복시설 대표와 코디네이터, 어린이식당의 조리사, 실내놀이터 직원(1인)의 배치가 필요하다. 50인이하 소규모 융복시설임을 고려하여 발달지원사와 간호사의 추가 배치와 공간의 구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써 총 4인의 추가 인력(센터장, 코디네이터, 조리사, 직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융복시설 센터장과 놀이터 담당 직원은 육아코디네이터(1인)와 조리사(1인)의 신규배치 등을 통해 업무 겸임(2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소규모의 경우 융복시설 전체 10명에 대해 신규인력의 배치 및 겸임을 통해 8명이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2안으로, 50인 이하 소규모 융복시설의 경우 과거 100인 이상의 중규모에 해당하던 지역의 거점 기관(예: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이곳에 추가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후돌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공동육아와 아동발달지원/부모지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소규모

융복기관의 운영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특구 특례조항을 통해 가령 50인이하 소규모의 경우, 융복시설의 다부문 역할과 서비스 기능을 중점 기관 한 곳이 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린이집에서 초등방과후돌봄까지 맡았던 연혁과 현재 일부 기관에서 유치원의 저녁돌봄을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협력하는 부분, 육종지의 서비스 역할을 어린이집에서 연계협력하는 사업 현황[35]을 고려할 때, 가능한 융복시설 운영(안)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규모 융복시설 운영모델(안)은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 SOC를 활용해 산재해 있는 기존 돌봄·교육 시설 및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로 기존 행정복지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스테이션 행정·돌봄+센터를 설치한 경상북도 사례와 같이 구도심 내 공적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소규모 상황일 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배치된 기관의 기존 인력으로는 전체 융복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육아코디네이터 1인을 배치하여 아동발달지원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겸임하도록 하며, 식당의 운영을 위해 영양사 1인과 조리사 1인을 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긴급돌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아이돌보미와 대체교사의 파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의 병원/보건소(소아청소년과)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순회간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35) 육아쉼표(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제도
육아쉼표는 2023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지원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임. 평일 야간(1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어린이집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험형 부모교육, 부모상담, 주말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보건복지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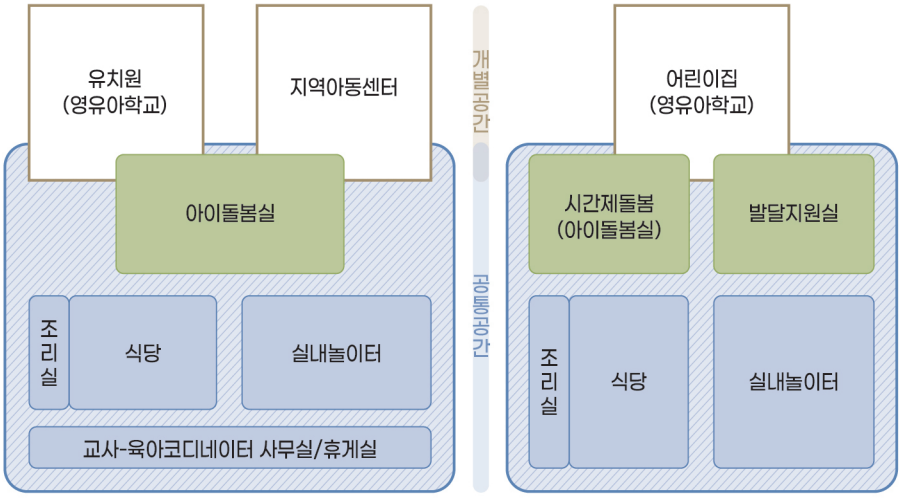
③ **소규모** 융복시설 기관 구성과 규모(정원) 설정: 이용아동 50인이하 가정

〈표 Ⅲ-2-5〉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소규모(안)

구분	시설 현황		시설 규모			융복합운영	
	돌봄시설 구성/조합	(수)	정원	대상 연령	현행 개별법 교직원 배치	융복합 공통인력 배치 (인건비지원)	공통 공간 (운영비 지원)
기본	국공립유치원(소규모) (가칭 영유아학교)	1	20	2~5세	원장 1, 담임교사 2인, 방과후 전담교사 1인	융복시설 센터장(겸임) 육아코디네이터 +1인 :(직원 겸임) 순환돌봄교사(파견) *순회간호사(지역병원 협력)	식당/조리실 교사 사무실/휴게실 (발달지원실) (아이돌봄실) 실내놀이터 (공용화장실)
	지역아동센터	1	20	(초등1-4학년) 6세~6학년	센터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1	10	영유아~ 초등1~2학년	-	아이돌보미 매칭(사전등록) *긴급돌봄대응 포함	
	어린이식당	1	(20)	전연령 아동		조리사 +1인 *급식지원센터(식단표활용)	
선택	실내놀이터(영유아+초등)	1	20/1회	영유아~초등6학년		(육아코디네이터 직원겸임)	
소 계		4	50			융복시설 총 10명→8명	

주: 1) Bold 음영 Box는 현행 개별 법 하의 시설-인력 배치를 의미함.
2)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 중으로 향후 통합기관 설치(가칭 영유아학교)를 가정함.
3) 소규모 유치원 반 구성: 2-3세 혼합연령반 10명, 4-5세 혼합연령반 10명

[그림 Ⅲ-2-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간 구성 - 소규모 모델



주. 저자 작성

다) 공간 시설설비

예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시설에 실내외놀이터를 비롯하여 휴게공간과 양호실, 조리실, 식당 등의 제반 시설설비를 반영하며, 필요시 증축과 개보수의 과정을 갖는다. 또한 지역 특구 내 융복합시설이 갖는 특장점을 반영한 지역 특화 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예: B지역 어린이식당 배치, C지역 초등학교 공간과 연결 등).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융복합시설이 개별 기관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공원과 녹지, 놀이공간의 제공 및 늘봄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예: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라)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기본과정과 방과후돌봄 및 야간, 휴일, 방학(농번기) 등의 운영이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도록 융복합시설 돌봄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개별기관의 고유한 서비스 운영을 제외한 방과후돌봄의 영역에 대해 공통-추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특별활동과 체험활동, 특기적성의 운영이 일관된 절차와 협

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이에 맞는 온-오프라인 시스템과 인력의 순환 배치가 요구된다(①~④ 규모별 운영모델안 참조).

마) 교직원 등 인적 운영과 비용지원체계 (인센티브 전략 포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규모별 반 구성이 아동 연령별로 연속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통인력(교직원) 배치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에 맞는 비용지원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융복합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기본돌봄시설 운영 + 선택시설α +지역특화시설 β), 해당 인력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예: 대체순환교사, 단시간돌봄교사, 발달지원사 배치, 평생교육사 등).

지역별 접근의 일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시설 교사 배치 기준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교육과정의 교수법을 운영하는 교직원의 경우 급여 수준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시범 적용과, 단시간 일시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특례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바) 운영방식

융복시설의 운영은 지역별로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지자체 직영의 과정을 거쳐 위탁운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공무원 파견을 통해 융복시설내 기관간의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이 가능한 행재정의 제도적 여건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 지역별로 위탁운영의 체계를 갖추어, 공공기관(예: 사회서비스원) 또는 복지재단을 통해 인력의 구성과 서비스 운영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표 Ⅲ-2-6〉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구성(안)

● : 법적 필수공간

돌봄시설	개별 공간 (또는 공통공간으로 구성)													기타 융복합시설 공통공간 구성							
	보육실 및 교실(연령)						놀이 공간 (유희실)	실외 놀이터	조리실	사무실 (상담실)	목욕실	자료실 (교구실)	교육실* (강의실)	공동 육아 공간*	양호실*	식당*	교사 휴게실	회의실	다목적실	부모 교류/ 대기 공간	실내 놀이터
	0	1	2	3	4	5															
시간제보육	○	○	○					○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	○	●	●					○	○	○	○	○	○	○
어린이집	●	●	●	●	●	●	○	●	●	●	●	○			○	○	○	○	○	○	○
육아종합 지원센터							○	○		●		●	●	○	○	○		○	○	○	○
공동육아 나눔터							○	○					○	○	○			○	○		○
유치원				●	●	●	○	●	●*	●		○			○	○	○	○	○	○	○
통합운영 협의체																					

* 공동육아공간 : 교사가 아닌 돌봄품앗이 등을 통한 돌봄공동체에 의해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
* 교육실(강의실) : 돌봄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 공간
* 양호실 :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1명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 식당 :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조리실 갖춰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자료: 권미경 외(2024). 공공택지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p. 228

(4) 융복합시설 3개 운영모델 실행 방안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대-중-소 규모 운영모델(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7〉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3개 정리

운영 모델	대규모 (8개시설, 200~300인 이상)	중규모 (7개시설, 100~150인)	소규모 (4개시설, 50인 이하)
인력 (개별; 현재)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원장1인, 담임교사9인, 보조교사 3인, 연장반 교사 2인, 사무직원 1인, 조리사 2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인, 교사 4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발달지원실):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직원 1인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원장1인, 담임교사4인, 보조교사 2인, 연장반 교사 2인, 조리사 1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인, 교사1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발달지원실): 보육요원 2인 -공동육아나눔터: 직원 1인	-유치원(가칭 영유아학교): 원장 1인, 담임교사 2인, 방과후전담교사 1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융복합 시설 인력/ 공간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현행인력+조리사1인) -실내놀이터(2곳): 직원 2인 -아픈아이돌봄센터 (+간호사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현행인력+조리사1인+영양사1인) -실내놀이터: 직원 1인 -아픈아이돌봄센터 (+간호사1인)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돌봄인력파견 -어린이식당/조리실: (+조리사1인) -실내놀이터(1곳)
	융복합시설 인력 구성(안)	겸임-순환근무를 통한 서비스 연계	
	• 융복합시설 센터장 • 융복합시설 육아코디네이터 • 융복합시설 식당(조리실) 조리사/영양사 • 융복합시설 발달지원사 • 융복합시설 실내놀이터 직원 • 융복합시설 아픈아이돌봄센터 • 융복합시설 순환돌봄교사(틈새/긴급돌봄 등)	← 개별시설 원장/센터장 겸임 ← 신규배치(또는 겸임) ← 어린이집 조리사/영양사 겸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요원 겸임 ← 직원 신규배치 ← 어린이집 간호사 겸임 +신규간호사 배치 ← 개별시설 교직원 순환근무(겸임)	
	융복합시설 총 36명 → 33명	융복합시설 총 22명 → 20명	융복합시설 총 10명 → 8명
공간 (공통)	식당/조리실, 실내놀이터, 교사 사무실/휴게실, 공용화장실(4개공간) 아픈아이돌봄센터(소규모 제외), 아이돌봄실, 발달지원실(3개공간)		
프로 그램	• 아침-연장/야간돌봄 • 휴일/주말 • 방학 • 긴급돌봄/아픈아이돌봄 • 연령별 특성화프로그램 및 부모교육/부모참여 공동 운영		
운영 체계	지자체 전담부서, 융복합시설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중간지원조직, 직영 및 위탁 운영-		
비용 지원 체계	[인건비 지원] • 기존인력 순환배치-수당지급 • 긴급돌봄대응-수당지급 •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인력-인건비지원		
	[운영비 지원] 시설면적·규모(정현원/교직원수), 돌봄시설 수 및 서비스실-공통/추가 시설·설비, 유관기관 인력파견/순회협력을 통한 효율화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지자체 적용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고려할 사항과 예상되는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예시로서 구도심 중 경제활동지역과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곳(서울 중구)과 인구감소지역(충북 단양군)에 해당하는 2곳을 임의로 가정하여 융복시설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가. 구도심 기존 주요 돌봄인프라 사례 검토(서울특별시 중구)

1) 서울 중구 인구 현황

○ 서울 중구는 2인 이상 세대 비율이 46.3%로, 1인 세대 비율이 과반이 넘음.

○ 영유아수는 3,651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 대비 3.0%로, 전국(3.9%), 서울(3.3%)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

〈표 Ⅲ-3-1〉 서울 중구 주요 돌봄 시설 개수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A)	세대수				영유아수(0-6세)	
		계 (B)	1인	2인 이상 (C)	비율 (C/B)	계(D)	비율 (D/A)
광희동	5,808	3,991	2,927	1,064	26.7	78	1.3
다산동	13,213	6,800	3,332	3,468	51.0	280	2.1
동화동	9,945	3,992	1,116	2,876	72.0	347	3.5
명동	2,607	1,398	977	421	30.1	38	1.5
소공동	2,189	1,249	750	499	40.0	91	4.2
신당동	7,422	4,736	3,171	1,565	33.0	145	2.0
신당제5동	10,171	5,424	2,824	2,600	47.9	293	2.9
약수동	16,100	7,754	3,209	4,545	58.6	519	3.2
을지로동	3,108	2,168	1,547	621	28.6	103	3.3
장충동	4,567	2,859	1,949	910	31.8	81	1.8
중림동	12,194	6,006	2,813	3,193	53.2	667	5.5
청구동	12,918	6,144	2,574	3,570	58.1	414	3.2
필동	4,267	2,715	1,854	861	31.7	81	1.9
황학동	12,749	7,492	4,454	3,038	40.5	414	3.2
회현동	4,349	2,497	1,532	965	38.6	100	2.3
계	121,607	65,225	35,029	30,196	46.3	3,651	3.0

주: 1) 2024년 4월 기준
2) 영유아수 연령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임. 인구수 대비 영유아수 비율은 전국 3.9%, 서울 3.3%임.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24.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https://jumin.mois.go.kr/#, 2024. 7.24. 인출).

2)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현황

○ 서울 중구의 아동관련 돌봄시설은 111개 수준임. 어린이집이 66개(59.5%)로 가장 많고, 다함께돌봄센터 17개(15.3%), 유치원 13개(11.7%), 지역아동센터 5개(4.5%) 순임.

〈표 Ⅲ-3-2〉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

단위: 개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다문화)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계	111	66	13	5	17	2	1	1	6
광희동	2	2							
다산동	12	4	2	3	2				1
동화동	6	3			2			1	
명동	10	9			1				
소공동	8	6	1		1				
신당동	5	1	1		2		1		
신당제5동	12	4	1	1	2	2			1
약수동	9	7	1		1				
을지로동	4	3	1						
장충동	4	2	1		1				
중림동	14	6	1	1	4				2
청구동	8	4	2		1				1
필동	4	1	2						1
황학동	6	6							
회현동	8	8							

주: 1)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안돌봄센터(9개), 학교밖돌봄센터(8개)를 포함함.
2)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공동육아방(2)이 포함함.
3) 기타는 사회복지관(3), 아동양육시설(1), 아동상담소(1),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1)임.

자료: 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목록.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0378/S/1/datasetView.do, 2024.7.24. 인출).
2)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 초등 돌봄센터(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402, 2024.7.24. 인출).
3)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http://sosc.or.kr/?page_id=3941, 2024.7.24. 인출).
4)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4. 7.19. 인출).
5)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2024. 7.19. 인출).
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온마을 아이돌봄(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656, 2024.7.24. 인출)

○ 서울 중구 소재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비율은 24개(36.4%)로 비중이 크고, 직장어린이집 부모의 거주가 중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돌봄시설 현황을 살펴봄.

○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경우, 서울 중구 아동관련 돌봄시설은 87개 수준임. 어린이집이 42개(48.3%)로 가장 많고, 다함께돌봄센터 17개(19.5%), 유치원 13개(14.9%), 지역아동센터 5개(5.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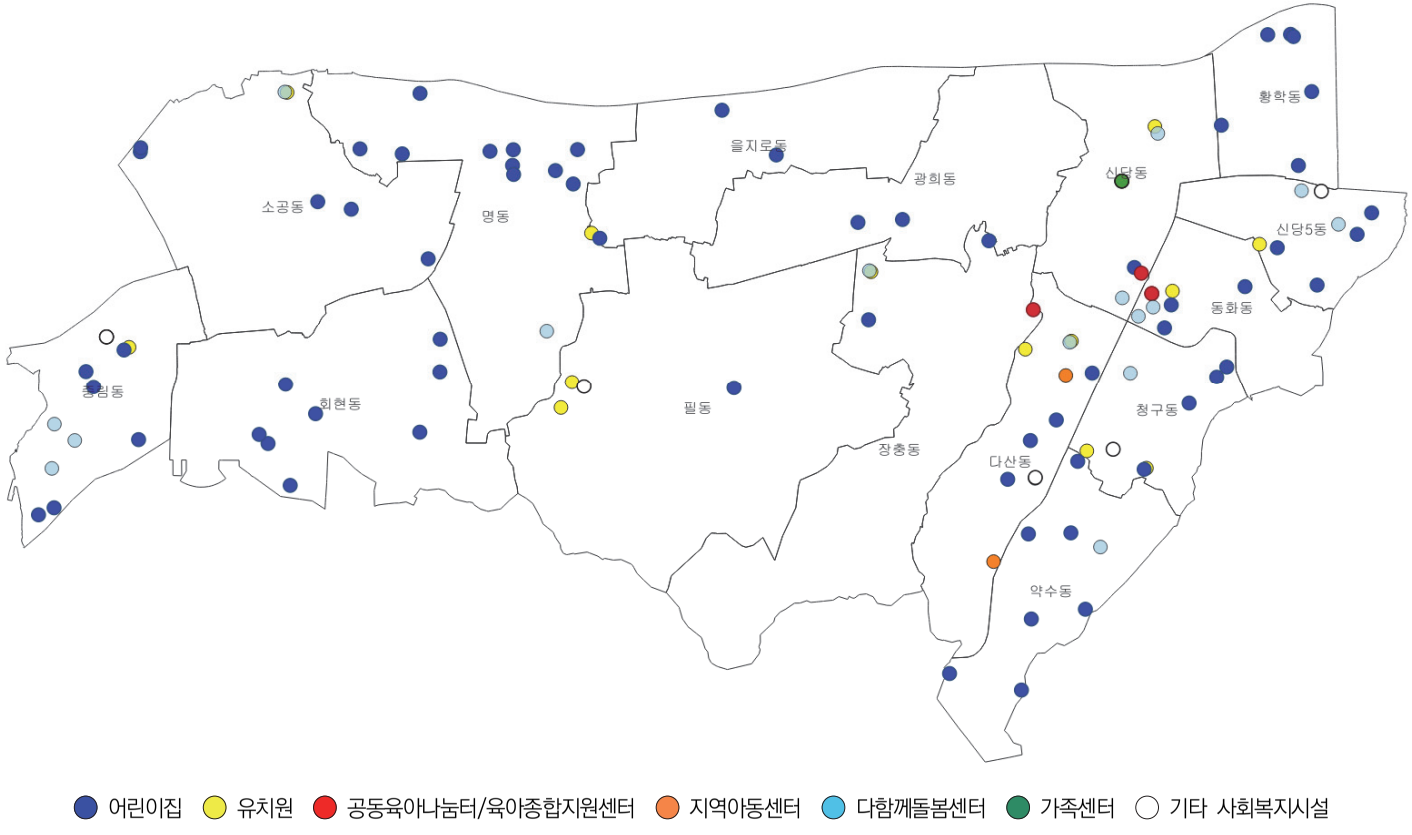
〈표 Ⅲ-3-3〉 서울 중구 주요 돌봄 시설(직장어린이집 제외)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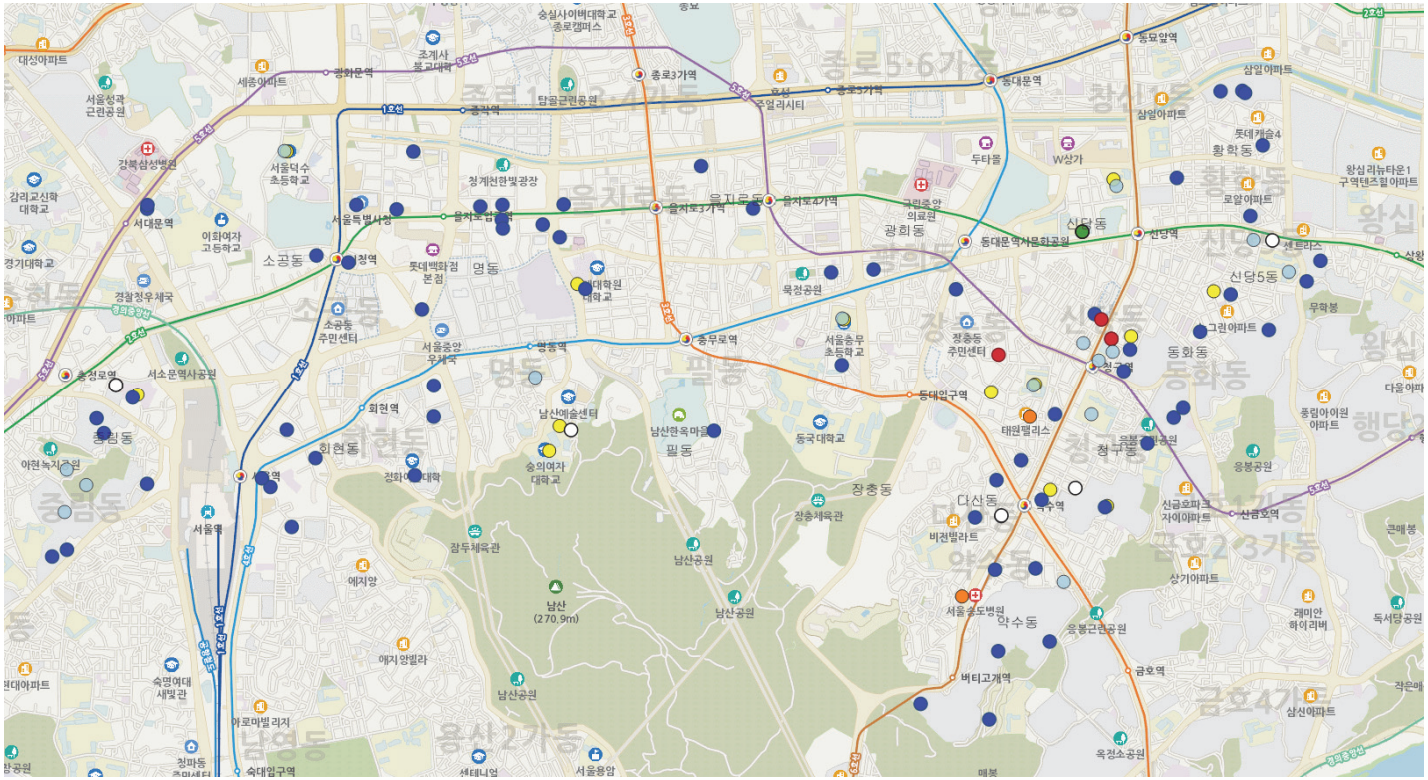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다문화)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계	87	42	13	5	17	2	1	1	6
광희동	1	1							
다산동	12	4	2	3	2				1
동화동	6	3			2			1	
명동	1				1				
소공동	2		1		1				
신당동	5	1	1		2		1		
신당제5동	11	4	1	1	2	2			1
약수동	9	7	1		1				
을지로동	3	2	1						
장충동	4	2	1		1				
중림동	14	6	1	1	4				2
청구동	8	4	2		1				1
필동	4	1	2						1
황학동	6	6							
회현동	1	1							

주: 1)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안돌봄센터(9개), 학교밖돌봄센터(8개)임.
2)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공동육아방(2)이 포함함.
3) 기타는 사회복지관(3), 아동양육시설(1), 아동상담소(1),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1)임.

[그림 Ⅲ-3-1]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분포1



[그림 Ⅲ-3-2]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분포2



○ 돌봄시설 이용대상은 크게 미취학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음영부분은 이용대상 연령을 나타냄.

- 미취학아 이용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
- 초등학생 이용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중·고등학생 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표 Ⅲ-3-4〉 서울 중구 돌봄시설 이용대상 연령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가다가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 육아방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사회복지 시설
0세	·	·	·	·	·	·	·	·	·
1세	·	·	·	·	·	·	·	·	·
2세	·	·	·	·	·	·	·	·	·
3세	·	·	·	·	·	·	·	·	·
4세	·	·	·	·	·	·	·	·	·
5세	·	·	·	·	·	·	·	·	·
6세	·	·	·	·	·	·	·	·	·
7세	·	·	·	·	·	·	·	·	·
8세	·	·	·	·	·	·	·	·	·
9세	·	·	·	·	·	·	·	·	·
10세	·	·	·	·	·	·	·	·	·
11세	·	·	·	·	·	·	·	·	·
12세	·	·	·	·	·	·	·	·	·
13세	·	·	·	·	·	·	·	·	·
14세	·	·	·	·	·	·	·	·	·
15세	·	·	·	·	·	·	·	·	·
16세	·	·	·	·	·	·	·	·	·
17세	·	·	·	·	·	·	·	·	·

주: 1) 이용대상 아동 연령 기준임
2)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기준에 따라 미취학아동인 경우도 가능함.

○ 돌봄시설 운영시간은 어린이집인 12시간 운영 원칙에 의해 가장 길고, 대부분 9시~18시 사이로 운영하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등은 부모와 영유아이용시간은 점심시간 이외 시간대를 이용타임을 설정하고 있음.

〈표 Ⅲ-3-5〉 서울 중구 돌봄시설 주된 운영시간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가다가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
			학기	방학	학기	방학					
07:30	■				▨						
08:00	■				▨	■					
08:30	■				▨	■					
09:00	■	■		▨	▨	■	■			■	■
09:30	■	■		▨		■	■		■	■	■
10:00	■	■		▨		■	■	■	■	■	■
10:30	■	■		▨		■	■	■	■	■	■
11:00	■	■		▨		■	■	■	■	■	■
11:30	■	■		▨		■	■	■	■	■	■
12:00	■	■		■		■	■	■		■	■
12:30	■	■		■		■	■			■	■
13:00	■	■	■	■	■	■	■		■	■	■
13:30	■	■	■	■	■	■	■	■	■	■	■
14:00	■	■	■	■	■	■	■	■	■	■	■
14:30	■	■	■	■	■	■	■	■	■	■	■
15:00	■	■	■	■	■	■	■	■	■	■	■
15:30	■	■	■	■	■	■	■	■	■	■	■
16:00	■	■	■	■	■	■	■	■	■	■	■
16:30	■	■	■	■	■	■	■	■	■	■	■
17:00	■	■	■	■	■	■	■	■	■	■	■
17:30	■		■	▨	■	■	■	■	■	■	■
18:00	■		■	▨	■	■	■			■	■
18:30	■		■	▨	■	■					
19:00	■		■	▨	■	■					
19:30	■		■	▨	■	■					
20:00			■	▨	■	■					

주: 1) 유치원 운영시간은 07:00~20:00인 경우 등 다양하게 있음.
2) 지역아동센터 음영은 필수운영시간이며, 체크무늬는 중구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시간이 가장 긴 센터의 시간임.
3) 다함께돌봄센터 체크무늬는 학교안돌봄센터 아침돌봄 시간임. 방과후부터 20:00까지 운영시간으로 방과후를 오후 1시부터로 설정함.

〈표 Ⅲ-3-6〉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정현원(직장어린이집 포함)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계a (A~E)	계b (A~B)	어린이집 (A)	유치원 (B)	지역아동센터 (C)	다함께돌봄센터 (D)	공동육아나눔터 (E)	어린이집	유치원	계b	어린이집	유치원	계b
계	6,372	5,314	4,158	1,156	54	970	34	2,563	864	3,427	61.6	74.7	64.5
광희동	183	183	183					115		115	62.8		62.8
다산동	605	406	232	174	54	145		138	136	274	59.5	78.2	67.5
동화동	339	235	235			95	9	143		143	60.9		60.9
명동	100	-	627			100		354			56.5		
소공동	662	562	490	72		100		347	46	393	70.8	63.9	69.9
신당동	250	158	106	52		78	14	74	31	105	69.8	59.6	66.5
신당제5동	441	387	292	95		54		173	66	239	59.2	69.5	61.8
약수동	654	573	445	128		81		267	98	365	60.0	76.6	63.7
을지로동	256	256	168	88				91	42	133	54.2	47.7	52.0
장충동	239	153	97	56		75	11	62	21	83	63.9	37.5	54.2
중림동	560	418	338	80		142		262	73	335	77.5	91.3	80.1
청구동	412	312	180	132		100		92	115	207	51.1	87.1	66.3
필동	358	358	79	279				42	236	278	53.2	84.6	77.7
황학동	289	289	289					201		201	69.6		69.6
회현동	397	397	397					202		202	50.9		50.9

주: 1)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는 별도 정원이 없음.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현원 자료 없음.

〈표 Ⅲ-3-7〉 서울 중구 주요 돌봄시설 정원(직장어린이집 제외)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계a (A~E)	계b (A~B)	어린이집 (A)	유치원 (B)	지역아동센터 (C)	다함께돌봄센터 (D)	공동육아나눔터 (E)	어린이집	유치원	계b	어린이집	유치원	계b
계	4,761	3,703	2,547	1,156	54	970	34	1,595	864	2,549	62.6	74.7	66.4
광희동	63	63	63					23		23	36.5		36.5
다산동	605	406	232	174	54	145		138	136	274	59.5	78.2	67.5
동화동	339	235	235			95	9	143		143	60.9		60.9
명동	100					100							
소공동	172	72		72		100			46	46		63.9	63.9
신당동	250	158	106	52		78	14	74	31	105	69.8	59.6	66.5
신당제5동	441	387	292	95		54		173	66	239	59.2	69.5	61.8
약수동	654	573	445	128		81		267	98	365	60.0	76.6	63.7
을지로동	186	186	98	88				58	42	100	59.2	47.7	53.8
장충동	239	153	97	56		75	11	62	21	83	63.9	37.5	54.2
중림동	560	418	338	80		142		262	73	335	77.5	91.3	80.1
청구동	412	312	180	132		100		92	115	207	51.1	87.1	66.3
필동	358	358	79	279				42	236	278	53.2	84.6	77.7
황학동	289	289	289					201		201	69.6		69.6
회현동	93	93	93					60		60	64.5		64.5

주: 1)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는 별도 정원이 없음.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현원 자료 없음.

〈표 Ⅲ-3-8〉 서울 중구 돌봄시설 교직원 수(직장어린이집 포함)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원장	보육교사	기타	교원				사무직원
					계	원장	원감	교사수	
계	962	66	826	70	84	10	7	67	41
광희동	41	2	39	0					
다산동	52	4	41	7	15	2	1	12	19
동화동	51	3	45	3					
명동	142	9	127	6					
소공동	129	6	114	9	7	0	1	6	5
신당동	20	1	18	1	3	0	0	3	2
신당제5동	59	4	51	4	8	1	1	6	0
약수동	88	7	74	7	10	1	1	8	0
을지로동	38	3	33	2	6	1	0	5	2
장충동	22	2	19	1	3	0	0	3	5
중림동	90	6	74	10	8	1	1	6	0
청구동	41	4	30	7	10	2	1	7	2
필동	18	1	15	2	14	2	1	11	6
황학동	69	6	57	6					
회현동	102	8	89	5					

주: 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가다가,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교직원 자료 없음.
2) 보육교사에는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를 포함함.

〈표 Ⅲ-3-9〉 서울 중구 돌봄시설 교직원 수(직장어린이집 제외)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원장	보육교사	기타	교원				사무직원
					계	원장	원감	교사수	
계	565	42	472	51	84	10	7	67	41
광희동	9	1	8	0					
다산동	52	4	41	7	15	2	1	12	19
동화동	51	3	45	3					
명동			0						
소공동			0		7	0	1	6	5
신당동	20	1	18	1	3	0	0	3	2
신당제5동	59	4	51	4	8	1	1	6	0
약수동	88	7	74	7	10	1	1	8	0
을지로동	23	2	20	1	6	1	0	5	2
장충동	22	2	19	1	3	0	0	3	5
중림동	90	6	74	10	8	1	1	6	0
청구동	41	4	30	7	10	2	1	7	2
필동	18	1	15	2	14	2	1	11	6
황학동	69	6	57	6					
회현동	23	1	20	2					

주: 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가다가,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교직원 자료 없음.
2) 보육교사에는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를 포함함.

3) 서울 중구 융합돌봄특구 설치 지역 설정(예시)

ㅇ 서울 중구의 0-6세 인구현황, 돌봄시설 현황, 이용아수 현황, 교직원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4개동의 융합돌볼특구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역(site) 특성: 0-6세 인구가 적고, 돌봄시설 공급이 적으면서 정원충족률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공립 위주(또는 사립법인)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동임.

〈표 Ⅲ-3-10〉 서울 중구 행정동(4개) 돌봄시설 주요 현황

단위: 개소(원), 명, %

구분	0-6세 인구	돌봄시설				정현원			교직원			
		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계	관리자	교사	기타 직원
계	343	12	6	4	2	846	484	57.2	111	10	83	18
광희동	78	1	1			63	23	36.5	12	1	10	1
을지로동	103	4	2	1	1	186	100	53.8	31	3	25	3
장충동	81	3	2	1		239	83	54.2	30	2	22	6
필동	81	4	1	2	1	358	278	77.7	38	4	26	8

주: 1) 직장어린이집(2)은 제외함
2) 어린이집은 국공립(4), 법인·단체등(2)임.
2) 일부 행정동은 유치원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고려해야함. 을지로동(영락유치원, 사립법인), 장충동(서울충무등학교병설), 필동(리라유치원, 숭의여자대학교부설, 모두 사립법인)임.
3) 기타는 장충동 다함께돌봄센터(1), 필동 아동양육시설(1)임.
4)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 유치원교사를 포함함.
4) 기타직원은 사무직원 등을 포함함.

〈표 Ⅲ-3-11〉 서울 중구 행정동(4개) 돌봄시설 세부 현황

단위: 개소(원), 명, %

구분	0-6세 인구	정현원			교직원 수				반 수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계	관리자	교사	기타 직원	영아반	유아반	기타
계	**343**	**846**	**484**	**57.2**	**111**	**10**	**83**	**18**	**30**	**23**	**23**
광희동	**78**	**63**	**23**	**36.5**	**43**	**4**	**20**	**19**	**4**	**1**	**5**
어린이집a	-	63	23	36.5	12	1	10	1	4	1	5
을지로동	**103**	**186**	**100**	**53.8**	**31**	**3**	**25**	**3**	**12**	**6**	**7**
어린이집b	-	49	34	69.4	13	1	12	0	6	3	4
어린이집c	-	49		49.0	10	1	8	1	6	0	3
유치원d	-	88	42	47.7	6	1	5	2	-	3	-
장충동	**81**	**239**	**83**	**54.2**	**30**	**2**	**22**	**6**	**10**	**7**	**6**
어린이집e	-	49	40	81.6	12	1	10	1	3	1	2
어린이집f	-	48	22	45.8	10	1	9	0	7	3	4
유치원g	-	56	21	37.5	3	0	3	5	-	3	-
다함께돌봄센터h	-	75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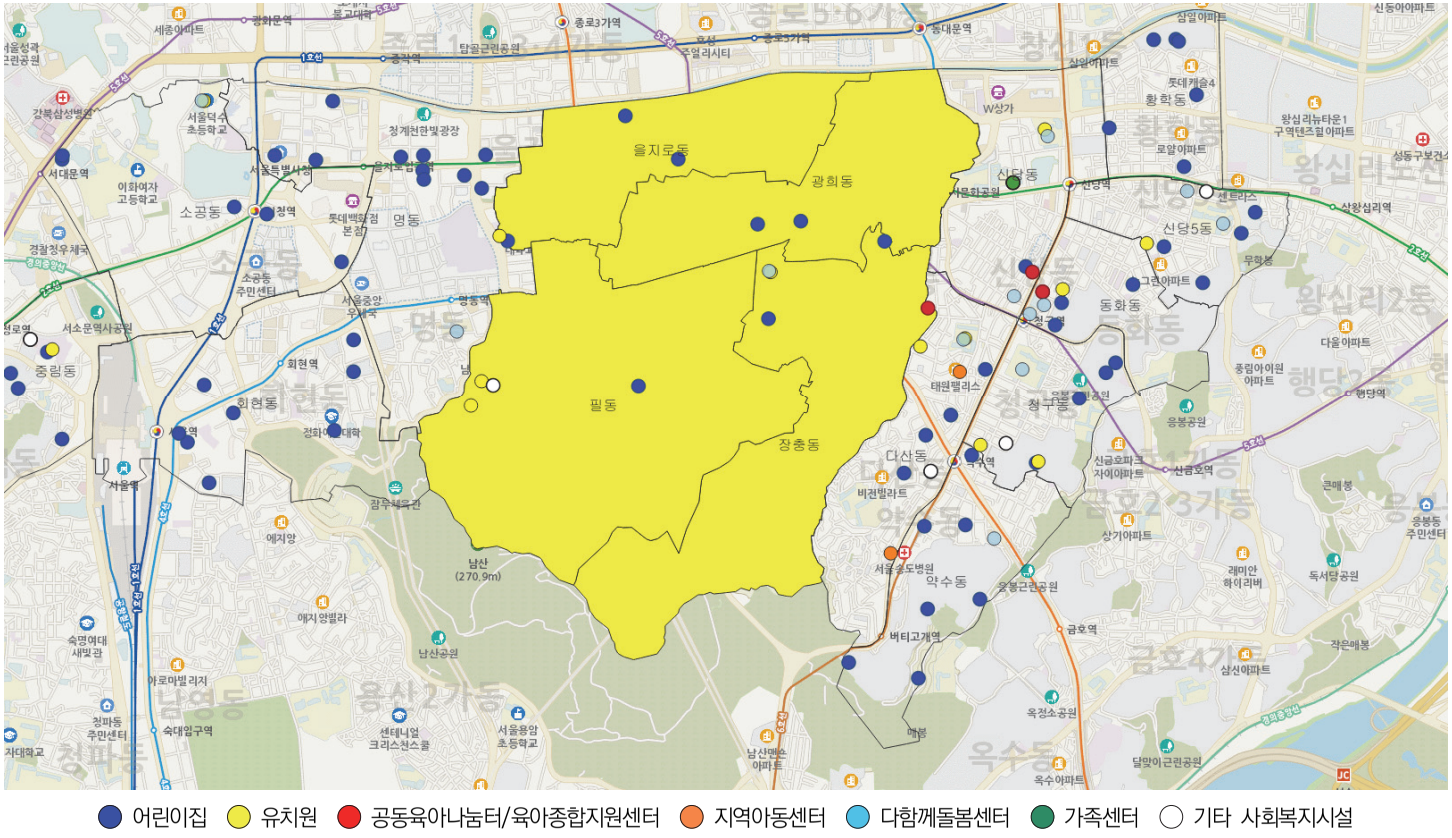
구분	0-6세 인구	정현원			교직원 수				반 수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계	관리자	교사	기타 직원	영아반	유아반	기타
필동	**81**	**358**	**278**	**77.7**	**38**	**4**	**26**	**8**	**6**	**9**	**5**
어린이집i	-	79	42	53.2	18	1	15	2	6	3	5
유치원j	-	60	59	98.3	5	1	4	0	-	3	0
유치원k	-	219	177	80.8	9	2	7	6	-	3	0
아동양육시설	-	-	-	-	-	-	-	-	-	-	-

주: 1) 직장어린이집(2)은 제외함
2)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 유치원교사를 포함함.
3) 기타직원은 사무직원 등을 포함함.
4) 반수에서 혼합반은 하위연령반에 포함함.
5) 반수 기타는 야간연장반, 연장보육반, 휴일반, 새벽반임.

○ 구도심 지역에 융복합시설의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예시하면 〈그림 Ⅲ-3-3〉과 같음.

- 기존 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어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지역의 이용 아동 수에 맞는 융복시설의 규모와 기관 구성을 선택하여 신규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그림 Ⅲ-3-3] 서울 중구 융합돌봄시설 적용 예시 지역



나. 인구감소 군지역 주요 돌봄인프라 사례 검토(충청북도 단양군)

1) 선정배경

○ 인구감소지역 중 군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인프라가 더 열악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예시함.

○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단양군은 아동돌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임.

- 단양군은 2개 읍, 6개 면, 152개 리(행정리)로 구성됨.

〈표 Ⅲ-3-12〉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계	아동·청소년	푸드뱅크	여성	성인	노인	장애인
단양군	**19**	**8**	**3**	**-**	**-**	**2**	**6**
괴산군	24	13	3	-	-	1	7
보은군	17	9	1	-	-	4	5
영동군	26	10	1	-	-	2	13
옥천군	19	9	2	-	-	2	6
제천시	54	23	2	-	-	5	24

주: 충북 단양군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중 3개는 청소낸 대상, 5개는 지역아동센터임.
자료: 충북복지넷(https://www.043w.or.kr/www/orgWelServSrch.do?key=119, 2024.8.14. 인출.)

2) 충북 단양군 인구 현황

○ 최근 10년간 단양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수 인구감소가 두드러짐.

- 전체인구는 2014년 30,948명에서 2023년 27,701명으로 3,247명(10.5%) 감소함.
- 0-6세 영유아인구는 2014년 1,122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573명(51.1%)로 크급감함.

※ 단양군 전체 인구대비 0-6세 인구비율은 2014년 3.6%에서 2023년 1.4%로 1.2%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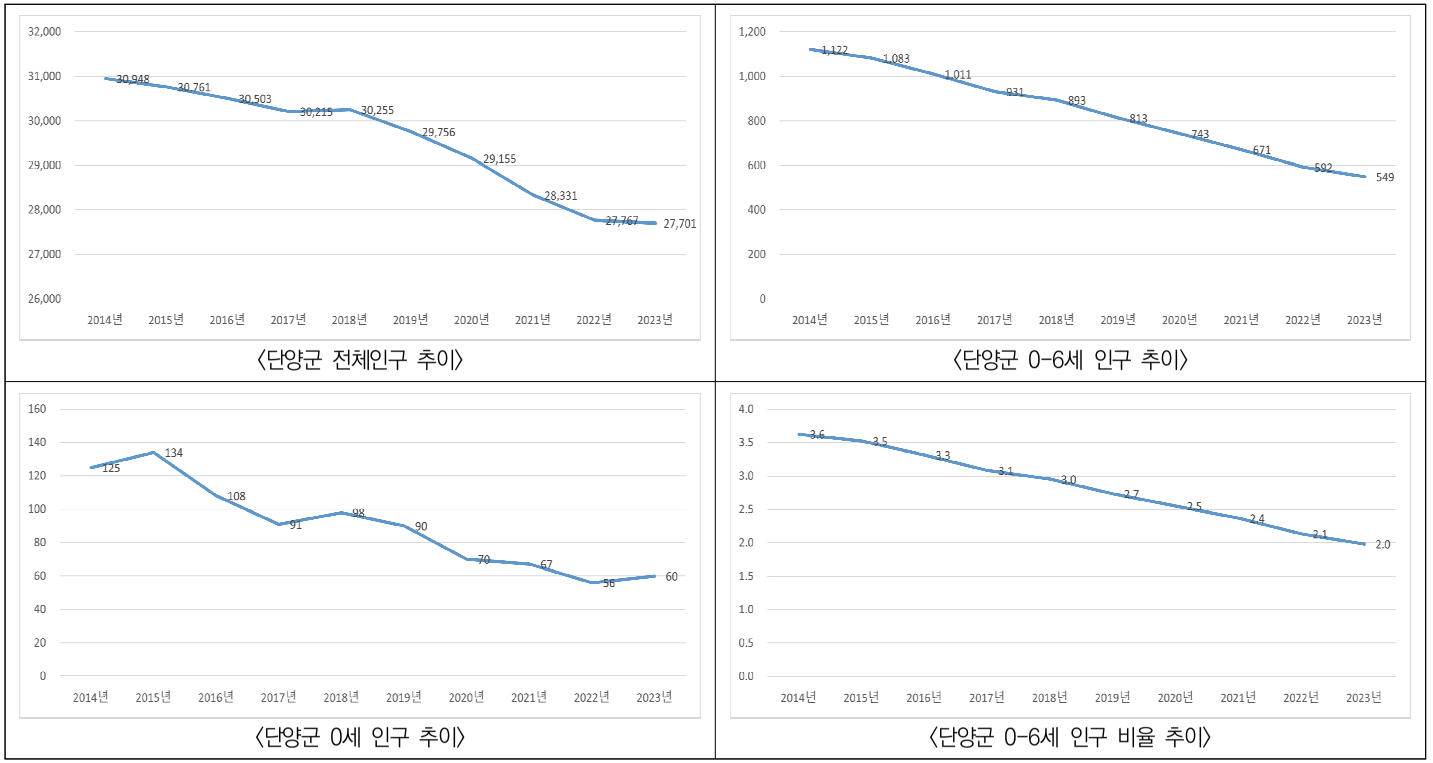
〈표 Ⅲ-3-13〉 충북 단양군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인구	계	30,948	30,761	30,503	30,215	30,255	29,756	29,155	28,331	27,767	27,701
	가곡면	2,121	2,146	2,133	2,146	2,155	2,098	2,102	2,072	2,044	2,023
	단성면	1,878	1,865	1,853	1,872	1,831	1,804	1,755	1,679	1,615	1,627
	단양읍	11,043	11,006	10,850	10,662	10,988	10,862	10,615	10,329	10,120	10,314
	대강면	2,542	2,520	2,541	2,558	2,523	2,515	2,499	2,449	2,391	2,363
	매포읍	6,461	6,375	6,235	6,058	5,839	5,584	5,419	5,223	5,109	4,918
	어상천면	1,865	1,827	1,862	1,907	1,949	1,972	1,932	1,861	1,843	1,865
	영춘면	3,470	3,454	3,472	3,444	3,410	3,357	3,299	3,193	3,131	3,098
	적성면	1,568	1,568	1,557	1,568	1,560	1,564	1,534	1,525	1,514	1,493
0-6세 인구	계	1,122	1,083	1,011	931	893	813	743	671	592	549
	가곡면	52	44	36	39	41	34	31	15	23	14
	단성면	30	34	27	31	25	19	21	14	13	13
	단양읍	530	529	510	470	466	431	399	379	339	348
	대강면	36	41	44	42	39	38	33	37	29	20
	매포읍	316	302	269	233	204	183	170	155	128	96
	어상천면	34	35	31	36	39	42	31	24	14	10
	영춘면	98	80	78	64	64	53	43	31	28	31
	적성면	26	18	16	16	15	13	15	16	18	17
0-6세 인구 비율	계	3.6	3.5	3.3	3.1	3.0	2.7	2.5	2.4	2.1	2.0
	가곡면	2.5	2.1	1.7	1.8	1.9	1.6	1.5	0.7	1.1	0.7
	단성면	1.6	1.8	1.5	1.7	1.4	1.1	1.2	0.8	0.8	0.8
	단양읍	4.8	4.8	4.7	4.4	4.2	4.0	3.8	3.7	3.3	3.4
	대강면	1.4	1.6	1.7	1.6	1.5	1.5	1.3	1.5	1.2	0.8
	매포읍	4.9	4.7	4.3	3.8	3.5	3.3	3.1	3.0	2.5	2.0
	어상천면	1.8	1.9	1.7	1.9	2.0	2.1	1.6	1.3	0.8	0.5
	영춘면	2.8	2.3	2.2	1.9	1.9	1.6	1.3	1.0	0.9	1.0
	적성면	1.7	1.1	1.0	1.0	1.0	0.8	1.0	1.0	1.2	1.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8.14. 인출).

[그림 Ⅲ-3-4] 충북 단양군 인구변화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8.14. 인출).

○ 충북 단양군은 2인 이상 세대 비율이 49.3%이고, 3인이상비율은 26.3% 수준임.

○ 영유아는 530명으로 단양군 전체 인구 대비 3.3%이며, 전국(3.9%), 충북(3.9%)보다 낮은 수준임.

〈표 Ⅲ-3-14〉 충북 단양군 인구 현황(2024년 4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A)	세대수						영유아수(0-6세)	
		계 (B)	1인	2인 이상 (C)	3인 이상 (D)	비율 (C/B)	비율 (D/B)	계(E)	비율 (E/A)
계	27,628	15,354	7,791	7,563	2,879	49.3	18.8	530	1.9
단양읍	10,274	5,194	2,353	2,841	1,364	54.7	26.3	336	3.3
매포읍	4,914	2,641	1,277	1,364	552	51.6	20.9	89	1.8
대강면	2,353	1,450	822	628	175	43.3	12.1	21	0.9
가곡면	2,031	1,176	614	562	174	47.8	14.8	14	0.7
영춘면	3,089	1,847	1,062	785	267	42.5	14.5	30	1.0
어상천면	1,865	1,101	565	536	139	48.7	12.6	7	0.4
적성면	1,481	940	522	418	80	44.5	8.5	16	1.1
단성면	1,621	1,005	576	429	128	42.7	12.7	17	1.0

주: 2024년 4월 기준임.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8.14.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https://jumin.mois.go.kr/#, 2024.8.14. 인출).

3)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현황

○ 충북 단양군 소재 아동관련 돌봄시설은 26개임. 어린이집이 12개(46.2%)로 가장 많고, 유치원이 7개(26.9%), 지역아동센터 5개(19.2%) 순임.

〈표 Ⅲ-3-15〉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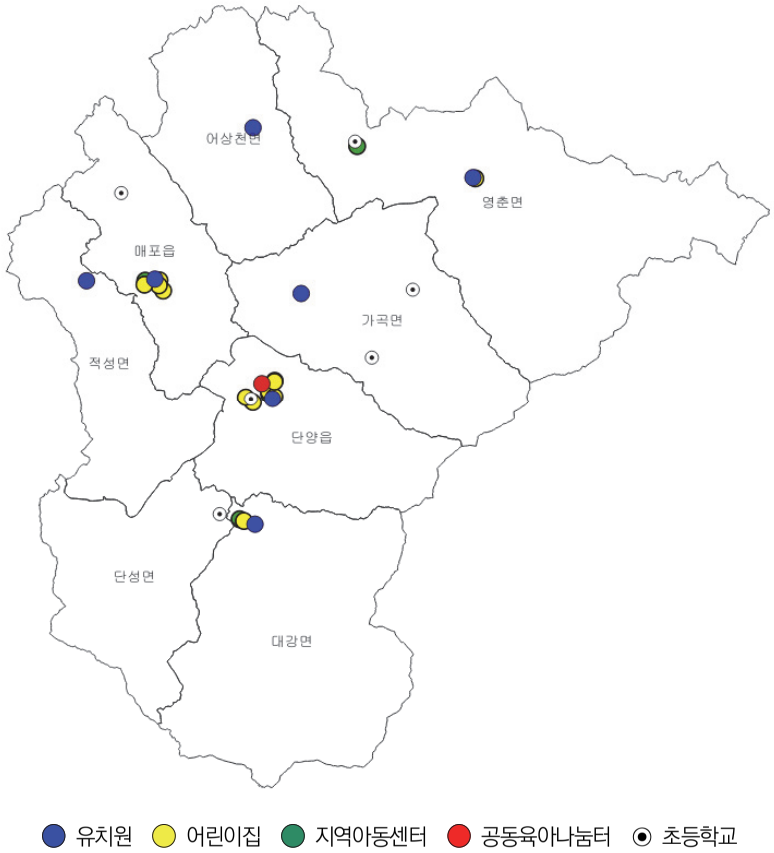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계	26	12	7	5	-	1	1	-
가곡면	1	-	1	-	-	-	-	-
단양읍	11	6	1	2	-	1	1	-
대강면	3	1	1	1	-	-	-	-
매포읍	6	4	1	1	-	-	-	-
어상천면	1	-	1	-	-	-	-	-
영춘면	3	1	1	1	-		-	-
적성면	1		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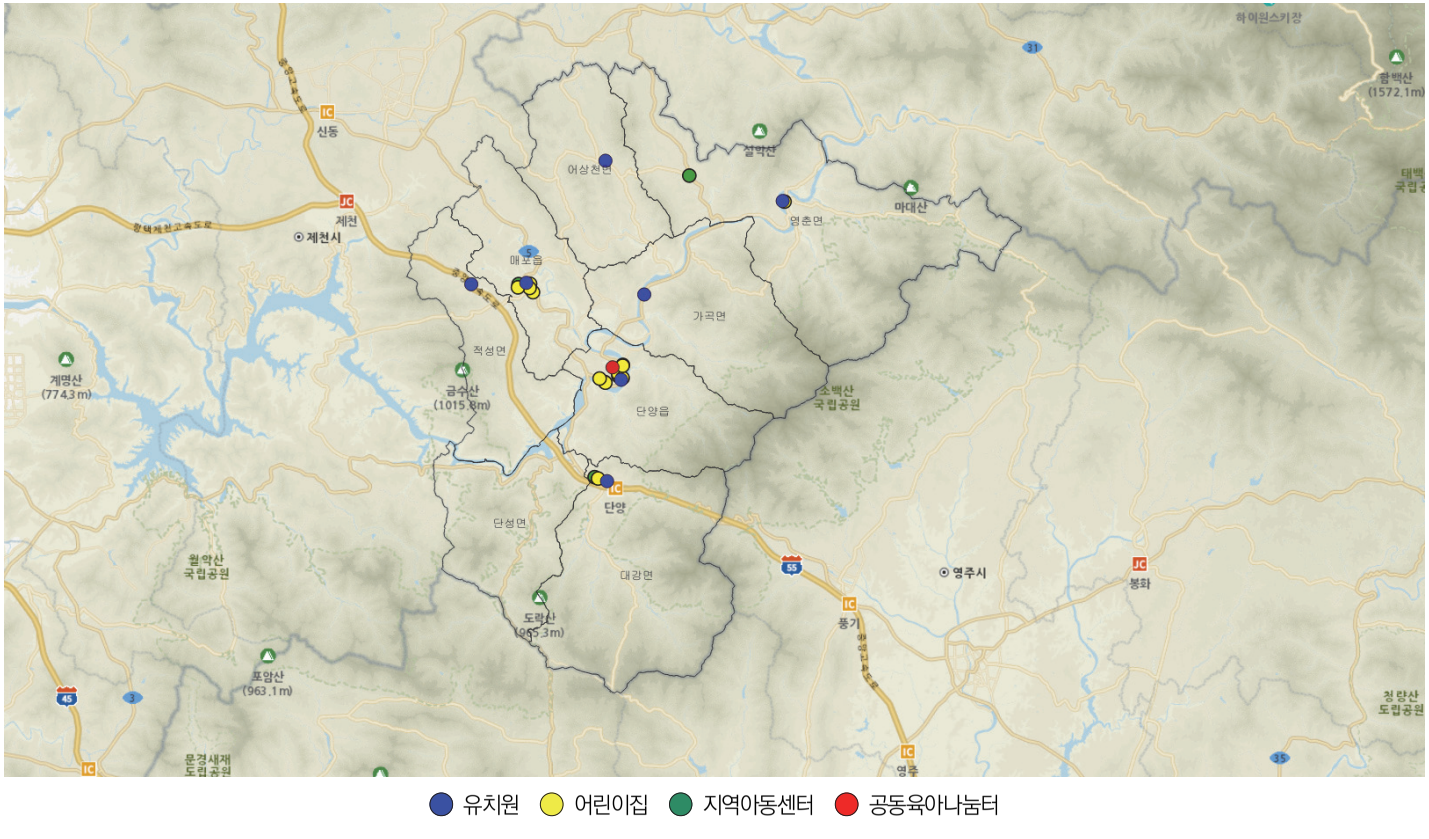
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없음. 사립유치원과 민간·가정·협동·직장 어린이집 없음.

자료: 1) 충북복지넷(https://www.043w.or.kr/www/orgWelServSrch.do?key=119, 2024.8.14. 인출).
2)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4.8.14. 인출).
3)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2024. 8.14. 인출).

[그림 Ⅲ-3-5]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분포1



[그림 Ⅲ-3-6]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분포2



〈표 Ⅲ-3-16〉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계
계	1,023	807	216	-	-	371	270	101	33.5	46.8	36.3
가곡면	17	-	17	-	-	3	-	3		17.6	17.6
단양읍	487	373	114	-	-	268	189	79	50.7	69.3	55.0
대강면	66	49	17	-	-	13	10	3	20.4	17.6	19.7
매포읍	315	298	17	-	-	68	63	5	21.1	29.4	21.6
어상천면	17	-	17	-	-	4	-	4		23.5	23.5
영춘면	104	87	17	-	-	10	8	2	9.2	11.8	9.6
적성면	17	-	17	-	-	5	-	5		29.4	29.4

주: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정현원 자료 없음.
자료: 1)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4.8.14. 인출).
2)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2024. 8.14. 인출).

〈표 Ⅲ-3-17〉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교원				사무직원
	계	원장	보육교사	기타	계	원장	원감	교사수	
계	106	11	84	11	31	1	1	29	14
가곡면					2			2	
단양읍	68	6	57	5	18	1	1	16	14
대강면	6	1	3	2	2			2	
매포읍	25	3	20	2	2			2	
어상천면					3			3	
영춘면	7	1	4	2	2			2	
적성면					2			2	

주: 보육교사에는 조리원을 포함하였음.
자료: 1)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4.8.14. 인출).
2)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2024. 8.14. 인출).

4) 충북 단양군 융합돌봄특구 설치지역 설정(예시)

○ 충북 단양군은 0-6세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간지역이 많아 인구 밀집이나 시설운영 지역이 제한적으로, 융합돌봄시설의 신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단양군청 기준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돌봄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어 단양군 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융합돌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부재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가정·협동·직장 어린이집이 없어 공공의 책무성이 중요한 지역으로, 융합돌봄모형에 대한 접근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지역에 융복합시설의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예시하면 〈그림 III-3-7〉과 같음.

[그림 Ⅲ-3-7] 충북 단양군 주요 돌봄시설 거리 비교(단양군청 기준)



다. 융복합시설 설치 고려사항-입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고려사항으로 융합돌봄특구의 특례와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지역을 정하는 입지 요건이 있다. 필수 인프라로서 돌봄시설의 설치는 '커뮤니티 중심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관련된 서비스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공원, 학교,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보권, 생활권, 역사 등이 입지요건으로 고려된다.

〈표 Ⅲ-3-18〉 융복합시설 설치 입지 고려사항

구 분	고려사항
융복합시설 설치 지역 특성과 입지 요건	• 구도심 내 설치 시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예정으로 육아계층의 유입이 예상되고, 재개발 등에 비용부담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 • 공동주택 중심 주거지역으로 충분한 자녀양육 가구층이 있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구지표 확인 필요 • 대규모 개발이 없는 경우 지역의 접근성-통근특성(대중교통, 자차이용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역 인근, 주요 보행이 집중되는 지역 또는 차량주차 용이한 지역(학교, 동사무소 등 유휴부지와 건물)을 고려 • 일반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도 지자체의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성 검토 • 업무지역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주요지점에 보육거점 조성 필요 • 거주인구의 연령구성, 업무지역의 직장인 인구특성 등을 파악 • 보행/교통의 편의성, 인근지역 안전성, 유해시설 인접여부, 공원 인접여부 등을 고려

주: 저자 작성

신규택지의 경우 위 고려사항을 활용하여 융복합시설의 신규 설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구도심의 경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방식과 구도심의 정비계획, 지역의 특성(업무지구, 주거지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돌봄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입지 선정 요건으로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첫째, '공간적 형평성'이란 원거리에 있는 수요 지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대거리를 최소화하며 원거리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둘째, '공간적 효율성'은 복지시설과 이용대상 간의 평균거리 또는 합계된 거리를 최소화 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즉, 제한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며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적 내에 수요자가 가능한 한 많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이진우·윤갑식, 2018). 그밖에 현행 법적으로 요구되는 돌봄시설의 입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19〉 아동돌봄시설 현행 입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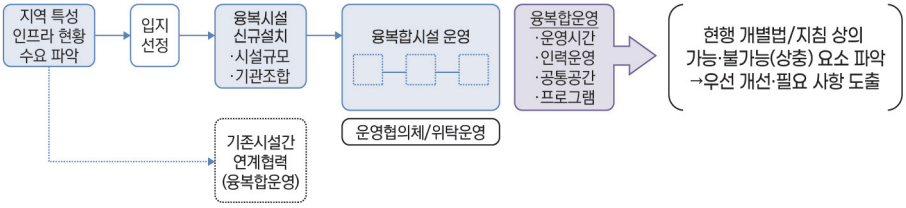
어린이집 (법 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 제한할수 있음.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우선설치지역(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단지 지역 • 의무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함(제12조제3항)	• 시설 50m 이내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옥외활동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5년)을 고려, 5년 이상 공간 확보 가능 • 지하 또는 반지하 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일조·통풍·환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1층/2층 설치 지향, 3층 이상은 양방향 피난 가능시 설치 권장 • 야외활동을 위해 놀이터, 근린공원으로 보행 접근이 안전하고 쉬운 위치 권장, 마당 등 개별 외부공간이용이 가능한위치권장 •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내 기존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센터 설치-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격거리는 주 도보 경로 500m이상 간격 설치권장. 인근 돌봄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 • 차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최종적인 밀도를 고려하여 마을단위 분산 배치 • 학교/집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설치 - 학교 기준 도보이용 10분 이내 및 안전한 이동 확보된 곳 우선

출처: 202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38)

라. 융복합시설을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 및 구도심 적용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Ⅲ-3-8] 지자체 아이돌봄융복합시설 설치·운영 진행과정



주: 저자 작성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융복시설의 설치를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모델과 관련 법규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복시설의 핵심개념인 '융복합운영'은, 기존 돌봄기관의 정원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예: 구도심)에서 시설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연계협력을 꾀하는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돌봄인프라의 지속가능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시설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돌봄시설 간 공통사용이 가능한 공간(예: 식당,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인력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연계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꾀하는 데에는 실행과정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운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운영모델의 적용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융복시설의 신규 복합화 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 간 연계협력의 융복합운영으로 접근할 경우 우선 융복합운영이 가능한 지역 사이트를 설정하고 물리적인 범위와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돌봄 시설과 공간들을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어느정도 수준의 연계협력과 공유를 통해 융복합의 협력적 운영을 꾀할 것인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운영모델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2장의 지자체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예: 복합시설내 식당 공통사용, 급식/놀이공간 활용, 방과후돌봄 아동 거점기관으로 이동 등). 앞서 제시한 운영모델 중,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모델의 적용이 실행 면에서 우선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융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다부처시설 간 연계협력의 융복합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 즉 법령/지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시설 설치와 운영의 요건과 기준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이한 층위를 가지고 누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단기간 내에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과 특례조항의 지속적 발굴와 적용, 그리고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현행 법규 하에서 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적 전략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한 융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핵심은 다부처시설을 한 곳에 집적하여 설치하고 일부공간(식당, 사무실, 놀이공간 등)을 공통으로 구성하는 복합설치의 근거와 복합설치 시 파생되는 법적 저해요인(예: 필수 시설·설비 요건의 확인)의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운영 면에서는 융복시설을 하나의 기관으로서 융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장하는 융복 시설장의 신규 역할과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 운영을 위한 인력의 겸임/겸직 및 교차-순환 근무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예산의 통합적 운영과 지출 과목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회계상의 규제 완화와 세부 운영요건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융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기반으로 첫째, 공통공간의 구성과 이로 인한 시설규모의 확대 등 융복시설의 '설치'가 법적 저촉 없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융복시설 '운영' 시 운영시간의 확대와 인력의 순환배치 및 겸임/겸직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들, 셋째, 개별 시설로 부여되는 예산 과목의 집행을 융복시설로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 기준 등 융복합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을 법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01 융합돌봄특구의 조성

02 융복합시설과 관련법령 개요

03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단계적 개선 방안

04 융복합시설 「특별법」 제정 방안

Ⅳ.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먼저 융합돌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권고되는 내용과 효율적 조성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융복시설 내 설치될 수 있는 개별시설을 정부의 제도개선 취지와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선정하여 현행 관련법령과 제도현황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융복시설 설치·운영 시 개별법령상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본장 마지막에는 융복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법에 담아야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언코자 한다.

1. 융합돌봄특구의 조성

융합돌봄특구의 조성과 관련한 제도설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구 조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융합돌봄특구 조성 방안

1) 융합돌봄특구 조성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구의 지정과 운영은 도입목적이 다를지라도 조성방식 및 지원수단 등은 유사하다. 또한 특구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도 규제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많다. 따라서 융합돌봄특구는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특구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특구 내 설치되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상위목표인 점을 분명히 하고, 적용대

상을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입법과 제도운영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아이돌봄 융합돌봄특구란 “여러 개의 아이돌봄시설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설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융합돌봄특구의 도입목적은 명확하다. 일정한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아이돌봄시설을 집적화하고 시설관리 및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를 활성화하여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집적화되는 아이돌봄시설의 이용자가 영유아와 아동이라는 점과 동 시설들이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등은 집적화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개별법령·제도와의 정합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적범위를 설정하여 규제완화와 특례 및 지원 등 제도설계를 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융합돌봄특구의 적용대상은 여타 특구의 그것과는 차별화된다. 국내 현행 특구 24종 중 적용지역 및 적용계층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때 본 융합돌봄특구와 적용대상이 겹치는 특구는 없다. 지역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선도적으로 도입되고 이용계층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융합돌봄특구는 그 지역적 범위가 여타 특구와 비교해서 좁은 반면 생활근거지와 가깝게 지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시 말해 융합돌봄특구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와 방식 등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융합돌봄특구 조성 고려점

융합돌봄특구의 조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부처·다법제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개별시설을 하나의 시설 개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융

합돌봄특구와 융복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개별법상 상충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특구의 시범운영,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경우 일반적 시설과 다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행·재정지원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될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지역의 운영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시범지역의 법률적 지위와 재정지원 그리고 추진방식과 절차 등은 일부 선행 특구의 운영사례에서 시사받은 바처럼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타당해 보인다.

융복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목적 중 으뜸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차별화의 구체적 내용은 규제완화와 특례의 인정일 것이다. 이 경우 규제와 특례는 일률적인 완화 또는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특구가 설치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과정에서 규제완화와 특례 인정사항을 찾고 이를 개선해 가면서 정식 특구로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경우 행정의 기술성 측면에서 앞서 제안한 바처럼 시범지역 운영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가 지원 대상지역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융합돌봄특구로써 정식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특구 중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특구에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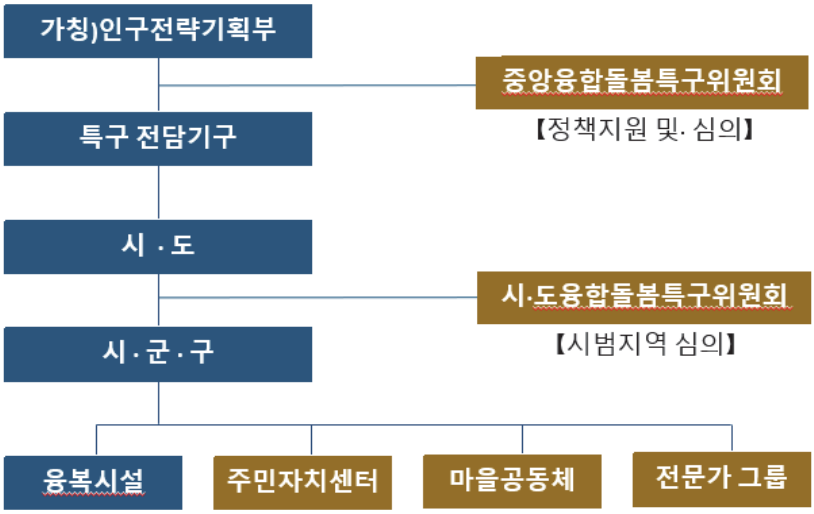
3) 융합돌봄특구 운영 방안

융합돌봄특구의 운영체계를 정리해 보면 〈그림 Ⅳ-1-1〉과 같다. 특구의 총괄사무는 저출산대응 담당부처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원대상 특구를 선정하여 지원사무를 담당한다. 중앙융합돌봄특구위원회는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예비특구지역의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심의한다. 시·군·구 특구협의체는 시·군·구청장이 관련기관·단체 및 개별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하며 해당 시·군·구청장이 시·도와 협의하여 시범지역을 선

정하고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향후 시범운영결과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융합돌봄특구 운영의 성패 또는 지속가능성은 해당 시·군·구가 추가적인 자부담 없이 소요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개별시설의 운영경비는 재원선을 따라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나 융합돌봄특구 및 융복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경비는 별도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원대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에 융합돌봄특구 설치·운영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1] 아이돌봄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돌봄특구의 지정 방식은 시범지역 선정과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한 성과평가를 거쳐 중앙정부가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추동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기간(예시, 3년) 시범지역 운영과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간 책임성과 노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융복합시설과 관련법령 개요

본 절에서는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융복시설은 모든 아이돌봄시설의 화학적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결합만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 시설이다. 개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서비스 목표가 존중되고 함께 설치되는 여타 시설과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공유가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융복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설치·운영코자 할 때 대상 개별시설로 어떤 것들이 제안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현행 법령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 연구대상 융복합시설

현재 정부는 부모 수요 및 국가정책 등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생활 SOC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통합과 연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분야에서는 유보통합, 통합돌봄, 늘봄학교 등의 사업명으로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이 분야 정책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우리는 앞장에서 금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최윤경 외, 2022:155-159, 최민아 외, 2023:167-172, 권미경 외, 2023:82-83.) 등을 고려하여 융합돌봄특구 융복시설 내 설치 가능한 기관(시설)을 필수시설과 선택시설 그리고 희망시설로 명명하고 구분하여 선정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시설 중 법적·제도적 장애요인과 개선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분석이 필요한 '연구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 시설들에 대한 현행 법령에 따른 제도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융복시설로 설치·운영시 장애요인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연구대상 시설은 주 이용아동의 평균적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표 Ⅳ-2-1〉과 같이 영아시설(그룹1), 유아시설(그룹2), 아동시설(그룹3)로 구분하여 개별시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구분의 실익은 시설별 공간 및 설비 그리고 인력의 공유 또는 융복합화 등에 유의점과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때 개별시설은 행정법 체계가 갖추어진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시설일지라도 정부정책의 방향을 고려하고 선행연구 등을 통해 부모 수

요도가 높게 나타난 시설에 기초하여 아동돌봄의 통합적 접근에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와 시설을 4장 법제도 고찰의 연구대상 시설군으로 포함하였다. 앞서 제안한 기본시설 외에 선택시설 중 어린이도서관을 추가함으로써, 도서관을 복합 설치·운영 할 경우 법제도 상의 고려사항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그룹1 영아시설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부모 부재시 일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아이돌봄실'은 돌봄종사자가 상주하여 부모로부터 아이의 돌봄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능면에서 유사하나 전자는 법적·제도적으로 설치 근거가 있는 시설인 반면 후자는 「아이돌봄지원법」상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할 뿐, 설치근거가 없는 시설이라는 점이 다르다.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Ⅱ(여성가족부b: 72-73)에 의하면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36]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이돌보미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이돌봄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한 종류인 '기관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상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융복시설 내 설치 운영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영아시설로 제안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설치근거를 둔 육아지원시설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해 본 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윤재석 외, 2019: 83; 김나영 외, 2019: 199). 특히 융복시설 내에는 유아 및 아동시설이 함께 설치된다는 점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37]'의 운영사례처럼 영아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융복시설에 설치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그룹2 유아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비교적 오랫동안 개별법 체계를 갖추고 설치·운영되어 온 시설이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현

36) 서비스 신청권자는 여성가족부 지침(2024 아이돌봄 사업안내)으로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서는 신청권자로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37) 인천광역시가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영아대상 공동육아나눔터로 2024년 9월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53개소가 운영 중임.

황분석과 개선점을 찾는 연구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돌봄위탁 시설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목적 육아지원 이용시설로써 기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당초 목표대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기관을 운영한다면 융복시설 내 '유보통합기관'의 설치는 더욱 용이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시설로써 유치원의 경우 융복시설에 설치할 경우 현행 법령대로라면 공립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곳에는 여타 시설과 다르게 공무원 신분의 유치원 교사가 근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동 시설은 지방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무이므로 이를 융복합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분소 또는 기능공간만 설치하는 방안(예를 들어 장난감대여점, 부모상담실만 이곳에 설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택의 폭이 오히려 넓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융복시설 내 설치대상 그룹3 아동시설은 어린이식당,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발달센터, 어린이도서관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시설에 대한 통합운영 수요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나 외(2023. p. 112-11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이 가장 통합운영을 희망하는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식당 순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동 연구에서 '부모들은 어린이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도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어린이식당은 개별법 체계를 갖춘 시설이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융복시설 내 설치하여 어린이식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 경우 관계법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특정 기관의 부속용도로써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고 있어 설치 방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 또는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지역아동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학교 밖 방과후 아동 돌봄시설이다. 시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 시설의 설치·운영 연혁이 비교적 긴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융복시설 내 설치는 두 시설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통합 등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방과후 돌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교

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38]'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학교 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사업을 늘봄학교로 확대하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지역교육공간 활용사업)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융복시설과의 차별화된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동발달센터는 「장애아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시설이다. 동 시설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f: p. 145.). 동 시설은 민간부문이 시설을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평가를 통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수준 가구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이들도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연혁은 짧으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우예신 외, 2021: p. 12-19.)행정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다.

아동발달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시설이나 생애초기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효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 분야 높은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보건복지부, 2024f: p. 145.)와 장애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적 사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법」상 유형분류는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용법규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이다.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은 이용자 중심으로 분류하여 명명한 것일 뿐 행정법상 별도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령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였다. 동 시설에 대한 부모수요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융복시설 내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조례 상 반영은 물론 특별법상 관련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38)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교육·돌봄프로그램임. 늘봄학교추진센터 홈페이지 https://afterschool.kosac.re.kr/main 2024. 9. 19 인출.

〈표 Ⅳ-2-1〉 연구대상 융복합시설

일번	구분	시설명	근거법	소관부처	비 고	
1	1	시간제보육기관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기본시설
2		아이돌봄실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3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법	여성가족부		
4	2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5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6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부		
7	3	어린이식당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8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9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10		아동발달센터	장애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11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선택시설

주: 1. 개별시설의 현행 법령/지침 검토와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 이용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함.
2. 법령명은 약칭(축약형)을 사용함.

나. 융복시설 관련법령 현황

1) 융복시설에 대한 적용법규 현황

융복시설은 개별시설의 복합체로 그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른 법령체계 속에서 설치와 운영이 규율된다. 융복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별시설의 복합건축물로 상정하고 논하고자 한다.

우선 건축물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표 Ⅳ-2-2〉와 같이 새로운 법체계가 등장할 수 있다. 먼저 복합건축물 내 시설의 용도와 기능의 확장과 관련하여 어린이식당, 아동발달센터, 도서관 등이 복합 건축됨에 따라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법규가 늘어나게 된다.

시설이 대형화되고 복합시설이 건축되면 소방안전에 대한 의무가 가중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규정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식당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상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 법령은 "다만,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설치될 경우 이 법의 안전시설 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39]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

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아동발달센터을 설치할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복합건축물이다는 점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융복시설의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법규가 늘어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을 3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Ⅳ-2-2〉 융복합시설 기능과 규모에 따른 적용 법규

구 분	법 명	적용기준	조 항
기능 (용도)	소방시설법	복합건축물	영 제5조관련 별표 2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집단급식소)	영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2조관련 별표 2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표 1
	공중화장실법	노유자시설등	영 제3조
규 모	시설물안전법	연면적 1,000~5,000㎡	영 제5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주: 법령명은 약칭(축약형)을 사용함.

2) 개별시설에 대한 적용법규 현황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로써 적용되는 법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융복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간 위임사항 및 준용 또는 의제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찾아보기 위함이다.

첫째로, 〈표 Ⅳ-2-3〉과 같이 개별시설의 근거법을 중심으로 법령 위계 상 개별법과 기본법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의 근거법은 「유아교육법」이나 모법인 「교육기본법」과 일반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교육환경법」, 「학교보건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등에 시설의 설치 및 공간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시간제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

3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 나목 라)항의 규정 참조.

터, 아동발달센터 등은 개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필요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통일된 규정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운영단계에서 회계관리 등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근거로써 개별법 체계를 갖고 있지 아니한 아이돌봄실과 어린이식당의 경우는 일반법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법」과 「식품위생법」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어린이도서관 또한 모법인 「도서관법」상 유형분류에 해당되나 적용법규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다.

〈표 Ⅳ-2-3〉 융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법령위계에 따른 적용법규

구 분	시설명	개별법	관련법령·조례		지침, 훈령 등
			기본법(모법)	일반법	
1	시간제보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유재산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법 고등학교이하설립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어린이놀이시설법 행정위임위탁규정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개별)	지구단위계획지침 민간위탁지침 교육부고시 11개 개별시설 사업안내(매년)
	아이돌봄실	--	--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2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3	어린이식당	--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발달센터	장애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법	도서관법		

주: 법령명은 축약형을 사용함.

둘째로, 융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적용법규를 〈표 Ⅳ-2-4〉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단지조성과 건축물 건립단계에서 입지 및 용도 등과 관련된 법규, 시설의 설치 및 공간구성 등 설치기준을 정한 개별법규, 그리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법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융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개별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상 적정

용도지역(지구)에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시설의 입지와 용도 등에 맞게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법(특별법)상 적용법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구분 항목별로 개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은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을 두고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개별시설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의 실현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시행규칙' 또는 '사업안내(지침, 훈령)' 등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규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관련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행정지침(사업안내)의 관련규정을 모두 확인하여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효율적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표 Ⅳ-2-4〉 용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설치관련 주요 적용법규

구 분	시설명	입지 및 용도	시설설치	운영(유지)관리
1	시간제보육기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영유아보육법	시설물안전법 소방시설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다중이용업소법 공유재산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위임위탁규정 지방자치단체조례(개별)
	아이돌봄실		영유아보육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법	
2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3	어린이식당		식품위생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아동발달센터		장애이동복지지원법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법	

주: 1. 법령명이 긴 경우 약칭을 사용함.
2. 하위법령(영, 시행규칙)과 지침·훈령 등은 생략함.

3.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단계적 개선 방안

본 항에서는 융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다부처·다법제 체제상 융복합화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입지 및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융복시설의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인력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규제(restriction)와 장애(barriers)요소를 발굴하여 효율적 설치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가.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법규

융복시설을 설치코자 한다면 현행 개별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11개 개별시설(기본시설+선택시설(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관련 기준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부록 2)에 의해 조사하고 이를 분석코자 한다. 이때 연구의 편의상 영아시설(그룹1), 유아시설(그룹2), 아동시설(그룹3)로, 즉 주이용자의 생애주기별 시설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코자 한다. 이는 공간 및 설비의 이용 또는 부대시설과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융복합화 또는 공유를 위한 유의점을 파악하는데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별시설의 입지조건과 건축물의 층수 및 공간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제한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 법령상 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은 물론 공동설비 활용 등에 대한 기준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설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융복시설로 설치·운영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자 한다.

1) 그룹1: 영아시설

기본시설로 제시한 그룹1 영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준은 여타 시설에 비해 단순하다. 이는 일단 설립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의 기관, 보호자의 동반, 비교적 짧은 이용시간 등에서 연유한다. 그러

나 유아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비해 정책연혁이 짧고, 제도화가 부족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이는 생애주기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시설에 대한 학술적,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도시계획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 관련 설치기준을 정할 때는 관계법령, 즉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 우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때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상충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한다.[40] 따라서 세 가지 영아시설 모두 '아동관련시설'로 묶어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설의 설치기준이 대부분 '지침(사업안내)'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이 부령으로 위임하고 부령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정하는 방식이다.[4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복합시설[42]로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를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가족사업안내(Ⅱ)는 시설공간과 관련하여 복합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b. p. 13.). 의무적 설치를 요하는 시설설비에 대해 〈표 Ⅳ-3-1〉과 같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보육실'을 공동육아나눔터는 '활동공간', '수유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들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대비시설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개별법상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융복시설로 설치·운영시 전체로써 필수적인 시설설비가 될 것이므로 장(항)을 달리하여 논한다. 그리고 아이돌봄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법상 설치근거가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므로 설치상 장애나 규제가 되는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40)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물 용도 분류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2024e). p. 17. 재인용.

41)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제3항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하고 동 부령(시행규칙) 제13조의 3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침(사업안내)으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4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는 시설의 통합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Ⅳ-3-1〉 영아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구 분		도시계획	건축물					안전시설
		용도	입지	용도	층수	복합설치	시설설비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국(영)§2/1]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	가능 [사§34의2]	보육실 [지침 30쪽]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지침 30쪽]
	아이 돌봄실	--	--	--	--	--	(돌봄공간)	--
	공동육아 나눔터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국(영)§2/1]	쾌적한 곳 [지침 11쪽]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	가능 [지침 13쪽]	활동공간 수유실,화장실 사무공간 [지침 14쪽]	비상재해대비시설 [지침 14쪽]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5.16.][대통령령 제 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별표1(건축물의 용도).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4) 보건복지부(2024a). 202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30.
5) 여성가족부(2024b). 2024 가족사업안내(Ⅱ). p. 11-14.

2) 그룹2: 유아시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 중 주이용자가 유아인 그룹2 시설은 〈표 Ⅳ-3-2〉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들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 반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이에 따라 적용법규가 매우 다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 특히 복합시설의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회계관리 등은 대부분 기본법인 「사회복시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치원도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법인 「교육기본법」과 관련법률 및 대통령령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융복시설로 설치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논하는 바와 다르게 제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이후에 '돌봄통합(아이돌봄 융복합)'을 거칠 것이라는 연구신념에 기반해 효율적 돌봄통합을 위한 융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접근이 시도[43]된 이래로 40여 년 동

안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두 개의 시설만을 통합하는 데 소요된 노력과 시간은 11개 또는 그 이상의 시설에 대해 돌봄통합을 고려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환언하여 융복시설 내 세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물 용도의 문제는 기존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융합돌봄특구의 입지 또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생애주기가 다른 시설들이 함께 설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령은 영아시설 및 유아시설의 대부분을 1층에 설치될 것을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군·구별로 보육계획[44], 유아배치계획[45]을 각각 수립하여 수요에 따라 설치물량을 배치하고 있다. 이 경우 입지와 관련하여 보육, 교육환경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6] 따라서 융복시설의 설치목적과 운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집적화와 효율성 가치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상충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요구된다.

세 시설 모두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 일부 제한적이지만 융복시설 내 복합설치는 가능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통합설치 운영 특례 규정[47]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고, 유치원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유치원 외의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48].

한편, 학교시설의 복합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내에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

43) 이옥 외(2006). 육아정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개발센터. p. 14.
44)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를 참조하여 재구성.
45)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를 참조하여 재구성.
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4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설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참조.
48)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유치원) 참조.

〈표 Ⅳ-3-2〉 유아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구 분		도시계획	건축물					안전시설
		용도	입지	용도	층수	복합설치	시설설비	
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국(영) §2/1]	접근성 좋고 안전한 곳 [지침 486쪽]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건(영) §3의5]	---	가능 [사§34의2]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영(영) § 12]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지 486쪽]
	어린이집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국(영) §2/1]	쾌적하고 안전한 곳 [영(칙) §9]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1층 건물전체(5층) [영(칙) § 9]	가능 [사§34의2]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등 [영(칙) § 9]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영(칙) §9]
	유치원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국(영) §2/1]	안전하고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 [교 §6/1]	교육연구시설(학교) [건(영) §3의5]	3층이하 [경지 212쪽]	가능 [주 §52]	대지,체육장, 교사, 조리실 등 [고(영) §3, 12. 17]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경지 212쪽]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5.16.][대통령령 제 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별표1(건축물의 용도).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4) 교육환경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8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6조 제1항(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52조(유치원).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3조(교사),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8) 경기도교육청(2022). 유치원행정업무메뉴얼. p. 212.
9)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 486.

다음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치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유아시설의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개별시설이 갖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설비가 있고, 공유가 가능한 시설설비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융복

시설 내 개별시설의 법적·의무적 시설설비의 '합집합'을 만들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시설 인허가 규정상 사무실, 자료실, 화장실 등은 개별시설의 필수설비로 각각 설치되어야 할 것이나 융복시설로 설치시는 공유를 전제로 크기 또는 양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각각의 법령, 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재해대비시설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융복시설로 설치·운영시 건축물의 규모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룹3: 아동시설

융복시설 내 설치될 수 있는 아동시설로 그룹3은 〈표 Ⅳ-3-3〉, 〈표 Ⅳ-3-3 계속〉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식당, 아동발달센터, 어린이도서관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를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발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어린이식당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앞선 세 시설은 개별법상 설치근거가 있고 나중에 언급한 두 시설, 어린이식당과 어린이도서관은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에 근거해 설치될 수 있다. 다만 이 두 시설은 이용자 중심으로 명명만 한 아동돌봄시설이다.

융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간 통합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여타 유형시설과의 통합설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교복합시설법시행령」에서는 초·중등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49]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식당과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개별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애요인 또한 없다. 따라서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법 단위로 시설을 특정하여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규정을 일괄하여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9) 학교복합시설법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제2호.

〈표 Ⅳ-3-3〉 아동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구 분		도시계획	건축물					안전시설
		용도	입지	용도	층수	복합설치	시설설비	
3	지역아동센터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국(영) §2/1]	쾌적하고 안전한 곳 [아(칙)§24]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	가능 [사§34의2]	거실,사무실, 양호실,상담실, 조리실,화장실, 급배수시설 [아(칙)§24]	비상재해대비 시설 [아(칙)§24]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국(영) §2/1]	쾌적하고 안전한 곳 [지침 10쪽]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	가능 [학(영)§2] [사§34의2]	활동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놀이공간 등 [아(칙)§21의2] [지침 22쪽]	비상재해대비 시설 소방안전시설 [지침 22쪽]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5.16.][대통령령 제 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별표1(건축물의 용도).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4조(시설기준 등), 제21조의2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6)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 10, 22.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은 물론 설치와 운영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시설이다. 융복시설 내 설치 시 두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설은 〈표 Ⅳ-3-3〉과 같이 설치시 고려되는 도시계획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는 물론 입지조건이 같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두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침[50]에서 "초등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시설의 공간설비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51]에서 〈표 Ⅳ-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p.10.

아동복지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공통시설기준 외에도 집단지도실과 식당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다른 조항[52]에서 설치기준과 공간설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의 별칭이다. 융복시설 내 동 시설을 두고자 한다면 일반음식점 신고 절차에 맞게 설치하게 되고,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코자 한다면 현행 법령상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융복시설로 설치·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급식소 객석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는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22.11.23. 개정). 이 경우 배식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으나 향후 융복시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예를 들면 융합돌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내 이격거리가 있는 시설들을 융복시설로 정할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식품위생법」상 시설설비 외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아동발달센터[53]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같은 법 제21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령상 아동발달센터는 시·군·구청장이 공모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즉, 공립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융복시설 내 해당 시·군·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와 복합설치 기준 등이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설의 입지 및 시설설비 기준은 〈표 Ⅳ-3-3 계속〉과 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 갖춘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51)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관련 '별표 2'
52)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 2관련 '별표 1의2'
53) 아동발달센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설명칭이며 법령상 공식명칭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임.

실현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공간, 사무실 외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Ⅳ-3-3 계속〉 아동시설 설치기준과 법규

구 분		도시계획	건축물					안전시설
		용도	입지	용도	층수	복합설치	시설설비	
	어린이 식당	--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영) §3의5]	--	--	급수시설, 조리장,창고 등 [식(칙)§96	--
3	아동발달 센터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국(영)§2/1]	접근성 고려 안전한 곳 [장(칙)§8/1]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건(영)§3의5]	--	가능 [사§34의2]	서비스공간, 사무실, 대기실, 편의시설 등 [장(칙)§8/1]	비상재해시설 소방안전시설 [장(칙)§8/1] [장(칙)§8의2]
	어린이 도서관	공공문화 체육시설 (문화시설) [국(영)§2/1]	--	교육연구 시설 (도서관) [건(영)§3의5]	--	--	서비스공간, 사무실, 화장실 등 [공(영) §3] [장(칙)§8/1]	소방안전시설 [소(영)§11/1]

주: 1) 어린이식당은 융복시설 내 설치시 '일반음식점'으로 설치할 경우를 전제로 조사한 것임.
2)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5.16.][대통령령 제 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별표1(건축물의 용도).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특례).
4) 식품위생법[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29.] [보건복지부령 제1000호, 2024. 3. 18., 일부개정] 제8조관련 별표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1조관련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특히, 서비스 제공공간에 투명창 또는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발달센터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시행규칙 '별표 1'[54]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외 기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유보되어 지침을 통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관련 '별표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1호마목에서 "기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도서관은「도서관법」의 분류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며 '작은도관'[55]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56]'이 확대된 개념으로 이를 다만 이용자 중심으로 명명한 시설이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법」을 모법으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관련법령에는 시설의 입지, 층수, 복합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법에서는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 법령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공중화장실법」에서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때 화장실 설비에 대해 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융복시설 내 설치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융복시설의 운영과 법규

융복시설이 일단 설치되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개별시설 또는 서비스의 운영관련 규정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살펴보는 일 또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11개 개별시설의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운영관련 규정들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시설의 인력관리 기준 및 회계관리, 안전관리, 일반관리 등 일반영조물 운영관리 시 적용되는 주요한 기준들을 유목화하여 조사표(부록2)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융복시설로 운영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자 한다.

1) 그룹1: 영아시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 중 주이용자가 영아인 시설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아이돌봄실,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세 기관의 운영방식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아이돌봄실은 아이를 기관에 위탁하여 종사자가 돌보는 방식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입소하여 돌보는 방식이다는 점에서 다르다. 반면,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공동육아나눔터

55)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56)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는 '공공도서관 유형별 면적기준과 소요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문화관광체육부, 2022:13-23.).

는 융복시설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나 아이돌봄실은 외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나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종사자의 소속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다르다.

〈표 Ⅳ-3-4〉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구 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인건비	겸임·겸직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당교사 채용,임면,보고 [지침 19쪽]	보육교사 자격(1-3급) 보육 3년이상 경력자 직무교육 이수자 [지침 37쪽]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지침 44-45쪽]	규정없음
	아이돌봄실	파견인력(아이돌보미) [지침 72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용료 부담)	해당 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 필수 보조인력 가능 [지침 11쪽]	해당 없음 (유사자격 활용 적용) 직무교육 이수자 [지침 11쪽]	사업비에 포함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지침 30쪽]	규정없음 (전담인력 배치 원칙) [지침 11쪽]

자료: 1) 보건복지부(2024a). 202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9, 37, 44, 45.
2) 여성가족부(2024b). 2024 가족사업안내(Ⅱ). p. 11, 30.

다부처 법제와 사업이 융합되어 운영될 융복시설의 회계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회계규정의 마련은 물론, 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자가 개별시설별 기준에 따라 예·결산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전산회계시스템은 기관의 예산회계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예산, 결산, 장부기록 등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처리를 위해 운용 중인' e나라도움'과 다르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평가인증시스템', '보육교사자격시스템' 등을 모두 통합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도 다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에서 어린이집 예산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며(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됨). 유치원은 회계관리가 포함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중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규정에 의해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

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이를 운영 중에 있다.

환언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회계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이하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표 Ⅳ-3-5〉와 같이 개별시설별 집행의 자율성은 현행 법령상 관련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제한적이다. 개별시설의 연간 재정규모는 서비스의 이용 형태 및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여타 생애주기 시설대비 작은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개별시설의 위탁에 대한 관련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 위탁수수료[57]를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세 시설 모두 소관법령 및 지침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융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시설이 각각 적용받고 있는 현행 회계규정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시설의 물리적 통합에서 오는 운영의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이 될 것이다. 융복시설 내 11개 시설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이 6개이고 교육문화분야 학교시설 1개, 도서관 1개, 가족분야 아이돌봄시설 2개, 근린생활분야 1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각 시설들의 재원선이 다르고 집행기준도 다르다. 그렇다고 각각의 회계규정대로 집행하게 된다면 융복시설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융복시설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세입은 개별시설의 재원선 기준에 따라 조치되고, 세출은 통일된 집행규정의 마련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융복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면, A 자치단체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가 조합된 융복시설을 설치했다면, 세입의 경우 융복시설에서 개별시설 지원조건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A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동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융복시설 지원예산을 산출하되, 예산을 교부할 때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별 지원액을 산출하여 하나의 비목(전입금 등)으로 교부하는 방안이다. 이때 세출은 개별시설들의 현행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융복시설에서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및 결산하도록 규정하고, 결산자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할 때는 당초 교부된 개별시설별 지원액 비율에 따

57) 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유아시설'에서 별도로 검토코자 함.

라 산출하여 하나의 비목(전입금 등)으로 결산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과 기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3-5〉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구 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집행자율	전산회계시스템	위탁수수료	재정규모(억원)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자체규정 (기타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적용) [지침 47-85쪽]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399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아이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501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공동육아 나눔터	수탁체 기준 준용 (건가다가 기준) [지침 30쪽]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218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자료: 1) 보건복지부(2024a). 202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30.
2) 여성가족부(2024b). 2024 가족사업안내(Ⅱ). p. 11-14.
3)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85(2022. 12. 20.)]. 재구성 산출.
4) 여성가족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및 후속조치 안내[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139(2022. 12. 6.)]. 재구성 산출.
5) 여성가족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396(2022. 12. 28.)]. 재구성 산출.

〈표 Ⅳ-3-6〉은 영아시설의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에 대한 규정을 분석·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규정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이는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는 구조, 시설의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시설의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시설은 모두 급식, 평가, 위탁관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이돌봄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 아이돌보미가 파견을 나오는 방식이므로 시설에 대한 평가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은 근본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표 Ⅳ-3-6〉 영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구 분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급식제공	보험가입	평가관리	위탁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규정없음	의무가입 [지침 21쪽]	규정없음	규정없음
	아이돌봄실	규정없음	규정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규정없음	권고 [지침 24쪽]	규정없음	위탁가능 [아 §19/2] [아(칙)§13의3/2] [지침 17쪽]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30.] [여성가족부령 제206호, 2024. 8. 30., 일부개정]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 등).
3) 보건복지부(2024a). 202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21.
4) 여성가족부(2024b). 2024 가족사업안내(Ⅱ). p. 17, 24.

다만, 보험가입의 경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침상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강제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법령상 관련규정은 없으나 지침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가입에 대한 예시를 두며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융복시설 내 세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험가입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시설 관련법령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융복시설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룹2: 유아시설

〈표 Ⅳ-3-7〉에서 제시한 세 기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육아 위탁기관인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와 보호자의 이용시설인 점에서 다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시·군·구 소관 사무이나 유치원은 지방교육청 소관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융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유치원은 공립시설이므로 공무원 신분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관련법령에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인건비 또한 지원되는 시설이다. 특히, 두 시설 모두 시설장의 경우 법령상 원칙적으로 겸임·겸직이 불가하다. 반면 유치원은 공무원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르고 법령상 겸임·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어린이집 원장이 이들을 임면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 2]에서 사회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 '그 밖에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은 '기타 보조인력'으로 특별활동강사,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파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 177).

융복시설 내 유아시설의 인력관리 부문에서 현행 개별시설의 장에 대한 겸직·겸임 규정과 소속 직원에 대한 배치 규정은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상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개별시설 간 인력의 탄력적 배치는 물론, 융복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A 시설의 장이 B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특히,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융복시설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 모두 설치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제도상 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 주도로 유보통합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간에 위수탁이 가능한 통합기관 즉 '가칭 영유아학교'가 도입된다면 융복시설 내 설치와 운영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7〉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구 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인건비	겸임·겸직
2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등 채용,임면,보고 [영§7/5] [영(칙)§2]	보육교사 등 보육 경력기준 직무교육 이수자 [영(영)§14/1,§15/1, §16/§16의2]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영 §36] [영(영)§24/1,2]	불가(상근) [영(영)§14/3]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인력 등 [영 §17/1] [영(칙)§10별표2] [영(칙)§11별표3]	원장, 보육교사 학력, 학점 등 [영§21/1] [영(영)§21 별표1] [영(칙)§12/1]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영 §36] [영(영)§24/1,2]	불가(전임) [영(칙)§10별표2]
	유치원	교사, 직원 등 [유§20/1] [유(영)§23, 24]	교원 등 직무교육 이수자 [유§22/1,2,3]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공무원 인건비]	불가원칙(허가시 가능) [지§56/1,2] [지(영)§11/1,2]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부개정]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4조(비용의 보조).
3)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4) 유아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제22조(교원의 자격).
5) 지방공무원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제11조(겸직 허가).

사회복지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은 지침(2024 보육사업안내: p. 85)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표 Ⅳ-3-8〉에 제시된 유아시설 모두 시설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불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설별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회계시스템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중앙정부 단위로 운용되지 아니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사례[58]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원은 유치원회계 및 전산회계시스템 운용에 대한 규정을 유아교육법에 두고 시행 중이다.

〈표 Ⅳ-3-8〉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구 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집행자율	전산회계시스템	위탁수수료	재정규모(억원)
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별표7,8)준용 [지침 489쪽] [사(칙)§10/3, §44]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329[59] (지방비 포함/ 2021년도 기준)
	어린이집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별표7,8)준용 [지침 85쪽]	규정없음	규정 없음 (일부 지자체 운영)	규정없음	96,330[60]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58) 인천광역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2023년부터 전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구 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집행자율	전산회계시스템	위탁수수료	재정규모(억원)
	유치원	유치원 회계 [유§19의7]	규정없음	별도 운용 [유§19의2/1,4]	규정없음	16,920[61]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사업안내(부록). p. 327.
2)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본문). p. 85, 489.
3)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및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 요청[보육사업기획과-4228(2022.12.27.)]. 재구성 산출.
4) 교육부(2023).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469쪽.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4조(시행세칙)
6) 유아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융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직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경우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정법상 영조물의 위탁운영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비용지원 및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일반법 및 관계법령에는 마련되어 있으나[62] 논의대상인 세 개별시설의 관련법령에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상태다. 시설 및 사무를 민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코자 할 때는 위탁계약서상 위탁수수료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므로 개별시설의 관련규정에 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아시설의 경우 이분야 대표적인 정부재정 투자사업이다. 2023년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9조 6,330여 억원의 재정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고, 유치원 유아교육에도 그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

59)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지아니함. 따라서 정부 통계가 남아있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된 금액이며, 운영비와 설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60) 어린이집 재정규모는 보육사업 소요예산(78,550백만원)으로 이중 부모급여·양육수당(17,973백만원 규모)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비교부액에 대한 지방비부담 요구액은 연구자가 역산하여 산출함. 각 지방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로 전출되는 누리과정 예산(17,780백만원)이 포함됨.
61) 유치원 재정규모는 유아교육사업비 규모로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62)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사된다. 영유아 및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정의 합리적 투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융복시설의 설치·운영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감소 현상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된다.

유아시설의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분 관련규정을 정리해 보면 〈표 Ⅳ-3-9〉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 및 공제회의 가입에 대해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급식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반면, 유치원은 설립인가 조건에 급식시설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유치원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는 조리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급식이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법적·의무적 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관리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정부가 주관하는 센터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령상 일정 주기별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동 평가체계는 시설의 운영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3-9〉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구 분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급식제공	보험가입	평가관리	위탁관리
2	육아종합 지원센터	규정없음	의무가입 [영(칙)§23별표8] [지침 481쪽]	규정없음	위탁 가능 [영 §51의2] [영(칙)§39의3/4]
	어린이집	급식 제공 [영§33] [영(칙)§34별표8] [지침 108쪽]	의무가입 [영(칙)§23별표8]	평가 시행 [영§30] [영(칙)§31/4]	위탁 가능 [영 §24] [영(칙)§24/9] [행(영)§11/1]
	유치원	급식 제공 [유(칙)§3별표1] [고(영)§3/2]	안전공제사업 (기타 개별법상 보험가입) [학§11, 12]	평가 시행 [유§19] [유(영)§20,21,22]	규정없음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영유아보육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3조(급식 관리),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31조(평가의 실시), 제34조(급식 관리),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3) 유아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제19조(평가).
4)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제3조(급식 시설 · 설비 기준).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제3조(교사).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 9. 19.,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9)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본문). p. 108, 481.

이에 따라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이 평가를 받게될 때 일반의 개별시설과 평가체계상 구조적인 장애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융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공유설비, 직원배치, 프로그램 등이 평가기준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융복시설 초기 정착기에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신뢰가 매우 요구되는 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나 유치원은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융복시설 내 유치원을 설치하게 되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자체(교육청)가 공무원(유치원 교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매우 복잡한 융복시설 운영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 후 통합기관 즉 '가칭 영유아학교' 중 위수탁이 가능한 유형을 정하고 이를 융복시설 내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룹3: 아동시설

융복시설 내 설치될 수 있는 아동시설은 〈표 Ⅳ-3-10〉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식당, 아동발달센터, 어린이도서관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전술한 두 시설은 위탁돌봄시설이나 후술한 세 시설은 아동대상 이용시설로써 융복시설 내 아동은 물론 필요시 외부 아동에게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시설로 제안한 시설/공간 외에 선택시설 중 어린이도서관

을 복합 설치·운영했을 때 법령상의 장애요인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설치하여 독립시설로 둘 수도 있겠으나, 집단급식소의 설치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관련규정에 융복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력의 배치와 자격기준은 관련규정에 따르되, 겸임·겸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치해도 무방해 보인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여타 개별시설의 조리원 인건비 절감분을 융복시설 인건비(코디네이터 등)에 대체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에 법령상 배치하여야 하는 간호사, 영양사 등은 어린이식당이 운영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융복시설 내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모두 설치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두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달리 두고 있어 각각의 규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어느 한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법에서 아동복지시설로 분류하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설 간 겸임·겸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63]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Ⅳ-3-10〉 아동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인력관리 부문]

구 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인건비	겸임·겸직
3	어린이 식당	조리사(40인이상), 영양사(100인이상) [영(칙)§10별표2] [식§51,52]	조리사 (면허) 직무교육 이수자 [식§53] [식(칙)§83/1,2,3]	규정 없음	가능 (제한적) [식§51,52]
	지역아동 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영)§52별표14]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보수교육 [아(영)§52별표15] [지침 58-61쪽]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아(영)§54] [지침 113쪽]	불가 [아(영)§52별표14]

63)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임. 같은 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기준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의2관련 별표1의2에서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관(사업안내 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인건비	겸임·겸직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돌봄선생님 [아(칙)§21의2 별표1의2] [지침 68쪽]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아(칙)§21조의2 별표1의2]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아§44의2] [지침 140쪽]	불가 [사§35/1] [지침 69쪽]
	아동발달 센터	기관장, 인력 [사(칙)§3/1별표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기타 [사(칙)§3/1별표1]	인건비 간접지원 (이용자 바우처) [지침 213쪽]	불가 [사§35/1] [지침 198쪽]
	어린이 도서관	사서 (1명 이상) [도(영)§33/1별표5]	사서 (대학 등전공) [도(영)§33/1별표5]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등) [도§33/1.2]	규정없음 (임면 시 사서직) [도§34/1]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10조관련 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식품위생법[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조리사의 면허).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4) 아동복지법[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5)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 7. 9., 일부개정]제52조관련 별표 1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별표1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54조(비용보조).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1조의2관련 별표1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7)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조관련 별표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5조(시설의 장).
8) 도서관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9) 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제33조관련 별표 5(사서의 배치기준).
10) 보건복지부(2024d).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pp. 56-61, 113.
11)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p. 68-69, 140.
12) 보건복지부(2024d).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 198, 213.

아동발달센터는 기관·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이용자에게 바우처 형식의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발달센터에는 별도의 인건비

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융복시설 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 근거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는 바우처는 전액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위임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지침(사업안내)상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어[64] 법령 위계가 미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상근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겸임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융복시설 내 설치시 유자격 종사자 간 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바, 「도서관법」외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작은도서관진흥법」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 운영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은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형태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양하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어린이도서관의 인력관리에 관한 내용은 동 조례로 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현행 법령상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나 관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융복시설 내 시설장의 겸임·겸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의 회계관리에 대한 법규분석은 자체 회계관리 규정의 유무, 전산회계시스템 운영 여부, 재정사업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융복시설 내 설치·운영 시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나아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있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 보장 여부, 위탁수수료 지출 등에 대한 조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후자의 집행의 자율성 보장 및 위탁수수료 지출에 대해서는 다섯 시설 모두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집행의 자율성 보장 여부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비목 간 전용·이용 등이 가

64)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198쪽에서 기관장 상근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령상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능하고 결산도 이에 상응하게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융복시설은 이러한 회계관리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 다섯 개 아동시설 관련법령에서는 관련규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이나 행정사무를 민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코자 할 때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비용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중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다섯 시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법상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Ⅳ-3-11〉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발달센터는 자체 회계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아직 행정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식당과 어린이도서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산회계시스템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외 나머지 시설은 법령상 이에 대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융복시설 내 설치 시 모든 시설을 통합하는 통일된 전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해 보인다.

〈표 Ⅳ-3-11〉 아동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회계관리 부문]

구 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집행자율	전산회계시스템	위탁수수료	재정규모(억원)
3	어린이 식당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해당없음 (국비지원 없음)
	지역아동 센터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사§6의2,23/4,34 /4,45/2] [지침 106-131쪽]	규정없음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활용 [지침 141쪽]	규정없음	411,749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다함께 돌봄센터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사§6의2,23/4,34 /4,45/2] [지침 114-163쪽]	규정없음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활용 [지침 114쪽]	규정없음	121,731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구 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집행자율	전산회계시스템	위탁수수료	재정규모(억원)
	아동발달센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사§6의2,23/4,34/4,45/2] [지침 213쪽]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192,364 (지방비 포함/ 2023년도 기준)
	어린이도서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해당없음 (국비지원 없음)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재산 등),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5조(후원금의 관리).
2) 보건복지부(2024d).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pp. 106-131, 141.
3)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p. 114-163, 114.
4) 보건복지부(2024f).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 213.
5)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 국고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치단체 보조 확정예산 통보[인구정책총괄과-6492(2022.12.29.)]. 재구성 산출.
6)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4 다함께돌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인구정책총괄과-7248(2023.12.28)]. 재구성 산출.
7)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 통보[장애인서비스과-7297,7281(2022.12.28)]. 재구성 산출.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투자 규모는 정부지원 여부 및 이용자 수 등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식당과 어린이도서관은 현행 국비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비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65]. 향후 융복시설 내 후술한 두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재정지원 및 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동시설의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분에 대한 개별법규를 분석하면 〈표 Ⅳ-3-12〉와 같다. 우선 급식과 관련하여 급식 제공 여부 및 시설관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시설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법령에서도 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발달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은 시설의 기능 및 운영 특성상 관련규정이 부재하다.

현행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별시설이 이를 설치(신고)하고 급식

65) 인천광역시는 매년 지방비로 작은도서관 348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590백만원 규모임(인천광역시 2024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문화정책과 9-11쪽)

을 제공하고 있다. 집단급식소의 설비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 조항[66]에서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규격, 어떤 재질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실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내용 외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어린이식당을 설치·운영할 경우 개별시설들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융복시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운영기준’[67]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정할 뿐 여타 시설 이용자 또는 외부 아동 등에 대한 이용 및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

복지시설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 중이나 신설될 어린이식당과 어린이도서관은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시설 단위 보험가입 보다 융복시설의 설치운영 취지에 비추어 특별법 제정 시 이를 반영하여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표 Ⅳ-3-12〉 유아시설 운영기준과 법규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부문]

구 분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급식제공	보험가입	평가관리	위탁관리
3	어린이 식당	집단급식소 [식(칙)§95 별표24, 96 별표 25]	규정없음	규정없음	위탁 가능 [행(영)§11/1]
	지역아동 센터	급식 제공 [아(칙)§24별표3] [지침 63쪽]	의무가입 [사§34의3/1] [사(영)§18의3]	평가 시행 [사§43의2] [사(칙)§27의2/1,2,4] [아(영)§54/2]	위탁 가능 [사§34/5,6] [사(칙)§21/1~6, 21의2/1]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 제공 (매식 가능) [지침 74쪽]	의무가입 [사§34의3/1] [사(영)§18의3]	평가 시행 [사§43의2] [사(칙)§27의2/1,2,4] [지침 152-153쪽]	위탁 가능 [아§44의2/2] [아(칙)§21의2별표1의2] [지침 33-37쪽]

6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67)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4(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구 분		건강·위생 및 일반관리			
		급식제공	보험가입	평가관리	위탁관리
	아동발달 센터	규정없음	의무가입 [사§34의3/1] [사(영)§18의3] [장(칙)§9별표2]	평가 시행 [장§21/7,10] [지침 248쪽]	규정없음
	어린이 도서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위탁 가능 [행(영)§11/1]

주: 법령명은 [] 안에 첫 글자로 기재하되 (영)은 시행령, (칙)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은 법령 조문의 표기임. 또한 '지침'은 개별사업의 '사업안내' 등을 의미함.

자료: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95조관련 별표 24(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관련 별표 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 9. 19.,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1조의2관련 별표 1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24조과련 별표 3(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제43조의2(시설의 평가).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일부개정] 제9조관련 별표 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9)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p. 33-37, 74, 152-153.
10) 보건복지부(2024d).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p. 63.
11) 보건복지부(2024f).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 248.

아동시설의 평가체계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련법령상 시설 및 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서비스 품질평가의 근거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다만, 시설평가 부분이 융복시설 설치·운영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융복시설 내 설치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공유설비의 이용, 또는 연계 프로그램 활용 등을 이유로 평가지표 상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복시설 내 아동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어린이식당의 경우 개별시설 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위탁이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는 관련법령상 위탁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발달센터는 민간시설을 시·군·구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위탁관리의 여지가 없고 어린이도서관은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관련법령상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위탁운영 관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은 융복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개별시설의 근거법령에 위탁관리 규정을 두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으나, 특별법에 융복시설 자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 시설에 포함되는 개별시설은 위탁이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개별법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단계적 법·제도 개선방안

지금까지 다부처·다법제 체제로 운용되는 아이돌봄 개별시설을 융복합화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점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개별지침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장 특별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을 개정한 후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작이 더디고 타당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앞서 밝힌 바처럼 법령 등의 개정 상황을 중심으로 장단기 추진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초기단계'는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별시설 근거법률의 하위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하면서 다음으로 늦지 않게 '발전단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발전단계의 핵심은 특구지정 및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별법률 및 관련 일반법률 등을 개정하여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1] 관련법령 제·개정 등 단계적 추진



1) 초기단계

이 항에서는 융합돌봄특구의 지정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제도를 완비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우선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코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Ⅲ장에서 검토한 운영모델 중 '〈표 Ⅲ-2-1〉 대규모 융복시설 기관 구성과 규모 설정안'(이하 '대규모 모형')중 행정법 체계가 갖추어진 기본시설(6개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를 상정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하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후 필요한 나머지 항목의 개정방향과 형식에 대한 길라잡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설치분야

(1) 융복합시설 설치근거 마련

먼저 융복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선 조치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법령에 동 시설의 명칭을 규정하고자 할 때도 요구된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 중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는 당사자와 사회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68]」상에 동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3-13〉과 같이 용어의 정의와 설치 관련 조문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타 개별법과 조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방법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아래 표에서 예시된 안과 같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란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개별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육아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융복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정해두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아이돌봄 융복합 시설'의 조를 두고 이곳에 설치·운영 근거,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융복시설의

6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2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3-13〉 융복합시설 설치·운영 근거 조문안

구 분	개별법령(지침 포함)	
	현행	개정(안)
아이돌봄 융복합 시설 설치·운영 근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신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란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개별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육아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신설〉	제8조의2(아이돌봄 융복합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이가 양질의 양육서비스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융복합시설 '통합설치기준' 마련

융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개별시설의 설치기준 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로써 '통합설치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은 대부분 각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될 것이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 또는 추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통합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융복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비상대비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의 설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이나 시설 및 설비의 공유를 위한 설치기준 등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별표 1'를 신설하여 '통합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아동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Ⅳ-3-14〉와 같이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또는 공간,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이 포함되어 규정된다.

그러므로 융복시설의 '통합설치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개별시설에서 정

하는 내용 중 통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과 상충되는 것들을 조정하여 정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 융복시설 통합설치기준에 포함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설치기준의 맨 앞에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는 조항을 둔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은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나, 동 절차 이행 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통합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 기준에는 이용아동의 연령과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융복시설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내 개별시설의 배치 및 층수 등을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물의 입지조건은 교통, 환경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지만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개별시설의 층별 배치는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생애주기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이기도 하다. 앞항에서 살펴본 바처럼 개별시설 간 입지와 층별 배치기준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시설이 정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안전, 환경, 교통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등으로 정하고, 층별 배치기준은 개별시설의 주 이용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1층의 경우 신생아와 영아시설을 배치하고 최고층은 아동시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동 기준에는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놀이공간 등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설비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제3장에서 살펴본 운영모델에서 기본시설에 포함된 '아이돌봄실'이 별도 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그 밖에 선택시설과 지역특화시설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조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시설·설비의 규모 등 구체적 설치기준은 이용인원 및 개별시설의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 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정한다.

【넷째】 융복시설의 특장점으로 꼽히는 개별시설의 기본서비스 운영시간 외 연장 또는 방과후 과정이나 또는 잔류 아동에 대한 연장돌봄을 일정한 장소에서 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활동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도 동 기준에 포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 기준에 놀이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개별시설의

설치기준에도 놀이터 설치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나 융복시설 전체로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하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반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안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개별시설의 법령 등에도 각각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융복시설 전체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비상재해대시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일곱째】 융복시설 내 집단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둔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에 정하고 있는 조리실을 개별시설의 부속용도로써 조리실이 아니라 융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되, 그동안 영유아 집단급식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제도화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덟째】 동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즉 내부 마감재료, 놀이공간 울타리 또는 난간의 높이 등과 같은 세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사업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동 설치기준에 포함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개별시설의 설치기준이 규정된 각 개별법령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여야 한다. 개별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표 Ⅳ-3-14〉 현행 개별시설 설치기준 비교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 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 내용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쾌적한 곳, 위험시설 이격 등 나. 어린이집의 규모	1. 법령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 1의2] 2. 내용 가. 면적 : 전용면적 - 총 66㎡ 이상 나. 갖추어야할 공간 설비명 - 놀이(활동)공간, 사무공	1. 법령 : 2024 가족사업안내(Ⅱ) 10~15쪽 2. 내용 가. 입지조건 - 쾌적한 곳, 위험물질 노출 없는 곳, 이용자 접근성 용이한 곳 등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정원 300명 이하 등 다.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층수, 복합설치,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놀이터 등의 구조 및 크기, 면적, 재료 등에 대한 기준	간, 화장실, 조리실	나. 설치공간 - 총 66㎡ 이상 - 놀이공간, 화장실, 수유실 등 다. 비치물품 - 소화기, 장난감, 매트, 의약품, 기타 비품 등

(3) 하위법령 등 우선 개정할 내용(설치분야)

특별법 등 제도개선을 완비하기 전 단기적으로 우선 융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법상 설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되, 통합설치기준과 상충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는 개별시설 설치기준 중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설치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꼭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제Ⅲ장 운영모델 중 '대규모 모형'에 포함된 기본시설 여섯 개 시설 중 현행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또는 최소한의 현행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우선하여 융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가지 고려할 점은 이 모형에 포함된 여섯 개 시설을 모두 빠짐없이 조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융복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법령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융복합시설 설치

앞서 언급했듯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상 설치근거를 마련한 후 각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에도 융복합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는 사회복지시설 간에는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과의 통합설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에는 이 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선은 각 개별시설 법령 및 지침상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겠다. 다음에서 개별시설별로 살펴본다.

- 어린이집에 대한 융복합 설치 관련 규정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관련 별표 1에 '복합설치 허용시설'이 열거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열거된 시설 외 다른 시설과는 복합설치가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동 항목에 '융복합 시설'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지침에 복합설치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동 지침 (16~17쪽)에는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나열하고 있어, 동 항목 내역에 '융복합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업지침(사업안내 본문, 486쪽)에 복합설치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만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융복시설의 설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지침 해당 항목에 '융복합 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함이 적절하다.
- 공동육아나눔터 역시 사업지침(Ⅱ권, 13쪽)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지침상 '활용가능공간'에 대한 규정을 통해 아동·가족 관련시설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융복시설 내 설치는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 아이돌봄실은 근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공간만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융복합 설치 관련 장애요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 어린이식당은 집단급식소의 다른 표현이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식품위생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융복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표 Ⅳ-3-15〉 융복합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 사항

시설명	융복합 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1)복합설치 허용시설 가)육아종합지원센터 나)기숙시설 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 동 규정 외 여타 시설과는 복합설치 불가	〈항목 신설〉 1)복합설치 허용시설 가)~다) (생략)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2024 다함께 돌봄	나. 설치가능 건축물 -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상 동	〈내역 추가〉 나. 설치가능 건축물 - (생략)

시설명	융복합 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사업안내 16-17쪽	- 사회복지시설 -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사회복지시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 (생략)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 보육사업안내 (본문) 486쪽	나. 설치기준 1) 입지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과 복합 설치 가능 여부 미흡	〈내역 추가〉 나. 설치기준 1) 입지조건 - 어린이집,---,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024 가족사업안내 (II) 13쪽	2) 활용가능공간 - 학교부지, 국공유지 등 건물에 (중략) 아동·가족관련 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공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이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식당	식품위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 생략 12. 집단급식소 가. ~바. 생략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어린이집과 다돌의 부속용도 설비로만 설치 가능 • 여타 시설의 아동또는 지역아동에게는 급식 제공 제한	〈항목 신설〉 12. 집단급식소 가. ~바. 생략 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아.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주: 1. 아이돌봄실은 융복시설 내 마련되는 별도 공간을 의미함(이하 본 절, 본 항에서 같음).
2.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나) 건축물의 공간·설비 등 공동설치·사용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개별시설의 공간 및 설비기준 등은 이후 시설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요건이 된다.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할 경우 구조 및 설비의 층별배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동설치·공동사용이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는 앞서 '통합설치기준'에서 정하도록 하였지만, 개별시설의 법령 등에도 이를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관련 별표 1에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의 인·허가 처리와 운영상 필요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융복시설로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설치할 경우 제한사항인 층별 배치, 출입구 분리, 수도계량기 분리 등은 그 밖에 개별 시설 등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므로 융복시설 내 설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이 지향하는 정신을 살리되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동 항목을 아래 〈표〉와 같이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1조의2 관련 별표 1의2에 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동 기준에는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처리 기준이 될 것이므로 융복시설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표〉와 같이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업지침(2024 보육사업안내 본문, 486쪽)에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과 추가적으로 예시를 통해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설치의 경우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표〉와 같이 동 규정에 공동설치·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4의2]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규칙상 설치하여야 할 '공간설비' 즉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융복시설 내 공동설치·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표 Ⅳ-3-16〉과 같이 규정을 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표 Ⅳ-3-16〉 건축물의 공간·설비 공동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공간설비 등 공동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3. 구조 및 설비기준 가. ~다. (생략) 라. 〈신설〉 마. 〈신설〉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과 시설·설비를 공동설치 및 공동사용할 수 있는	〈항목 신설〉 3. 구조 및 설비기준 가.~다. (생략)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시설명	공간설비 등 공동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별표1		규정 미비	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3호 가목의 2)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3호 가목의 4)의 설비 중 나)조리실, 다)목욕실, 라)화장실, 마)교사실, 바)놀이터, 사)급배수시설, 아)비상재해시설은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사용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1. 설치기준 가. (생 략) 나.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갖출 것.	상 동	〈항목 신설〉 1. 설치기준 가.~나. (생 략)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나항의 설비를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사용할 수 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2024 보육사업 안내 (본문) 486쪽	나.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트의 (중략)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 〈신 설〉	상 동	〈내역 추가〉 나.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생 략)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위 설비를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사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4의2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생략) 2)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신 설〉	상 동	〈항목 신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생략) 2) (생략)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위 설비를 여타 시설과 공동설치·사용할 수 있다.

시설명	공간설비 등 공동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아이 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식당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1. ~3. (생 략) 4. 화장실, 가. 건축물 내 공동사용 가능. 5. (생 략)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 아이돌봄실과 어린이 식당은 시설·설비의 공동설치·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법·제도 개선사항은 없다. 특히, 어린이 식당의 경우 집단급식소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설비규정을 두고 있으나 화장실을 제외한 식자재 창고 등 그 외 설비는 공동사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화장실도 이미 건축물 내 설치된 화장실이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어린이 식당(집단급식소) 설치

어린이 식당은 앞서 설명한 바처럼 융복시설 내 설치하고자 하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대규모 모형' 여섯 개 기본시설 중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이다. 그러나 동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해당 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되는 설비에 해당하며 여타 시설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 식당의 운영은 이용을 원하는 지역아동에게도 개방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두 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하여 여타 시설의 아동 또는 지역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로써 융복시설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의 관련 규정을 개정이 타당하다. 아울러 융복시설 '통합설치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후 융복시설 내 집단급식소의 설치 등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집단급식소 설치 관련 법령과 지침은 앞서 살펴

본 '공간설비 등 공동설치·사용' 항에서와 같이 융복시설 내 두 시설이 설치될 경우 조리실 또는 집단급식소는 융복시설 전체로써 공동설치·공동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실은 조리실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할 사항이 없다.
- 어린이 식당은 「식품위생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아래 〈표〉와 같이 융복시설을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3-17〉 융복합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집단급식소 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생 략) ※ '공간설비 공동설치·사용'의 항 검토내용과 동일			
육아종합 지원센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이 돌봄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린이 식당	식품 위생법 제2조	12. 집단급식소 가. ~바. 생략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어린이집 등 개별 시설이 아니라 융복시설에 설치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정 미비	〈항목 신설〉 12. 집단급식소 가. ~바. (생 략) 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아. (생 략)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라) 안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융복시설은 개별시설의 복합체로 이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크기와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다중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현행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규정도 융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통합설치기준'에 반영할 사항으로 제안한 바 있고,

또한 '공간설비의 공동설치·사용'을 위한 항목에서도 관련 규정을 둘 것을 언급된 바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및 관련법률 개정 전 단기적으로 시설별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종합하여 영유아 이용시설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당연히 이러한 설비설치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융복시설 '통합설치기준'에 진부분 집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설치기준에 이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아래 〈표〉와 같이 융복시설의 통합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표 Ⅳ-3-18〉 건축물의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3.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사. (생략)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①~④ (생 략) ⑤ 〈신 설〉 ⑥ ((⑤를 ⑥으로하고 생략)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과 안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공동설치·사용할 수 있는 규정 미비	〈항목 신설〉 3.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사. (생략)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①~④ (생 략) 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⑥ (생 략
다함께 돌봄센터	2024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22-27쪽	마. 설비기준 - (생 략) - 화재사고 대비 소방시설 및 소화기구 설치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생 략)	상 동	〈단서 신설〉 마. 설비기준 - (생 략) - 화재사고 대비 (중 략)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 (생 략)

시설명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 보육사업 안내 (본문) 486쪽	나.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생 략) -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중략)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신 설〉	상 동	〈내역 추가〉 나.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생 략) - (생 략)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 (생 략)
공동육아나눔터	2024 가족사업 안내(Ⅱ) 14쪽	마. 공간조성 ㅇ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활동에 적합한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생 략)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과 복합설치 가능 여부 미흡	〈항목 신설〉 마. 공간조성 ㅇ 아동 및 (중 략)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경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ㅇ (생 략)
아이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식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 공동육아나눔터도 어린집의 안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의 예처럼 이를 법령 또는 지침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어린이집의 안전설비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와 같은 논리로 이들 세 시설의 경우에도 〈표〉와 같이 융복시설 통합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각각 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아이돌봄실과 어린이식당은 관련 규정과 개선할 해당사항이 없다.

나) 운영분야

(1) 융복합시설 운영근거 마련

앞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상에 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길 제언했던 융복시설의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융복합시설 '통합운영기준' 마련

융복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개별시설의 운영기준 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로써 '통합운영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은 대부분 각자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것이나 융복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맞게 통합운영이 가능한 시설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통합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합운영기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별표 2'를 신설하여 '통합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아동관련 시설의 운영기준은 〈표 Ⅳ-3-19〉와 같이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반운영, 운영시간, 이용요금, 비용지출, 장부 비치, 이용자 관리 등이 포함되어 규정된다. 그러므로 융복시설의 '통합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개별시설에서 정하는 내용 중 통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과 상충되는 것들을 조정하여 정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 융복시설 통합운영기준에 포함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운영기준'의 맨 앞에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는 조항을 둔다.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각 개별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통합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명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융복합)', ' 다함께돌봄센터(융복합)'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반 시설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융복시설의 운영규정에 대한 조항을 둔다. 이 경우 개별시설의 운영사항은 물론, 기본운영시간 외 연장돌봄 또는 방과후 돌봄 등 융복시설 단위로 운영되

는 통합연계서비스의 운영시간, 종사자 배치,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하여 융복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융복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기준에 관련 규정을 둔다.

【넷째】 '통합운영기준'에는 융복시설에 두는 종사자는 물론 개별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체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융복시설에 두는 상근 직원인 시설장과 육아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사업안내'를 통해 정하도록 유보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 필요 시 기타인력에 대해서도 융복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이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타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섯째】 융복시설 운영의 취지에 맞게 소속 직원의 겸임·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운영한다. 개별시설 관련 법령에서 종사자의 겸임·겸직이 제한된 경우에도 융복시설 내 설치된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필요시 겸임·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별시설의 법령 등의 해당 규정은 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이용비용 등은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납하되 융복시설의 장이 통합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밖에 융복시설 운영경비, 통합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곱째】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개별시설 중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식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계규정도 달리 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융복시설은 하나의 회계규정으로 운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별도의 회계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융복시설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융복시설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1. 비용의 지출은 융복시설의 장이 한다.
2. 비용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융복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개별시설의 관계 법령 등 규정이 정

하는 기준표 등에 의해 지급하고, 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융복시설의 비용지출에 관하여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덟째】융복시설 내 개별시설별로 갖춰야 할 장부 및 서류 외에 통합적으로 갖춰야 할 장부와 서류를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융복시설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통합적으로 갖춰야 한다.

1. 융복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채용서류 등 일체)
2. 예산서 및 결산서
3.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4.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6. 융복시설 운영규정(개별시설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작성)
7. 통합안전점검표
8. 영상정보열람대장(해당시설)
9. 그 밖에 융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아홉째】 융복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동 위원회는 개별시설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융복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융복시설에 따라 필요시 개별시설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열어 두되, 어린이집은 가급적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필요경비 수납액 등 법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융복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기능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예를 참고하여 '통합운영기준'에 정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 개별시설 관련 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동 규정에 대해서도 전술한 내용을 반영 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열째】 융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융복시설은 개별시설의 복합체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융복시설 통합운영기준에 위·수탁 관련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개별시설은 위탁이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에도 융복시설 내 설치된 시설은 융복시설이 위·수탁 될 경우 함께 위·수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수탁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계약을 체결 시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성이 높은 기관·단체의 위·수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운영기준에 이를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열한째】 융복시설의 급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및 제95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할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이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영기준에는 융복시설 집단급식소의 세부적인 운영기준, 즉 이용아동의 영양섭취, 급식소 운영일지,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 식단표와 식재료 원산지 공개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운영경험을 통해 비교적 제도적 발전을 이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급식관리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융복시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열두째】 융복시설은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집단급식소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융복시설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각종 '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한 개별시설은 별도 가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열셋째】 동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사업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동 운영기준에 포함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개별시설의 운영기준이 규정된 각 개별법령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여야 한다. 개별시설의 운영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표 Ⅳ-3-19〉 현행 개별시설 운영기준 비교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 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 34, 34조의2 관련 [별표 1] 2. 운영기준 내용 1. 명칭 - "000어린이집" 명칭사용 2. 운영 가. 반운영, 나. 이용자 명부비치, 다. 운영시간 등, 라. 운영규정, 마. 보육료 수납, 바. 비용지출 사. 보험가입, 아, 장부 비치 자. 입·퇴소, 차, 차량운행, 카.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1. 법령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 1의2] 2. 운영기준 내용 가. 운영위탁 : 일반경쟁입찰 - 자자체장이 세부사항 정할 수 있음. 나.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가능 ※ 별표 1의2 ● 설치기준과 운영기준, 종사자 자격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	1. 법령 : 2024 가족사업안내(Ⅱ) 18~20쪽 2. 운영기준 내용 가. 운영위원회 - 구성 및 결정사항 나. 운영시간 다. 이용요금 라. 프로그램 운영 마. 교구·도서 바. 이용자 관리 ※ 설치기준과 다르게 운영기준은 시행규칙이 아니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3) 하위법령 등 우선 개정할 내용(운영분야)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비하기 전 단기적으로 우선 융복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기본법상 운영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한 후 곧바로 이를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별시설의 운영기준을 따르되, 통합적 운영기준과 상충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운영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꼭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제Ⅲ장 운영모델 중 '대규모 모형'에 포함된 기본시설 여섯 개 시설 중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또는 최소한의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융복시설을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종사자(대표 등) 겸임·겸직 규정

융복시설 설치·운영의 취지는 시설 및 자원의 집적화와 공유 그리고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과 서비스 효용의 극대화에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장에서 개별시설의 대표를 포함하는 종사자 간 겸임·겸직은 매우 필요한 조건이다. 아래 〈표〉와 같이 융복시설 내 종사자의 경우 개별시설 단위로 상호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향후

특별법에서도 동 규정을 두되, 해당 시설의 법령상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겸임·겸직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 관련 [별표 2]에서 '교직원의 복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 종사자의 사무를 현행 법령상 겸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겸임하고자 하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안내」에 '종사자 복무관리' 규정을 두고 시설 종사자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 Ⅳ-3-20〉과 같이 '겸임제한' 해당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고 "융복시설 내 설치될 경우 유자격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표 Ⅳ-3-20〉 융복합시설 겸임·겸직 관련 법령 등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겸임·겸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 1. (생 략) 2. 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생 략) 다. (생 략)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의 종사자(원장 등)의 사무를 겸임할 수 없음.	〈항목 신설〉 2. 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중략)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시설 내 다른 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나. (생 략) 다. (생 략) 라.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겸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명	겸임·겸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69쪽	마. 종사자 복무관리 1) (생 략) 2) (생 략) 3) 겸임제한 -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융복시설 내 여타 시설의 종사자(원장 등)의 사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단서 신설〉 마. 종사자 복무관리 1) (생 략) 2) (생 략) 3) 겸임제한 - 종사자(중략) 겸임할 수 없음.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은 동 시설 내 다른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2024 보육사업 안내 (본문) 492쪽	4) 직원 복무관리 - 근무원칙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2024 가족사업 안내(Ⅱ) 11쪽	다. 사업인력 - 종사자 배치원칙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 (생 략)	•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종사자 간 상호 배치 등을 통한 사무의 겸임이 불가함.	〈항목 신설〉 다. 사업인력 - 종사자 배치원칙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설치할 경우 필요시 자격을 갖춘 여타 시설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 (생 략).
아이 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식당	식품 위생법 제51조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안내」에 '직원 복무관리' 규정을 두고 "원칙적으로 상근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임)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하나 융복시설이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제도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아이돌봄실은 해당사항이 없다.
- 어린이 식당은 「식품위생법」제51조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처럼 어린이 식당은 개별시설 부속용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융복시설 내 집단급식소로 설치될 것이므로 조리사의 겸임·겸직은 고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계 관련 규정 등

융복시설 설치된 개별시설이 시설별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융복시설은 통합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집단급식소 운영, 공간설비의 공동설치·공동사용 등을 표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별 회계처리는 오히려 집행상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회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전항에서 융복시설의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집행의 자율'과 '전산회계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 있다. 융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특히, 전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개별시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이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과 많은 부분이 상충되어, 이들 법령의 개정을 포함하여 특별법의 제정 등은 초기단계를 거쳐 발전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단계 융복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제도와 정책 결정의 문제로 판단된다. 개별시설의 전체로써 융복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통합운영기준'에 반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이 정하

고 있는 회계 관련 사항도 이에 맞게 개정해 두어야 한다.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어린이집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융복시설에서 예산회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보육료의 수납', '비용의 지출',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을 어린이집 원장에서 융복시설의 장으로 하고, 후자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통합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회계가 운영된다. 따라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회계처리자 또는 책임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안내' 중 관련 규정을 융복시설 또는 융복시설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회계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융복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법· 제도적 장애요인이나 개선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업안내'를 통해 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는 개별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융복시설 내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융복시설 또는 융복시설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이돌봄실과 어린이 식당은 해당사항이 없다.

〈표 Ⅳ-3-21〉 융복합시설 회계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회계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 2 관련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생 략) 2. 어린이집의 운영 가.~라. (생 략) 마. 보육료 수납 바. 비용의 지출 사. (생 략) 아. 장부 등의 비치 자.~카. (생 략) 타. 〈신설〉	• 융복시설이 어린이집의 회계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항목 신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생 략) 2. 어린이집의 운영 가.~카. (생 략) 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어린이집은 마와 바의 어린이집 원장을 융복합 시설의 장으로 본다. 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어린이집은 아의 3), 4), 5), 6), 10), 11), 12)의 장부 및 서류를 융복합 시설에서 갖춰 둘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다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단서 신설〉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 영유아보육법 (중략)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어린이집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114~115쪽, 127쪽	자. 재무회계관리 1) 재정관리원칙 가)~다) (생 략) 라) 〈신 설〉 차. 후원금 관리 1)~8) (생 략) 9) 〈신 설〉	• 융복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의 회계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항목 신설〉 자. 재무회계관리 1) 재정관리원칙 가)~다) (생 략)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가)~다)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융복합 시설로 본다. 차. 후원금 관리 1)~8) (생 략)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전항의 센터장은 융복합 시설의 장으로 본다.

시설명	회계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육아종합 지원센터	2024 보육사업 안내 (본문) 489쪽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2024 가족사업 안내(Ⅱ) 30쪽	2) 예산내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비목별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적용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제1권 건가다가 센터 공통적용사항을 준용. - 〈신 설〉	• 융복시설이 공동육아나눔터의 회계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내역 신설〉 2) 예산내역 - (생 략)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융복합시설 통합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함.
아이 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식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다) 급식관리

법령 등에 의해 조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별시설 중 '대규모 모형'에 해당하는 시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조리실을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개별시설 단위가 아니라 융복시설의 집단급식소로 설치될 경우 급식제공에 대한 통합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개별법령 등에서는 융복시설에 집단급식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4조 관련 별표 8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급식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기준에는 어린이집 내 직접 조리를 원칙

으로 하되,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융복시설 내 집단급식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 〈표 Ⅳ-3-22〉와 같이 동 조항에 융복시설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동 시설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안내'를 통해 급식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매식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 내 직접 조리 또는 여타 시설의 조리실 이용이 문제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실은 관련 법령 등에 급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도 없다.
- 어린이 식당은 본 연구에서 융복시설에 설치되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분류상 별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융복시설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때 「식품위생법」상 장애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운영규정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합운영기준'에 급식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급식관리 지침의 예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융복시설 사업안내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지역별 융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융복시설 지원조례 등)로 제도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3-22〉 융복합시설 집단급식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집단급식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가. (생 략) 나. 급식관리 1) (생 략) 2) (생 략)	• 융복시설이 집단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항목 신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가. (생 략) 나. 급식관리 3) 원장 등은(중략) 다만, 공공

시설명	집단급식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3)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후단 생략).		기관, 사회복지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중략)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후단 생략).
다함께 돌봄센터	2024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74쪽	1) 급식관리 가)영양관리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함. - 매식을 진행할 경우 아동의 안전 및 영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육아종합 지원센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육아 나눔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이 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식당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95조제3항관련 별표 24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 주방용품, 수질관리, 배식, 등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구체적 운영규정 부재함.	〈운영기준 신설〉 - 통합운영기준에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어린이집 조리실 및 급식관리 운영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라) 융복합시설 운영위원회

융복시설 운영 취지에 맞게 통합운영기준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앞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설 그리고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시간, 비용, 개인정보 공개 등 여타 시설과는 다르게 법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통합적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제외한 개별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개별시설의 법령 등 개정할 사항은 아래 〈표 Ⅳ-3-23〉과 같다.

〈표 Ⅳ-3-23〉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중략)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함께 돌봄센터	2024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111쪽	사. 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중략)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신 설〉	• 융복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동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단서 신설〉 사. 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중략)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당해 융복합 시설 운영위원회가 역할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시설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육아나눔터	2024 가족사업 안내(Ⅱ) 18쪽	다. 운영 관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 품앗이 (중략) 부모 등 보호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신 설〉	• 융복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동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단서 신설〉 다. 운영 관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 품앗이 (중략) 부모 등 보호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당해 융복합 시설 운영위원회가 역할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아이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식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 어린이집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사항은 없다.
-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사업안내'를 통해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융복시설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융복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개별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실, 어린이식당은 관련 법령 등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령 등을 개정할 사항도 없다.

(마) 융복합시설의 위탁운영

융복시설은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공립시설이다. 특히 다부처·다법제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써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

서 동 시설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융복시설의 위·수탁과 관련된 기준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 단기적 시행을 위해서는 '통합운영기준'으로 위·수탁 관련 기본기준을 정하고 융복시설 '사업안내' 또는 지침을 통해 세부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사항은 각각 개정해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동 기준은 어린이집이 개별시설로써 위·수탁될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설별로 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이 전체로써 위탁될 때는 개별시설은 함께 위탁되는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가 모두 마찬가지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행규칙 상 해당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업안내' 중 해당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표 Ⅳ-3-24〉와 같이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둘 필요가 있다.

- 아이돌봄실과 어린이 식당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표 Ⅳ-3-24〉 융복합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우선 개정할 사항

시설명	시설의 위탁운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관련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1. ~4. (생 략) 5. 〈신 설〉	• 개별시설의 집합체인 융복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 어린이집도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처리 조항이 부재함.	〈항목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4. (생 략)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당해 융복합 시설이 위· 수탁 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도 함께 위·수탁된 것으로 본다.
다함께 돌봄센터	2024 다함께	4. 위탁기준 가.~다. (생 략)	상 동	〈항목 신설〉

시설명	시설의 위탁운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돌봄사업 안내 74쪽	라. 〈신 설〉		4. 위탁기준 가.~다. (생 략)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당해 융복합 시설이 위탁 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위탁된 것으로 본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제4항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⑥ (생 략) ⑦ 〈신 설〉	상 동	〈항목 신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⑥ (생 략) ⑦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해 융복합 시설이 위탁 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위탁된 것으로 본다.
공동육아 나눔터	2024 가족사업 안내(Ⅱ) 17쪽	가. 위탁운영 - (생 략) - (생 략) - 〈신 설〉	상 동	〈항목 신설〉 가. 위탁운영 - (생 략) - (생 략)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 안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당해 융복합 시설이 위탁 될 경우 공동육아나눔터도 함께 위탁된 것으로 본다.
아이 돌봄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식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주: 자료의 출처 등은 앞서 가항과 나항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2) 발전단계

지금까지 융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특별법 및 일반법령의 관련 규정을 완비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초기단계에 우선 융복시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개별시설의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선할 사항을 규정 또는 조문별로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본 항에서는 초기단계의 제도개선 노력 이후 사업이 안착하여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유의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융합특구의 지정을 통한 아이돌봄 융복합 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융복시설은 아동시설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집적화를 통한 서비스 통합연계도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극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일반법령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특별법의 제정 및 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발전단계는 초기단계가 지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융합돌봄특구 및 아이돌봄 융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시기 구분은 실익이 없고 다만, 초기 시작단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단계는 사업이 시작된 후 곧바로 진행됨이 타당하다.

가) 관련 법령 개정(재정확보 분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의 교부방식은 특정한 사업별 보조금 지원 방식과 포괄적 일반재원 이전방식으로 나뉜다.

〈표 Ⅳ-3-25〉 발전단계 설치 및 운영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할 사항

법령명	설치 및 운영재정 확보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지방교부세 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법령명	설치 및 운영재정 확보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법령조항	법령내용	문제점	개선할 사항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122. 사업별 기준보조율 123. 〈신 설〉	융복시설 지원근거 부재	〈항목 신설〉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122. (생 략) 123. - 사업명 : 융합돌봄특구법 제00조에 따라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의 설치 비 및 운영비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그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신 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융합돌봄특구법 제00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4 (3호를 4호로 함. 생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구건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4. (생 략)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신 설〉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 (중략)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구건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4. (생 략) 5. 융합돌봄특구법 제00조에 따라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6. (5호를 6호로 함. 생략)

자료: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2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칭: 복권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전자는 국고보조금(기금, 균특회계 포함)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지방교부세가 대표적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뉘는 바, 이 중 특별교부세는 〈표 Ⅳ-3-25〉와 같이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융복시설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방안으로 지방교부세를 검토한다면 법령상 개선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상 문제로 부각된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립하는 특별교부세 교부계획에 '융합특구 및 아이돌봄 융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분야를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행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사업별 지원방식인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에 동 사업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재원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표 Ⅳ-3-25〉에서와 같이 지방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운용 중인 기금도 융합돌봄특구 개발을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목적은 동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융합돌봄특구 및 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4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를 〈표〉와 같이 향후 제정될 융합돌봄특구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설치되는 융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복권기금도 융함돌봄특구 또는 아이돌봄 융복합사업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 23조제3항은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융합돌봄특구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재정확보 방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법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융복합시설「특별법」제정 방안

앞서 우리는 특별법 제정 전, 우선 초기단계로 개별 법령 등을 개정하여 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서 제안한「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상 임시적 근거 규정과 내용 등은 당연히 특별법으로 옮겨 담기고 그것들은 모두 개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융합돌봄특구 조성 및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한「가칭)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방안에 한정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융복시설 차원에서 특별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앞 절에서 살펴본 개별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예외적 사항을 정해두고 동 시설의 운영 원칙이나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역할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가. 특별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융합돌봄특구는 여러 개의 아이돌봄시설을 하나의 단지 또는 건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 아이돌봄시설은 다부처·다법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설비와 중복사무가 많고 특히 지역 내 산재되어 설치·운영됨으로써 시설 간 서비스 연계와 통합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돌봄특구 내 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나 개별시설의 근거법령이 규율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 융합적 운영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생 현상에 따라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내 아이돌봄시설은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아동이 3명 내외인 시설이 수 개소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개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 여건상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의 목적은 아이돌봄시설의 융합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현행 부처 간, 법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특별법의 구성 형식 등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법제처, 2023: p. 727).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의 구성 형식과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개별법의 구체적인 개정 범위 또는 개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특별법 입법의 층위 형식이나 위임 등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법론적 접근 등도 논외로 한다.

특별법의 제명은 개별시설의 클러스터로써 역할과 기능, 시설 간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법령의 특별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본칙에서는 목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지원, 비용지원, 운영방법 등 주된 내용을 정하되,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법상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융합돌봄특구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명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아이돌봄 융복합 특별법 」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 특별법의 사회적 공감의 획득 및 현장의 이행 준비 등을 고려하여 부칙을 통해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면밀히 정할 필요가 있다. 부칙에 대해서는 법령제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

특별법 제정의 현실적 목적을 세분해 보면, 첫째 하나의 시설이면서 그 속에 개별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설치 및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둘째,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범사업지구 선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넷째, 법률이 정하는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한 후 그에 따른 담당사무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일반법령의 제·개정의 방식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법령 입안 심사기준」[69]에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으로 정할 주요한 내용은 우선, 총칙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특별법의 지위로써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칙에서는 '융합돌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 조치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 융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칙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특구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대상 선정, 융복시설 복합설치 및 시설설비의 공유, 인력관리 및 회계관리의 자율성, 비용지원과 특례지원 등은 핵심적인 조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는 효율적 특구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이용, 사용료 및 부담금 등 감면, 시설과 사무의 위임위탁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칙 규정

법제 원리상 '목적' 조문을 맨 앞에 배치하는 이유는 법률 제정의 취지와 추구하는 이상을 먼저 이곳에 규정해 둠으로써 이하 조문의 입법 방향을 정하고 향후 해석의 지침으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조문에 목표와 수단이 잘 드러나게 정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를 기반으로 조문(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조문安]

> 【목적】이 법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육아와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가정이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69) 이를 법제처가 발간함. 법률의 국회 심의 또는 위임입법의 정부심의 전 정부(안) 작성의 준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 개정판'이 발간되어 통용되고 있음.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혼선과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긴요하다. 특히 특구명칭과 융복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는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개념 정의를 한바 있다. 이를 다시 조문(안)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문安]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합돌봄특구'란 아아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란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개별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육아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돌봄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고, 돌봄시설 또한 이용대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연령 대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시설 대상으로는 육아, 보육, 교육, 가족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함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문安]

【적용범위】이 법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 보육, 교육, 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칙 규정

본칙에는 융합돌봄특구와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관계와 일반행정제도와의 관계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법령 입안기준으로써 법률에 정할 사항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할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 Ⅳ-4-1〉 융합돌봄특구 관련 본칙 규정

장구분	조문제목		조문목적	조문방향	법제 위계	입법례	다른 법률과 관계
	대분류	세분류					
융합 돌봄 특구	계획수립	종합계획	목표와 전략수립 기본·실시계획 운용	장관 수립	법,영, 칙	도심특구법 §7	-
		기본계획 실시계획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시·군·구청장 신청 시·도지사 승인	법	도심특구법 §15, 16	시도조례
	시범지역	**신청·선정**	**특구 준비기간 운영**	시·군·구청장 신청 시·도지사 승인	**법,칙**	**국토계획법** §127 지역특구법 §24	
		평가	**성과평가 등**	**장관 평가**	**법,칙**	도심특구법 §29	
	특구지정·해제		**성과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해제)**	**장관이 지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이 지정 효과(해제)**	**법,칙**	도심특구법 §9, 13	
	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사업추진 신속,안정**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	**법,영, 칙**	도심특구법 §17 연구개발특구법 §29	
	운영체계		**중앙 및 지방의 정책심의 등**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각각 운영**	**법,칙**	**전북특별법** §16, 17	시도조례

주: 1. '법제위계'란 본칙에 규정할 내용 또는 세부내용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임.
2. '입법례'는 일부 유사사례가 포함된 경우도 조사함.

본 특별법에서는 먼저 융합돌봄특구를 장으로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돌봄특구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중앙정부가 맡고 조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는 원칙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 방향을 살펴보면, 종합계획의 수립과 특구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시범지역 성과평가와 지원대상 선정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조문을 구성한다. 아울러 중앙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의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구 실시계획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수립하여 일단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구성한다. 다음으로 보칙에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두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도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존 도시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의제처리하는 방안을 조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시범지역의 신청과 선정의 경우도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예와 같이 조문을 구성함이 타당하다. 특히 시범지역 운영제도는 본 특별법이 갖는 특징 중 하나로 특구를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확보할 경우에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선(시범지역 운영)후(성과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특구지정 등 심의를 위해 '중앙융합돌봄특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융합돌봄특구위원회'를 두어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자문을 듣는 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정책운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별시설의 법령상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표 Ⅳ-4-2〉 와 같이 개별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관계 등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법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복합시설의 설치 관련 입법례는 「사회복지사업법」, 「학교복합시설법」, 「주택건설규정」등에 일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기능 등이 다른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 법률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융합돌봄특구가 신규택지 지역일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부터 이를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구를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70]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개별법령 상 설치기준의 일부를 배제하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설비, 공간 등에 대한 새로운 설치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개별법상 설치기준을 유지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입법방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특별법상 설치관련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0)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훈령)'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함.

우리는 앞 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부모가 융복시설 내 가장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이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법률인「식품위생법」에는 이를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융복시설 내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먼저 융복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거나 또는 식품위생법 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단계에서 검토될 내용이다.

〈표 Ⅳ-4-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관련 본칙 규정

장구분	조문제목		조문목적	조문방향	법제위계	입법례	다른 법률과 관계
	대분류	세분류					
융복합시설	설치	복합시설	설치근거 마련	건축물 용도, 설치기준이 다른 시설의 복합화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34의2/1 학교복합시설법 §5 주택건설규정(영) §52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개정
		설치기준	융복시설 내 설치기준 마련	개별법령 설치기준 예외 기준 적용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34의2/2	개별법령
		시설설비	**개별시설 설치기준 일부 배제**	**설비·공간 공동사용**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관련 별표2	**개별법령**
		집단급식소	**설치근거 마련**	**융복시설 내 설치**	**법, 칙**	**신설**	**식품위생법(칙) 개정**

주: 1. '법제위계'란 본칙에 규정할 내용 또는 세부내용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임.
2. '입법례'는 일부 유사사례가 포함된 경우도 조사함.

특별법에 담을 운영 관련 규정은 특히 중요하다. 특별법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특구의 조성이나 융복시설의 설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것은 융복시설의 운영을 통한 융복합돌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기준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나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기준을 특별법에 정해야 하는 이유는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의 운영기준이 각기 다르고 또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시설도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융복시설의 설치기준과 부합하는 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법에서 정한 운영기준 중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준수하되

서비스가 통합·연계·확대 등 재생산된다는 차원에서 이를 일부 달리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시설과 서비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재정관리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융복시설 관리비는 물론 개별시설의 법령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타 사업경비를 지원하도록 특별법 규정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펴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근거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융복시설의 예산회계 관리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부처·다법제의 정책으로 설치되는 개별시설은 재원선이 다양하고 예산회계 기준도 다르다. 융복시설 내 개별시설이 이러한 개별기준을 근거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은 개별시설의 일반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교부되고, 세출은 별도로 정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 규정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별도로 '재무회계규칙'을 정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융복시설의 장이 간소한 과목구분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운용할 때는 시설 간 융통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를 입법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재·개정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구의 지정은 융복시설의 운영상황을 살펴가면서 지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운영토록 한 후 중앙정부가 성과평가를 거쳐 특구로써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이를 특구 지정의 행정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입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구의 조성과 지정이 제도의 완성이 아니고 그 시작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융복시설의 운영상황을 평가함으로써 특구 운영의 활성화를 추동하기 위함이다.

융복시설의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러 개의 아동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운영할 때는 시설관리 능력은 물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융복시설은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정당하고 상당한 위탁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행정 타 분야와 다르게 사회복지, 교육분야에서는 위탁수수료에 지불에 대한 일반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본 특별법에서는 위탁관리와 위탁수수료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융복시설의 규모와 이용자 수 및 시설특성 등을 감안할 때 다중이용업소법 등 시설안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물론이고 운영단계에서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Ⅳ-4-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관련 본칙 규정

장구분	조문제목		조문목적	조문방향	법제 위계	입법례	다른 법률과 관계
	대분류	세분류					
융복합 시설	운영	운영기준	운영기준 통일	융복시설의 장에게 운영 자율 보장	법, 영, 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관련 별표2	개별법령 개정
		인력관리	겸임겸직 가능 직원 탄력 배치	융복시설의 장이 임면(필요시 개별시설장 병존)	법, 영, 칙	사회복지사업법 §34의2/1	개별법령 개정
		재원조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확보**	**국가 지원근거 마련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법, 영, 칙**	**지역특구법** §18, 20	**인구감소 지역법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비용지원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	**국가와 지자체 지원**	**법, 영, 칙**	**연구개발특구법** §11 사회복지사업법 §42의3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예산회계	**융복시설 별도의 예산회계 규정 및 전산시스템 마련**	**「융복시설 재무회계규칙」제정 세입세출 목 간소화, 집행의 자율 보장**	**법, 영, 칙**	사회복지사업법 §23/4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성과평가	**특구(융복시설) 지원 특구 지정**	**성과평가를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확보**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43의2 도심융합특구법 §29	-
		위임위탁	**위탁운영 근거 위탁수수료 지급 근거**	**시설 및 서비스 관리 위탁운영 위탁수수료 지급을 통한 전문 운영**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43의2 행정위임위탁규정 §11, 13	**개별법령 개정**

장구분	조문제목		조문목적	조문방향	법제위계	입법례	다른 법률과 관계
	대분류	세분류					
		보험가입	**시설안전**	**집단급식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 안전대책 수립**	**법, 칙**	**다중이용업소법** §1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	**개별법령 개정**

주: 1. '법제위계'란 본칙에 규정할 내용 또는 세부내용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임.
2. '입법례'는 일부 유사사례가 포함된 경우도 조사함.

3) 보칙 규정

보칙으로 규정할 조문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여타 특구 관련 법령의 입법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특구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동 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그 밖에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 등 여타 특구 관련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특구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법 체계상 소관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겠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추진함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시범지역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해서는 이를 위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Ⅳ-4-4〉 보칙 규정

장구분	조문제목		조문목적	조문방향	법제위계	입법례	다른 법률과 관계
	대분류	세분류					
보칙	국·공유재산 처분 등		효율적 특구 조성	특례인정	법,	**연구개발특구법** §15	개별법령
	세제 지원 및 사용료 등 감면		효율적 특구 조성 및 시설 설치	특례인정	법, 영	**연구개발특구법** §14	개별법령
	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에 속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거양**	**시범지역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법, 칙**	사회복지사업법 §52 도심융합특구법 §43	-

주: 1. '법제위계'란 본칙에 규정할 내용 또는 세부내용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임.
2. '입법례'는 일부 유사사례가 포함된 경우도 조사함.

V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

01 현행 다부처 돌봄시설 재정운영 현황

0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 따른 재정 소요

0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방안

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

1. 현행 다부처 돌봄시설 재정운영 현황

융복합돌봄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정책분야로는 유아교육, 보육, 돌봄분야가 있다. 여기에서는 융복합돌봄특구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예산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국가재정[71)]

융복합돌봄 관련 재정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재정규모를 먼저 살펴보았다. 융복합돌봄은 유아교육·보육이나 돌봄 지원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 16대 분야 분류체계로 보면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국가재정 세출예산은 656.5조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195조원, 교육분야 지출은 84.2조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24.1조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지방행정 분야 110.5조원, 교육 89.8조원, 국방 57.4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1〉 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 조원

분야	2022	2023	2024
사회복지	195.0	206.0	224.1
일반·지방행정	98.1	112.2	110.5
교육	84.2	96.3	89.8
국방	53.0	55.3	57.4

71) 부처 2024년 예산 내부자료를 참조함.
- 보육 관련 2024년 연내 변경은 반영되지 않음(예: 2024.6.27.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분야	2022	2023	20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3	26.0	28.0
농림수산	23.7	24.4	25.4
공공질서및안전	22.3	22.9	24.4
교통및물류	22.8	20.8	22.1
보건	22.7	20.0	18.8
환경	11.9	12.2	12.5
통신	9.0	9.0	9.4
과학기술	9.6	9.9	9.3
문화및관광	9.1	8.6	8.7
통일·외교	6.0	6.4	7.5
국토및지역개발	5.1	4.2	4.4
예비비	3.9	4.6	4.2
계	607.7	638.8	656.5

자료: 열린재정, 재정통계, 재정지출, 분야별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2024. 10. 16. 인출.

나. 보육재정

2024년 보육사업 예산은 7조 6,581억원 규모이다. 2024년 대표적 보육사업 예산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음

전체 보육예산 중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예산이 2조 8,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2조 6,98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이 1조 88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다(김근진 외, 2018).

〈표 Ⅴ-1-2〉 보육사업 예산(2020-2024)

단위 :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58,728	59,706	58,931	66,780	76,581
□ 영유아보육료 지원	34,328	34,168	32,239	30,456	26,981
○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	33,952	32,028	30,251	26,731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 시간제 보육지원	166	216	209	204	250
○ 표준보육비용조사	-	-	2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946	677	648	526	493
○ 어린이집 기능보강	198	69	39	35	76
○ 어린이집 확충	748	609	609	492	417
□ 어린이집 관리	425	396	345	315	277
○ 보육사업관리	40	41	57	47	37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65	117	49	10	10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5	25	22	19	13
○ 보육실태조사	-	7	-	-	-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70	182	193	218	217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	12	11	9	-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	1	1	0	0
○ 어린이집 평가인증	-			0	0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11	11	12	12	-
□ 어린이집 지원	14,871	16,856	16,887	17,510	18,863
○ 공공형어린이집	630	606	7	7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242	16,250	16,880	17,504	18,863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57	7,608	5,082	1,759	1,081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	3,731	16,215	28,887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300.
2)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p.297.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19.
5) 보건복지부(2024).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1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매칭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육사업 중 시설 설치비 예산은 2022년 1,309억 46백만원, 2023년 1,055억 88백만원, 2024년 1,001억 79백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보육사업예산 또한 2022년 8조 5,160억 38백만원, 2023년 8조 1,939억 36백만원, 2024년 7조 6,230억 70백만원으로 감소추세이다. 누리과정비는 ,2022년 3조 8,290억 46백만원, 2023년 3조 4,700억 37백만원, 2024년 3조 2106억 31백만원 규모였로 나타났다.

〈표 Ⅴ-1-3〉 보육사업 재정분야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명	시설 설치비					보육사업비 (누리과정비 제외)			
		합계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2022	합계	130,946	130,946	67,562	61,405	1,979	8,516,038	5,397,039	2,603,682	515,317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	-	4,539,942	3,178,111	930,194	431,63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	-	-	-	740,576	508,163	158,974	73,439
	시간제보육 지원	200	200	100	50	50	40,964	20,482	10,241	10,24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	-	-	-	3,192,314	1,688,041	1,504,27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5,400	5,400	2,700	2,700	0	2,242	2,242	0	0
	어린이집 확충	117,628	117,628	60,903	56,7251)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7,718	7,718	3,859	1,930	1,929	-	-	-	-
2023	합계	105,588	105,588	53,743	50,059	1,786	8,193,936	5,109,524	2,613,184	471,228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	-	4,543,871	3,163,445	944,197	436,22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	-	-	-	257,821	175,854	56,103	25,864
	시간제보육 지원	200	200	100	50	50	39,691	19,863	10,693	9,13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	-	-	-	3,352,553	1,750,362	1,602,19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000	2,000	1,000	1,000	0	-	-	-	-
	어린이집 확충	96,442	96,442	49,170	47,2721)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6,946	6,946	3,473	1,737	1,736	-	-	-	-
2024	합계	100,179	100,179	50,276	46,083	3,820	7,623,070	4,691,936	1,991,552	939,582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	-	3,849,319	2,673,050	800,429	375,84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	-	-	-	170,551	108,075	43,267	19,209
	시간제보육 지원	-	-	-	-	-	48,929	24,505	14,312	10,11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	-	-	-	3,554,271	1,886,306	1,133,544	534,4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964	1,964	982	982	0	-	-	-	-
	어린이집 확충	82,935	82,935	41,654	41,2811)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15,280	15,280	7,640	3,820	3,820	-	-	-	-

주: 1)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된 자료 없음
2) 2022년, 2023년은 지방비 전체로 조사되어 시도비, 시군구비 구분자료 없음

자료: 부처 내부자료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도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이 있다.

2021년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총 2,374개였으며, 시·도 사업은 348개(14.7%), 시·군·구 사업은 2,026개(85.3%)였다(이원선 외, 2022).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총 1조 6천 51억원 수준이었으며, 이중 시·도 사업 예산은 1조 2,480억원(77.8%), 시·군·구 자체사업 예산은 3,570억원(22.2%)이었다(이원선 외,2022).

또한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1조 2,480억원은 중 분담 비중은 총액 기준으로 시·도 부담은 45.7%, 시·군·구 부담은 54.3%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사업별로 분담비율에 차이가 있었다(이원선 외, 2022).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1-4〉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육비용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인시설 지원	환경개선 지원	취약보육 운영 지원	교육·연수 등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기타	전체
전체	322,664	549,587	216,499	293,623	90,351	17,970	64,057	11,037	24,016	15,344	1,605,148
비율	20.1	34.2	13.5	18.3	5.6	1.1	4.0	0.7	1.5	1.0	100.0
서울	66,737	113,720	71,574	65,793	60,914	3,388	12,981	600	2,201	5,821	403,729
부산	12,912	14,996	2,830	5,160	666	520	715	512	2,343	50	40,705
대구	5,833	12,542	809	4,151	389	1,114	516	282	519	1,451	27,608
인천	30,581	31,060	4,413	14,074	7,863	862	1,719	164	3,621	131	94,489
광주	5,548	9,435	2,141	6,301	251	-	158	26	-	-	23,861
대전	7,359	21,415	15,314	14,702	-	-	1,620	50	327	-	60,787
울산	5,451	11,446	1,842	2,018	476	1,075	1,381	151	819	-	24,659
세종	2,352	8,491	2,333	2,029	-	112	-	21	30	-	15,368
경기	106,996	203,006	42,799	89,642	15,420	4,562	38,958	6,660	5,708	82	513,834
강원	7,351	8,654	7,542	4,366	528	1,025	154	579	2,547	-	32,745
충북	8,241	16,763	2,657	10,504	63	433	760	172	2,211	70	41,874
충남	17,317	24,513	27,087	9,379	1,020	2,814	1,065	263	1,169	4,882	89,508
전북	6,432	10,917	1,723	5,783	40	231	459	230	-	6	25,821
전남	10,410	8,699	6,695	11,773	1,002	227	455	605	-	-	39,867
경북	12,756	25,789	10,333	23,805	2	1,068	968	291	1,209	2,849	79,069
경남	14,515	19,673	8,611	18,040	883	540	1,376	382	1,313	2	65,335
제주	1,873	8,468	7,794	6,102	832	-	771	49	-	-	'25,889

주: '-'는 특수보육시책사업 없음을 나타냄.
자료: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pp.42.-43.

다. 유아교육재정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수는 2022년 8,562개소에서, 2024년 8294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사립유치원 수는 다소 많이 감소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라 유치원 교원수는 2022년 53,697명에서 2024년 55,40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아수는 극심한 저출생으로 2022년 552,812명에서 2024년 498,604명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표 Ⅴ-1-5〉 유아교육 현황 및 예신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유치원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영유아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소계	원장	교사 등	소계	원장	교사 등			
2022	8,562	5,116	3,446	53,697	21,343	555	20,788	32,354	3,179	29,175	552,812	167,485	385,327
2023	8,441	5,133	3,308	55,637	23,975	570	23,405	31,662	3,054	28,608	521,794	152,661	369,133
2024	8,294	5,108	3,186	55,404	24,717	582	24,135	30,687	3,518	27,169	498,604	145,643	352,961

주: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는 제외함.
자료: 부처 내부자료

유아교육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2015년 교특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송기창(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양 연도의 교특회계 (1) 세출액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의 평균값과 (2) 유아교육진흥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유아교육재정 규모를 추정하였다(엄문영, 2022).

〈표 Ⅴ-1-6〉 유아교육재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특회계 세출결산액	60,041,898	65,611,419	71,612,652	80,401,054	77,705,459
○ 누리과정 지원	3,877,950	3,899,268	3,942,052	3,791,918	3,961,764
○ 유아교육진흥	270,616	285,714	345,812	426,786	525,173
- 유아교육 지원	22,715	25,024	41,619	58,675	52,447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0,587	12,216	12,710	19,046	17,692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962	2,080	2,749	6,878	2,49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사립유치원 지원	236,351	246,393	288,734	342,188	452,542
(누리과정+유아교육진흥)	4,148,566	4,184,982	4,287,864	4,218,704	4,486,937
(1)세출액대비추정1)	5,470,733	5,978,201	6,525,005	7,325,762	7,080,153
(2)유아교육진흥대비추정	4,055,612	4,281,880	5,182,544	6,396,068	7,870,554
(1),(2)의평균치	4,763,172	5,130,040	5,853,774	6,860,915	7,475,354

주: 1) 교특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추정된 유아교육재정 값의 비율은 추정의 기준이 된 비율값으로 보면 9.11%임.
자료: 엄문영(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육아정책 Brief. 제92호.

라. 시간제보육 예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15년 216개에서 매년 꾸준하게 늘어 2023년 827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시간제보육반 또한 2015년 237개에서 2023년 1,000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은 2024년 48,929백만원이었으며, 이중 국비 24505백만원, 시도비 14312백만원, 시군구비 10,112억원 수준이었다.

〈표 Ⅴ-1-7〉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현황(2015~2023)

단위: 개소, 반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관수	216	347	382	373	402	578	740	796	827
반수	237	382	437	443	490	681	857	946	1,000

주: 2015부터 본 사업을 실시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알림마당. 보육통계. 시간제보육 현황.(https://www.kcpi.or.kr (인출일: 2024. 5. 20.)

마. 지역아동센터 예산

2024년 4월 기준 본 연구 조사결과, 지역아동센터는 4,259개소, 시설 종사자는 9,770명이었고, 연간 이용자수는 110,599명 수준이었다. 본예산 기준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구조이며, 전체규모는 2022년 3,291억 66백만원, 2023년 3,941억 62백만원, 2024년 4,538억 68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장과 생활복지사의 종사자 수 규모차는 크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영양사는 없었다.

〈표 Ⅴ-1-8〉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시설수	시설 종사자수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1] (당해연도 본예산 기준)			
		합계	원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기타		합계	국고보조사업비[2]		
									소계	국비	지방비
2022	4,259	9,752	4,251	5,501	0	0	109,044	329,166	329,166	158,000	171,166
2023	4,230	9,687	4,216	5,471	0	0	108,788	394,162	394,162	189,198	204,964
2024[3]	4,259	9,770	4,247	5,523	0	0	110,599	453,868	453,868	217,857	236,011

주: 1) '운영비'는 설치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미함.
2)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사업비 중 지방비는 중 지방비는 시도비/시군구비임
3) 2024년 4월 기준임.
자료: 부처 내부자료

바.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4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1,130개소, 시설 종사자는 4,011명이었고, 연간 이용자수는 29,714명 수준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구조이며,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규모는 2022년 878억 36백만원, 2023년 1,145억 77백만원, 2024년 1,210억 2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9〉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시설수	시설 종사자수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1] (당해연도 본예산 기준)			
		합계	시설장	돌봄선생님	기타		합계	국고보조사업비[2]		
								소계	국비	지방비
2022	881	2,985	881	2,104	-	21,984	87,836	87,836	47,054	40,782
2023	1,048	3,715	1,048	2,667	-	26,631	114,577	114,577	55,373	59,204
2024[3]	1,130	4,011	1,130	2,881	-	29,714	121,023	121,023	57,664	63,359

주: 1) '운영비'는 설치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미함.
2) 다함께돌봄센터 국고보조사업비 중 지방비는 시도비/시군구비임.
3) 2024년 4월 기준임.
자료: 부처 내부자료

사.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공동육아나 공동돌봄을 위한 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는 2022년 376개소, 2023년 395개소, 2024년 4월 435개소로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수는 개소당 1~1.3

명, 연간 이용자수는 2022년 2,124명, 2023년 2,620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예산 기준 운영비 전체규모는 2022년 412억 44백만원, 2023년 436억 4백만원, 2024년 493억 40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Ⅴ-1-10〉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천명, 백만원

연도	시설수	시설 종사자수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1) (당해연도 본예산 기준)			
				계	국고보조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2022	376	개소별 1~1.3인	2,124	41,244	20,622	9,892	10,730
2023	395		2,620	43,604	21,802	10,437	11,365
2024[3)]	435		859	49,340	24,670	11,813	12,857

주: 1) '운영비'는 설치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미함.
2) 공동육아나눔터 국고보조사업비 중 지방비는 중 지방비는 시도비/시군구비임
3) 2024년 4월 기준임.
자료: 부처 내부자료

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아이돌봄지원 도우미는 2022년 26,675명에서 2023년 28,071명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서비스 실이용 가구수는 86,100가구, 실 이용아동은 202,024명으로 나타났다.

〈표 Ⅴ-1-11〉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단위: 명, 가구

구분	활동 도우미 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총계		시간제 지원		종일제 지원		질병아동 지원		기관연계지원	
		실이용 가구수	실 이용아동	실이용 가구수	실 이용아동	실이용 가구수	실 이용아동	실이용 가구수	실 이용아동	실이용 가구수	실 이용아동
2022	26,675	78,212	191,731	61,138	95,228	2,760	3,354	4,170	5,293	1,375	74,151
2023	28,071	86,100	202,024	66,515	103,492	1,890	2,248	5,991	7,667	1,406	72,258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도비 규모는 2022년 8,625억 58백만원, 2023년 1조 971억 88백만원, 2024년 1조 4,459억 92백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Ⅴ-1-12〉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운영비			
	합계	국고보조사업비		
		소계	국비	시·도비
2022	862,558	431,279	277,784	153,495
2023	1,097,188	548,594	353,165	195,429
20243)	1,445,992	722,996	466,518	256,478

주: 1) '운영비'는 설치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미함.
2)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중 지방비는 시도비/시군구비임
3) 2024년 4월 기준임.
자료: 부처 내부자료

〈표 Ⅴ-1-1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세부내역(2023년)

단위: 가구

구분		합계
실이용 가구수	합계	86,100
	가형	46,625
	나형	21,574
	다형	4,258
	라형	12,237
	기타	1,406

주: 1) '가형'~'라형'은 지원기준상 구분(소득기준별)임.
2) 기타: 기관연계
자료: 부처 내부자료

자. 기타 예산

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2022년 475개소, 2023년 456개소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 중 민간시설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수는 2022년 10,644명, 2023년 10,281명으로. 연간 이용자수도 2022년 148,068명, 2023년 141,745명으로 감소하였다.

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예산은 모두 시군구가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2022년 140억 27백만원, 2023년 172억 70백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Ⅴ-1-14〉 산후조리원 시설운영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시설수(휴업 제외)			시설 종사자수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
	합계	국공립	민간	합계	시설장	돌봄선생님	기타		시군구자체 사업비
2022	475	17	458	10,644	691	7,234	2,719	148,068	14,027
2023	456	20	436	10,281	656	7,059	2,566	141,745	17,270

주: 1) 산후조리원은 국고보조사업이 없고, 지자체에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대상 운영비 지원 사례 없음.
2) 시설장은 산후조리업자(법인 포함), 돌봄선생님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기타 항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외 산후조리원 행정인력, 조리사, 미화원 등임
자료: 본 연구의 현황조사 자료임.

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예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2,543개소, 2023년 2,615개소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2022년 13,247명, 2023년 13,458명로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이용자수는 2022년 91,044명, 2023년 97,469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고, 2022년 1,487억 78백만원, 2023년 1,893억 73백만원, 2024년 2,052억 78백만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표 Ⅴ-1-1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서비스 제공기관수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		
				소계	국비	지방비
2022	2,543	13,248	91,044	148,778	99,857	48,921
2023	2,615	13,458	97,469	189,373	127,032	62,341
2024	-	-	-	205,278	138,288	66,990

주: 1)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수는 중복 제거한 값이며, 시설장,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없음.
2) 2024년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수는 관련 자료 없음.
자료: 부처 내부자료

3) 가정양육수당 예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 긴급 돌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는 2015년 1,009,346명에서 2023년 113,556명(0, 1

세 부모급여 수급자 제외)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그동안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충에 기반한 서비스의 질 제고로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부모급여 제도 도입 등의 그간의 정책적 영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Ⅴ-1-16〉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5~2023)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수	1,009,346	933,153	836,290	745,677	658,450	642,095	560,768	280,267	113,556

주: 2022년 0~11개월, 2023년 0~23개월은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가정야육수당 예산은 2015년 1조 2,115억원에서 2019년 8923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부모급여(영아수당)의 도입과 함께 2024년 현재 1,08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Ⅴ-1-17〉 가정양육수당 예산(2015~2024)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2,115	12,192	12,242	10,891	8,923	8,157	7,608	5,082	1,759	1,081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 따른 재정 소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 기본시설은 중앙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선택시설 등 일부 돌봄시설은 특성이나 맞춤형 서비스 여부에 따라 수익자 부담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3가지 융복합 시설 규모에 대해, 기존의 개별 돌봄시설 운영시 예산과 향후 아이돌봄 융복합시설로 변화되었을 때 예산의 변화 가능성을 운영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예산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에 기본돌봄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가칭 영유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돌봄,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구조이거나 지방비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외 선택시설로서 아픈아이돌봄센터나 다목적공간으로서 부모교육/참여를 위한 강의실 등은 지방비나 일부 수익자부담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돌봄시설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존의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비교하여 질적·내용적으로 확장된 광의의 돌봄과 부가된 서비스 기능이 종합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들을 통합 운영·관리 운영책임자나 육아코디네이터,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관리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융복합돌봄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운영비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특정 기금을 재원확보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표 Ⅴ-2-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비용 재원

구분	운영모델 설치 시설	운영 재원(안)
기본 돌봄시설	어린이집(유치원*)	• 국비+지방비 지원 • 지방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식당	
선택 돌봄시설	실내놀이터(영유아/초등 키즈카페)	• 전액 지방비 지원 • 지방비 + 수익자 부담
	아픈아이돌봄센터	
	다목적공간(부모교육/참여 강의실)	
융복합시설 운영·관리	융복합시설 통합관리체	• 전액 지방비 지원 • 특수목적비용(복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 중으로 향후 통합기관 설치(가칭 영유아학교)를 가정함.

여기에서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비는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중심으로 기본 개별 돌봄시설을 융복합시설화할 경우 비용을 고려하였다.

나. 대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서는 전체 정원을 200~300인으로 가정하여 100인 이상 정원 국공립어린이집, 80인 정원 다함께돌봄센터, 20인 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10인 정원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20인 정원 공동육아나눔터, 최대 100명 아동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식당을 기본시설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택시설 중 아동돌봄의 융복합운영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놀이공간(실내놀이터)과 아픈아이돌봄의 특화된 서비스 운영(아픈아이돌봄센터)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3장 운영모델 참조).

돌봄시설을 개별 운영할 때 인력은 31명이나, 융복합시설화할 경우 확장된 돌봄서비스 기능에 대해 인력(간호사, 조리사)이 추가된 33명으로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확장된 융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융복합시설 전체 운영을 위해 추산되는 36명 인력에 비해 감소한 규모이다. 우선 대규모 융복합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확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시간제돌봄(아이돌보미 파견)과의 협업을 통해 아침-저녁-주말/휴일 등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에의 대응을 교직원 복지의 저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발달지원실)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실내외놀이터, 시간제돌봄과 사실상 통합적 운영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직원 대 아동의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의 운영 및 추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는 양질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융복합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방과후돌봄 인력 순환배치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융복시설 총괄 코디네이터가 신규로 필요하며, 이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의 겸임이 가능하다. 200인이상 대규모에 맞는 식당의 전일제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조리사 2인에) 조리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등 재원 아동 전반의 급간식을 운영한다.

인건비 규모는 돌봄시설 시설장 겸직에 따른 수당이나, 전일제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행 인력배치 및 추가에 따른 인건비보다는 적은 비용의 인건비 지출이 예상된다.

〈표 Ⅴ-2-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대규모(안) 인건비

구분	돌봄시설	현행 인력배치	예산		비고
			현행	융복합	
기본+선택	국공립어린이집	• 원장 1	○	◐	- 시설장 겸직수당
		• 담임교사 9	○	○	
		• 보조교사 3	○	◑	- 전일제 확대(통합운영)
		• 연장반교사 2	○	◑	- 전일제 확대(통합운영)
		• 사무직원 1	○	○	
		• 조리사 2	○	◐	- 융복합시설 업무 겸직수당
		• 간호사 1	○	◐	- 융복합시설 업무 겸직수당
		• 영양사 1	○	◐	- 융복합시설 업무 겸직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 보육요원 2	○	○	- 장난감도서관, 발달지원실 업무 수행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아이돌보미 파견)	○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선택시설)실내놀이터(영유아)	• 직원 1	○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다함께돌봄센터	• 센터장 2	○	◐	- 시설장 겸직수당
		• 교사 4	○	○	- 통합운영
	(선택시설)실내놀이터(초등)	• 직원 1	○	-	- 통합운영
	공동육아나눔터	• 직원 1	○	-	- 통합운영
융복합시설 관리 및 육아코디네이터		-	-	◐	- 겸임 (또는 신규채용)
(선택시설) 아픈아이돌봄센터		• 간호사 1		●	- 전일제 추가 배치
(기본시설-공통공간) 식당확대운영관리		• 조리사 1		●	- 파트타임 추가 배치

주: 1) ○(기존 인건비), ◐(기존 인건비+겸무수당), ◑(기존 인건비+전일제 인건비 추가분) ●(신규 인건비)아이돌봄
2) 셀 무늬가 같은 경우가 1명의 시설장이 운영관리함을 의미함.
실내놀이터(선택시설)의 경우, 영유아-아동 돌봄시설에 인접한 공간으로 구성과 융복시설장 겸직을 고려함.

다만, 아픈아이돌봄센터 등 선택시설이 추가될 경우 간호사 1인(센터장 겸직) 추가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간호사가 아픈아이돌봄센터 업무를 순환 겸직하는 업무의 확장이 필요하다. 융복합시설의 전일제 식당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융복합시설 식당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 인원 증가에 따라 조리사 1인의 추가 배치(파트타임 가능)가 필요하겠다. 또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시설관리 인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중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서는 전체 정원을 100~150인으로 가정하여 35인 정원 국공립어린이집, 20인 정원 다함께돌봄센터, 20인 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10인 정원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와 10인 정원의 공동육아나눔터, 최대 50명 아동이 이용가능한 어린이식당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선택시설 중 실내놀이터와 아픈아이돌봄센터의 구성을 제안, 융복합운영을 살펴보았다.

돌봄시설을 개별 운영할 때 인력은 16명이며, 융복합시설화할 경우 필수인력을 반영하여 20명으로 인력이 증가하였다. 우선 중규모 융복합시설의 경우 대규모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에 필요 시 순환배치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 개별 운영시 배치가 불가능한 영양사와 조리사, 간호사, 그리고 육아코디네이터 인력을 융복합시설에 공통 인력으로 추가하고, 발달지원사와 아이돌봄인력, 순환돌봄교사는 겸직 및 파견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였다.

중규모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서 인건비 규모는 돌봄시설 시설장 겸직에 따른 수당이나, 전일제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에 더해 공통인력으로 영양사, 간호사, 육아코디네이터 등이 추가되면서 현행 개별기관의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운영모델을 통해 살펴본 대로 이는 기존 개별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견주어 양적·내용적으로 확장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중규모 융복시설 전체 22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순환배치와 겸임을 통해 20명이 담당하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로 사료된다.

〈표 Ⅴ-2-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중규모(안) 인건비

구분	돌봄시설	현행 인력배치	예산		비고
			현행	융복합	
기본 +선택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영유아학교)	• 원장 1	○	◐	- 시설장 겸직수당
		• 담임교사 4	○	○	
		• 보조교사 2	○	◑	- 전일제 확대(통합운영)
		• 연장반교사 2	○	◑	- 전일제 확대(통합운영)
		• 조리사 1	○	○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	• 보육요원 2	○	○	- 발달지원실 업무 수행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구분	돌봄시설	현행 인력배치	예산		비고
			현행	융복합	
	공동육아나눔터	• 직원 1	○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다함께돌봄센터	• 센터장 1	○	◐	- 시설장 겸직수당
		• 교사 1	○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 (파견)	-	-	- 아이돌봄인력 파견
	(선택시설)실내놀이터 (영유아+초등)	• 직원 1	○	○	- 보조·연장반교사 통합운영
융복합시설 관리 및 육아코디네이터		-	-	●	- 신규
영양사		-	-	●	- 신규
조리사		-		●	- 신규(파트타임)
간호사		-	-	●	- 신규
발달지원사		-	-	-	- 겸직(육종지 보육요원 1인)
순환돌봄교사		-	-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주: 1) ○(기존 인건비), ◐(기존 인건비+겸무수당), ◑(기존 인건비+전일제 인건비 추가분) ●(신규 인건비)
2) 셀 무늬가 같은 경우가 1명의 시설장이 운영관리함을 의미함.
실내놀이터(선택시설)의 경우, 영유아-아동 돌봄시설에 인접한 공간으로 구성과 융복시설장 겸직을 고려함.

라. 소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소규모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서는 전체 정원을 50인으로 가정하여, 우선 1안으로 20인 정원의 소규모 국공립유치원[72], 20인 정원 지역아동센터, 10명 정원의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으로 설정하였다.

돌봄시설을 개별 운영할 때 인력은 6명이며, 융복합화 할 경우 4인의 추가인력(센터장, 코디네이터, 조리사, 직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융복시설 센터장과 놀이터 직원은 육아코디네이터(1인)와 조리사(1인)의 신규배치 등을 통해 업무 겸임(2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소규모의 경우 융복시설 전체 10명이 필요한데 신규인력의 배치와 겸임을 통해 8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유치원 원장과 지역아동센터장이 개별 기관의 운영 책임을 기존대로 관장하되, 융복합시설의 운영(3개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유치원 원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중규모 시설과 마찬가지로 돌봄시설 개별운영 시 배치가 불가능한 공통인력을 추가하여 융복시설 관리 및 육아코디네이터(발달지원사 겸직) 역할을 하는 1인과 조리사 1인을 추가한다. 그 외 순환돌봄교사(파견), 순회간호사(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력),

72)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이 설치되는 것을 가정한다.

급식지원센터(식단표활용)의 협력을 반영하였다.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서 인건비 규모는 돌봄시설 시설장 겸직에 따른 수당이나, 전일제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에 더해 공통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Ⅴ-2-4〉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소규모(안) 인건비

구분	돌봄시설	현행 인력배치	예산		비고
			현행	융복합	
기본 돌봄시설	국공립유치원	• 원장 1	○	◐	- 융복합시설장 겸직수당
		• 담임교사 2	○	○	
		• 방과후전담 교사 1	○	○	
	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1	○	○	
		• 생활복지사 1	○	○	
	시간제돌봄(아이돌봄실)	• (파견)	-	-	- 아이돌봄인력 파견
융복합시설 관리 및 육아코디네이터		-	-	●	- 신규
조리사		-	-	●	- 신규
간호사		-	-	-	- (지역 보건소 등 순회간호사)
발달지원사		-	-	-	- 겸직(육아코디네이터 1인)
순환돌봄교사		-	-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급식지원센터 식단표 활용)		-	-	-	- (급식지원센터 순회영양사등)

주: 1) ○(기존 인건비), ◐(기존 인건비+겸무수당), ◑(기존 인건비+전일제 인건비 추가분) ●(신규 인건비)
2) 셀 무늬가 같은 경우가 1명의 시설장이 운영관리함을 의미함.

이러한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통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융복합시설 돌봄인력에 대한 급여나 수당, 처우를 상향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이외에 기타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공통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인건비에 비해 관련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방안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를 위한 돌봄기관, 기관목적, 주요 서비스, 이용 아동, 이용 대상자격, 운영형태, 예산현황 등 돌봄기관의 예산확보·배분·운영·정산 절차 및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가. 재정운영 방향성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를 통해 보육·교육·돌봄 관련 공공과 민간 등 돌봄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통한 융합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추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융복합시설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간-인력의 공통 배치와 서비스 기능의 연계협력을 통해 기존 대비 공백없는 확장된 건강·안전·놀이의 종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설 간 인력운영의 효율 및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다. 이는 시설 간 융복합운영을 통해 창출된 광의의 돌봄 제공과 양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한 돌봄시설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은 선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사후적인 평가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재정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현재 돌봄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예산의 활용도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기획, 예산활용, 인력 및 시설활용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야 하며, 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 주관부처의 예산을 지자체 단위에서 돌봄사업 관련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중복·분산된 돌봄기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공적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기관) 구축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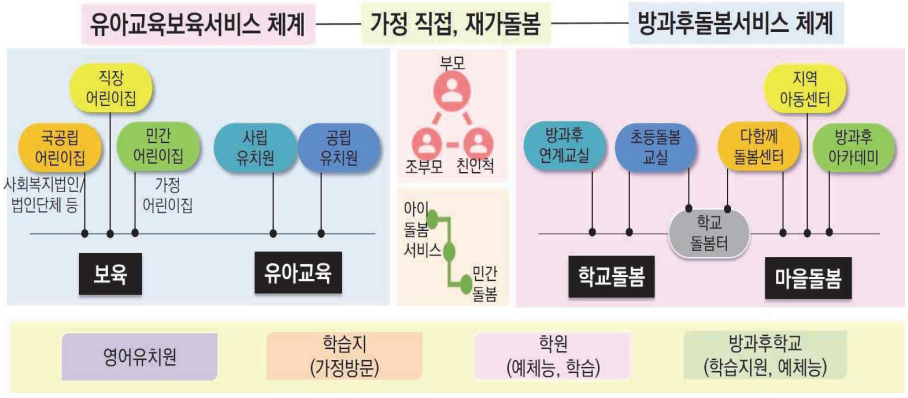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정책개발이나 기초자치단체 돌봄 행정/예산 지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돌봄기관과 학교(유치원 등)과의 보육·교육·돌봄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계 협의체(센터)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돌봄인력에 대한 안정적 확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지역활동가나 단체 인력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이외 유관(민간)단체 위탁 운영이나 운영 협력 체계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다. 재원의 조성

재정측면에서, 돌봄운영 예산은 행안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교육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아우른다. 관련 법령으로는 크게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중앙부처별로 예산편성 관련 규칙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각종 조례 등이 있다.

현행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를 위한 재정은 현행 중앙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비로 조성되고 있다. 융합돌봄특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개별시설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을 기본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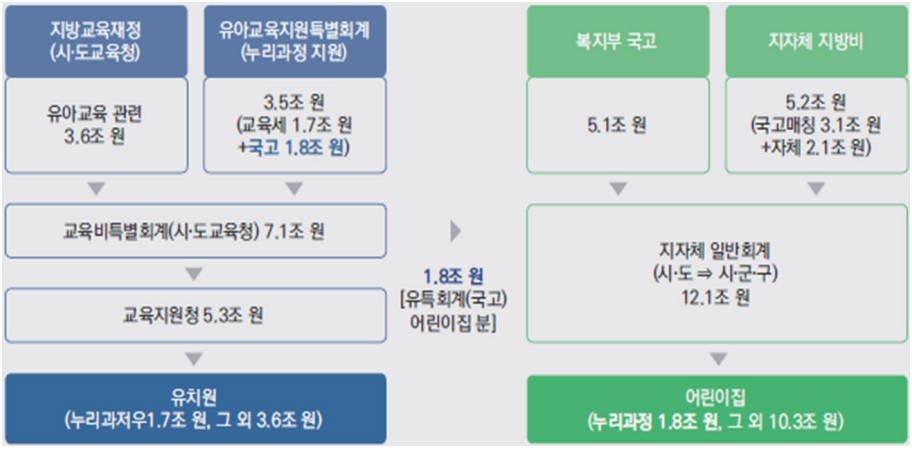
[그림 Ⅴ-3-1]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자료: 강지원 외(2023).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그림 참조.

현행 영유아 보육 및 교육예산의 지원체계와 재원 부담 규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Ⅴ-3-2]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지원체계(2023년)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국고(어린이집 분)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예산 국고분이 2024. 6. 27.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저출생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현행 영유아 보육 및 교육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의 형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의 비율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재원 부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예산의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Ⅴ-3-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 지방: 5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 지방: 65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서울: 50 / 지방: 80 50 50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 지방: 50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운영	서울: 50 / 지방: 8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주: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하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함.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둘째,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융합돌봄특구에 특화된 새로운 부담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융합돌봄특구를 운영할 재정적 유인이 생기게 되는 장점이 있다.

셋째,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융복돌봄특구내 단위 시설에 지원하고,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추가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이 기존 기준보조율보다 낮아진다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 재원 운용의 방식

예산과 기금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은 크게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 및 교육 사업의 재원 운용의 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 관점에서 재정의 확보, 배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기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며, 기타 기금은 주무장관의 승인 하에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한다. 계획변경에 있어서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나 공공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20%이상 변경 시(단, 금융성기금의 경우는 30%이상 변경 시) 국회의결이 필요하며, 기타기금은 주무장관의 자율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정기, 수시)가 이루어지고, 정부 내 심사평가 실시, 의회의 결산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비해 공공기금은 감사원의 감사(수시)를 받고 결산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며, 기타기금은 감사원의 감사(수시)를 받고 결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기금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 및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아닌 대통령의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융합돌봄특구를 위한 통합재정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면, 세 가지 방식(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돌봄특구를 위한 사업은 일종의 공동사업비제도의 틀 속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사업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공동사업비제도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미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김민희·장지현, 2016; 구균철 외, 2019). 현재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이 일종의 공동사업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Ⅴ-3-2〉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운용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입·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 운용주체간의 협의·조정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외 사용금지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 추가경정예산편성 - 이용·전용·이체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의결		
주요사업	국방, 교육, 복지, SOC,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유아교육지원, 환경개선 등	국민연금, 고용보험, 남북협력, 공적자금상환 등
주요 사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국가장학기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법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대한민국 재정 2021.

첫째, 일반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내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재원을 전출할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입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부처가 기금에 출연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일반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의 증액 없이 특정 목적사업을 일반예산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운영과 지출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해야할 때 필요한 조성 방식이다. 즉,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경우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데, 여유자금의 운영 없이 예산의 배분에만 의존할 때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지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특정 재원 확보, 지출과 수입의 연계성, 장기적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금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융합돌봄특구특별회계 제정을 통해 재정을 통합운용하는 방안이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융합돌봄사업을 위한 공동사업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사업비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공동사업비에 대해서 예·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면, 유사 중복 사업 등 비효율적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73]에 근거하여, 지자체 회계(일반, 특별)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외에 공동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일몰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특구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성과 평가

융합돌봄특구의 경우 특별회계로 편성하되 이로부터 집행되는 사업은 포괄사업비 방식으로 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가 포괄사업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균특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74조~제94조)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물론 현행 균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류영아 2023). 하지만 융합돌봄특구의 경우 참여 시설의 종

7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류와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균특회계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융합돌봄특구에 도입하면서 지출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균특회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출한도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사업을 자율적으로 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융합돌봄특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내에 설치되는 만큼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융합돌봄특구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있다. 여기서 중앙정부에 의한 성과평가는 융합돌봄특구를 통해 시설간 융복합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평가로 구성될 수 있다.

바. 소결

첫째,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비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대규모 운영모델은 운영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나, 이외 중규모와 소규모 운영모델은 융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공통인력 배치로 운영비(인건비)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둘째, 융합돌봄특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칭 융합돌봄특구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현재의 다양한 재정원천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별회계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돌봄사업의 운영과 성과를 위해 설치된 일종의 공동사업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하더라도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용 방안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재원 분담 등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융합돌봄특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내에 설치되는 만큼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중앙정부도 융합돌봄특구를 통해 시설간 융복합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추가적인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VI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0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고려사항 및 전략

02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거버넌스

Ⅵ.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 연구내용을 통해 검토한 '융합돌봄특구'의 정책 제안과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실제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자체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과 추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융합돌봄특구는 다부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돌봄의 인프라 효율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간 인구소멸 지역 또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특구 조성과 특례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복합화 된 형태로 돌봄시설이 모여있는 운영 사례가 적지 않음을 유관 특구 정책과 아동통합돌봄시설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보고서 2장 참조). 지역의 인프라 특성과 돌봄 수요에 맞는 융복합시설의 운영모델을 대-중-소 규모의 시설 조합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상의 주요 개선 방안과 재정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써 특구 정책의 추진과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실효성 있게 지역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고려사항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융합돌봄특구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과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융합돌봄특구의 추진 시 필요한 (1) 주요 고려사항과 과제를 짚어보고, 융합돌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 이행을 위한 (2) 추진 전략을 관련 법제도 기반의 마련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행 방안과 미래 융합돌봄특구의 방향 및 확장된 모습에 대해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고려사항 및 전략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특구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① 법적 근거의 마련(법 개정)과 ② 지원체계, ③ 운영체계 즉 거버넌스 구축의 3개 요건이 필요하다. 이중에

서도 지역에 지속가능 전략으로서 중요한 요건은 첫 번째 법적 근거를 통한 실행기반의 마련일 것이다.

가. 고려사항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4대 특구 사업 등 많은 특구정책이 추진 중이고, 이에 대한 찬반과 긍부정의 다양한 쟁점과 실행력 여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시점 돌봄특구의 도입과 추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융합돌봄특구의 정책 추진과 방향성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융합돌봄특구의 명칭 사용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특구로 지칭하는 데에서 오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범위가 넓고 비정형적이며, 이에 대해 요구되는 운영요건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융합돌봄특구의 범위와 정의를 일정부분 융복합‘시설’로 규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 요건을 모델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적지않은 현장 관계자들은 ‘특구=시설’이라는 접근과 개념에 대해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현재 4대특구 사업의 지역 범위와 사업내용이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융합돌봄특구의 첫 번째 운영모델이자 정책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융복합시설로 접근한다면, 특구라는 명칭을 고수하지 않고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개념과 이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둘째, 융합돌봄특구 융복합시설의 추진은 적정한 지역 입지(site, zone)를 발굴하고 여기에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집적된 통합돌봄센터, 복합화시설(복합커뮤니티), 지역 거점 돌봄기관, 아이돌봄 클러스터,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 (행정안전부) 임신출산육아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이 현행 시설로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융합돌봄특구의 추진은 미래에 신규 융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합화 된 시설 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택지이든 구도심이든 현재 통합센터 내 운영 시설 간에 융복합운영, 즉 다부처 돌봄시설 간에 가능한 연계협력의 지점과 정도(수준)를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는 몇 개 운영요건의 완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융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풀어 나가는, 현행 법 제도 내의 점진적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신규택지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기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 및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특구의 지정과 관련 특례의 발굴 및 적용은 신규택지 또는 구도심의 지역 특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 추진전략

상기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융합돌봄특구 추진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관 특구정책 연계 전략

돌봄이 광의의 교육(Educare)에 포함되고, 교육 정책이 교육과 돌봄, 학교 복지와 지역사회 협력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도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혁신 가치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발전 및 인구사회학적인 돌봄의 과제와 동떨어지지 않은 연결점들을 보이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구 정책의 추진과 유관 사업에 견주어 돌봄특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봄에 국한되지 않는 다부문 연계성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와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의 정책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 규모와 다부문 사업의 연계를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하여 아동돌봄의 융복합운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애초 특구 도입의 목표가 아동돌봄과는 거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유관 특구사업과 병행할 경우 '교육발전특구'과 같이 사업내용의 연결점을 찾기 용이한 정책과 지역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재원의 확보와 관련 주체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 교육부 보도자료)에 공표된 3개 사업 영역(선순환체계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중 유아·돌봄의 영역이 초중고학교 등과 견주어 사업 추진 면에서 보강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돌봄서비스 융복합화의 단계적 추진

융합돌봄특구의 지정과 융복시설의 설치·운영은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장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시의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길 제언하는 바, 1단계로 현행 제도권 내에서 시설 및 서비스 간 물리적 통합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용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2단계로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개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간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간제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유아숲체험원 등과의 프로그램 연계, 장난감대여점 등을 통한 육아시설 대상 순회서비스, 초등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 및 예체능 학원 간 학교 밖 교육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융복합화를 이행한다.

끝으로 3단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융복합 고도화를 시도한다. 이는 물론 시설통합이 아닌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한 제한된 화학적 융복합 운영(Limited Chemical Convergence)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융복시설은 아이돌봄시설의 화학적 통합만을 목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결합만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함께 설치된 개별시설의 서비스 목표가 존중되고 시설 상호 간 연계와 협력 그리고 공유를 핵심가치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융복시설 내 인적·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연령별, 프로그램별 서비스가 고도로 융복합되어 제공되는 돌봄의 질적·내용적 상위 단계이다. 이 경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상 애로사항과 효율적 방안을 찾는 모니터링의 과정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관련 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 기반 실행

돌봄특구 추진의 핵심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법 제도상의 구분과 각각의 합법적인 기준들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융복합시설로 운영이 될 때 수요자 부모와 아동,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속적이면서도 양질의 종합적인 돌봄으로 이용하는데 다수의 제한과 단절, 규제와 칸막이로 나타나는 지점들이다. 물리적으로 한 곳에 집적되어 있으면서도 공통의 공간과 유사 서비스 기능, 인력의 활용에서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과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다부처사업으로서의 개별 돌봄시설이 하나의 통합시설로 화학적 결합 또는 완전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단기간 내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당면한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 통합이 아닌 '융복합운영'의 개념으로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 가능한 특구 정책을 대-중-소 규모의 운영모델로 제안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돌봄의 다부처·다부문 속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개별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법 개정을 위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실행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융합돌봄특구 정책 추진 로드맵으로서 지역 맞춤형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계획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융복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의2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4장 참조). 현행 제8조[74]의 내용이 아동돌봄의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복합시설 운영'의 일정수준 화학적 결합으로 발전된 융복시설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기본법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지는 법적 기반의 마련으로, 융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과 지침에 '융복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한 시설 분소의 설치 및 유관 돌봄시설과의 융복합운영, 시범사업이 가능함'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후 융복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복합시설에서 융복합운영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현행 (개정) 개별법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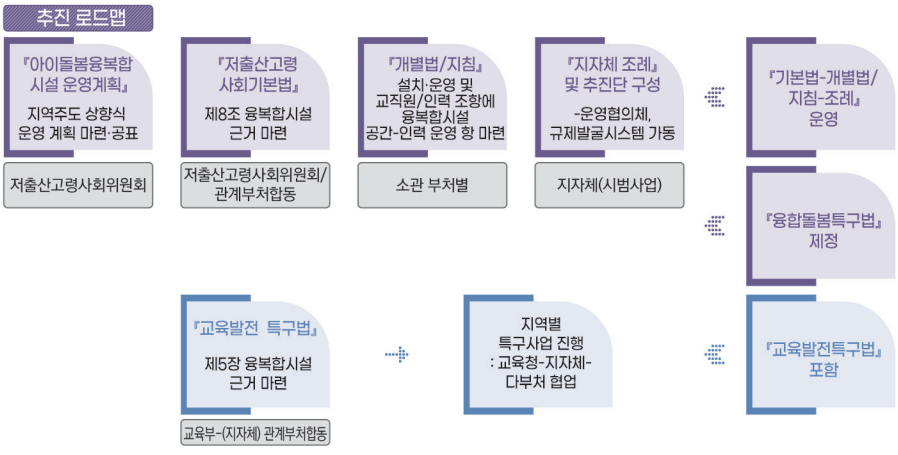
7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하는 범위 내에서 융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융복합운영은 시설 간 연계협력과 통합적 운영의 범위와 수준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느슨한 형태의 것으로, 일부 운영요소의 적용으로 제한된 형태일 것이다.

즉 현행 법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연한 적용으로서의 규제완화일 것이다(예: 식당공간 공동사용 가능, 영양사 식단 공동사용,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동계획 등). 연구에서 제안한 융복시설 운영 고유의 공통 공간의 설치와 인력의 겸임·겸직을 통한 순환배치, 특성화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그리고 다부처 시설의 재원을 일정부분 공동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융합돌봄특구에 대한 특별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앞서 논의한대로 교육발전특구 및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유관 특구법에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특구법(특별법)에 의한 융복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일례로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사업추진계획 하에 일부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 개정과 본 사업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도심융합특구와 도시혁신지구 등의 추진에서도 개별법의 제·개정과 지자체 조례의 입법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기간 진행 이후 특별법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추진 경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Ⅵ-1-1〉과 같다.

[그림 Ⅵ-1-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법제도 기반 마련



4) 융복합돌봄특구 추진단 운영

특구의 총괄사무는 저출산대응 담당부처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융복합돌봄특구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동 추진단에서는 융복합돌봄특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원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법령정비팀을 두고 특별법 제정은 물론 소관 부처별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실행 작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돌봄특구 정책의 성패와 지속가능성은 안정적 재원조달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원대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에 융합돌봄특구 설치·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등 활용 가능한 재원선을 찾는 것도 추진단의 주요한 사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구 및 융복시설 시범지역 운영사무를 관장하며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무가 될 것이다.

5) 특별법의 제정

융합돌봄특구와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는 1차적 목적은 하나의 단지 또는 건물로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 아이돌봄시설은 다부처·다법제 체제로 운영되어 개별시설의 근거법령이 규율하는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달라 통합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개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특별법에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특구 및 융복시설 시범지역 운영, 융복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행·재정 지원, 운영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특구의 지정을 통해 일반법을 적용받는 여타 지역 시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되, 꼭 필요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규율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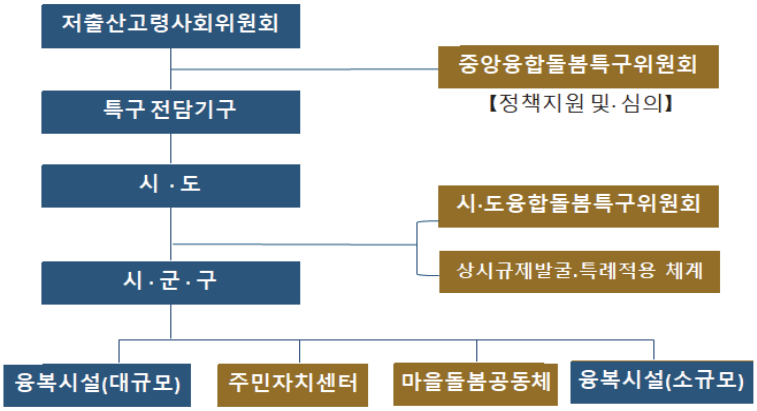
아울러, 특별법 제정 및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재 경상북도, 인천시, 증평군 등 이미 유사한 형태의 융합돌봄특구 및 융복합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 융복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행정·재정 등을 지원하여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여 특별법의 내용과 운영모델(안)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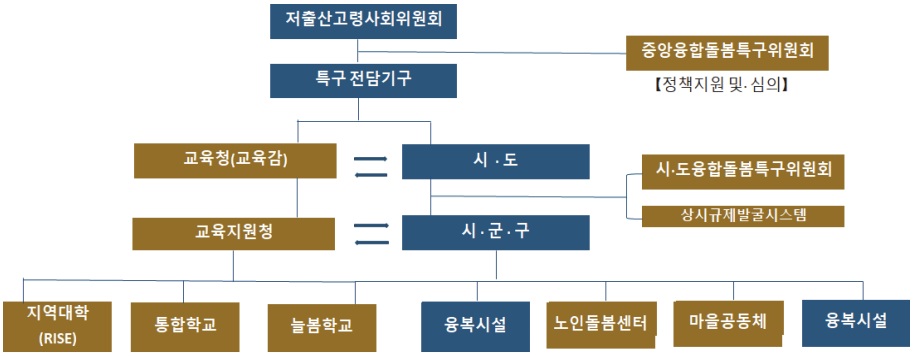
가. 운영체계와 거버넌스

융합돌봄특구 융복시설의 운영은 지자체의 지역 내 융복합운영의 규제완화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융합돌봄특구의 지정과 설치, 운영 전반은 크게 중앙-지방 정부의 업무 체계와 보조금의 지급 등 예산 조달을 필요로 하며, 이후 지역의 융복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 업무 분장과 예산 집행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중앙-지방 정부 업무협력의 운영체계와 거버너스를 살펴보면 〈그림 Ⅵ-2-1〉, 〈그림 Ⅵ-2-2〉와 같다.

[그림 Ⅵ-2-1] 중앙-지방 정부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지자체 중심



[그림 Ⅵ-2-2] 중앙-지방 정부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교육-돌봄(교육자치-일반자치) 협업



아이돌봄 융합돌봄특구의 운영체계는 보고서 4장에서 제시한대로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과 양육지원의 사무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늘봄학교가 (거점) 늘봄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마을돌봄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돌봄특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업모델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구 정책의 실행은 돌봄의 융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발굴과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규제발굴완화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규제심의의 과정과 행정업무의 담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주도 운영과 교육청과의 협업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Ⅵ-2-2〉와 같다.

중앙정부 차원의 융합돌봄특구의 공모와 지정은 정부 주도의 전국 사업으로 진행하는 하향식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융복시설 운영의 수요와 이에 대한 발굴 및 구체적인 입지의 마련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상향식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이돌봄시설의 융복합운영을 위한 규제완화와 특례조항의 마련 역시 지자체에서 발굴하여 상향식으로 요청하면 중앙의 특구전담기구에서 특구위원회를 통해 심의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일원화 된 전담부서 또는 전담공무원의 지정이 바람직하다.

융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통의 공간과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특구 지정과 함께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방식 외에, 특구 지정 이후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운영에 저해가 되는 규제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특례의 적용을 허용하는 형태의 지원방식 또한 지원체계로서 작동할 것이다. 융복합시설 운영의 경과를 모니터링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연계협력과 융복합운영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비용지원채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적용의 단계적 이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부처 예산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과 예결산이다. 이러한 재정 운영 전략은 보고서 5장을 통해 논의되었다. 아울러, 융합돌봄특구 및 융복합시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의 하에 지자체장에게 통합적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융합돌봄특구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❶ 지역의 복합화시설 현황 및 수요, 특구/지구/특례 적용의 파악
❷ 융합돌봄특구 지정·공모 추진
- 아이돌봄융복합시설 운영 신청: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존 복합화시설
- 현행 특구 사업에 반영, 연계 가능
- 지역의 아이돌봄 융복합운영 특례 및 규제완화 사항 발굴과 심의

[지정요건]
- ◂ 담당 행정조직(부서) 일원화 또는 전담공무원 지정
- ◂ 비용지원(인센티브) 설계 유/무 – 규제완화 정도를 고려
- ◂ 융복합운영 정도 및 지속에 따른 지원체계 단계적 적용

예) 공간 공동사용 및 인력 순환배치의 융복합운영 시, 관련예산 항목 통합운용

❸ 규제완화-특례적용에 따른 융복합시설 운영 모니터링
- 상시 규제발굴과 특례적용 시스템
- 융복합운영 모니터링에 따른 규제완화 정도 및 비용지원체계 확대
- 보조금 집행과 예결산에 대한 통합적 운영
- 타 특구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
- 융합돌봄특구의 확장·발전 및 지속가능 전략

나. 융합돌봄특구 발전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돌봄특구 운영모델은, 현 시점 전국 지자체에서 수요가 많은 집적된 시설로서의 융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운영요소별로 가능한 융복합운영의 법제도 기반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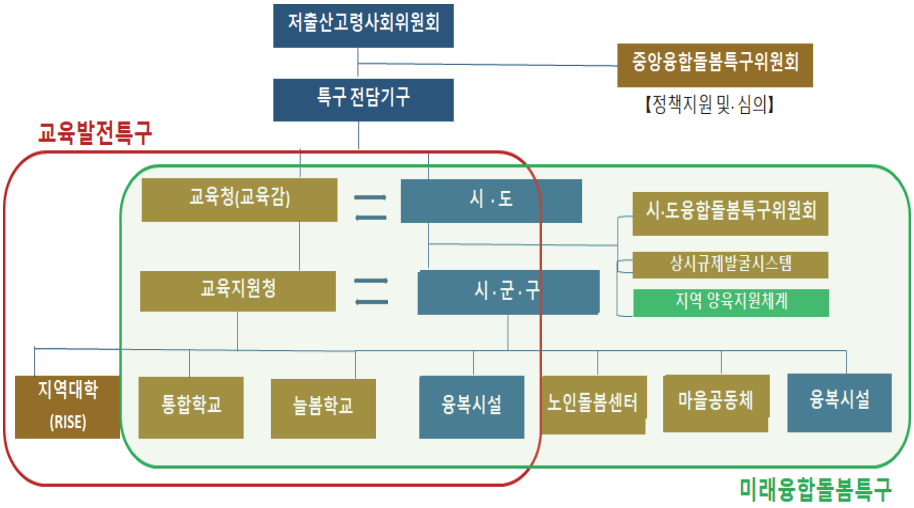
그러나 특구의 범위와 개념이 그러하듯 지역의 돌봄 특구는 광의의 양육지원체계와 지역 특화 육아지원정책의 설계를 담아,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와 전 생애주기 돌봄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전략으로서 융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웰빙,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청년세대의 정주여건, 지역사회 돌봄 참여와 유휴공간 활용(예:폐교) 등 다

세대 교류와 직주 접근성 및 이동을 고려한 광의의 돌봄특구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이 유관 특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의 발전과정으로 확장되어 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융합돌봄특구 운영의 다양성 및 확장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서비스(바우처포함)-시간 지원을 반영하고 지역의 의료·돌봄 등 필수 인프라 계획과 연동되는 융합돌봄특구의 확장된 모델이 가능하다.

둘째, 특구의 경우 비용지원의 인센티브가 중요한 요건이나, 비용지원에 앞서 과감한 규제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강력하지만 공간적으로 협소한 규제프리존의 설정을 인센티브로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체계와 운영모델을 발굴하도록 한다.

[그림 Ⅵ-2-3] 융합돌봄특구 운영체계: 미래 융합돌봄특구



셋째, 타 특구정책 및 특별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법적근거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계가 아닌, 지역에 적용되는 다양한 특화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특구 간 운영의 모델을 꾸릴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역에 도심융합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존의 복합시설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특구와 혁신지구 간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늘봄학교의 추진이 융합돌봄특구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트윈으로서 온-오프라인 돌봄 플랫폼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거

점-분소의 운영과 대-중-소 규모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통합학교와 소규모학교의 추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따로 떨어진 아동과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의 운영과 아이돌봄인력의 파견, 돌봄순환 버스의 운영 등을 반영하는 미래 융합돌봄특구의 운영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모두 법적 근거의 마련과 지자체 주도의 특화된 돌봄 수요의 발굴과 설계, 실행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숙의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원·조성은·함영진·신영규·임지영·김지영·이길재·추병주(2023).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교육청(2022). 유치원행정업무메뉴얼.

교육부 내부자료. 2024년 예산 자료.

교육부(2023.12.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국회예산정책처(2021). 대한민국 재정 2021.

국회예산정책처(2024). 저출생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내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김지현·김영민·박혜준(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페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최윤경·박진아·김지현·구자연·이혜민·윤재석·이정은 외(2024).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육아정책연구소·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나영·환선영·엄지원(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병주·김정희·권동택(201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 비교교육연구, 24(6), 247-271.

김승제·손석의(2006).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24-30.

김은영·최은영·박원순·김동훈·오채선·이성희·차기주·김희수(2023).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복지지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3), 27-35.

류영아(20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국회입법조

사처.

모성은·정영철·류소영·이영숙·이주안(202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한국지역경제연구원.

문종덕·오형석·최병관(2013).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남구의 지역공공시설 및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0(4), 특집 special issue, 23-34.

문화관광체육부(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박정은(2022). 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박정은(2023). 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국토정책Brief No.931.(2023.9.4.) 세종: 국토연구원.

박혜선·남윤옥(2016).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의 독일 다세대교류센터의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6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4년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사업안내(부록).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 국고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치단체 보조 확정예산 통보[인구정책총괄과-6492(2022.12.29.)].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85(2022. 12. 20.)].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 통보[장애인서비스과-7297,7281(2022.12.28)].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2024 다함께돌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인구정책총괄과-7248(2023.12.28)].

보건복지부(2024a). 202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4c). 2024 보육사업안내(부록).

보건복지부(2024d).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4f).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4e).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신종봉·박준수·박창선(2014). 교육시설 복합화 실태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4), 247-255.

식품의약품안전처(2023). 집단급식소 규제개선에 따른 업무요령 및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안내서-1252-02).

엄문영(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육아정책 Brief. 제92호.

여성가족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및 후속조치 안내[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139(2022. 12. 6.)].

여성가족부(2022). 내부자료: 2023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396(2022. 12. 28.)].

여성가족부(2024a).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4b). 2024 가족사업안내(Ⅱ).

오형석(2015).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소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2(4), 기획연재 special issue, 25-28.

우예신·홍민경·김민우·차선정(2022).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한 기초연구:서비스 기준정보 도출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 12-19.

유웅상(2020). 생활SOC와 학교시설 복합화-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시설환경학회지, 27(3), 특집 special issue, 7-10.

윤재석·신유선·임은정(2019). 인천형 혁신육아(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이옥 외(2006). 육아정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개발센터.

이용일(2015). 경기도 광교, 동탄2신도시의 학교복합화시설 비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2(4), 특집 special issue, 21-24.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

육진흥원.

이해영·박현용·이길재·류제화·김희성(2023). 교육자유특구 운영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재희·양미선·윤소정·김종근·구형모(202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진우·윤갑식(2018).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공급 우선순위 분석: 부산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77-90.

인천광역시(2024). 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장철순(2009). 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국토, 336, 44-50. 국토연구원.

정우성·송정현(2020). 한일 지역특구제도 비교 – 한국 규제특구제도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69, 303-329.

조진우(2020).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90, 173-198.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65 (2024.5.22. 출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최민아·김륜희·신병흔·임수현·김효진·김대원(2023).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를 중심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종권(2014).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6, 58-69.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늘봄학교추진센터 홈페이지 https://afterschool.kosac.re.kr/main (인출일: 2024. 9. 19).

미쓰비시 부동산(MITSUI FUDOSAN) 홈페이지. Grand Opening of Tokyo Mid

town Yaesu in March 2023 (2022.3.15.). https://www.mitsuifudosan.co.jp/english/corporate/news/2022/0315_03/ (2024.8.19. 인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목록.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0378/S/1/datasetView.do (인출일: 2024.7.24.).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 초등 돌봄센터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402 (인출일: 2024.7.2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온마을 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656 (인출일: 2024.7.2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인출일: 2024. 7.19., 2024.8.14.)

열린재정. 재정통계, 재정지출, 분야별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인출일: 2024. 10. 16.)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인출일: 2024. 7.19., 2024.8.14.).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65 (2024. 5.22. 인출)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http://sosc.or.kr/?page_id=3941 (인출일: 2024.7.24.).

충북복지넷 https://www.043w.or.kr/www/orgWelServSrch.do?key=119 (인출일: 2024.8.14.).

한국보육진흥원. 알림마당. 보육통계. 시간제보육 현황. https://www.kcpi.or.kr (인출일: 2024. 5. 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4. 7.24., 2024.8.14.).

[보도자료/기사]

교육부 보도자료(2023.11.3). 교육발전특구 질의응답.

교육부 보도자료(2023.12.19). 2024년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교육부 보도자료(2024.2.6.).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 생활 SOC 주요성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뉴스핌 기사(2024.6.24). 공동육아로 출산율 기적 쓴 日 마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1000656 (2024. 8. 14 인출).

뉴시스 기사(2024.1.10) 광주종합터미널을 日 '미드타운 야에스'처럼?..강기정 시장의 구상은? (2024. 9.25 인출).

산동일보 기사(2020.10.26) 노원구 '노원 아이돌봄센터' 개소.

아시아경제 기사(2023.2.24). 日 어느 시골마을 출산율 2.59명..기적을 낳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22411241687044 (2024. 8. 14 인출).

연합뉴스(2023. 10. 25).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추진 '행복돌봄터 1호' 조성 https://www.yna.co.kr/view/RPR20231025010800353. (2024. 9. 18 인출).

연합뉴스(2024. 1. 21). 광주시, 방직공장·터미널 개발 연결한 ‘15분 도시’ 구상.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1029100054 (2024. 9.25 인출).

조선일보 기사(2024.2.29). 출산율 2.95명, 日 마을 공동육아의 기적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2/29/5VR5TFNVKNBQROKNG2GVNOS3DQ/ (2024. 8. 14 인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2023). 지역특화특구 성과 공유회 및 혁신토론회 개최.

프레스뉴스통신(2024.7.10) 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https://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065611716645264 (2024. 10. 31 인출).

부록

부록 1.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보육 관련[75)]

▢ 개요 및 목적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성장 전략 실현에 필요한 과감한 규제·제도 개혁을 실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됨.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 속에서 지자체나 사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실행할 때, 장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개혁을 하지 못한 '암반규제'에 대해 특례조치 정비와 관련 제도개혁 등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보육 분야 관련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직업상 활약 추진을 배경에 두고 육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국가전략특구에서는 보육 인재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보육교사의 자격 활동 범위를 보육교사 시험 합격 지역에 한정하는 특례나, 지역의 보육 수용 시설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의 대상아동 연령을 확대하는 특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을 추진함.

규제개혁 사항	개요	시행 시기/근거	활용 지자체
〈1〉 지역한정 보육교사	'지역 한정 보육교사' 창설(정령시에 의한 해당 보육교사 시험 포함) 보육교사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시험을 연간 2회 실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차 보육교사 시험 합격자에게 3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만 보육교사로 활동이 허용되는 자격을 부여. 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을 정령 지정 도시[76)]	2015년 7월 특구법 제정	가나가와현, 나리타시,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센다이시

75) 일본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홈페이지 자료(国家戦略特区 規制改革メニュー一覧)를 참조 작성함.
76)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각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도시를 말함.

규제개혁 사항	개요	시행 시기/근거	활용 지자체
〈2〉 지역한정 보육교사 (실시주체)	다양한 주체가 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정, 적정하고 확실한 시험 시행을 담보한다면, 주식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법인이 지정 시험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2017년 6월 특구법 제정	가나가와현
〈3〉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의 대상 연령 확대 대기 아동이 많은 특구에서 현행 원칙상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0세~5세까지의 통합 보육이나 3~5세만 보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023년 5월부터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3세 이상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유연한 판단에 의해 0세부터 5세까지 통합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국에서 가능해짐.	2017년 6월 특구법 제정	나리타시, 오사카부, 효고현
〈4〉 지방재량형 인가화 이행 시설	지방재량형 인가화 이행시설 설치 '인가화 이행시설'을 바탕으로 대기아동이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보육의 질 확보·향상을 도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기아동 해소에 힘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으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보육교사 부족 때문에 어린이집 등의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를 목표로 인가 외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강습·연수를 거친 보육종사자를 일정 비율 배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의 수용처 정비를 가능하게 함.	2019년 4월 공지	—
〈5〉 인가외보육시설	외국인 영유아가 많은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 특례 이용하는 영유아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해 "해외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나 "외국인 영유아 보육에 지식경험을 지닌 자"가 충분한 수만큼 배치되고, 일본의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자격자의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라도 지도감독 기준상 보육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023년 1월 국장 공지 2023년 12월 과장 공지	오키나와현,아이치현

자료 출처: 国家戦略特区 · 規制改革メニュー一覧

▢ 상세 개요

〈1〉 '지역 한정 보육교사' 창설

(정령시에 의한 해당 보육교사 시험 실시 포함)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2조 5항)

(1) 규제개혁 내용

1) 특별조치 이전

- 보육교사 시험은 매년 1회만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횟수 제한 없음)
- 광역자치단체에 연 2회 실시에 대해 통지하여도 인센티브가 없어 실행되지 않았음.

2) 특별조치 이후

- 2회차 보육교사 시험을 장려하는 구조로, 3년간은 해당 구역(지역)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한정 보육교사' 제도를 창설
- 광역자치단체가 통상 시험을 2회 이상 또는 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특구 내 정령시가 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실기 시험을 실기 강습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효과

- 지역의 보육교사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규제개혁 개요

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시험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구조를 마련

- 2015년: 지역한정 보육교사 합격자는 전국 합격자의 10% 이상
 예비 보육교사의 발굴에 높은 효과
- 2016년: 지역한정 보육교사 시험의 실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통상 시험 연 2회로 확대

〈2〉 다양한 실시 주체에 의한 지역한정 보육교사 시험 실시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2조의 5 제8항)

(1) 규제개혁 내용

1) 특별조치 이전

- '국가전략특구 한정 보육교사 시험(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 제도를 계기로,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연 2회의 시험을 지정 시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
- 지정 시험 기관은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한정되어 시험 실시 횟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

2) 특별조치 이후

- 국가전략특구에서 지역 한정 보육교사 시험 제도를 활용한 연 3회차 시험을 시험의 공정성·적정성을 담보한 후, 주식회사 등의 다양한 법인을 지정 시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3) 효과

- 보육교사 시험의 기회 확대로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3〉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2조 4항 등)

(1) 규제개혁 내용

1) 특별조치 이전

- '소규모 보육 사업'은 0~2세 대기아동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을 원칙상 0~2세로 한정하며,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만 3~5세를 보육할 수 있음.

2) 특별조치 이후

- 대기아동이 많은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대상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0~5세 또는 3~5세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인정함.

3) 효과

- 아동 보육의 선택지 확대가 기대됨.

(2) 활용 예시

소규모 인가 어린이집(0~2세)와 연계 시설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의 보육

〈4〉 지방재량형 인가화 이행시설의 설치
(2019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 어린이가정국장 통지)

(1) 규제 개혁 내용

1) 특별조치 이전

- 인가받은 보육시설이 보육교사 부족 때문에 직원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 정원수를 보육 종사자 수에 따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보육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이것이 대기 아동 문제 해소에 걸림돌이 됨.

2) 특별조치 이후

국가전략특구에서

- '인가 외 보육시설이 인가 보육시설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인가 보육시설이 보육교사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개를 목표로 지방재량형 인가화 이행시설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운영비 보조와 함께

①인가화 이행 계획의 연장(기존 제도: 5년 이내)과

②보육 서포터 가산의 취득 조치를 가능하게 함.

3) 효과

-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환경 정비가 진행되어 대기 아동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외국인 영유아가 많은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 특례 (2023년 1월 31일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 통지(2001년 3월 29일)의 개정 등)

(1) 규제 개혁 내용

1) 특별조치 이전

외국어로 보육이 필요한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보육 종사자의 약 3분의 1 이상을 일본의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할 것

※인가 외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기준상 보육종사자 요건

2) 특별조치 이후

국가전략특구 내 이용 영유아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인가외 보육시설은 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라도 지도/감독기준상 보육종사자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 있음.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

3) 효과

보육종사자와 영유아 간에 외국어를 활용한 소통을 하면서 보육을 할 수 있음.

부록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표

[융복합시설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법 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규정없음	노유자시설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 포함)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조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5	어린이집	법령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규정과 관련하여 **보육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항의 가)항 제㈦목에서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함. 건축물 용도 (**보육사업안내** 39쪽)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6	유치원	법령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학교(기반시설 세부시설명)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규정없음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사. 그밖에 후생기관 등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포함)
8	지역아동센터	법령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 20쪽 2) 설치가능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9	다함께돌봄센터	법령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다돌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1의2 -- 다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16쪽 나.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학교복합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 가능`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노유자시설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④ (중략) 발달제활서비스 제공기관 (중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중략) 사업을 말한다. 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번	시설명	구분		도시계획 용도	건축물용도
11	작은 도서관	법령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기반시설명)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세부시설명)	교육연구시설
			조문 (위임, 위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융복합시설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보육관련시설에 지정	1층 또는 5층이하(건물전체일 경우)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시간제보육버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략) 다음 시설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영 제28조의2 제6항. 비영리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관련시설. 제7항 그외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29쪽. 보육관련시설이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관련 시설로 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3) · --- 1층 또는 건물전체(5층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72쪽 4. 기관연계서비스 가. 신청개요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서약서 나.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규정없음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사업안내** 제2권 11-12쪽 라. 공간발굴, 1)고려사항 *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해당없음 (제한규정 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기준	접근성이 고려된 안전한 환경	규정없음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조문 (위임, 위계)	**2024 보육사업안내** 486쪽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 함 **2024 보육사업안내** 482쪽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o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로 수정 - 국고보조를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시공단계에서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육,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설 적합성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야 함.	규정없음
			기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안전한 곳	1층 건물 또는 건물전체 (5층이하)
5	어린이집	법령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항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3) • --- 1층 또는 건물전체(5층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환경을 갖춘 부지 나. *위험시설과 50m이상 이격거리 유지 * 위험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함. 동 조항 3호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기반하여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음. 어린이집 입지조건(**보육사업안내** 38쪽)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유흥업소,위험시설 등) 인근에 설치할 수 없음.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대지 내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이하)이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동일대지: 같은 필지(지번)가 아니어도 가능
6	유치원	법령	기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안전한 곳 보건 위생 안전 등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	3층 이하 (단, 건물전체 사용 시 최대 5층까지 설치)
			조문 (위임, 위계)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유치원행정업무메뉴얼** (경기도교육청). 설립인가 구비서류. 212쪽. 교사는 건물의 3층이하로 함. 단, 건물전체 사용시 최대 5층까지 설치가능, 유치원 건물의 4층 이상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강당, 체육장 등)은 유아의 안전 교수, 학습활동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 결정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해당없음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객석 분리 가능
			조문 (위임, 위계)	해당없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별표25. 5. 객석.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을 신고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내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차량 및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당초 조리장, 객석 동일장소에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2022. 11.23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 개정시행하고 23.5.19일 후 입법.)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안전한 곳 (청소년 위해시설 이격 50m 이상)	해당없음 (제한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1. 공통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안전한 곳 (청소년 위해시설 이격 50m 이상)	해당없음 (제한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2(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중략)다돌은 제1항각호의 위험시설과 50m이상 이격거리 유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	해당없음 (제한규정 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돌 의무설치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10쪽 - 시설 설치 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함 -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청소년보호법 제31조)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접근성이 고려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제한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 - 보건, 위생 측면을 고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복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입지조건 (제한점)	건축물 층수 및 건물동 제한 등
11	작은 도서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관련 별표6 --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1. 시설기준 나. 작은도서관 :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2. 도서관자료 기준 나. 작은도서관 :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을 갖출것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관련 별표2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1. 사서요건 나.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이상 둘 것.

[융복합시설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건축물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보육실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30쪽. 보육실 확보(공통기준 : 최소 10.6㎡ 이상(1개반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보육실 기준 충족 필수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3	공동육아나눔터	법령	기준	아동·가족관련 시설을 복합설치 (권장)	사무공간, 화장실,활동공간, 수유시설, 기저귀 갈이공간
			조문 (위임, 위계)	**가족사업안내** 제2권 13쪽 라. 공간발굴, 2) 활용가능공간 * 학교부지, 국공유지 등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 아동·가족관련 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공간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족사업안내** 제2권 14쪽 마. 공간조성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활동에 적합한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갈이 공0간 등을 배치 * 설비기준 난방, 환기, 체광, 방염, 급배수, 소방, 기타안전설비 설치 및 조치 규정을 둠
4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조문 (위임, 위계)	**2024 보육사업안내** 486쪽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영**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중략)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024 보육사업안내** 486쪽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 대여실, 교구·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등)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함이 원칙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다만, 설치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시설은 허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나)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2) 복합설치 허용시설 설치기준 - 최상층부터 설치, 어린이집과 다른층에 설치, 출입구 등 시설공간 분리 - 복합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전기, 수동 등 각종 설비는 분리설치 사용할 것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설비기준 --- 공간 및 설비별 기준 나) 조리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목욕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6	유치원	법령	기준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복합설치 가능	校舍, 대지, 체육장, 교지, 조리실, 교구, 급온수시설, 공기정화설비 등
			조문 (위임, 위계)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유치원)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 급식시설·설비기준 (조리실, 조리실 설비, 기구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 (입지, 구조 및 면적, 교실, 조리실, 안전시설, 교육과정, 강자 자격 등) **학교보건법** 제 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개별시설의 설비 또는 편의시설로 설치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등 보관시설, 화장실, 객석
			조문 (위임, 위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사. 그밖에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별표25. 1. 조리장, 2. 급수시설, 3. 장고 등 보관시설, 4. 화장실, 5. 객석.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설치운영 가능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집단지도실, 식당 등 (일부 겸용사용 가능)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1. 공통시설기준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기본 공통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설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중략)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시설의 통합설치, 운영등에 따른 시설및 인력기준 - 상호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사용가능 - 간호사(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 겸직 가능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1. 공통시설기준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가)거실, [나)사무실, 다)양호실, 라)상담실], 마)조리실, 바)목욕실, 사)세탁장, 아) 건조장, 자)화장실, 차)급배수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바. 지역아동센터 : 집단지도실 2개 이상, 식당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설치운영 가능+E37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설치, 운영 등에 관한 특례)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관련 별표1의2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나.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중략)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중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시설의 통합설치, 운영등에 따른 시설및 인력기준 - 상호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사용가능 - 간호사(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학교복합시설법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초등학교 내 설치 가능 3. 다함께돌봄센터	각 갖출 것.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22쪽 마. 설비기준 - 급배수시설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서비스공간(독립된공간), 사무행정공간, 대기자공간, 기타필요설비
			조문(위임, 위계)	규정없음 (제한규정 없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 ·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승강기 등 이동시설 설치할 것 3) 서비스 제공공간 투명창 또는 cctv을 설치할 것 마. 기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	작은 도서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500세대 이상)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제한규정 없음)	□ 시설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후략).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공간설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교육연구시설 : ….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등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복합시설 설치 및 공동설비 활용	의무적 시설·설비 설치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 ·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융복합시설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안전시설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조문 (위임, 위계)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30쪽. - 비상재해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로써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설비 등의 요건 충족 필수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 기타설비(방염, 불연재 등)
			조문 (위임, 위계)	**가족사업안내** 제2권 14쪽 마. 공간조성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활동에 적합한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비치물품 : CCTV 1대 이상 설치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안전시설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기준	안전시설 설치 (지침상 규정)
			조문 (위임, 위계)	**2024 보육사업안내** 486쪽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2) 구조 및 설비기준 -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건축법」,「소방방재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 기타설비(방염, 불연재 등)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설비기준 --- 공간 및 설비별 기준 아)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포함) 자) 바폐쇄회로 텔레비전 차) 그밖에 실내설비
6	유치원	법령	기준	소방안전시설, 전기안전시설, 가스안전시설
			조문 (위임, 위계)	**유치원행정업무메뉴얼** (경기도교육청). 설립인가 구비서류. 212쪽. - 시설안전: 소방, 전기, 가스, 놀이시설,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점검확인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 3. 설비 -- 다. 안전점검 가스, 소방, 전기분야 연1회 안전점검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안전시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소방안전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설)
			조문 (위임, 위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1. 공통시설기준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카) 소방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조문 (위임, 위계)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22-27쪽 마. 설비기준 -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권장), 소방안전 및 방염설비
10	아동발달 센터	법령	기준	소방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조문 (위임, 위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략)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이하 생략).

일번	시설명	구분		건축물 안전시설
11	작은 도서관	법령	기준	소방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조문 (위임, 위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해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8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30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11조과련) 1. 소화설비 ~ 5. 소화활동설비

[융복합시설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인력관리 자격체계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시간제 담당교사 1인 (보조인력 규정없음)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조문 (위임, 위계)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19쪽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가입 및 등록 - 담당교사 채용, 임면보고, 보육교직원 등록 등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37쪽 1. 인력관리 기준 - 채용조건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 자 1) 보육교사 자격소지자(1-3급)로서, 보육업무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2)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또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 또 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파견인력(아이돌보미)	해당없음 (제공기관의 자격기준에 따름)
			조문 (위임, 위계)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72쪽 4. 기관연계서비스 가. 신청개요 - 신청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바. 돌봄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해당없음 (융복시설 내 파견인력의 자격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상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함)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보조인력' 배치 가능	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가족사업안내 제2권** 11쪽 다. 사업인력 ○ 종사자 배치원칙 - 보조인력 배치 가능(10월 이상 고용) - 1,000만원 이내 - 동일 시군구내에서 2개소 이상 공육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보조인력 배치계획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가족사업안내 제2권** 11쪽 다. 사업인력 ○ 종사자 배치원칙 - 전담인력의 경우 사업수행 담당기관과 채용기준 동일 * 건가센터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2급이상) ○ 교육 - 직무교육 : 교육과정 이수해야 함 * 건가다가센터 직원교육 지침을 따름 * 전담인력 필수, 보조인력 제외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기준	배치기준 마련	자격체계 마련
4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령	조문(위임, 위계)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024 보육사업안내** 489쪽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직원임면관리 - 근로계약체결 - 직종별 자격기준 등	**영**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중략)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영**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별표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ㅗ사의 자격기준(제21조관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영**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특별활동강사, 파견인력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
			조문(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별표2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	**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영**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략)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중략)보육교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 기타보조인력 근거규정 보육교직원 채용시 구비서류 (**2024 보육사업안내.** 177쪽)	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6	유치원	법령	기준	배치기준 마련	자격기준 마련
			조문 (위임, 위계)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규정 없음	집단급식소 규정
			조문 (위임, 위계)	규정 없음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름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사설장 , 생활복지사, 영양사, (기타 보조인력 기준 없음)	자격기준 및 교육체계 운용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다(후략).	○ 자격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략) 자격기준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 수 및 배치기준 0 배치기준(아동30명 이상기준) : 시설장1, 복지사1, 영양사1(아동 50명초과시 복1, 영1 추가)	은 별표 15와 같다. ---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 수 및 배치기준 0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종사자별 자격증 급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략)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 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58~61쪽. 마. 종사자교육 : 종사자는 지침으로 정하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합하여 연가 25시간 이상 받아야함(신규 시설장 60시간)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마련, 보조인력 기준 없음	자격기준 및 교육체계 운용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관련 -- 별표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관련 -- 별표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3. 종사자의 자격기준 - 센터장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강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등 -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기타 법제44조의2 제1항의 돌봄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된 자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력배치	자격체계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68쪽 마 종사자 임면보고 및 배치기준 1) 임면보고 위탁법인 등이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등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 3) 종사자 배치 -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1인 필수인력 - 동시간대 이용아동 20명 기준 1명의 돌봄선생님 배치 * 자원봉사자를 보조근무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용 또는 배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자격기준체계 운용
			조문(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나. 기관의 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후 장애인복지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 등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국가자격증 소지자, 대학 등에서 관련학과 이수자 등
11	작은도서관	법령	기준	사서 배치기준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조문(위임, 위계)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 2.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 비고 4.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 도서관등의 사서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 - 구분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급수별 자격요건 • 1급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 취득자 등

[융복합시설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건비	겸임 겸직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인건비 지원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44-45쪽 3. 지원기준 가. 시간제보육 보조금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 (육아종 및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정된 제공기관의 담당교사에게는 교사1인당 보육교사 호봉 100% 지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담당교사의 경우 4호봉의 100% 지원, 기타 수당, 사회보험 등 지원됨.)	규정없음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위임, 위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사업비에 포함 지원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가족사업안내** 제2권 30쪽 2) 예산내역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 준용	**가족사업안내** 제2권 11쪽 다. 사업인력 ○ 종사자 배치원칙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이상 배치 - 종사자 1인 시설에 추가로 순회종사자를 둘 수 있음.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기준	인건비 지원	상근 의무
			조문 (위임, 위계)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	**영**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건비	겸임 겸직
				는 비용 (중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024 보육사업안내** 481쪽 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개요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2) 인건비 3) 설치비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립, 법인단체립, 기타 지원비대상: 민간, 가정	전임의무
			조문 (위임, 위계)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4. 2. 13. 시행일: 2024. 8. 14.〉 **영**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별표2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6	유치원	법령	기준	공무원 인건비 적용	원칙 불가, 허가를 받아 가능
			조문 (위임, 위계)	기관운영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건비	겸임 겸직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규정 없음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함 (둘다 100인 이하 선택 가능)
			조문 (위임, 위계)	규정 없음	**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별표2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할 보육교직원과 그 수 마. 조리원 (영유아 40인 이상 1인,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추가) 2. 보육교직원의 복무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인건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지원	상근의무 (공무원 규정 준용) 겸임, 겸직은 비영리 업무범위내 가능, 기타 별도로 정하는 범위내 가능
			조문 (위임,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관련 별표 14 --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건비	겸임 겸직
			위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중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2024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13쪽. 다.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 법정종사자수 및 직위책에 따라 매년 기준액 결정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 법제5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상근의무
			조문 (위임, 위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140쪽 다. 인건비 -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1-2인 인건비 - 직위책별 인건비 지원기준 및 내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69쪽 마 종사자 복무관리 3) 겸임제한 -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인력관리	
				인건비	겸임 겸직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미지원	상근 의무
			조문(위임, 위계)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13쪽 5. 제공기관 운영 1. 제공기관 운영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198쪽 1. 제공기관 - 인력배치기준 : 기관장은 상근하여야 함.
11	작은도서관	법령	기준	지원규정 마련	규정없음
			조문(위임, 위계)	**도서관법**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융복합시설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위임,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47-85쪽 4. 회계관리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위계)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되, 지출항목 등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지출불가항목 등) 5. 주요항목별 세부내용 - 예산편성. 집행절차 및 주요항목별 세부내용 규정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위임, 위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및 건가다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적용	규정없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및 건가다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적용
			조문 (위임, 위계)	**가족사업안내** 제2권 30쪽 2) 예산내역 ○ 예선편성 및 집행에 관한 비목별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적용하고, 그 외 기타 사항은 가족사업 안내 제1권 Ⅰ. 건가다가센터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해야 함.	규정없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및 건가다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적용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기준	어린이집과 동일한 규정 시행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2024 보육사업안내** 489쪽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라.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 집행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6] 준용 - 보조금 교부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지자체장에게 승인 신청,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어린이집 별도규정 시행	규정없음	운용
			조문 (위임, 위계)	○ **2024 보육사업안내**(본문) 85쪽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따라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2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규정없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어린이집 (예산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용 중임(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보육료 등 보조금 결재 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도 여기에 포함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시스템'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6	유치원	법령	기준	유치원 회계 별도규정	규정없음	별도 운용
			조문 (위임, 위계)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 · 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규정없음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8	지역아동 센터	법령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규정 없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의무적 활용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2024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06~131쪽 - 재정관리 원칙. 141쪽. * 3)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 보관 가) 보조금 신청 및 보고, 후원금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 처리 나)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지출분개장 기입이 원칙이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 시 매월 마감 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무 시행	규정 없음	**2024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41쪽. - 재정관리 원칙. * 3)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규정없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의무적 활용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114~163쪽 자. 재무회계관리 114쪽. 1) 재정관리원칙 2) 예산 3) 결산	규정없음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114~163쪽 자. 재무회계관리 114쪽. 1) 재정관리원칙 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4) 회계 차. 후원금관리 127쪽		(희망이음)(「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 - 보조금 신청 및 보고, 후원금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 처리,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기입이 원칙이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시 매월 마감 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무 시행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규정없음	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규정없음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04-212쪽 2. 신규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제공기관의 시스템 업무 -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등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회계규정 (예산과목 서식 등)	집행의 자율성 규정 (도급경비 등)	전산회계시스템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13쪽 5. 제공기관 운영 1. 제공기관 운영기준 2. 서비스 제공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 ○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지급된 급여비용)는 다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 제공인력 인건비 - 종사자 보험료 - 시설투자비, 재료비 등		
11	작은 도서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융복합시설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보험가입 의무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2024 시간제보육사업안내.** 21쪽 3) 시간제보육 보험가입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시간제보육 특약 운영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의무적 보험가입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12쪽 2.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다. 보험 가입 -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가입 희망하는 돌보미 활동 시간 보장 노력) - 아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가족사업안내** 제2권 24쪽 *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시)에 보험가입에 대한 항목을 두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수준임.
4	육아종합 지원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의무가입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규정없음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 어린이집운영. 사. 보험(공제)가입.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2024 보육사업안내 481쪽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에 가입해야 함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규정없음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의무설치	의무가입
			조문 (위임, 위계)	**영유아보육법** 상 규정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위탁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중략)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호 나목 급식관리(직접조리 원칙, 사회복지관 내 등 설치 시 예외 인정) **2024 보육사업안내** 108쪽 나. 급식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20)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별표25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 어린이집운영. 사. 보험(공제)가입.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6	유치원	법령	기준	규정없음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의무설치	의무적 보험가입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 급식 시설 · 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조리실, 2. 설비, 기구, 3. 식품보관실 4. 기타사항(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른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학교안전법** 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제2조제1호 유치원 포함 기타 개별법에 따른 보험가입 - 소방, 액화석유가스, 어린이놀이시설, 통학버스, 승강기, 전기시설 등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규정 없음	식품위생법 기준 준용	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규정 없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6조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동 기준에서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57조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규정 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5조제3항관련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8	지역아동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급식제공	보험가입 의무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 급식위생 관리 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2024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63쪽 나. 급식관리 - 급식공급, 위생관리, 보관관리,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식수관리 등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다함께돌봄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급식의무(매식 가능)	보험가입 의무
			조문 (위임, 위계)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33-37쪽 4. 위탁기준 32쪽.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위탁계약 체결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74쪽 나. 급식·위생·차량안전 관리 74-85쪽 1) 급식관리 74쪽 가) 영양관리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일번	시설명	구분		회계관리	건강·위생·안전관리	
				위탁수수료	급식	보험(공제회) 가입
				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호부터 8까지 ------수탁자, 위탁계약기간,대상시설및 업무, 안전관리 등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여건에 따른 제공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매식을 진행할 경우 아동의 안전 및 영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	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의무적 보험가입
			조문(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2 -- 발달재화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1	작은도서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조문(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융복합시설 운영]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법령	기준	규정없음	규정없음	39,926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규정없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4285(2022.12.20)] 2023년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399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2	아이 돌봄실	법령	기준	평가시스템 마련	규정없음	550,118
			조문 (위임, 위계)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21쪽 2.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1. 기관평가(예시) * 평가목적 : 서비스제공기관 사업현황 점검 진단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하위 기관에 대해 광역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는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차년도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 평가 상위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등 부여	규정없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4139(2022.12.6)] 2023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및 후속조치 안내 5,501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84쪽 붙임8.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4개영역 12개 지표)		
3	공동육아 나눔터	법령	기준	규정없음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21,802
			조문 (위임, 위계)	규정없음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 제 13조의 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족사업안내** 제2권 17쪽 가. 위탁운영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396(2022.12.28)] 202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통보 218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행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상 기관 :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해당 사업 또는 관련 업무 수행 경력,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의 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4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령	기준	개별법 규정없음		'--
			조문 (위임, 위계)	개별법 규정없음	**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중략 재구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2024 보육사업안내** 481쪽 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개요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2) 인건비 3) 설치비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보육 관련 법인 · 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략 재구성)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	법령	기준	정부가 시행	가능	9,633,052
			조문 (위임, 위계)	**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④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육사업기획과-4228(2022.12.27.).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및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 요청. * 일부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분은 부담비율을 역산해 산출한 금액임. **교육부 내부자료**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2023. 1)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위탁비용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6	유치원	법령	기준	평가체계 마련	규정 없음	1,692,005
			조문 (위임, 위계)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0조(평가의 기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0조(평가의 절차 등)	규정 없음	**교육부 내부자료**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2023. 1) - 유치원 유아교육비 : 1,692,005백만원 - 어린이집 전출금 : 1,778,032백만원 • 보육료 : 1,714,356 •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등 : 63,676백만원 * 유치원 유아교육비에는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함.
7	어린이 식당	법령	기준	개별법 규정 없음	위탁운영 가능	규정 없음
			조문 (위임, 위계)	개별법 규정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규정 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8	지역아동센터	법령	기준	평가시스템 운영	위탁운영 가능	411,749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후략). ② (선약)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⑥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6492(2022.12.29)] 2023 국고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치단체 보조 확정예산 통보 4,117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기준	평가시스템 시행	민간위탁운영 가능	121,731
9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조문 (위임, 위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152-153쪽 나.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1) 시설운영평가 -- 평가지표 2) 서비스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관련 -- 별표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24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33-37쪽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7248(2023.12.28)] 2024 다함께돌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다함께돌봄센터 재정규모는 2024년도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1,217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4. 위탁기준 32쪽.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10	아동발달센터	법령	기준	평가시스템 마련	규정없음	192,364
			조문 (위임, 위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략),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48쪽 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 평가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등 제공기관 - 목적, 평가주체, 평가주기, 결과활용 등	규정없음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297,7281 (2022.12.28)]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 통보. 1,924억원 규모(지방비 포함)
11	작은도서관	법령	기준	개별법 규정없음	위탁운영 가능	중앙정부 운영비 지원 없음
			조문 (위임, 위계)	개별법 규정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	해당없음

일번	시설명	구분		일반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민간위탁운영	재정규모 (백만원, 2023년)
					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